

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백서

2017. 8.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 차

| | |
|--|-----|
| I.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주요경과 | 1 |
| II.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사전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5 |
| 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건, '15.4.29) | 7 |
| 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속기록, '15.4.29) | 25 |
| 3.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안건, '15.9.24) | 41 |
| 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속기록, '15.9.24) | 59 |
| 5.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안건, '16.8.11) | 63 |
| 6.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속기록, '16.8.11) | 81 |
| III. 재승인 신청 안내 | 97 |
| 1.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신청 안내 | 99 |
| IV. 시청자 의견청취 | 207 |
|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 209 |
|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 213 |
| V.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 233 |
| 1. '14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안건, '15.6.4) | 235 |
| 2. '14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속기록, '15.6.4) | 249 |
| 3. '14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3사 시정명령(안건, '15.7.9) | 275 |
| 4. '14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3사 시정명령(속기록, '15.7.9) | 297 |
| 5. '15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3사 과징금(안건, '16.8.18) | 325 |
| 6. '15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3사 과징금(속기록, '16.8.18) | 337 |
| 7. '15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MBN 시정명령(안건, '16.8.18) | 357 |
| 8. '15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MBN 시정명령(속기록, '16.8.18) | 367 |
| 9. '16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안건, '17.2.7) | 375 |
| 10. '16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속기록, '17.2.7) | 385 |

VI. 재승인 심사 401

-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403
- 2. 세부 심사기준 407
- 3. 심사평가 결과 433
- 4. 심사의견서 447
-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473
 - 1) 제1차 회의 475
 - 2) 제2차 회의 503
 - 3) 제3차 회의 593
 - 4) 제4차 회의 653
 - 5) 제5차 회의 661
 - 6) 사업자 의견청취 727

VII. TV조선 청문 821

- 1. TV조선 청문조서 823
- 2. TV조선 청문주재자 의견 831
- 3. TV조선 청문 속기록 837

VIII. 재승인 의결 869

- 1. 보도PP 재승인 의결(안건, '17.3.9) 871
- 2. 보도PP 재승인 의결(속기록, '17.3.9) 885
- 3. 종편PP 재승인 의결(안건, '17.3.24) 907
- 4.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17.3.24) 933

IX.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953

-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955

**I .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주요경과**

주요 경과사항

- '15. 4. 29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15. 9. 2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의결
- '16. 8. 11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8. 12 재승인 신청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 '16. 9 ~ 10월 YTN, 연합뉴스TV, TV조선, JTBC, 채널A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7. 2. 7 '16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 '17. 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17.2.20~24)
- '17. 3. 6, 10 TV조선, JTBC, 채널A 의견청취
- '17. 3. 9 YTN, 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
- '17. 3. 22 TV조선 청문 실시
- '17. 2 ~ 3월 상임위원 간담회 8회 개최('17.2.26~3.23)
- '17. 3. 24 TV조선, JTBC, 채널A 재승인 의결

**Ⅱ.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안건, '15.4.29)**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의안번호 | 제2015 - 18 - 078호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결일자 | 2015. 4. 29. | |
| 공개여부 | 공개 |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
| 제출일자 | 2015. 4. .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 4. 29.(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
- 동 계획을 고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방송법령상 고시 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우선적으로 이를 의결하여 적용하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방송법에 위임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고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허가·승인 대상

| 연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공동체라디오방송 |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
|-----|---------------------------|---|---|--|
| 16년 | MBC 계열사, 지역 민방 등 34개사 | 안동MBC, KNN, 광주 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개사 | - | - |
| 17년 | KBS·MBC·SBS·EBS 등 10개사 |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개사 |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 공동체라디오 FM 7개사 |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 TV 2개사 |
| 18년 | 국악방송, TBN 2개사 | - | - | - |

※ DMB의 경우 '15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18~'20년 재허가 심사 예정

나. 심사위원회 구성(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
-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시 결정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구분 | 분야 | 비고 |
|------|------------|------------------------|
|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
| | 방송·미디어 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법률 분야 |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
| | 경제·경영·회계분야 |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
| | 기술 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시청자·소비자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방통위 사무조직 | 담당 과장 |

다.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 심사사항(대분류) | 비고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사항 | 지상파방송 | | | | PP | |
|--------------------------------------|-------|-------|-------|-------|-------|-------|
| | TV | R | DMB | 공중파R | 중편 | 보도 |
|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400 | - | 400 | 400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50 | 250 | 200 | 350 | 210 | 26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50 | 150 | 120 | 200 | 190 | 16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100 | 180 | 350 | 100 | 8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함

라.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시 결정

4. 추진일정

- '16년 이후 : 당해 방송사업자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
 - ※ 세부 심사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허가·승인 심사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1부. 끝.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2015. 4.



방 송 정 책 국

□ 대상 방송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 연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공동체라디오방송 |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
|-----|---------------------------|---|---|--|
| 16년 | MBC 계열사, 지역 민방 등 34개사 | 안동MBC, KNN, 광주 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개사 | - | - |
| 17년 | KBS·MBC·SBS·EBS 등 10개사 |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개사 |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 공동체라디오 FM 7개사 |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 TV 2개사 |
| 18년 | 국악방송, TBN 2개사 | - | - | - |

※ DMB의 경우 '15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18~'20년 재허가 심사 예정

□ 심사 기본방향

-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실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여부와 이전 (재)허가·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로 9 ~ 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시 결정
- 위촉기준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 구 분 | 분 야 | 비 고 |
|------|------------|------------------------|
|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
| | 방송·미디어 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법 률 분 야 |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
| | 경제·경영·회계분야 |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
| | 기 술 분 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시청자·소비자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방통위 사무조직 | 담당 과장 |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및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 심사사항(대분류) | 비 고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 매체별/채널별 특성과 기존 재허가·승인 배점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별 배점을 차별화
 - (지상파/중편·보도PP) 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 공익성 제고 책무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 '2. 방송의 공적책임'의 배점 비중이 큼
 - (중편PP) 도입시 정책목표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3.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의 배점에 큰 비중을 부여
 - (DMB/공동체R)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심사사항 | 지상파방송 | | | | PP | |
|--------------------------------------|-------|-------|-------|-------|-------|-------|
| | TV | R | DMB | 공동체R | 중편 | 보도 |
|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400 | - | 400 | 400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50 | 250 | 200 | 350 | 210 | 26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50 | 150 | 120 | 200 | 190 | 16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100 | 180 | 350 | 100 | 8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심사사항(대분류)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심사항목(중분류)은 매체별/채널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지상파TV) 지역방송사와 중소방송사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등
 - (중편·보도PP)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등
 - (DMB)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편성, 채널구성, 난시청 해소 노력 등
 - (공동체R)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에 적합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 매체별/채널별 구분없이 방송평가는 40%, 재허가·승인 심사결과는 60%를 반영(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외)
 -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 종전 재허가·승인시 기 반영된 제재 감점은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
 - 세부 심사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시 결정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안)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 25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100(비계량) 50(비계량) | 15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⑦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 10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⑭(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지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광고판매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배점은 ⑭으로 병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 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 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 25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100(비계량) 50(비계량) | 15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⑦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비계량) 20(계 량) 50(비계량) | 10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 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80(비계량) 60(비계량) 60(비계량) | 20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⑥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 10(비계량) 3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 12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⑨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비계량) 30(계 량) 50(비계량) 50(비계량) | 18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⑬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⑭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⑮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⑯(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4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6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 ①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②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소출력커뮤니티 매체로서 지역사회발전 기여실적 및 계획 | 120(비계량) 80(비계량) 150(비계량) | 350 |
| 2.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④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⑤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150(비계량) 50(비계량) | 200 |
| 3.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⑥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⑧재무적 건전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130(비계량) 50(계량) 120(비계량) 50(비계량) | 350 |
| 4.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⑩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⑪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⑫(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감점(계량)* 감점(계량)* 100(비계량) | 100 |
| 5.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할 수 있음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 21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9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 19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 10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 26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 16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 80 |
| 5.방송발전을 위한 자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속기록, '15.4.29)**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4. 29.(수)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18-07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동 계획을 고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방송법령상 고시 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우선적으로 이를 의결하여 적용하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방송법에 위임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고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허가·승인 대상은 밑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관련 분야는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의 편의 및 배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가 있는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16년 이후에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결안건> 4페이지에 채점 대항목이 있습니다. 지상파TV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은 1,000점 중에 250점입니다. 종전보다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여기에 있는 항목별 점수들은 기존에 있던 점수들을 대부분 분류만 재분류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점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항목 점수는 동일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아래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부분과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부분의 배점이 제일 높는데 종전과 같다고 한다면 소항목 배점을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첨부자료를 보시면 중분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분류가 지상파 같은 경우 공익성과 관련해서 4가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었는데, <붙임> 6페이지를 보시면, 그 부분들이 중분류 <2>번, <3>번 항목 2가지로 통합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분류의 큰 점수는 그대로 있고 소분류에서만 조정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중분류...

○ 김재홍 상임위원

- 기본계획의 중분류...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행세칙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시행세칙이라고 하면 보통 심사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부분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세부지침으로 수립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항목이 많고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크게 움직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지상파 TV의 경우 중분류 2항에 보면 공적책임·공정성이 90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80점으로 되어 있는데, 중분류에서 공정성 항목이 전보다 얼마나 올라간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을 때도 90점이었습니다. 공적책임·공공성 이행실적과 실현계획으로 해서 각 40점, 50점을 배정해서 90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합치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중분류도 배점이 조정된 것이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각 매체별로 항목들이 서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 기본계획에서는 배점을 조정한다기보다는 그런 항목들을 조정·통합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진행됐지 배점을 크게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배점이 변경된 것은 종편 부분이나 뒷부분에 있는데, 여기에는 방송평가가 기존에 350점 반영되던 부분에서 400점으로, 저희가 방송평가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점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상파TV는 그런 변화도 없고, 종편에서 공정성·공적책임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안건 10페이지의 종편을 보시면 <2>번 항목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110점이었는데 이번에 120점으로 10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상파TV에서는 대분류, 중분류의 배점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종편에서만 바뀐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종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방송평가가 350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400점으로 늘어나면서 밑에 있는 <4>번 재정적 기술항목을 기존보다 약간 낮추었습니다. 그 부분을 낮추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분을 10점 높이고, 그런 약간의 일부 미세조정은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 심사 배점기준이 종전과 비교해서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바뀐 것은 방송평가가 350점에서 400점으로 늘어나서 50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50점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 경영 부분, 경영·재정실적 부분을 일부 40점 정도 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대분류 기준으로 하면 10점 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은 보도의 공정성 문제와 균형 있는 편성 비율의 문제 그리고 콘텐츠 투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배점 조정이 없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와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부분과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부분의 점수를 10점 정도 추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투자 실적 부분의 적정성 부분에도 점수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은 아까 제가 지적한 항목의 배점이 일부 상향된 것 같이 보이는데, 지상파TV의 경우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투자 분야가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으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배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는 대분류, 중분류에 변경이 없다면 큰 변화, 큰 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정할 때 그 틀 내에서 할 수 있을 텐데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만약 콘텐츠 투자 부분을 강화한다면, 심사항목 하단에 '재량평가'라고 해서 10%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재량평가 항목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배점이긴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심사기준을 만들 때 보다 타이트(tight)하고 까다롭게 만든다면 보다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와 별도로 재허가 재승인의 배점 항목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또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개선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점수를 만들 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점 만점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도 개선안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큰 틀의 점수변화를 주기보다는 체계를 바꾸고 이것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2가지 목표가 있지요. 기본계획과 고시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재허가·재승인 때 우리가 중시하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콘텐츠 투자를 개선하기 위해 채점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후자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100%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저희가 '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연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와 방송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긴 했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아까 고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 정도 여유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그때 어느 정도의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이 2016년부터 시행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2015년도, 금년 방송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5년 말에 재허가 시기가 돌아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초 위원회에서 심사계획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지만 실질적으로 2016년 말 도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 배점 항목을 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재허가·재심사 때 우리가 좀 더 배점을 높여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에 관련해서 배점표의 어떤 부분이 재난방송과 관련한 평가 부분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일단 개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고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6페이지 지상파입니다. <3>번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붙임> 10페이지 종편입니다. <3>번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다시 말씀 드리면 지상파 <3-6>, 종편 <3-7>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송평가’라고 400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 배점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상파의 경우에는 방송평가가 만점이 900점인데 그중에 6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편의 경우에는 만점이 700점인데 그중에 65점이 재난방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방송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좋은 틀이 있는데 그것은 재허가·승인 당시에 만약 재난 이슈가 클 경우에는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번을 보면 모든 사업자에 대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기준을 수립할 때 방송평가에서도 재난방송 배점이 강화되고, 또한 엄격하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담당하는 방송기반국과 협의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니까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가 400점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 배점에 큰 변화는 없지요? 원래 원안에도 있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평가 내용은 많이 변화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현재까지의 방송평가에는 지상파나 종편에 점수가 배점 되어 있는데, 방송기반국에 확인해 보니까 연말까지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재난방송 관련 배점이 없었던 위성·유료방송, SO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추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화되면 400점 부분에 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전영만 국장이 말씀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에 배점을 하고 있고, 재난방송 이슈가 크게 터지게 된다면 전

체 배점의 10%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해에 한해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일부 두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현재 방송평가에, 플랫폼사업자는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SO와 위성방송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배점을 분명히 다시 해서 거기까지도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재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좋은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는 상황이 매년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해에 꼭 평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재난에 대해 이 부분을 반영 시켜서 가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여기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에 ②번, 또 종편 ②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부분이 있는데...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 부분은 세부 심사기준을 만들 때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와 제6조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은 아시다시피 방송법에는 없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세부심사기준은 그 당시에 확정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예시로 가지고 있는 것에는 빠져 있는데, 재난방송도 공적책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심사계획 수립에 따라서는 재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제4조, 제5조, 제6조 위주로 평가가 되지만, 재난방송이 큰 의미를 차지하면 그것도 역시 공적책임·공공성의 한 부분이 될 테니까 반영이 가능할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우리가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감점은 보통 방송평가에서 반영이 많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을 때 1년치와 2년

치는 방송평가가 반영되어서 들어가고, 당해 연도는 방송평가 그다음에 나오는 관계로 재허가 때 바로 감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6페이지 단서를 보시면 감점기준은 기본적으로 방송평가에서 적용하는 감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할 때 감점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재허가 심사 때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동일하게 감점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추후 방송법에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고시로 제정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처음 보고할 때,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시허가 승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이것은 법이 아닌 기본계획이고 추후에 고시로 들어갈 내용인데, 그렇다면 '재허가·승인', '거부', 그다음에 650점 미만이라면 '조건부'로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기본계획상에는 '재허가·승인',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 이렇게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정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할 때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시 허가나 승인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당시에 시작할 때는 그 부분까지 마련해서 연구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견수렴 결과 아무래도 사업자의 방송운영이나 법적지위가 약간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당시의 연구계획에는 근거조항 정도 들어가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묶어서 하기 보다는, 이 부분이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빨리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전공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해서 임시 허가제 도입 방향, 이런 구체적인 운영내용들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재허가 심사기준, 기본계획안만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상황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를 하다 보면 재허가 불허 점수, 재승인 불허 점수를 맞고도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조건부'로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허임에도 불구하고 불허 이후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조건부를 붙여서 재허가나 재승인을 내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용역도 하셨고 지난번 보고 때 언급도 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제도정비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하면 실질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임시 허가나 임시 승인제도를 법제화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앞으로 빨라야 2017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연구도 있고 저희 내부 검토도 있고, 다만 사업자들 일부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보고접수를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허가 승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는 최소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아주 크게 높여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객관성·투명성·공정성들을 다 종전보다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획안이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앞에서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서둘러서 이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사항, 심사항목 내지는 배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세부기본계획을 의결할 때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레버리지(leverage)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결국에는 심사사항, 심사항목별로 배점도 의미가 크지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0점이라고 하는 분기점을 가지고 있지만 매년 재허가·재승인할 때 마다 점수 주는 것이 800점, 900점이라면 배점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650점 언저리에서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점수를 준다면 배점의 5점, 10점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운영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시 허가·승인 제도 관련해서 말씀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더 짧게 준다면, 아니면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임시적으로 한다는 것과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짧게 갖고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연구를 꼭 하고 계신데, 실제로 실익, 유효성을 잘 따져서 지금의 제도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기존 제도와 상대비교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이 잘 준비가 되어서, 틀은 종전의 재허가·재승인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성도 높이면서 시의적절한,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 일어난 해에는 또 그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 시의성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된 계획은 두가지 측면에서 종전에 저희가 운영해 왔던 제도보다는 크게 진전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결국은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재허가·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시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이번에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하니까, 시행령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법을 고쳐야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법령이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저희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검토 중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시 허가제를 검토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재허가·재승인을 해 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말하자면 재허가 거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조건을 붙여서 그냥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이다” 하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심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는 대신 좀 더 실효성 있는,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서 기한을 설정해서 임시 허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중에 조건을 이행하면 정식 재허가로 전환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방송법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적극 검토해야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실질적이다,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임시 허가 또 임시 허가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송시설의 양도·양수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기본계획 형태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지난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방송사업자 의견수렴까지 해서 이번 기본적인 형태, 틀을 종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사업자들로부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배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방송 배점에 대해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반영은 못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 배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3.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안건, '15.9.24)**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의안번호 | 제2015 - 51 - 227호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결일자 | 2015. 9. 24. | |
| 공개여부 | 공개 |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
| 제출일자 | 2015. 9. 24.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2015. 9. 24(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2. 제안이유

- '15.4.29. 제18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위원회 검토결과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수정내용

가.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

| 제18차 위원회 의결('15.4.29)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

| 제18차 위원회 의결('15.4.29) | 수정안 |
|--|--|
| <p>○ <u>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u></p> | <p>○ <u>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u></p> <p>- 다만, 심사사항 중 ‘<u>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u>’과 ‘<u>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u>’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u>조건부 재허가</u>’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u>조건부 재승인</u>’ 또는 ‘<u>재승인 거부</u>’를 할 수 있음</p> |

4. 향후 계획

- '16년 이후 도래하는 재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시 적용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1부. 끝.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2015. 9.



방 송 정 책 국

□ 대상 방송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 연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공동체라디오방송 |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
|-----|---------------------------|---|---|--|
| 16년 | MBC 계열사, 지역 민방 등 34개사 | 안동MBC, KNN, 광주 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개사 | - | - |
| 17년 | KBS·MBC·SBS·EBS 등 10개사 |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개사 |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 공동체라디오 FM 7개사 |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 TV 2개사 |
| 18년 | 국악방송, TBN 2개사 | - | - | - |

※ DMB의 경우 '15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18~'20년 재허가 심사 예정

□ 심사 기본방향

-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실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여부와 이전 (재)허가·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로 9 ~ 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시 결정
- 위촉기준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 구 분 | 분 야 | 비 고 |
|------|------------|------------------------|
|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
| | 방송·미디어 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법 률 분 야 |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
| | 경제·경영·회계분야 |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
| | 기 술 분 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시청자·소비자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방통위 사무조직 | 담당 과장 |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및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 심사사항(대분류) | 비 고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 매체별/채널별 특성과 기존 재허가·승인 배점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별 배점을 차별화
 - (지상파/중편·보도PP) 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 공익성 제고 책무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 '2. 방송의 공적책임'의 배점 비중이 큼
 - (중편PP) 도입시 정책목표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3.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의 배점에 큰 비중을 부여
 - (DMB/공동체R)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심사사항 | 지상파방송 | | | | PP | |
|--|-------|-------|-------|-------|-------|-------|
| | TV | R | DMB | 공동체R | 중편 | 보도 |
|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400 | - | 400 | 400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50 | 250 | 200 | 350 | 210 | 26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50 | 150 | 120 | 200 | 190 | 16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100 | 180 | 350 | 100 | 8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심사사항(대분류)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심사항목(중분류)은 매체별/채널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지상파TV) 지역방송사와 중소방송사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등
 - (중편·보도PP)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등
 - (DMB)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편성, 채널구성, 난시청 해소 노력 등
 - (공동체R)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에 적합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 매체별/채널별 구분없이 방송평가는 40%, 재허가·승인 심사결과는 60%를 반영(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외)
 -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 종전 재허가·승인시 기 반영된 제재 감점은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
 - 세부 심사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안)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 25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100(비계량) 50(비계량) | 15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⑦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 10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⑭(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지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광고판매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배점은 ⑭으로 병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 25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100(비계량) 50(비계량) | 15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⑦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 10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80(비계량) 60(비계량) 60(비계량) | 20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⑥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 10(비계량) 3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 12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⑨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 18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⑬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⑭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⑮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⑯(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4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6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제 화적 필요성 | ①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②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소출력커뮤니티 매체로서 지역사회발전 기여실적 및 계획 | 120(비계량) 80(비계량) 150(비계량) | 350 |
| 2.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④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⑤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150(비계량) 50(비계량) | 200 |
| 3.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⑥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⑧재무적 건전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130(비계량) 50(계량) 120(비계량) 50(비계량) | 350 |
| 4.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⑩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⑪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⑫(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감점(계량)* 감점(계량)* 100(비계량) | 100 |
| 5.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할 수 있음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 21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9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 19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 10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 26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 16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 8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 100 |
|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 |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속기록, '15.9.24)**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9. 24.(목) 09: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2015-51-22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5년 4월 29일 제18차 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 심의·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위원회 검토 결과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제18차 위원회 의결 당시에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하되,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 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은 ‘16년 이후 도래하는 재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시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부분은 전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추가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
(안건, '16.8.11)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의안번호 | 제2016 - 45 - 162호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결일자 | 2016. 8. 11. | |
| 공개여부 | 공개 | |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
| 제출일자 | 2016. 8. . |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6. 8. 11(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7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주요경과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15.4.29.)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의결('15.9.24.)

4. 주요내용

가. 재승인 대상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 방송분야 | 방송사업자명 | 방송채널명 | 대표자 | 승인유효기간 |
|------|------------|--------|-----|--------------|
| 중편PP | (주)조선방송 | TV조선 | 변용식 | '17. 3. 31. |
| | (주)제이티비씨 | JTBC | 김수길 | '17. 3. 31. |
| | (주)채널에이 | 채널A | 임채청 | '17. 4. 21. |
| | (주)매일방송 | MBN | 조현재 | '17. 11. 30. |
| 보도PP | (주)와이티엔 | YTN | 조준희 | '17. 3. 12. |
| | (주)연합뉴스티브이 | 연합뉴스TV | 박노황 | '17. 3. 31. |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나.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
 - ※ 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는 붙임 참조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안) >

| 구 분 | 분 야 (인원) | 비 고 |
|---------------|---------------|------------------------|
| 심사위원 (13인) | 심사위원장(1)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
| | 방송·미디어 분야(3)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법 률 분 야(2) |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
| | 경제·경영·회계분야(3) |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
| | 기 술 분 야(1)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시청자·소비자분야(3)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라.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사전 기본계획) >

| 심사사항 | 종편PP | 보도PP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10 | 260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90 | 160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80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 계 | 1,000 | 1,000 |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마.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5. 추진일정

- '16. 8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종편PP 중 승인유효기간이 '17.11월인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6. 8월)
- '16. 9~10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6.10~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2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2~3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17. 4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7. 4월)
- '17. 5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7. 6~9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0~11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11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7년도 중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안). 끝.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2016. 8.



방 송 정 책 국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 방송분야 | 방송사업자명 | 방송채널명 | 대표자 | 승인유효기간 |
|------|------------|--------|-----|--------------|
| 종편PP | (주)조선방송 | TV조선 | 변용식 | '17. 3. 31. |
| | (주)제이티비씨 | JTBC | 김수길 | '17. 3. 31. |
| | (주)채널에이 | 채널A | 임채청 | '17. 4. 21. |
| | (주)매일방송 | MBN | 조현재 | '17. 11. 30. |
| 보도PP | (주)와이티엔 | YTN | 조준희 | '17. 3. 12. |
| | (주)연합뉴스티브이 | 연합뉴스TV | 박노황 | '17. 3. 31. |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 구 분 | 분 야(인원) | 비 고 |
|---------------|---------------|------------------------|
| 심사위원 (13인) | 심사위원장(1)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
| | 방송·미디어 분야(3)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법 률 분 야(2) |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
| | 경제·경영·회계분야(3) |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
| | 기 술 분 야(1)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시청자·소비자분야(3)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 위촉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심사위원 결격사유

-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법인의 2017년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승인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주와이티엔)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심사위원회 운영(안)

○ 기본방향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의견청취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 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 평가 : 방송평가, 재정력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 구분 | 등 급 | 내 용 | 평점 환산비율(%) |
|----|-----|-------|-----------------------|
| 1 | 수 | 매우 우수 |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
| 2 | 우 | 우 수 |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
| 3 | 미 | 보 통 |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
| 4 | 양 | 미 흡 |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
| 5 | 가 | 매우 미흡 |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5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 심사사항(대분류) | 비 고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 |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사항 | 종편PP | 보도PP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10 | 260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90 | 160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80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 계 | 1,000 | 1,000 |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추진일정

- '16. 8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종편PP 중 승인유효기간이 '17.11월인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6. 8월)
- '16. 9~10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6.10~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2~3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17. 4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7. 4월)
- '17. 5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7. 6~9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0~11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11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붙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 21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9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 19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 100 |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 감점(계량) * 70(비계량) | 100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배점 | |
|--|--|--|-----|
| 1.방송평가 |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 400 | |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 260 |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 160 |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 80 |
| 5.방송발전을 위한 자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30(비계량) 감점(계량) * 감점(계량) * 70(비계량) | 100 |
| 계 | | 1,000 | |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6.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
(속기록, '16.8.11)**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8. 11.(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6-45-16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승인 대상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이며,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조화로운 방송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기본계획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방향은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심사사항별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

축도 가능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9월까지 종편·보도 PP 재승인 신청 공지를 하고 9월에서 10월 중에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해서는 '17년 4월부터 별도로 재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이미 의결해 놓은 재승인 기본계획을 일부 구체화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예를 들면 심사항목이나 배점, 재승인 여부 결정내용은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과 차이가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차이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지금 세부계획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이 자세히 되어 있고,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심사 기본방향에 정리해서 집어넣은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중에 신생 보도전문채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의 후발주자로 방송계에 뒤

늦게 출범을 해서 안착을 하고, 또 방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공헌도,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건전한 발전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측면에서 후발주자에 대한 배려, 또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베풀었다면 베풀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첫 번째 심사를 할 때는 많은 부분을 유예하고 후발주자로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제 돌이켜보면 종편 4사와 또 신생 보도채널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안착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면에서도 경영적 안정을 이루었고,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도 벗어났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과 매출력도 지상파에 못지않게 크게 증대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전에 저희들이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배점이나 심사기준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종편과 보도채널이 발전을 했고, 또 우리 사회에 상당한 일익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첫 번째 심사에 여러 가지 적용됐던 기준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매출력 증대라든가 또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걸맞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후시 배점을 강화한다든가 심사기준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종편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그동안 종편이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행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콘텐츠 투자실적이나 제작계획 같은 부분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고, 3년 전 심사의 경우 그때는 정량적인 심사 평가기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량평가의 비중을 다소 높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이제는 신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의 품질, 여러 가지 조화로운 편성, 아까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 심사 방향에도 조화로운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송의 품질과 조화로운 편성에 관한 배점 같은 것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종편 심사에 관한 기본계획이 의결됐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불임>에 대분류, 중분류가 나와 있던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수정·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먼저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전 기본계획을 저희가 작년에 마련한 취지가 사전에 저희 심사기준을 미리 공표해서 알려 줌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지금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리 제시했던 심사 배점에 따라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방송을 그렇게 심사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심사기준을 바꾸면 혼선이 일어나고 또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우리가 따른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대분류·중분류는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소분류에 해당하는 심사 세부항목이라도 심사위원들에게 재량을 줘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방송의 품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편성이 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 또 공공성·공정성·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배점으로 평가가 되어야만 거기에 걸맞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류 재승인 심사기준에 보면 <2>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이 부분이 2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에 보면 비계량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12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부적으로 배점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고,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을 높이 반영한다든가 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방송에서 출연진이 나와서, 소위 패널입니다. 패널이 나와서 뉴스의 뒷이야기라든가 해설을 할 때 지나치게 검증되지 않은 막말을 한다든가 검증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의 해설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패널들의 전문성, 방송의 품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패널들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방송의 품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막말이 없어야 품격 있는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내부적으로 방송사 내부의 검증하는 노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항목에서 배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현재 대분류 <2>번 심사항목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로 세부심사기준에서도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이행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실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세부심사항목을 정해서 심사위원들의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방송의 품질,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해서 패널들의 전문성 검증,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부과했는지, 또 방송사가 그런 자격미달의 패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출연진의 출연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배제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실적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재승인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저희가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방송사 내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패널의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발언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장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들여다봐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편들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상파에 버금가는 매체의 영향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송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품질과 또 편성에 관한 심사가 3년 전과는 달라야겠다, 첫 번째 심사 때와는 달리 걸맞은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방송품질에 관해서 세부심사항목을 마련해서 대분류·중분류 배점을 지금 바꿀 수 없다면 심사위원들에게 그런 것을 주문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신 출연자 관련된 공적책임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3년 전에 재승인할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행실적을 6개월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계속 점검하고 있고...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그런 출연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것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측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 차례 점검과 저희의 이행측구의 내용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은 될 수 있겠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심사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검토할 때도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만 심사의 기본방향 또한 우리가 작년 4월 29일 의결했던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준용해서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이 심사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종편이나 보도PP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 즉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지향성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조화로운 방송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 이것이 사실은 정책의 방향성, 즉 심사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기본방향을 정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을 2010년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을 하셨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당시 의결된 내용에서 정책방향 및 추진방향,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은 정책목표로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정책 방향, 최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재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어떻게 이번 심사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작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배점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4가지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종편PP 정책 기본계획에 의결된 내용대로 보면 그 정책목표가 지금 달성되지 않고 있다, 달성 정도가 미흡하다,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의결된 종편PP 정책목표나 기본방향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승인 심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사 기본방향이나 심사항목들을 보면 약간 기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심사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도 지금 기본계획 의결하고 나중에 심사결과가 나올 때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최초의 종편PP 도입할 당시의 정책목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했던 그 정책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재승인 과정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세부기준에서 중요한 핵심은 역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의 기본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방향에 우리의 정책목표, 정책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여부도 면밀히 심사, '도'가 아니고 '여부'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심사위원이 구성되면 제공하고 설명할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심사 기본방향은 방송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참고사항이겠지만 심사위원들께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님들의 주문일 수도 있고 이것을 참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중점을 두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부분 기본방향에 적시된 이 내용들에 관해서는 과락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사항별로 과락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공정성·공익성, 콘텐츠 투자는 모르겠는데 50점 이하를 득점하면 총점이 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조건부 재승인으로...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점사항이 일정한 수준에 과락하면 아주 강력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재승인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를 잘 반영시켜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부분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이 안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심사 기본방향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과 관련해서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잠깐 인용해 보면 방송법 제69조 제3항을 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시청시간대에는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본방향의 두 번째 동그라미 첫째 줄 내용이 다 유사하긴 한데 저는 자구를 약간 손을 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자구가 뜻은 똑같은데 왜 저는 그런 수정 자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뒤에 '조화로운 방송 편성'보다는 '방송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앞에 방송프로그램과 중첩되니까, 그렇게 워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이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은 사무처에서 다 제공해 드려야 하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예를 들면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에 최초로 승인할 당시 방통위의 정책방안도 다 참고로 봤으면 합니다. 저는 결국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종편이나 보도PP에 대해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바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대부분 그분들이 일반 국민, 시청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분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거기에 부합되거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 기본방향의 두 번째 내용도 저희가 그동안 논의해서 추가도 하고, 사실 방송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심사기준들을 이렇게 쪽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감안이 되고 고려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표현을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조화로운 방송 편성’ 이것을 아까 제가 듣기로는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조화로운 방송 편성’ 이 말이 어색해서 ‘방송프로그램’을 붙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좋은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했을 경우에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이것과는 크게 걸리는 것은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표현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화로운 편성’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어의 순서를 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밑줄에도 아까 부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는 방송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 표현 자체가 부수적인, 부차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도'를 빼고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냥 '도'자를 아예 빼버리지요. 이것이 아마 취지는 위에 '중점심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점심사하는 것이라든가 의미로 '도'자를 쓴 것 같은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면밀히 심사' 그냥 '도'자를 아예 빼버리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을 부대상항이나 기타처럼 하지 말고 아예 동그라미 별도 항목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중점 심사하는 것이 포함 안 된 것이 재승인 권고사항이었는데 편성비율 문제입니다. 과도한 보도 편성비율이 계속 지적을 받아왔는데 아직도 다 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와 권고사항 이행은 매우 중요한 심사대상이다, 중점사항이다 해서 이것을 별 항목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러면 저희는 사실 동그라미 안에 작대기를 쓴 것이 단계가 다르다고 보지 않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데 부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불편하시면...

○ **김재홍 부위원장**

- 독립된 항목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부위원장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본문에 세 번째 줄에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그리고 콤마(,) 하고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조건이나 권고사항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조금 분리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첫 번째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요. 쪽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되면 '왜 또 이것만 따로 뒀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운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심사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이것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서...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그러면 문구를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심사의 기본방향의 표현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제가 아까 읽은 내용대로 심사의 기본방향 두 번째 항목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Ⅲ. 재승인 신청 안내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 안내



목 차

| | |
|-------------------------------|-----|
| I. 재승인 계획(개요) | 101 |
|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101 |
|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101 |
| 3. 재승인 여부 결정 | 102 |
| 4. 추진일정 | 102 |
| 5. 유의사항 | 103 |
| II. 재승인 심사 | 104 |
| 1. 심사 기본 방향 | 104 |
| 2. 심사절차 | 105 |
| 3. 심사위원회 구성 | 106 |
|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106 |
| III.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 107 |
|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 107 |
| 2. 작성 및 제출 요령 | 109 |
|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110 |
| IV.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111 |

I. 재승인 개요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 유효기간이 '17년 상반기에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17.3.12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 '16.9.12까지 제출
 - '17.3.31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 '16.9.30까지 제출
 - '17.4.21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 '16.10.21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등
-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문의 :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
 - 02-2110-1431, anobb@kcc.go.kr 또는 02-2110-1436, mgh1020@kcc.go.kr

3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4

추진 일정

- '16. 9. 12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17.3.12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6. 9. 30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17.3.31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6. 10. 21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17.4.21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6. 10월~12월 신청서 검토, 서류보정, 시청자 의견접수 등
 -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 '17. 1월~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2월~3월 재승인 여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고지 예정

-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Ⅱ. 재승인 심사

1 심사 기본 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2

심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시행
-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3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 구 분 | 분 야(인원) | 비 고 |
|---------------|---------------|------------------------|
| 심사위원 (13인) | 심사위원장(1)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
| | 방송·미디어 분야(3)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법 률 분 야(2) |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
| | 경제·경영·회계분야(3) |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
| | 기 술 분 야(1)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 시청자·소비자분야(3)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 및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5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사항 | 종편PP | 보도PP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10 | 260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90 | 160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80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 계 | 1,000 | 1,000 |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Ⅲ.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 · 제출 요령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승인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제출부수

<제출 부수 현황>

| 구분 | 서류 | 원본 | 사본 | CD | 비고 |
|--------------|--------------------------------------|----|----|----|-------------------|
| 최초 접수시 | 1. 신청공문 | 1 | - | - | - |
| |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1 | 2 | 1 | - |
| | 3. 부속서류 | 1 | 1 | 1 | - |
| |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2 | - |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
| 보정 후 재접수시 | 1. 신청공문 | 1 | - | - | - |
| |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1 | 18 | 2 | |
| | 3. 부속서류 | 1 | 18 | 2 | |
| |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 | - | 필요시 재제출 |
| 추후 통보시 |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1 | 18 | 2 | |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세부 제출 자료

○ 별도제출자료

-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1년, 2012년 추가 제출

○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2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 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 첨부 재승인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 까지 계획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담당자 현황
 - 이은호 사무관(02-2110-1431), 맹규호 주무관(02-2110-1436)
- ※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사항은 상기 담당자에 문의

IV.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 지침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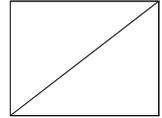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원 본

2016. 9.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 | |
|--------------------------------|-----|
| I. 재승인 신청서 | 115 |
| II. 서약서 | 118 |
| III. 신청법인 명세 | 120 |
|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127 |
| V. 승인장 사본 | 200 |
| VI. 주간기본편성표 | 201 |

I. 재승인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신청인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 최대액출자자 | | 생년월일 |
| 승인 내용 | 승인번호 | | 승인일자 |
| | 소재지 (주된 사무소) | 주소 : 전화 : | 공급분야 |
|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 | 위반횟수 | 시정조치 |
|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사업수지건적 | 역무제공내용 | 수신자 불만처리 |

「방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 |
|------|--|-----------------|
|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100,000원 |
|------|--|-----------------|

210mm×297mm[백상지(80g/㎡)]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 재승인신청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3.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Ⅱ.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 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사업계획 등이 국민과 방송통신 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9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Ⅲ. 신청법인 명세

1

개요

※ 방송사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초 승인장 교부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법인 현황

| 구분 | | 세부 내역 | | | |
|--------------|------|------------|--------|---------|-----------|
| 방송법인 명칭 | | 국문 | | | (약칭) |
| | | 영문 | | | (약칭) |
| 소재지 | |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 법인설립일자 | | 자본금(단위:억원) | | | |
| 구분 | 회사직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요약력 | 임기 |
| 법인대표자 | | | | | ... ~ ... |
| 편성책임자 | | | | | - |
|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이상 주요주주 현황 | | 주주명 | 대표이사 | 참여지분(%) | 회사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주주 관련 사항

1. 주주 현황

|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 출자비중 | |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 | | | ③ 대기업 해당 여부 (0, ×) |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0, ×) |
|-------------------------------|-------------|-------------------------------------|----------------------------------|-------------|-------------|-------------|-------------|--------|-------------------------------------|--------------------------------|-----------------------------------|---|
| | | | | 주 식 수 | 지 분 율 | 법인명 (성명) | 대 표 자 | 국 적 |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 ①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 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 ②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이상 주주에게 <6. 기타 제출사항>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를 작성토록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이상 주주사가 특수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사에 ‘특수관계자 확인서’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 5% 미만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 ③ 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 ④ 외국인지분비율(%) : 해당주주의 방송법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재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2. 주주 변동내역(재승인장 교부시점~'16.8.31.) (단위 : 백만원)

| 변경일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비고 |
|-----|------|------|-----|------|------|-----|------|----|
| | 주주명 | 출자금액 | 지분율 | 주주명 | 출자금액 |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엑셀 파일로도 별도 제출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변동 계획 |
|-----|-------|
| 주 주 | |
| 자본금 | |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1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적 및 계획

1. 공적책임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 수행실적 및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차원에서 방송 심의제재 건수 감축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것
 - 출연자 섭외 시 전문성 등 자질 검증장치, 관련규정 등
 -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 프로그램명 (분야) | 제재 조치명 | 처분일자 (위반일자) | 위반법령 | 위반내용 | 자체 조치사항 (조치일자) |
|---------------|-------------|----------------|--------------------------|-------------|---|
| 000 (보도) | 주의, 경고 등 | |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 0조제0항 | 방송언어 객관성 | 외부출연자 3명 출연정지 1개월 (2014.1.1.) |
| | 권고, 의견제시 | | | 정치적중립 | 진행자 1명 경고 및 프로그램 폐지 (2015.12.10.) |

※ 자체 조치사항 : 진행자, 제작진, 내부 출연자, 외부출연자 등 조치(법정제재 및 행정 지도 포함)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를 위한 향후계획

2. 공정성·공익성 구현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실적
- 방송언어 순화 실적
- 편성규약(제정일자, 주요내용, 공표방법·공표현황, 주요 이행사항 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관련 이행실적 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정성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청자 권익 보호 실적 및 계획

1. 시청자 참여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 이행실적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양식)

| | | | | | | |
|------------------------------|-----------------------------|-------------------|-------|------|------|----|
| ○ 운영 현황 | | | | | | |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 | | |
|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 | | | | | |
|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 | | | | | |
|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 | | | | |
|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 요구) 반영 내역 | | | | | | |
| 순번 | 제안내용 |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 제안시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요구) 중 미반영 내역 | | | | | | |
| 순번 |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 미반영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시청자 위원 명단(연도별 작성) | | | | | | |
|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이력 | 추천부문 | 추천단체 | 임기 |
| 위원장 | | | | | | |
| 부위원장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단위 : 분, %)

| 2014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15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16년 (방송시간) (분) | | 비고 |
|-------------|----|--------------|-------------|----|--------------|------------------------|----|----|
| 방송시간 (분) | | | 방송시간 (분) | | | 방송시간 (분)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 | | - |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 방송기간 | 프로그램 명 | 방송시간(분) | 비고 |
|-----------------------|--------|---------|----|
| '14. 1.1 ~ '15. 9.30 | 시청자 세상 | 60 | |
| '15. 9.31 ~ '16. 10.7 | 시청자 평가 | 60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관련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청자 불만처리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연도별 자체심의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이행실적
 - 자체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이행실적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양식)

(단위 : 건)

| 구분 | 불만접수건수 | 불만처리건수 | 미처리건수 | 불만처리비율(%) |
|-------|--------|--------|-------|-----------|
| 2014년 | | | | |
| 2015년 | | | | |
| 2016년 | | | | |
| 합계 | | | | |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 구분 | 사유 1 | 사유 2 | 사유 3 | 사유 4 | 사유 5 | 합계 |
|-------|-------|------|------|------|------|------|
| 2014년 | 건수 | | | | | |
| | 비율(%) | | | | | 100% |
| 2015년 | 건수 | | | | | |
| | 비율(%) | | | | | 100% |
| 2016년 | 건수 | | | | | |
| | 비율(%) | | | | | 100% |
| 합계 | 건수 | | | | | |
| | 비율(%) | | | | | 100% |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 구분 | 사유 1 | 사유 2 | 사유 3 | 사유 4 | 사유 5 | 합계 |
|-------|-------|------|------|------|------|------|
| 2014년 | 건수 | | | | | |
| | 비율(%) | | | | | 100% |
| 2015년 | 건수 | | | | | |
| | 비율(%) | | | | | 100% |
| 2016년 | 건수 | | | | | |
| | 비율(%) | | | | | 100% |
| 합계 | 건수 | | | | | |
| | 비율(%) | | | | | 100%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연도별 자체심의 현황(양식)

<20xx년>

| 전체방송 프로그램 편수 | 심의현황 | | | 심의 미필 건수 | 심의시기 | | | 심의결과 | |
|--------------------|--------------------|---------------------|------------|----------------|------------------------|------------------------|--------------------|----------|----------|
| | 대본심의 건수 (비율) | 제작물 심의건수 (비율) | 전체심의 건수 | | 사전심 의 건수 (비율) | 당일심 의 건수 (비율) | 사후심 의건수 (비율) | 지적 건수 | 이행 건수 |
| | | | | | | | | | |

※ 자체 심의규정과 연도별 자체심의 세부 실적(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양식)

| 연도 | 일자 ¹⁾ | 지역 ²⁾ | 유형 ³⁾ | 주관 또는 주최 단체 | 참여 내용 | 금액(백만원) ⁴⁾ | 비고 |
|-------|------------------|------------------|------------------|-------------|-------|-----------------------|----|
| 2014년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2015년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2016년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합계 |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①지역적 ②사회적 ③문화적 기여실적은 아래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

- 1)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 2) 시·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양식)

< 개요 >

(단위 : 분, %)

| 구분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방송시간 (분)) | 계 |
|-------|-------------|--------------|-------------|--------------|------------------------|---|
| | 방송시간 (분) | 전년대비 증감비율 | 방송시간 (분) |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제작 실적 | |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세부내역 >

| 프로그램명 | 방송내용 | 방송일시 | 방송시간(분) | 비고 |
|-------|------|------|---------|----|
| | | | | |
| | | | | |

※ <세부내역>의 방송시간 합과 <개요>의 방송시간은 동일해야 함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의 당초 기본방향 및 목표와의 부합 여부
-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관련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양식)

| 분야 | 2014년 | | | | 2015년 | | | | 2016년 | | | |
|----|------------------|--------------------------|----|------------|-------|------------|----|------------|-------|------------|----|------------|
| | 계획 | | 실적 | | 계획 | | 실적 | | 계획 | | 실적 | |
| | 시간 ¹⁾ | 비율 ²⁾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 보도 | | | | | | | | | | | | |
| 교양 | | | | | | | | | | | | |
| 오락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주요 제작계획 (프로그램명) | 이행실적 | | 비고 |
|--|-------|------|----|
| | 프로그램명 | 방송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편성 분야 방송실적(보도PP)

(단위 : 분)

| 구분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
|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
| 1월 | / | | / | | / | |
| 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합산 | / |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향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 분야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 시간 ¹⁾ | 비율 ²⁾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시간 | 비율 (재방) |
| 보도 | | | | | | | | | | |
| 교양 | | | | | | | | | | |
| 오락 | | | | | | | | | | |
| 총계 | | 100% (재방송) | | 100% (재방송) | | 100% (재방송) | | 100% (재방송) | | 100% (재방송) |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전문편성 분야 방송실적(보도PP)

(단위 : 분)

| 구분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
|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
| 총 방송시간 | / | | / | | / | |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
|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시간/ 전체방송시간 | 전문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
| 총 방송시간 | / | | / | |

□ 주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

| 편성일자 | 프로그램명 | 방송시간 | 기획의도 및 개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편성의 자율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2

방송프로그램 수급·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

1. 수급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급 실적(양식)

<20XX년>

| 구분 | | 재승인 시 사업계획 | | | 실적 | | |
|--------------------|----------------------|------------------|------|------------------|----|------|----|
| | | 시간 ¹⁾ | 비율 | 비용 ²⁾ | 시간 | 비율 | 비용 |
| 자체 | 순수자체제작 ³⁾ | | | | | | |
| | 공동제작 ⁴⁾ | | | | | | |
| | 소계 | | | | | | |
| 외주제작 ⁵⁾ | | | | | | | |
|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 | | | | | |
| 구매 | 국내물 구매 ⁶⁾ | | | | | | |
| | 국외물 구매 ⁷⁾ | | | | | | |
| | 소계 | | | | | | |
| 총계 | | | 100% | | | 100% | |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2014년 | | | | 2015년 | | | | 2016년 | | | |
|----------|------------------|----|----|----|-------|----|----|----|-------|----|----|----|
| | 계획 | | 실적 | | 계획 | | 실적 | | 계획 | | 실적 | |
| | 시간 ¹⁾ | 비율 | 시간 | 비율 | 시간 | 비율 | 시간 | 비율 | 시간 | 비율 | 시간 | 비율 |
| 자체 제작 | 보도 | | | | | | | | | | | |
| | 교양 | | | | | | | | | | | |
| | 오락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외주 제작 | 보도 | | | | | | | | | | | |
| | 교양 | | | | | | | | | | | |
| | 오락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구매 | 보도 | | | | | | | | | | | |
| | 교양 | | | | | | | | | | | |
| | 오락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2017년~2021년까지 연도별 제작 계획>

| 구분 | | 2017년 | | | 2018년 | | |
|------|---------------|-------|------|-------------|-------|------|-------------|
| | | 시간(분) | 비율 | 비용 (백만원) | 시간(분) | 비율 | 비용 (백만원) |
| 자체 | 순수자체제작 | | | | | | |
| | 공동제작 | | | | | | |
| | 소계 | | | | | | |
| 외주제작 | | | | | | | |
|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 | | | | | |
| 구매 | 국내물 구매 | | | | | | |
| | 국외물 구매 | | | | | | |
| | 소계 | | | | | | |
| 총계 | | | 100% | | | 100% | |

| 구분 | | 2019년 | | | 2020년 | | |
|------|---------------|-------|------|-------------|-------|------|-------------|
| | | 시간(분) | 비율 | 비용 (백만원) | 시간(분) | 비율 | 비용 (백만원) |
| 자체 | 순수자체제작 | | | | | | |
| | 공동제작 | | | | | | |
| | 소계 | | | | | | |
| 외주제작 | | | | | | | |
|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 | | | | | |
| 구매 | 국내물 구매 | | | | | | |
| | 국외물 구매 | | | | | | |
| | 소계 | | | | | | |
| 총계 | | | 100% | | | 100% | |

| 구분 | | 2021년 | | |
|------|---------------|-------|------|-------------|
| | | 시간(분) | 비율 | 비용 (백만원) |
| 자체 | 순수자체제작 | | | |
| | 공동제작 | | | |
| | 소계 | | | |
| 외주제작 | | | | |
|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 | | |
| 구매 | 국내물 구매 | | | |
| | 국외물 구매 | | | |
| | 소계 | | | |
| 총계 | | | 100% | |

| 구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 | 시간 | 비율 |
| 자체 제작 | 보도 | | | | | | | | | | |
| | 교양 | | | | | | | | | | |
| | 오락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외주 제작 | 보도 | | | | | | | | | | |
| | 교양 | | | | | | | | | | |
| | 오락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구매 | 보도 | | | | | | | | | | |
| | 교양 | | | | | | | | | | |
| | 오락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2.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

가. 재송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계획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계획

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

1. 공익성 관련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및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편성실적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캠페인 포함) 편성 실적

재난방송 편성 실적(양식)

| < 재난방송 편성 현황 > | | | | | | | | | |
|----------------|-------------|-------|--------------|-------------|-------|--------------|------------------------|-------|----|
| 구분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방송시간) (분) | | 비고 |
| | 방송시간 (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방송시간 (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계획 | 실적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 | |
| 재난방송 | (%) | (%) | % | (%) | (%) | % | (%) | (%) | |
| 전체 방송시간 | (%) | (%) | | (%) | (%) | | (%) | (%) | |

※ 2016년 재난방송 편성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 재난방송 세부 편성 실적 > | | | | |
|-------------------|------|------|---------|----|
| 프로그램명 | 방송내용 | 방송일시 | 방송시간(분) | 비고 |
| | | | |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 구분 | 연도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방송시간 (분)) | | 비고 |
|----|----|-------------|----|--------------|-------------|----|--------------|------------------------|----|----|
| | | 방송시간 (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방송시간 (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계획 | 실적 |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 | |
| 실적 | | | | - | | | | % | | |

※ 2016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 일시 | 프로그램 명 | 방송내용 | 방송시간(분) | 비고 |
|-----------|---------|----------------|---------|-------|
| '14.01.01 | 더불어 삼시다 |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 | 60 | 재방 2회 |
| | | | | |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
| 편성시간 (분) |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2.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소수시청자 그룹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권익실현 관련 이행실적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실적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이행실적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 구분 | 연도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방송시간) (분) | | 비고 |
|-------------------|----|-------------|----|--------------|-------------|----|--------------|------------------------|----|----|
| | | 방송시간 (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방송시간 (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계획 | 실적 |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 | |
| 어린이·청소년 | |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다문화가정·노약자· 외국인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016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소수 시청자 그룹 프로그램 세부 편성 내역 >

| 일시 | 구분 | 프로그램 명 | 방송내용 | 방송시간(분) | 비고 |
|----|-------------|--------|------|---------|-------|
| | 어린이· 청소년 | | | | 재방 2회 |
| | | | | | |

※ 소수시청자 그룹별(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 세부 편성내역을 기재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양식)

| 유형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방송시간) (분) | | 비고 |
|---------|-------------|-------|--------------|-------------|-------|--------------|------------------------|-------|----|
| | 방송시간 (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방송시간 (분)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계획 | 실적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 | |
| 수화방송 | (%) | (%) | % | (%) | (%) | % | (%) | (%) | |
| 자막방송 | (%) | (%) | | (%) | (%) | | (%) | (%) | |
| 화면해설방송 | (%) | (%) | | (%) | (%) | | (%) | (%) | |
| 전체 방송시간 | (%) | (%) | | (%) | (%)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어린이·청소년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
| 장애인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
| 다문화가정·노약자·외국인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
| 기타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
| 전체방송시간 | 분 (100%) | 분 (100%) | 분 (100%) | 분 (100%) | 분 (100%) |

□ 장애인 방송 편성계획

| 분야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자막방송 | 시간(분) | | | | | |
| | 비율(%) | | | | | |
| 화면해설 방송 | 시간(분) | | | | | |
| | 비율(%) | | | | | |
| 수화방송 | 시간(분) | | | | | |
| | 비율(%) | | | | | |
| 전체 방송시간 | 시간(분) | | | | | |
| | 비율(%) | | | | | |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14~'16.반기)

1.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교육훈련 실적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고용현황', '직원 교육투자 현황', '직원 교육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고용 현황(양식)

○ 개요

(단위 : 명)

| 구분 | 재승인 시점 |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정규직 | | | | | | | | |
| 계약직 | | | | | | | | |
| 계 | | | | | | | | |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직급별 인력 고용 현황('16.8.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 임원 | 정규직 | | | | | 소계 | 계약직 | | | | | 소계 | 합계 |
|-------|----|-----|--|--|--|--|----|-----|--|--|--|--|----|----|
| | | | | | | | | | | | | | | |
| 인원 | 정원 | | | | | | | | | | | | | |
| | 현원 | | | | | | | | | | | | | |
| 인건비총액 | | | | | | | | | | | | | | |
| 인건비평균 | | | | | | | | | | | | | | |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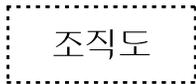
○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16. 8.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 임원 | 방송직 | | | | | | 관리행정 | 연구직 | 광고영업홍보 | 기타 | 소계 |
|-----|----|-----|----|------|------|------|----|------|-----|--------|----|----|
| | | 기자 | PD | 아나운서 | 방송기술 | 기타방송 | 소계 | | | | | |
| 정규직 | | | | | | | | | | | | |
| 계약직 | | | | | | | | | | | | |
| 파견직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기타 등으로 구분

※ 내부 조직도(2016.8.31. 기준)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 직원 교육 투자 현황(양식)

(단위 : 백만원)

| 연도 \ 유형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 | 계 | |
|---------|-------|----|--------------|-------|----|--------------|-------|----|----|----|
| | 금액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 금액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국내전문교육 | | | % | | | % | | | | |
| 국내교양교육 | | | | | | | | | | |
| 해외교육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양식)

(단위 : 백만원)

| 기간 | 교육유형 | 교육내용 | 방법 |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향후 인력 수급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향후 인력 수급계획(양식)**

| 구분 | | '17년 말 | '18년 말 | '19년 말 | '20년 말 | '21년 말 |
|-----|----|--------|--------|--------|--------|--------|
| 정규직 | 신규 | | | | | |
| | 경력 | 자체 | | | | |
| | | 외부 | | | | |
| 계약직 | | | | | | |
| 계 | | | | | | |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가.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기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이행실적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계획 기본 전략 및 방향 관련
- 향후 5년간 시장전망
-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

4.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및 향후전략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5. 자금조달 및 운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
- 자금 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6. 사업성 분석

- 향후 5년간('17~'21년)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정 재무제표(아래 양식 참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추정근거 제시) 사업성을 분석
- 추정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 방법에 의한 순현재 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 명시

□ 추정재무제표(양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요약 재무상태 표 | 자산총계 | | | | | |
| | 유동자산 | | | | | |
| | 비유동자산 | | | | | |
| | 부채총계 | | | | | |
| | 유동부채 |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 | 자본총계 | | | | | |
| | 자본금 | | | | | |
| | 자본잉여금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이익잉여금 | | | | | | |
| 자본조정 | | | | | | |
| 요약 손익계산 서 | 매출액 | | | | | |
| | 방송사업매출액 | | | | | |
| | 기타사업매출액 | | | | | |
| | 매출원가 | | | | | |
| | 방송프로그램비용 | | | | | |
| | 기타 매출원가 | | | | | |
| | 매출총이익 | | | | | |
| | 판매비와관리비 | | | | | |
| | 인건비 | | | | | |
| | 기타 판관비 | | | | | |
| 영업손익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재무 비율 | 유동비율(%) | | | | | |
| | 부채비율(%) | | | | | |
| | 자기자본이익률(%) | | | | | |
| | 매출액영업이익률(%) | | | | | |
| | 총자본회전율(%) | | | | | |
| | 매출액증가율(%) | | | | | |
| | 총자산증가율(%) | | | | | |

※ 엑셀 파일 별도 제출

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14~'16.반기)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1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 | 201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 | 2016년 반기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요약 재무상태표 | 자산총계 | | | | | | |
| | 유동자산 | | | | | | |
| | 비유동자산 | | | | | | |
| | 부채총계 | | | | | | |
| | 유동부채 | |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
| | 자본총계 | | | | | | |
| | 자본금 | | | | | | |
| | 자본잉여금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이익잉여금 | | | | | | | |
| 자본조정 | | | | | | | |
| 요약 손익계산서 | 매출액 | | | | | | |
| | 방송사업매출액 | | | | | | |
| | 기타사업매출액 | | | | | | |
| | 매출원가 | | | | | | |
| | 매출총이익 | | | | | | |
| | 판매비와관리비 | | | | | | |
| | 인건비 | | | | | | |
| | 영업손익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 재무비율 | 유동비율(%) | | | | | | |
| | 부채비율(%) | | | | | | |
| | 자기자본이익률(%) | | | | | | |
| | 매출액영업이익률(%) | | | | | | |
| | 총자본회전율(%) | | | | | | |
| | 매출액증가율(%) | | | | | | |
| | 총자산증가율(%)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아래 제출자료 포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화일 별도 제출
- 2013,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최근 3년간(2013, 2014, 2015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

2.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반기 | | | 계 | |
|----------------|-------|----|-------------|-------|----|-------------|----------|----|-------------|----|----|
| | 금액 | |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금액 | |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금액 | |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금액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 | | | % | | | % | | |
| 광고 매출액 | | | % | | | % | | | % | | |
| 협찬 매출액 | | | % | | | % | | | % |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 | | | % | | | % |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 | | | | | | | |
| 행사 매출액 | | | | | | | | | |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 | | | % | | | % | | |
| 기타사업매출액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함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상기 항목별 세부 매출액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반기 | | | 계 | |
|----------|-------|----|-------------|-------|----|-------------|----------|----|-------------|----|----|
| | 금액 | |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금액 | |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금액 | |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금액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예)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국내·외 등으로 구분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3.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
|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 | % | | % |
| 광고 매출액 | | % | | % | | % |
| 협찬 매출액 | | % | | % | |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 | % | |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 | % | | % |
| 행사 매출액 | | % | | % | |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 | % | | % |
| 기타사업매출액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구분 \ 연도 | 2020년 | | 2021년 | | 계 |
|-------------------|-------|--------------|-------|--------------|---|
|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 | % | |
| 광고 매출액 | | % | | % | |
| 협찬 매출액 | | % | | %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 | %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 | % | |
| 행사 매출액 | | % | | %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 | % | |
| 기타사업매출액 | | % | | % | |
| 총 계 | | % | | % | |

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상기 항목별 세부 예상수입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
|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구분 \ 연도 | 2020년 | | 2021년 | | 계 |
|---------|-------|--------------|-------|--------------|---|
|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

1. 방송시설설치 운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실적', '국산장비 도입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제작 시설 | | | | | | |
| 송출 시설 | | | | | | |
| 기타 시설 | | | | | | |
| 계 | | | | | | |

※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로 제출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 국산 방송장비 도입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제작 시설 | | | | | | |
| 송출 시설 | | | | | | |
| 기타 시설 | | | | | | |
| 계 | | |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 '국산장비 도입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계획(아래)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
| 제작 시설 | | | | | | |
| 송출 시설 | | | | | | |
| 기타 시설 | | | | | | |
| 계 | | | | | | |

□ 국산장비 도입 계획(양식)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
| 제작 시설 | | | | | | |
| 송출 시설 | | | | | | |
| 기타 시설 | | | | | | |
| 계 | | | | | | |

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송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관련 이행실적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이행실적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이행실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 | | 계 | |
|-------------|-------|----|--------------|-------|----|--------------|-------|----|--------------|----|----|
| | 금액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 전년대비 증감비율 | 금액 | |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연구개발 총투자 | | | % | | | % | | | % | | |

※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2016년도 실적은 8.31일 기준으로 작성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간 | 연구분야 | 연구내용 | 방법 |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발전 기여 계획
 - 방송장비 산업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
 - 방송인력 양성계획

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향후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이행실적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향후 계획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관련 향후 계획

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현황

- ※ '16.8.31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 방송법 위반 현황은 심의제재,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의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할 것

방송법 위반 현황(2014.1.1 ~ 2016. 8. 31.)

| 위반일자 | 위반법령 | 위반내용 |
|------|------|------|
| | | |
|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방송법 위반사례
- ※ (예시) 법인의 방송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 현황(2014.1.1. ~ 2016. 8. 31.)

| 위반일자 | 위반법령 | 위반내용 |
|------|------|------|
| | | |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례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심의제재 현황(2014.1.1. ~ 2016. 8. 31.)

| 프로그램명 | 제재 조치명 | 처분일자 (위반일자) | 위반법령 | 위반내용 | 비 고 |
|-------|-------------|----------------|------------------------|------|-----|
| | 주의, 경고 등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0조제0항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기타 행정처분 현황(2014.1.1. ~ 2016. 8. 31.)

| 행정처분명 | 처분일자 (위반일자) | 위반법령 | 위반내용 | 행정처분 내용 | 비고 |
|-------|----------------|------|------|---------|----|
| 과태료 | | | | | |
| 과징금 | | | | |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현황

※ '16.8.31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시정명령(불이행) 등 현황(2014.1.1. ~ 2016. 8. 31.)

| 행정처분명 | 처분일자 (위반일자) | 위반법령 | 위반내용 | 시정조치 내용 | 비 고 |
|--------|----------------|------|------|---------|-------------|
| 시정명령 | | | | 불이행 | 재승인조건 위반 |
| 업무정지 등 | | | | | 시정명령 불이행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 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4**[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 o 사업자별로 <붙임-참고> 항목별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자료작성은 요약, 본문, 별첨 자료로 구성·작성 (필요시 요약·본문·별첨을 묶어서
부속서류로 별도 제출)

1. 재승인 조건**가. 요약**

| 재승인 조건(요약) | 주요 이행실적(요약) |
|------------|-------------|
| | |

나. 본문 (재승인 조건 내용 및 이행실적)

< 재승인 조건 >

<이행실적>

다. 별첨(증빙자료 등)

2. 권고사항

가. 요약

| 권고사항(요약) | 주요 이행실적(요약) |
|----------|-------------|
| | |

나. 본문

< 권고사항 >

< 이행실적 >

다. 별첨(증빙자료 등)

<붙임-참고>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방통위는 '14년도에 종편PP 4사(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

| 구 분 | 내 용 |
|-------------|--|
| 재승인 조건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 권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PP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

□ 보도전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방통위는 '12년 및 '14년도에 보도전문PP(YTN,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

| 구 분 | | 내 용 |
|--------------------|-----------|--|
| (주)와이 티엔 | 재승인 조건 | ○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내역과 처리결과 등을 반기별로 제출할 것 |
| | 권고 사항 | ○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직원 교육 훈련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당 60분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것 |
| (주)연합 뉴스 티브이 | 재승인 조건 |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 | 권고 사항 | ○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

5. 기타 제출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1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공표 자료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양식)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명시 |
|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
|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
|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
|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 |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주식회사oooo가 2017년 0월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 가운데 본인과 방송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출자비중 | |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
|------------------|-----|---------------------|------------|------------|----------------------|
| | | | 주식수 (주) | 지분율 (%) | |
| 본 법인명 | | | | | 본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또한, 본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 기간 동안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 중 본인(법인)과 채무보증 관계에 있던 자의 명단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단위 : 백만원)

| 연월일(보증기간) | 보증인 | 피보증인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9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 첨부 : 1. 주주현황(2016.8.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2016.5.27.>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5.27.>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주주현황

(2016.8.31 기준)

|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출자비중 | |
|------------------|-----|---------------------|--------|--------|
| | | | 주식수(주) |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100% |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2014.1.1.~'16.8.31.)

1. 대표자 변경 현황

| 성명 | 재 직 기 간 | 주요약력 | 비고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대표이사가 2인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 성명 | 재 직 기 간 | 주요약력 | 비고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이전 재승인 부터 2016년 8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3.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 성명 (직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등록자성명 및 관계 | 비고 |
|---------------|--------|-------|--|---------------|----|
| 성명 (대표자) | | 등록기준지 | | | |
| | | 현주소 | | | |
| 성명 (편성책임자) | | 등록기준지 | | | |
| | | 현주소 | | | |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 편성책임자 | 공표방법 | 공표일시 | 횟수(회) |
|-------|------|------|-------|
| | | | |

4

협찬 운영 현황('14.1.1.~'16.8.31.)

1. 협찬 운영 방향

2. 협찬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7월 |
|------------|-------|-------|----------|
|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 | (%) |
| 캠페인 협찬 | (%) | (%) | (%) |
| 행사 협찬 | (%) | (%) | (%) |
| 시상품 협찬 | (%) | (%) | (%) |
| 기타 협찬 | (%) | (%) | (%) |
| 협찬수입 총계 | (%) | (%) | (%) |
| 전체매출액 | |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1. 개요(2014.1.1. ~ 2016.8.31)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2. 주요 내용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6

관계회사 현황

□ 관계회사 현황(2016.8.31. 기준)

(단위 : 천원)

| 법인명 | 관계 ¹⁾ | 주요사업 | 지분율 (%) | 콘텐츠 등 거래금액 | | | 비고 |
|-----|------------------|------|------------|------------|-------|-------|----|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청 법인 기준으로 지배회사는 '지배', 종속회사는 '종속'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는 '계열'로 표기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7

특수관계자 방송사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1. 특수관계자 방송사 현황(2016.8.31기준)

| 특수관계자명 |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채널명) | 유형 | 특수관계내용 | 관련 법령 |
|--------|--------------------------|----|--------|--------------------|
| | | PP | 계열회사 | 방송법시행령 3조1항0목0호 |
| | | | 30% 출자 | |
| | | | 30% 출자 | |
| | | | 계열회사 | |
| | | | 계열회사 | |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16.8.31. 기준)

|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사업자명(채널명) | 유형 | 출자금액 (단위:천원) | 지분율 (%) |
|-----------------|-----------------------------|-----|-----------------|------------|
| | | 지상파 | | |
| | | | | |
| | | | | |

8 각종 수상 실적

| 순번 | 수상년월일 | 수상자(소속) | 프로그램명 | 수상제목 | 수여기관 | 수상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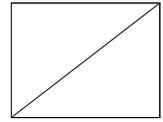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

V. 승인장 사본

VI. 주간기본편성표

- 재승인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2016년 8월 31일 기준, A4 용지 규격

재승인신청서 ②



부속서류

원 본

2016. 9.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 | |
|---|---|
| 1. 법인등기부 등본 | 0 |
|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0 |
| 3. 편성규약 전문 | 0 |
| 4. 자체심의 실적 | 0 |
| 5. 자체심의 규정 | 0 |
| 6. 재무상태표(2013년,2014년,2015년) | 0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1년, 2012년 추가 제출 | |
| 7. 손익계산서(2013년,2014년,2015년) | 0 |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1년, 2012년 추가 제출 | |
| 8. 기타 | 0 |

별도 제출 자료

1.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2부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1년, 2012년 추가 제출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포함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IV. 시청자 의견청취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17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구분 | 법인명 | 채널명 | 대표자 | 유효기간 만료일 |
|------|------------|--------|------------|--------------|
| 종합편성 | (주)조선방송 | TV조선 | 변용식 | 2017년 3월 31일 |
| | (주)제이티비씨 | JTBC | 김수길 홍정도 | 2017년 3월 31일 |
| | (주)채널에이 | 채널A | 김재호 임채청 | 2017년 4월 21일 |
| 보도전문 | (주)와이티엔 | YTN | 조준희 | 2017년 3월 12일 |
| | (주)연합뉴스티브이 | 연합뉴스TV | 박노황 | 2017년 3월 31일 |

2. 의견 접수 기간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1월 4일(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5개사 (TV조선, JTBC,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수급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문화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 '17.1.4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cc.go.kr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끝.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주)조선방송(TV조선)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1)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변용식 • 주요경력 : ○○○, ○○○ 2) 편성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권오형 • 주요경력 : ○○○, ○○○ 3) 자 본 금 : 납입자본금 ○억 원 4) 주요주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 (주)조선일보사 • 주요주주 : Too Capital,LLC, (주)대한항공, (주)부영주택 |
|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1) 2014년 재승인시 사업계획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소재와 형식, 진행을 보여주는 창의적 프로그램 편성 • 장애인 방송 확대와 장애인 위한 웹사이트 개선 • 자체 심의규정 개정으로 내부 징계기준 명확화 • 심의실 주최 제작진 간담회, 집체 교육 등으로 심의이슈 공유 및 방송의 품위 유지·공정성 등 교육 • 시청자 의견 제작진에 전달하는 사내 공유 프로세스 신속성과 효율성 증가 • 지역행사의 방송콘텐츠화 및 문화소외 지역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2)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 편성, 글로벌 포럼 개최 등 • 시사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감시기구 내실화 • 출연자 사전 검증장치인 <출연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섭외 시 사용토록 제작진과 정보 공유 • 새로운 디바이스 출현에 따른 시청자 불만 접수 창구 다변화 노력 •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강화 및 방송 및 문화행사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취향의 공유와 확산 |
|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 2014년 재승인시 사업계획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9단의만물상>, <내몸사용설명서>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편성 • <영상천하>, <로스타임 라이프> 등 실험성과 독창성 기반 창의적 프로그램 편성 |

| 구분 | 주요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제작시스템’ 운용으로 편성의 자율성 제고 ● 교양, 오락장르 특화 외주제작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계약 및 제작 유도 ● 데이터 방송, 인터넷, SNS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한 재난 정보 제공 시스템 정비 ● 지난 3년 평균 ○% 공익프로그램 편성 <p>2)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충성도 높은 중장년층을 기반으로 젊은층 확보에 주력, 프라임 타임 오락, 인포테인먼트 강화 ● 고품격,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삶의 질 제고 ● <편성규약> 준수 관련 지속적 교육을 통해 편성권독립 및 자율성에 대한 전사적 마인드 고취 ● 문체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TV조선 외주제작 계약서 수정 보완 ● 재난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스포츠 제작 ● 매월 의무편성비율 상회하는 공익광고 편성 예정 |
|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p>1) 2014년 재승인시 사업계획 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사원 핵심역량 강화 ● 이사회 중심의 경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 메인뉴스를 포함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률 유료채널 전체 1위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해외판매 ● 종편채널 중 유일하게 2015년 영업이익 흑자(○억원), 당기 손익 ○억원 등 안정적인 경영실적 달성 ●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제작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자체 제작 시설 구축, UHD TV 편집 시설 구축 <p>2)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및 상시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의사결정체제 지속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작시스템 구축 ● 콘텐츠 퀄리티 향상을 통해 품격 있는 채널로서의 신뢰성 제고 ● 프로그램 판매확대를 위한 기반 지속적 강화 ● 향후 5년간 연평균 ○%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 흑자 유지 ● 재무차입기조 유지 및 풍부한 유동성 확보로 향후 투자재원 마련 ● 시스템의 리뉴얼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 ● 다양한 교육을 통한 방송 전문기술 확보 |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 <p>1) 2014년 재승인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스크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방송기술 연구 개발을 통한 유관산업 활성화 ●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홍보지원, PP와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 관련 사업자와 상생 협력 ● 펀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투자(○억원) 및 외주제작 비중 확대를 통한 제작시장 활성화 <p>2) 향후 5년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시스템 고도화 및 대응능력 향상 (UHD장비투자, 방송전문인력 양성 등) ● 유료방송시장 가치증대를 위한 사업자간 협력, 모바일,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 및 외연 확대 ● 콘텐츠 펀드 지속운용 및 스토리 및 포맷개발 지원 등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사회환원 및 기여활동 |

□ (주)제이티비씨(JTBC)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Co.Ltd) · 납입 자본금 ○억 원 ·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길 대표이사 - 홍정도 대표이사 - 편성책임자: 조인원 전무 · 주주 구성: (유)중앙미디어네트워크 등 ○개사 |
|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p>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p> <p><이행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보도 기조 유지 및 시청자 접근성 보장 · 개국 이후 드라마 제작에 ○여 억 원 투자 · 6단계 공정 보도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성 객관성 강화 · <스포츠라이트> 등 탐사 프로그램 강화로 보도 심층성 구현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한국 선진 비전 제시를 위한 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 · 부적절 출연자 걸러내기 위한 출연자 관리 위원회 신설 · 시청자의 뉴스 만족도 조사 신설 운영 · JTBC 아나운싱 교육 강화 등 내부 방송 언어 순화 노력 <p>2. 시청자 권익 보호</p> <p><이행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층 의견 반영 위한 청년 의회 운영 · 시청자 상담실 권한 및 위상 강화 · 시청자 불만 최소화 연중 무휴 시청자 상담실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시청자 의견 청취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구성 · 프로그램별 장르별 전담 시청자 상담원 운영 · 방송 언어 순화를 위한 내부 교육 실시 <p>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p> <p><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회공헌센터 발족해 ○여 개 사회봉사 활동 전개 · 찾아가는 JTBC, 지역에 봉사하는 JTBC · 기부금 사회 환원 매년 ○% 이상 확대 |

| | |
|---|--|
| |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 문화 프로그램 평균 6% 편성 · JTBC 열린 강단 등 지역 사회 위한 사회 공헌 확대 · 위스타트 운동 등 통합 사회 공헌센터 4대 핵심 기여 강화 · 직접 고용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적극 창출 |
| <p>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p> | <p>1.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p> <p><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균형, 조화로운 편성 · 사실 공정성 신뢰성 중심의 보도 · 조직적 차원의 편성의 독립성 확보 · 외부 인사 참여하는 공정정보위원회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균형 편성, 2021년 본방송 0% 달성 · 10대 기획 보도 통한 신뢰 한국 · 즐거움을 주는 오락 프로그램 · 선정성·폭력성 지양하는 드라마 제작 · 프로그램 제작에 편성위원회 의견 반영 <p>2. 방송 프로그램 수급, 제작, 협력</p> <p><이행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16년 총 제작비 0억 원 투자 · 심층성과 현장성 강화하는 보도 · 외주 편성존 확대, 명품 다큐멘터리 구매 · 0여 편의 콘텐츠 해외 수출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21년까지 0억 원 콘텐츠 제작비 투자 · 심층 보도, 기획보도 확대로 공적책임 구현 · 시청자 참여형 교양 프로그램 제작 · 5년 간 드라마 0개 타이틀 0편 이상 제작 · 자연, 지역 등 다큐멘터리 교양물 구매 · 오전, 오후, 프라임 시간대 외주존 설정 · 저작권 보호 센터 통해 저작권 보호 노력 · 정부의 표준 제작서 준용해 외주사 상생 <p>3. 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실적</p> <p><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0분 이상 재난 방송편성 · 전체 방송 시간의 평균 0%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 편성 ·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 등급제 확대 · 장애인 폐쇄 자막 0% 실시 |

| | |
|-------------------|--|
| |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CCTV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전체 방송 시장의 ○%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편성 · 여성 방송 언어 전문 시청자 평가위원 선임 · 노인 장애인 지원 관련 프로그램 다수 편성 · 안전 나눔 등 사회발전 기여 캠페인 기획 |
|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p>1. 경영 투자 관련</p> <p><이행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강화하는 유연한 조직 운영 · ○명 이상 직간접 고용 통한 방송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책임 경영과 전문경영 강화 · 계열사 간 회계, 재무 거래 분리 · 채널 인지도 향상 위해 ○여 억 원 투자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상시 인력 이동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전문 채용 · 직접 고용 5년 간 ○명 이상 유지 · 방송 언어 교육 순화 체계화 ·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위한 토대 마련 · 해외 메이저 제작사와 콘텐츠 지속 개발 <p>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p> <p><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평균 ○% 이상 광고 매출 성장 · 콘텐츠 공급 단가 지속 향상 통한 콘텐츠 가치 상승 · 해외 매출 다각화 및 포맷 수출 활발 · 원가 효율화 통해 수익성 증대 · 지속적 제작 투자 위해 ○억 원 자금 확보 <p><향후 계획></p> <p>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광고 매출 지속 상승 콘텐츠 판매 확대,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수익 다변화 조화로운 편성 등을 위한 충분한 제작 자금 확보</p> <p>3. 방송 기술 등 관련 투자</p> <p><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방송 안정화, 목표 대피 ○% 넘는 방송 투자 · 목표 대비 ○% 초과한 방송 장비 투자 실적 · 가상망 등 망분리로 방송 보안 강화 · 친환경 LED 조명 등 뉴스 제작 스튜디오 선진화 · 장애인 시청 시스템 완비로 소수 시청자 배려 |

| | |
|--|---|
| |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개 대형 스튜디오 구성된 JTBC일산 제작센터 · 보도 교양에 최적화된 JTBC 신사옥 구축 · 연간 0억 원 규모 국산 방송 장비 지속 구매 · 친환경 LED스튜디오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진행 · UHD드라마 및 교양 프로그램 제작 확대 · 사건 현장 팩트 보도로 현장성 보도 강화 |
| <p>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p> | <p>1. 방송 산업 발전과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p> <p><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수화 방송, 신규 플랫폼 진출 · 사업 계획 0% 초과 장비 투자 · 미래 방송 인력 육성 등 융합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 강화 · OTT 등 미래형 방송 서비스 시장 적극 진출 · 콘텐츠 제작에 매년 0억 이상 투자 <p>2.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현황</p> <p><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위반 사항 없음 · 심의 제재 현황 4장 상세 서술 |

□ (주)채널에이(채널A)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p>신청법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대표자: 김재호, 임채청 편성책임자: 천광암</p> |
|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p>가. 공적책임</p> <p>-채널에이는 ‘열린 방송’ ‘따뜻한 방송’ ‘올바른 방송’ ‘착한 방송’이라는 기본 이념 바탕으로 방송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채널에이는 ‘소통·일자리·통일·문화융성’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김신혁 군의 탈북 과정과 한국 정착 과정을 담은 <특별취재 탈북>은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먹거리 X파일>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에 기여했고 <서민갑부>, <한번 더 해피엔딩>과 같은 휴먼다큐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p> <p>-채널에이는 보도 분야에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269회)를 수상하는 등 권력감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건을 단독 보도하는 등 수많은 특종을 터뜨리며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에 앞장섰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5년간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방송의 품격 향상 △다양성 제고 △공정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겠습니다.</p> <p>나. 공정성 및 공익성</p> <p>-채널에이는 2014년부터 ‘출연자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생방송 출연자의 막말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출연자 사전인터뷰제 시행 △사실검증 데스크 운영 △공정보도 모니터링 강화 △구성원 공정보도 교육 시행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품격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심의 관련 기구 및 회의체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보·막말·편파방송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p> <p>다. 시청자 권익보호</p> <p>-채널에이는 시청자와 제작진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거나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시청자 의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또 심의실 및 시청자 모니터 인원을 확충해 심의기능을 강화하려 노력했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고충처리인을 증원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여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p> |

| 구분 | 주요 내용 |
|---|---|
| | <p>라.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p> <p>-채널에이는 △소수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통일 △소통과 통합 △생활안전 △지역관련 보도 △각종 콘서트와 공연·전시 등을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해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힘써왔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다양한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국격(國格)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p> |
| <p>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p> | <p>가.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p> <p>-채널에이는 종편 최장수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200회 넘게 방영하며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자수성가한 서민들의 삶을 통해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알리는 <서민갑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습니다.</p> <p>-채널에이는 2016년 <오늘부터 대학생> <아빠본색> 등 젊은 감각의 예능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콘텐츠 폭을 넓혀 왔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5년간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양·오락 프로그램 제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 함께 고품격 다큐멘터리 등을 편성해 품격 있는 방송사로 거듭나겠습니다.</p> <p>나. 수급·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p> <p>-채널에이는 지난 3년간 외주제작 비율을 확대해오며 선진적인 외주 제작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외주제작 관련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관행을 마련해 방송사와 외주사 간에 상생 구조를 만들고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구축했습니다.</p> <p>-채널에이는 중국 방송사와 공동으로 <젠틀맨> <맛탐한국> 등을 제작하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또 '넷플릭스' 등 글로벌 채널을 통해 채널에이 콘텐츠를 전 세계로 송출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p> <p>-채널에이는 외주제작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주기적 간담회 개최,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방송 산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힘쓰겠습니다.</p> <p>다.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계획</p> <p>-채널에이는 재난·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표로 재난정보표출시스템을 운용해왔으며 신속한 보도를 위해 취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TF팀을 상시 운영해 왔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5년간 공익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겠습니다.</p> |
| <p>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p> | <p>가. 경영효율성 및 사업추진</p> <p>-채널에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p> |

| 구분 | 주요 내용 |
|--|--|
| | <p>했습니다. 이를 위해 채널에이는 △방송 서비스 품질 강화 △우수 인력 확보 △매출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5년간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콘텐츠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외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권익 보호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p> <p>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p> <p>-채널에이는 효율적으로 재무비율을 관리하고 매출 다변화를 통해 2015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5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적재적소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재무전략을 펼치겠습니다.</p> <p>다. 방송기술 투자</p> <p>-채널에이는 서울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를 건립해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청자를 위한 고품격 콘텐츠 제작을 늘려 만족도 제고에 힘써왔습니다.</p> <p>-채널에이는 기존 제작 시설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방송 시스템 구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p> |
|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p>가. 방송 산업 발전</p> <p>-채널에이는 △콘텐츠 투자 확대 △편성 다양화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통해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p> <p>-채널에이는 향후 5년간 △고품격 콘텐츠 생산 △새로운 방송·콘텐츠 사업모델 개발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로 방송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또 국내 방송 장비업계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국산 장비 구매와 방송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할 것입니다</p> <p>나.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p> <p>-채널에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을 위해 △콘텐츠 유통 플랫폼 확대 △한류 콘텐츠 확산 △다양한 방송시장 사업자들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했습니다.</p> <p>-향후 5년간 △고품격 킬러 콘텐츠 제작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 △시장 참여자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p> <p>다. 콘텐츠 산업 육성</p> <p>-채널에이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속적인 방송 인력 채용을 통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p> <p>-향후 5년간 채널에이는 △독창적 콘텐츠 개발 △자체제작 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p> |

□ (주)와이티엔(YTN)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편성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조준희 - 주요경력 : ○○○ • 자본금 : ○억원 • 주주구성 : 한전KDN(주) / (주)한국인삼공사 미래에셋생명보험 / 한국마사회 / (주)우리은행 |
|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윤리강령 준수, 편성·제작·보도의 독립 이행 -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선정 : 9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 공정방송위원회 충실한 개최와 의견 적극 반영 - 엄격한 자체 선정 심사를 거친 객원해설위원 제도 운영. YTN에만 출연 서약 뒤 위촉, 방송 공정성 및 일관성, 품격 확보 - 매년 YTN 어젠다 선정, 지향할 사회 가치 지속적인 캠페인 방송,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사회통합 기여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플랫폼 채널 번호 24번으로 통일, 시청자 접근성 강화 - 모바일시장 확대 등 스마트 환경에 맞춘 서비스 강화, 페이스북 PIS 지수 주요 언론사 중 1위 - YTN 시청자통합제보시스템 구축, 생생한 시청자 제보화면 및 의견, 신속한 방송 반영 시스템 마련 -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재난 방송으로 국민안전 기여 - 선거방송준칙 준수, 공정한 선거방송, 비용 대비 정확도가 떨어지는 출구조사 대신 스토리 중심 '기획 선거여론 조사' 실시 - 지속적인 방송언어 순화 교육 실시 - 심의팀 모니터요원 일일 방송평가 매일 사내 메일센터 고지, 사고 방지 및 뉴스 신뢰도 제고 - 시청자위원회 매달 개최, 의견 청취 및 시정 요구 즉각 반영,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주 60분 편성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셀카봉' 뉴스 등 신규 방송 포맷 개발 - 심의팀, 시청자센터로 확대 개편 및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시청자 불만 처리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등 사후 검증, 시스템 강화, 방송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 - 흥미보다는 신속,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 개표방송 추구, 신기술 접목 선거방송 업그레이드 지속 추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품격 있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편성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0만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24시간 위성방송 지속 실시, '한국의窓' 역할 수행 |
| <p>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편성비율(보도·시사) 5개년 평균 0% 이행 - 종합뉴스는 물론 경제 등 분야별 특화 뉴스 편성, 다양한 시청자 알권리 충족 - 국민신문고, 시사탕탕 등 국민 여론 수렴 및 제도 개선 프로그램 편성, 불합리한 사회관행 개선 기여 - '강소기업이 힘이다', '쏙쏙 경제' 등 편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재미있는 역사이야기, 원포인트 생활상식, 재미있는 낱말풀이 등 유익하고 품격 있는 생활정보 제공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해외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해외 안전여행 정보' 편성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국민 알권리 충족 및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 전문편성 비율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편성해 정보의 다양성 구현 - 편성 규약 준수를 통한 방송 공정성 확립 및 공정방송위원회 활동 활성화 - 공정성을 요구하는 심층,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100% 자체 제작 목표 - 교양프로그램 외주제작 확대로 방송 산업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기여 - 외주제작비 매월 현금 지급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
| <p>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암동 신사옥 이전 뒤 적자폭 감소 경영수지 개선 - 차입 최소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 취재력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인력 채용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여 - 상암동 신사옥 방송시설 이전 - 위성 뉴스 중계 시스템(SNG) 설치, 마이크로웨이브 및 전용 회선 중계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방송 중계 - 지진 자동자막 송출 시스템 구축 - 자체 선거방송 집계 분석·그래픽 표출시스템 개발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률 향상과 매출 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 2017년 이후 흑자경영 전환 - 상암동 신사옥 및 서울타워 임대수익 증대 노력, 교육할인 스토어와 기업복지물 등 사업 수익 창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정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차세대 이동통신 중계 및 UHD 수신 시스템 구축 |
| <p>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 스마트 수화방송 실험방송 및 위탁연구사업 수행, 청각장애인 방송 접근권 강화 - 성실한 방송발전기금 납부 -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확대 • 향후 5년간 계획 -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방송 및 본방송 돌입 - 방송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철저 준수 준법방송 |

□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채널명 : 연합뉴스TV) ○ 대표자 : 박노황, 편성책임자 : 김영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 법인설립일자 : 2011.3.15, 개국일자 : 2011.12.1 |
|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p><연합뉴스TV 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 사회 전반에 대한 견제·감시하며 불편부당한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 특히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단독 보도는 해외까지 타전. 한국기자협회 및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 <p><공정보도, 방송품질 제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시 전문성, 신뢰성 등 자질 검토. 제작진들에게 심의제재 사례 공유, 교육 등을 통해 문제 발언 사전 방지, 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해 노력 ○ 노사 동수의 공정보도위원회 외에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심의실, 시청자센터, SNS 등 다양한 장치 마련, 공정 보도 수행에 힘쓰고 있음 <p><공익적 프로그램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해·재난 사고 발생 시 뉴스특보(재난방송) 비상편성 체제 항시 유지. 자동자막송출시스템 재난방송 실시. 재난방송 사전예방 캠페인물 편성 확대 ○ 우리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빠르고 정확한 ‘국제뉴스’, 전국 지역본부에서 취재는 ‘지역특화뉴스’, 남북 분단의 현실을 조망하는 ‘북한전문데일리뉴스’ 편성 ○ ‘생생 네트워크’, ‘생생네트워크 플러스’ 등 제작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백년의 혼, 대를 잇는 사람들’, ‘세계문화유산 탐방기’ 등 문화보전 등 프로그램 편성 ○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등 주 2회 편성 ○ 2014년 6.4 지방선거 투·개표 상황 31시간,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상황 24시간 생방송 진행 <p><정보·사회소외계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시청권 보장 확대. 장애인 폐쇄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 시행(전체방송시간 대비 ○%) ○ 농아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사 화면 비율 확대 최초 시행(2배 이상 크기) ○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국내외 4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휴먼 다큐멘터리 ‘하모니’, ‘다문화 봉사단 베트남을 가다’, ‘새마을 한류’, ‘다문화 월드컵’ 등 편성 <p><방송산업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의 ‘자체 예보 생산이 가능한 방송사’로 ‘기상예보사’ 방송사 최초 도입 및 운영. 자체 생산한 예보를 예보관이 직접 방송하는 시스템 구축 ○ 개국 이후 ‘TVU, LiveU 백팩’ 적극 도입으로 국내 영상뉴스 발전 기여 ○ 한국직업방송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여. 고용시장 활성화, 취업난 해소,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 해외한인방송인, 재외동포언론인, 정부 부처별 공보실 담당자, 초청 방한 |

| | |
|--|--|
| | <p>기자단, 대학교 학부생 등 연합뉴스TV 스튜디오 등 견학 및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 고용 및 산학협력 통한 직무훈련 및 방송인력 양성 <p><뉴스접근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태블릿PC, PC 등 멀티플랫폼 송출을 통한 정보소외계층 등에 뉴스 접근권 확대. 주요 N스크린에도 송출 중. 연합뉴스TV App 및 반응형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론칭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확대. 시청자 전용 제보 창구 강화 ○ 서울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KTX, 공항철도, 공항, 정부기관, 공항·역사, 병원, 해외공관 등에 채널 및 VOD 뉴스 서비스 제공하며 뉴스 접근권 확대 ○ 북미, 뉴질랜드 등 해외 방송사와 콘텐츠 제공계약을 맺고 채널 송출 서비스 중 <p><공익적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경제포럼, 나라사랑콘서트, 개국 음악회, 전국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세계해양포럼, OANA 이사회 행사, 사랑정원예술제, 한미대학혁신대회, 청소년통일스피치대회, '마크로스코' 전시회 등 공익적 행사 주관, 주최 |
|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p><연합뉴스TV 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표하는 미디어어워드에서 미디어 공정성 외에도 '유용성, 신뢰성 부문'에서 선정 <p><공정정보도, 방송품질 제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규약 제정 및 시행. 취재·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실현, 외부의 부당한 간섭·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 지켜내기 위해 노력 ○ 대학생 등 시청자 참여를 통한 방송의 공정성 구현, 시청자 주권 확보. 공정정보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보도 공정성 제고 노력 ○ 심의실 통해 프로그램 적정성 사전·사후 심의 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사례들은 반드시 공유,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규정 준수, 자체 광고심의규정 등 1차 자체 심의 이후, 2차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광고심의 의뢰 <p><편성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평균 20시간 뉴스 편성으로 보도전문채널다운 편성 구현. 다수의 백팩 중계시스템 및 중계차 활용, 현장 생중계 연결 최우선 지향 ○ 편성은 보도비율 평균 0%, 시사·교양 비율 평균 0%로 구성해 뉴스 외 다양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16년 8월말 기준) ○ 자체제작 비율이 매우 높음. 부편성 프로그램의 약 0%를 외주 제작. 부편성 프로그램 중 약 0%를 국내외 우수프로그램을 구매, 편성 <p><공익적 프로그램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 방송 보편성을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 다수 편성 ○ 우리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빠르고 정확한 국제뉴스 '글로벌Y' '글로벌 투데이', 한 주간의 세계 주요 이슈를 다루는 종합국제뉴스 '월드클럽', 지구촌 소식을 소개하는 해외토픽 '월드리포트 That's Why' 편성 ○ 전국 지역본부에서 취재하는 지역특화뉴스 '지방시대', '생생네트워크' 매일 제작·편성, '지방시대 플러스', '생생네트워크 플러스' 매주 1회 제작·편성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국내외 4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휴먼 다큐멘터리 ‘하모니(연중기획 공동프로젝트)’ 주 2회 편성. ‘특집 다문화 봉사단 베트남을 가다 2부작’, ‘새마을 한류 4부작’, ‘다문화 월드컵’ 2회 등 편성 ○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옴부즈맨Y’, ‘바로보는TV 옴부즈맨’ 주 2회 편성. 대학생 등 시청자 참여 활성화로 시청자 주권 확대 ○ 공익광고 외에 에너지 절약, 재난·전기·가스 안전 등 공익캠페인 매일 편성 <p><재난재해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특보 비상편성 체제 항시 유지. 하단스크롤 자막을 통해 기상특보(재난 재해 상황) 등 수시 송출. 각종 재난·사고·속보 방송 시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활용. 자동자막송출시스템 재난방송 실시 ○ 태풍, 겨울철 한파, 폭염, 폭설 대비 재난방송 사전예방 캠페인물 편성 <p><외주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송용역 제작비 및 외주제작에 관한 규정’ 제정. 외주제작사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체 구매심의위원회 가동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수 계층 시청권 보장, 장애인 시청권 보장 확대 ○ 특파원 및 통신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를 확보. 해외뉴스통신사들 대상으로 한국 관련 영상뉴스를 유통. 해외방송사에도 콘텐츠 제공 중 |
| 제4장.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 <p><연합뉴스TV 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전문채널 시청률 1위. 명실상부 ‘대한민국 NO. 1 보도전문채널’ ○ 연합뉴스TV는 미디어어워드 ‘공정한 미디어’ 부문에서 매년 7대 미디어로 선정. 시청률 외에 시청점유율, 이용점유율도 매년 상승 추세 ○ 연합뉴스TV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속보, 생중계, 공정성 등 강점을 더욱 키워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 확보 노력. 매출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p><브랜드 강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브랜드 강화,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 주최, 주관 외에도 업계 관련 행사 협찬. 2014년 초 전략적으로 채널명을 ‘연합뉴스TV’로 변경. 시청자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채널 번호 23번 전략 실행 <p><조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작 중심의 조직 구축. 콘텐츠 제작 인력이 전체 조직의 〇~〇% 이상. 미디어 환경 변화에 신속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탄력적 조직 ○ 연합뉴스TV 기존 계획 대비 인력 고용 초과 달성 ○ 사외이사제도 및 경영감시기구 운영 등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 평가 및 보상체계 보완 및 성과연봉제도 지속적 실시, 강화. 조직 효율과 및 교육을 통한 구성원 역량 강화.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한 포상 ○ 연합미디어센터는 방송환경에 최적화된 건물. 상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 경로 확보,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접지 설계, 내진 설계 적용 ○ 선거 투개표 방송 시 가상스튜디오, 버추얼터치, 터치스크린, 매직글라스, 증강 현실, 키네틱 등 신기술 동원 |

| | |
|---|---|
| <p>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p> | <p><방송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 및 산학협력 통한 직무훈련 및 방송인력 양성. 재난방송 관련 교육, 해외한인방송인, 재외동포언론인, 방한기자단, 대학생 등 방송시설 등 견학 <p><투자 및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장비 도입 꾸준히 노력, 방송장비 및 신기술 지속 투자 ○ '디지털케이블TV쇼', 'AceFair국제문화창의산업전' 주요 협찬사로 매년 참가 ○ 연합뉴스TV 로고 및 장비 등 영화제작사에 협찬, 콘텐츠 산업에 기여 ○ PP, SO 등과 콘텐츠 상호 교류협약 등 체결을 통해 기사 제작, 사회소외 계층(다문화 가정 등 4대 취약계층)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방영 ○ 케이블TV, IPTV, 지상파사업자 등의 신규 플랫폼에 콘텐츠 제공하는 등 협력 <p><뉴스콘텐츠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공항철도, 서울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정부기관, 공항·역사, 병원, 해외공관, 기업체 등에 뉴스콘텐츠 보급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네이버, 다음 등 3대 포털에 뉴스 서비스 제공. 연합뉴스TV SNS 활성화. 재난방송 송출,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등 목적으로 자체 홈페이지(PC&모바일), APP 외에도 N스크린 서비스에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 ○ 세계한인방송사 등 연합뉴스TV 보도영상 공급을 통해 한인방송 지원 및 해외 동포에 대한 정보 욕구 충족 |
|---|---|

V.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1. '14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안건, '15.6.4)**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보고일자 | 2015. 6. 4. | 보 고 사 항 |
| 공개여부 | 공개 | |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에 따른 '14년도 이행실적에
관한 사항

| | |
|------|------------|
| 작성과 | 방송지원정책과 |
| 작성일자 | 2015. 6. . |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에 따른 '14년도 이행실적에 관한 사항

<2015. 6. 4.(목),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보고사유

-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14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방향을 보고하기 위함

※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제99조(시정명령 등) 및 종편PP 재승인 조건에 근거

2. 주요경과

- '14. 3.19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14.11.18 종편PP 1사(MBN)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14. 8~11월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 '14년 상반기 이행실적(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점검

※ 현장실사 : '14.10.22~23

- '14.12.10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 '14년 상반기 이행실적(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점검결과 통보
- '15. 1.30 종편PP 4사 '14년 이행실적 자료* 접수
 - * MBN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계획을 재승인 의결일('14.11.18)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15년 하반기부터 실적 점검, 기타 실적은 '14.12월 1개월치 제출
- '15. 2.11 종편PP 4사 '14년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외부 자문반* 회의 개최

* 방송(2), 법률(1), 경영·회계(1), 시청자(1)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15. 2.24~25 종편PP 4사 '14년 이행실적 점검 현장실사

3. 이행실적 점검대상

-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 사업계획 상의 '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
- 사업계획 상의 '14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 '14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35% 이상) 이행 여부

4. 이행실적 점검결과

①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4년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해 종편PP 3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심의현황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분 | TV조선 | | | JTBC | | | 채널A | | | MBN | | | 합계 | | |
|---------------------|------|-----|-----|------|-----|-----|-----|-----|-----|-----|-----|-----|-----|-----|-----|
| | '12 | '13 | '14 | '12 | '13 | '14 | '12 | '13 | '14 | '12 | '13 | '14 | '12 | '13 | '14 |
| 총 심의건수 | 26 | 42 | 110 | 21 | 29 | 24 | 19 | 30 | 71 | 22 | 24 | 27 | 88 | 125 | 232 |
|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 | 10 | 29 | 97 | 9 | 7 | 16 | 6 | 20 | 41 | 9 | 12 | 18 | 34 | 68 | 172 |
| - 법정제재 | 4 | 11 | 18 | 4 | 7 | 8 | 4 | 11 | 8 | 4 | 5 | 4 | 16 | 34 | 38 |
| - 행정지도 | 6 | 18 | 79 | 5 | 0 | 8 | 2 | 9 | 33 | 5 | 7 | 14 | 18 | 34 | 134 |

※ 오보·막말·편파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건수로 산출

② 사업계획 상의 '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

○ 종편PP 4사의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가 미흡함

| 구 분 | TV조선 | JTBC | 채널A | MBN('14.12월) |
|----------------|------------------------|--------------------------|------------------------|----------------------|
| 계획/실적 (백만원) | 48,312 / 45,964 | 161,226 / 117,441 | 62,151 / 50,552 | 4,099 / 3,921 |
| 이행여부 | 미이행(95.1%) | 미이행(72.8%) | 미이행(81.3%) | 미이행(95.7%) |

③ 사업계획 상의 '14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 TV조선·채널A는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한 반면, JTBC·MBN은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함

| 구 분 | TV조선 | JTBC | 채널A | MBN('14.12월) |
|-------|----------------------|----------------------|----------------------|----------------------|
| 계획/실적 | 44.2% / 37.2% | 49.5% / 57.0% | 44.8% / 41.4% | 45.6% / 50.9% |
| 이행여부 | 이행(-7.0%) | 미이행(+7.5%) | 이행(-3.4%) | 미이행(+5.3%) |

④ '14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35% 이상) 이행 여부

○ 종편PP 4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른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이행함

| 구 분 | TV조선 | JTBC | 채널A | MBN('14.12월) |
|------|--------------|--------------|--------------|--------------|
| 상반기 | 45.9% | 49.2% | 44.4% | - |
| 하반기 | 44.7% | 36.5% | 38.9% | 62.5% |
| 이행여부 | 이행 | 이행 | 이행 | 이행 |

⑤ 기타 :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관련

○ TV조선·채널A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구 분 | | TV조선 | JTBC | 채널A | MBN('14.12월) |
|-------|----|----------------------|----------------------|----------------------|----------------------|
| 계획/실적 | 보도 | 47.0% / 51.0% | 22.1% / 23.7% | 38.9% / 44.2% | 36.4% / 30.1% |
| | 교양 | 29.8% / 28.4% | 37.3% / 41.8% | 32.6% / 35.6% | 28.0% / 33.0% |
| | 오락 | 23.2% / 20.6% | 40.6% / 34.5% | 28.4% / 20.2% | 35.6% / 36.9% |

5. 조치 기본방향

①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4년 종편PP에 대한 심의조치 중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13~'14년도 종편PP 3사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분 | TV조선 | | JTBC | | 채널A | |
|-----|------|------|------|------|------|------|
| | '13년 | '14년 | '13년 | '14년 | '13년 | '14년 |
| 건 수 | 29건 | 97건 | 7건 | 16건 | 20건 | 41건 |

- 이에 사실검증 시스템의 강화, 진행자·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교육 내실화, 오보·막말·편파 방송 책임자에 대한 방송사 내부 징계 강화 및 제재기준 명확화 등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함

② 사업계획 상의 '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여부

- TV조선·JTBC·채널A가 사업계획 상의 '14년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함
- MBN이 사업계획 상의 콘텐츠 투자 금액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14.12월)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함

③ 사업계획 상의 '14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 JTBC가 사업계획 상의 '14년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함
- MBN이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14.12월)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함

④ '14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35% 이상) 이행 여부

○ 재승인 조건에 따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지 않음

⑤ 기타 :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관련

○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로서 방송법 제69조에 따라 보도,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상호 조화롭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개국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14년에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계획치를 상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 '11~'14년도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계획 대비 실적 >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TV조선 | 24.8% / 29.8% | 24.8% / 35.9% | 24.8% / 48.2% | 47.0% / 51.0% |
| 채널A | 23.4% / 21.8% | 23.6% / 34.2% | 23.6% / 43.2% | 38.9% / 44.2% |

- 이에 종합편성채널로서 다양한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점검사항별 조치계획(案) >

| 점검사항 | 조치내용 | 대상사업자 |
|---------------|---------|---------------|
|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 이행촉구 | TV조선·JTBC·채널A |
| 콘텐츠 투자 | 시정명령 | TV조선·JTBC·채널A |
| | 이행촉구 | MBN |
| 재방비율 | 시정명령 | JTBC |
| | 이행촉구 | MBN |
| 외주제작 편성비율 | 조치사항 없음 | - |
| 다양하고 조화로운 편성 | 이행촉구 | TV조선·채널A |

6. 향후 계획

○ 이행촉구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6월)

○ 시정명령 의결(7월)

- 붙임 1. 방송사업자별 점검결과
2.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끝.

방송사업자별 점검결과

□ (주)조선방송 (TV조선)

- 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조치 중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사항이 전년대비 234.5%(29건→97건) 증가함
- ② **(콘텐츠 투자)** '14년 콘텐츠 투자 45,964백만원으로 사업계획(48,312백만원) 대비 이행실적이 미흡함(95.1%)

| 구분 | 사업계획 | 이행실적 |
|-------------|--------|--------|
| 콘텐츠 투자(백만원) | 48,312 | 45,964 |

- ③ **(재방비율)** '14년 재방비율 37.2%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4.2%)을 이행하였음

| 구분 | 사업계획 | 이행실적 |
|---------|------|------|
| 재방비율(%) | 44.2 | 37.2 |

- ④ **(외주제작 편성비율)** 재승인 조건 상 매반기 35% 이상 편성비율을 준수함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 외주제작 편성비율(%) | 45.9 | 44.7 |

- ⑤ **(기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51.0%로 높은 수준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송분야 편성비율(%) | 보도 | 교양 | 오락 |
|--------------|------|------|------|
| 사업계획 | 47.0 | 29.8 | 23.2 |
| 이행실적 | 51.0 | 28.4 | 20.6 |

□ (주)제이티비씨 (JTBC)

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조치 중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사항이 전년대비 128.6%(7건→16건) 증가하였음

② (콘텐츠 투자) '14년 콘텐츠 투자 117,441백만원으로 사업계획(161,226백만원) 대비 이행실적이 미흡함(72.8%)

| 구분 | 사업계획 | 이행실적 |
|-------------|---------|---------|
| 콘텐츠 투자(백만원) | 161,226 | 117,441 |

③ (재방비율) '14년 재방비율 57.0%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9.5%)을 이행하지 못함

| 구분 | 사업계획 | 이행실적 |
|---------|------|------|
| 재방비율(%) | 49.5 | 57.0 |

④ (외주제작 편성비율) 재승인 조건 상 매반기 35% 이상 편성비율을 준수함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 외주제작 편성비율(%) | 49.2 | 36.5 |

⑤ (기타)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방송분야 편성비율(%) | 보도 | 교양 | 오락 |
|--------------|------|------|------|
| 사업계획 | 22.1 | 37.3 | 40.6 |
| 이행실적 | 23.7 | 41.8 | 34.5 |

□ (주)채널에이 (채널A)

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조치 중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사항이 전년대비 105.0%(20건→41건) 증가함

② (콘텐츠 투자) '14년 콘텐츠 투자 50,552백만원으로 사업계획(62,151백만원) 대비 이행실적이 미흡함(81.3%)

| 구분 | 사업계획 | 이행실적 |
|-------------|--------|--------|
| 콘텐츠 투자(백만원) | 62,151 | 50,552 |

③ (재방비율) '14년 재방비율 41.4%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4.8%)을 이행하였음

| 구분 | 사업계획 | 이행실적 |
|---------|------|------|
| 재방비율(%) | 44.8 | 41.4 |

④ (외주제작 편성비율) 재승인 조건 상 매반기 35% 이상 편성비율을 준수함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 외주제작 편성비율(%) | 44.4 | 38.9 |

⑤ (기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44.2%로 높은 수준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송분야 편성비율(%) | 보도 | 교양 | 오락 |
|--------------|------|------|------|
| 사업계획 | 38.9 | 32.6 | 28.4 |
| 이행실적 | 44.2 | 35.6 | 20.2 |

□ (주)매일방송 (MBN)

- ① (콘텐츠 투자) '14년 콘텐츠 투자 3,921백만원('14.12월, 1개월)으로 사업 계획(4,099백만원) 대비 미흡함(95.7%)

| 구 분 | 사업계획('14.12월) | 이행실적('14.12월) |
|-------------|---------------|---------------|
| 콘텐츠 투자(백만원) | 4,099 | 3,921 |

- ② (재방비율) '14년 재방비율 50.9%('14.12월, 1개월)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 비율(45.6%)을 이행하지 못함

| 구분 | 사업계획('14.12월) | 이행실적('14.12월) |
|---------|---------------|---------------|
| 재방비율(%) | 45.6 | 50.9 |

- ③ (외주제작 편성비율) 재승인 조건 상 매반기 35% 이상 편성비율을 준수함

|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14.12월) |
|--------------|-----|--------------|
| 외주제작 편성비율(%) | - | 62.5 |

- ④ (기타)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방송분야 편성비율(%) | 보도 | 교양 | 오락 |
|---------------|------|------|------|
| 사업계획('14.12월) | 36.4 | 28.0 | 35.6 |
| 이행실적('14.12월) | 30.1 | 33.0 | 36.9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방통위는 종편PP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14.3.19, 11.18)

| | |
|----------------------------|---|
| 재승인 조건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2.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 권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 (주)매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

**2. '14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속기록, '15.6.4)**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6. 4.(목)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종합편성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종합편성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15년도 1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14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대상은 첫째,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둘째, 사업계획상의 '14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 셋째, 사업계획상의 '14년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넷째, '14년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 등입니다.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관련해서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4년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해 종편PP 3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심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상의 '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편PP 4사의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가 미흡합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95.1%를 이행했고, JTBC는 72.8%, 채널A는 81.3%, MBN은 95.7%로 종편4사 모두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상의 '14년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TV조선·채널A는 사업계획서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한 반면, JTBC·MBN은 사업계획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TV조선은 이행하였는데 -7%, JTBC는 미이행했는데 7.5%, 그다음에 채널A는 이행하였는데 -3.4%, MBN은 미이행하였는데 5.3% 추가로 더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편PP 4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른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관련해서 TV조선·채널A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치 기본방향입니다. 20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관련해서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 종편PP에 대한 심의조치 중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실검증 시스템의 강화, 진행자·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교육 내실화, 오보·막말·편파 방송 책임자에 대한 방송사 내부 징계 강화 및 제재기준 명확화 등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상의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여부 관련하여 TV조선·JTBC·채널A가 사업계획상의 2014년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MBN이 사업계획상의 콘텐츠 투자 금액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상의 2014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여부 관련해서 JTBC가 사업계획상의 2014년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MBN이 사업계획상의 재방비율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4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 관련하여 재승인 조건에 따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제재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로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해서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로서 방송법 제69조에 따라 보도,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상호 조화롭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개국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14년에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를 계획치를 상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종합편성채널로서 다양한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별 조치계획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에 이행촉구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7월에 시정명령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게 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통 10일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붙임 2>를 보면 중편 4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이렇게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조건은 권고적 의미가 아니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준 승인조건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보고한 안건 이전에, 지난번에 논의했던 안건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입니다만 "사업계획서 불이행은 맞지만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패소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저희는 즉시 항소해서 지난해 12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 4사는 언제 변론이유서를 제출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5월 26일 현재 변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렇게 늦게 이유서를 제출한 사유를 파악하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그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상대방에서 재판 전략상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변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강제력을 갖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2013년도 이행실적 점검의 경우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실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행실적 점검은 적시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해서는 안 되고, 적시에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정 등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번 실적점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에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은 1년마다 점검하기로 했고, 방송의 공적책무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6개월마다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적시에 해야 하는데 2014년도 이행실적을 2015년 6월에 와서 보고하고, 여기에 나왔다고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 결국 6월말이 지납니다. 이것이 적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내용을 확실하게 좀 더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해서, 앞서 말씀 드린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 등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또 반년마다 방송의 공적책무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잘 활용해서 종합편성PP 사업자들이 공적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행실적 점검에서도 종편PP들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즉,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일부 종편PP들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적시된 것입니다. 지난해 오보·막말·편파 방송 실태를 보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총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TV조선은 2013년 42건에서 2014년 110건으로 2.6배 증가했고, 채널A는 30건에서 71건으로 2.3배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심의건수에서 양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에 달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시민단체에서는 종편에 대해서 종합편파방송이다, 막말방송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의결과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법정제재 받은 것, 행정지도 받은 것 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말로

읽기 어려운 정도로 심한 막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품격을 생각해서 심의에서 지적된 막말 방송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들 종편PP가 패널들을 불러서 진행하는 보도·시사프로그램을 보면 막말을 쏟아내는 인터넷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서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최소한, 품격을 갖춘 방송을 해야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방송학회 주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온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종편에서 하고 있는 ‘막말, 인신공격, 소수자 폄훼, 반인권 시사·토크 프로그램’류가 지상파 방송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어떤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잘 모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마 지상파방송인 경우는 방송사 문을 닫아야 했을지 모를 지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깊게 공감한 부분입니다. 막말·편파 방송의 증가는 제가 봤을 때 종합편성PP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재승인 심사 시 TV조선에 대해서는 종편PP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불임>에 보면 그런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면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계획대비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13년도 24.8%에서 '14년도 47%로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널A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급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권고사항은 보도프로그램 비율을 낮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상 보도프로그램 비중은 전년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추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편성비율을 낮추어 가도록 하는 권고적인 사항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만약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하셨는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를 해야 할 책무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어찌 보면 방치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이미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부분의 총평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편 PP 모두 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식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들이 아닌 실질적인 제어장치들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심의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기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방송의 공적책임,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제도나 기구 설치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전략 수립과 최고 경영층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총평을 고려하면 종편PP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말·편파 방송 그리고 잦은 오보, 이러한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한 내용을 보고 2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이행실적 점검결과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종편PP 3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말….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편사가 제출한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반 의견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어떻게 보다 디테일한 측면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도 심사위원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라는 의견을 낸 것은 기억하시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바로 밑에 보면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해 종편PP 3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도적 장치들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치 기본방향을 보시면 일단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사에서 사실검증 시스템이 설치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더욱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말·편파와 관련된 부분은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진행자, 특히 출연자를 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출연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사전교육을 내실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송사 내부의 징계나 제재기준 등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실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계속 면밀히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종편PP를 승인한지 4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2010년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PP를 새롭게 승인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편성PP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의 4가지 정책목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잘 모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두 번째,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세 번째,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 마지막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승인 심사도 하셨고 이번에 이행실적 점검도 하셨는데 이러한 당초의 종편PP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일단 이 목표가 처음에 세워진 목표라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중편들은 최초 종합편성PP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송사를 경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일부 중편의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또 VOD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일부 중편PP는 이런 중편PP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편PP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편PP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중편PP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PP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편PP들과 그렇지 않은 PP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적인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 드렸습시다만, 4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보면 종합편성PP 정책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절반의 성과와 절반의 실패, 이런 입장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당초의 중편PP 정책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편PP 정책에 대해 그리고 중편PP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종합편성PP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안건을 검토하면서 특정 언론입니다만 조선일보 사설을 한 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 5일, 이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 조선일보 창간 95주년을 맞이해서 특집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의 사설을 썼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사설의 일부입니다. “언론의 기본 사명은 정확한 사실 보도와 균형 있는 논평을 통해 독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왜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또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중요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 국장님, 공감되십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원칙적으로 방향은...

○ **고삼석 상임위원**

- 중편PP의 대주주인 신문사가 쉽게 말하면 생일 날 자신들의 각오를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각오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편PP에 대해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사설에서 밝힌 대로 언론의 기본 사명을 잘 수행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행실적 점검결과 그리고 개선과 관련된 조치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꼼꼼히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 총론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간점검을 하게 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편을 도입할 때 승인을 해주었던 심사위원회, 전부 다 외부에 맡겼습니다.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심사위원장도 외부에 맡겼습니다. 3년이 지나서 재승인 심사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위원장을 맡았고, 전부 외부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중간점검을 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 여론의 관심과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종편PP 3사가...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이행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계획서상에...

○ 김재홍 상임위원

- 서면상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본 것이지요? 저는 이 보고안을 보면서 방송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보고자료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더군다나 점검하라는 의미는 잘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의심이 갈 경우에 새로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크게 증가했다고 드러난 것이 문제인데,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이행계획서 서류,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사회자, 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사전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송이 나와서 시청자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심지어 고발되면 거기에 대한 제작진 또는 사회자와 관계자에 대한 자체 문책, 세 번째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제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특수군이 침투해서 벌인 일이라는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직 대통령이 북한 측이 내려 보낸 간첩이었다는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그 당시의 제작진, 그 당시의 사회자가 어떻게 문책이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봤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조사해 봐야 점점이지, 그냥 자기들이 제출한 해명, 변명인지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고 이행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제작진, 그 사회자, 그런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출연자, 지금 그대로 다 방송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비판과 방통위 상임위원인 저에 대한 공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자 그대로 하고 있네?” 그 제작진 PD가 지금도 시사토론을 한단데 무슨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이행입니까? 말하자면 사전모니터링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후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문책이 없었고 심의제재, 그것 해 봐야 재발방지 효과가 없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증가한 것입니다. 3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 TV조선 97건, 채널A 41건, JTBC 16건, MBN 18건이 전년도에 비해 몇 배입니까? 자기들이 지적받은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TV조선은 3배 이상, 채널A 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재승인 심사의 지적과 또 우리 점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효성 있는, 효과 있는 재승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제출한 서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훨씬 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 점검해서 보고안건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여부입니다. 이 보고안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체 조사나 점검이 아주 약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기계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JTBC의 경우..., 어느 방송사를 제가 편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자율적인 목표치에 따라 그 이행률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JTBC는 콘텐츠 투자 목표액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의 3배 가까이 됩니다. 1,612억 2,600만원, 그중에 이행률 이행액이 1,174억원, 그런데 72.8%만 이행했다, TV조선은 목표액이 애초에 483억원, JTBC의 몇 분의 1입니까? 그런데 이행률은 95.1%였다, 45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번 바뀌서 생각해 보시지요. 투자목표가 높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행률로 따져서 제일 떨어진다, 꼴찌였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이것은 억울한 것이지요. 물론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재승인 심사를 받았으니까 책임져라 하는 근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는 정액 목표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적절한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재방비율입니다. 재방비율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편은 재방비율이 왜 높은가? 자체제작, 콘텐츠 제작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돈 들인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재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돈을 덜 들이고 싸게 만든 콘텐츠니까 재방을 하지 않았습디다. 그것 가지고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재방비율만 따져서 높다, 낮다 판단하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주제작 편성비율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편 탄생 때 범규에도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하게 해야겠다고 방송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채널을 많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에 종편 승인 내지는 근거에 대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편성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논란을 제일 많이 불러일으킨 종편이 과연 종편이나, 종합편성채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프로그램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5항 <표>를 볼까요? 대체로 법규에 인정된 방송콘텐츠의 장르는 보도, 교양, 오락입니다.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상식적으로 보도, 교양, 오락으로 나누어 봤을 때에는 어느 한 장르가 1/3씩 3개로 나누어 있으니 33%를 넘어서면 과다한 것입니다. 보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은 조금 더 주어야 한다든가 교양을 더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일반 국민들은 3개의 장르로 나누어져 있으면 33%를 넘으면 과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TV조선, 자신들의 사업계획서 목표에 보도 장르의 편성비율이 47%였습니다. 너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했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편성비율은 51%입니다.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종편이 과연 종합편성채널입니까, 보도전문채널입니까? 시청자들의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위해서 보도전문채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YTN이 있고 연합뉴스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전문채널의 보도편성이 과연 몇 퍼센트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보도전문PP에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전문PP들이 방통위 정책당국에 항의해야 하고, 종편 쪽에 항의해야 합니다. 보도전문PP의 영역을 분명히 침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널A의 보도편성 목표가 39%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4.2%를 했습니다. 이라고도 어떻게 종합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그냥 보도PP를 운영하면서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엄정한 시정조치와 다음에 재승인 심사할 때는 더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종편의 설립 근거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는 공정방송 공적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 둘째는 제작진, 사회자, 출연자의 사전모니터링과 그것이 잘못되고 논란이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한 엄정한 자체 문책과 또 세 번째,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 하면 역시 불가피한 법적인 규정에 따른 심의제재, 이것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시정될 것이고 재발방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중간점검은 아주 약했다, 자체조사 점검이 약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자체 문책과 사후 심의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대로 반복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시 중편의 설립근거입니다. 다양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편성을 하고 있는가? 특정 장르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전문 PP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방통위의 기본정책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 투자와 다양하고 조화로운 편성 이행여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야 다양하고 조화로운 편성이 되는 것인데, 돈을 들이는 것은 안 하고 돈이 싸게 들어가는 쪽으로만 기울어 간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2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점검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번 재승인 심사가 있으면 그때 강조, 무게를 두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점검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과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의 조치 기본방향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앞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재승인 조건에 중편 4사가 스스로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출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운영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해서 낸 것이 한편으론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누차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점검결과 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이행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오래 이야기하셔서... 이 안건 제목이 정확합니다? '종합편성PP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이행실적, 무슨 이행실적입니까?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조건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2014년도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이라는 말도..., 법적근거가 이 안건에 없습니다. 몇 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조문이라기보다는 지난번 재승인 조건에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그다음에….

○ 이기주 상임위원

- 향후 조치계획에 시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송법 제99조와 재승인 조건 딱 2개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통위에서 하는 일은 모두 현행 법 제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현행 법 제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건 제목을 막연히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하니까 많은 혼선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하면 무슨 이행실적 점검인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에 부분적으로는 반기만 한 것도 있고, 1년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14년도 재승인 조건…, 제가 보기에 제목은 ‘재승인 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이렇게 해 놓고,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재승인 조건중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려면 저는 제목부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법 제도에 따른 조치를 할 때는…, 제99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99조제1항제2호 같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거기는 단어의 문제이긴 한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치계획안에 이행촉구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이행하면 과징금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징금까지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시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재승인 조건에 반영되어 있는 그 비율대로 안 했을 때 그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14년도는 이미 지났는데….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통 저희들이 콘텐츠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가면 ‘14년도 콘텐츠 투자 미이행 금액과 ‘15년도에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중에….

○ 이기주 상임위원

- 2015년에 추가해서 하라?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만약 나중에 시정명령을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재방비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방비율은 지난 부분은 어차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15년도에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콘텐츠 같은 경우만 전년대비 못한 것을 그 다음 해까지 이월시켜서 추가로 다 하라는 취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앞에 배경이나 개요 부분에 있어서 막연히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소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해 놓고, 필요한 관련된 법적 근거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안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법적 부분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한 것, 2013년도에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대한 제재 건으로 해서 종편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지금 패소해서 소송 중이니까 또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예를 들어 3년 단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난해에 첫 번째 기간 동안 안 지

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또 안 지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업기간, 승인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적을 카운트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새롭게 재승인을 받았지만 과거에 시정명령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안 됩니까? 이번 사업계획서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일 승소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음 재승인 심사에는 감점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시정조치 계획에 보고된 대로 시정명령이 제재조치의 상한이라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시정명령으로 결정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넣었으면 하는 것이 승인 내지 재승인할 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재)승인 조건을 이렇게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99조, 그리고 아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놓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보고안건이니까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나중에 의결안건을 작성할 때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 드리면 실질적인 공적책무 및 공정성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을 비롯해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심의위의 지적을 받은 그런 콘텐츠를 방송하는데 책임 있는 제작진과 사회자, 이런 분들이 어떤 제재를 받았는가? 어떤

자체 문책을 받았으며, 사후심의는 방심위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는 것이지요. 방송사 자체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문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킨 방송인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발방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더 점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검이 마감시간이 있습니까? 더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점검이라는 말이 적절하나 했는데, 지금 재송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사무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송인 조건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라, 협조하라는 말을 하나 넣은 것은 그냥 재강조하기 위해 넣은 것이고, 방송법 제98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이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확대 적용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이 제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까지 생각과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제도화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종편 4사가 제출한 것들이 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확인한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내용 중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행 촉구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부 들어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검증 시스템을, 예를 들어 채널A는 사실검증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서 운영을 하라는 측면에서 이행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오보·말말·편파 방송 책임자에 대한 내부 징계나 제재기준을 각 종편PP 4사가 방송의 공정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현재로서는 제출한 확보 방안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확보 방안을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리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을 꼭 이행하라고 나가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님, 따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원계 부위원장

-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승인 조건 중에 각 방송사 측이 보도·교양·오락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목표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를 제출하는 것이 각 방송사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으며, 또 목표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볼 때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방송사가 '우리는 이번에 보도를 55%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근거로 그 부분에 관해 숫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도·교양·오락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편성의 자유에 따라 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TV조선에서 보시듯이 47%라는 것은 보도가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보도비율을 낮출 것',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 **허원계 부위원장**

- 물론 각 방송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목표한, 스스로 약속한 수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에 대해 우리가 조화로운 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법적으로는 시행령상 오락프로그램을 50% 이상 편성을 못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과거에는 보도·교양·오락에 대해 다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없어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오락프로그램 50%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 **허원계 부위원장**

- 법적 기준은 그것 밖에 없는데 어쨌든 종합편성...,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준은 있지요? 전문 편성채널의 경우에는 그 전문분야를 80% 이상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허원계 부위원장**

- 그 2가지 기준만 있지, “어떻게 편성해야 이것이 종합편성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편성 방송사가 “나는 보도를 60% 정도 해야겠다, 그리고 오락을 30% 하고, 교양을 10%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은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법적으로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몇 퍼센트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 **허원계 부위원장**

- 승인을 할 때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60%를 제출해 왔을 때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많다, 이것은 40% 정도로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강제는 안 되겠지만 짐작컨대 재승인 절차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고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허원계 부위원장**

- 편성 문제가, 물론 각 종편사들이 원래 자신들이 목표한 수치를 조금씩 오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다시 재승인 과

정에서 수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재조정해서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점이 우려가 되어서, 뭔가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종합편성이라는 것이 보도는 35%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또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4가지 장르를 적정한 균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각 장르별로 35%를 넘어서는 안 된단든지 무슨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법적 미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방송정책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보도·교양·오락의 비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있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규정이 없어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오락이 50% 초과하면 안 되고, 전문편성의 경우에는 80% 이상 하도록 하는 규정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방송분야가 조화롭게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의 추상적인 통제, 즉 재승인 심사 때 그것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과감하게 점수를 깎아서 사실상 재승인에 영향을 받을 정도까지 하는 것, 그다음에 그와 동반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을 때 만약에 그 권유를 안 받아들이면 바로 안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 또 그 권유를 받으면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시행령에, 비록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충분히 논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규정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편성PP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쪽 훑어봄에 있어서 우선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깊은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워크숍 형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부가적으로 오락 편성비율을 5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이 2004년도에...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이 생기기 한참 전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이 생기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상파방송들에게 오락프로그램에 편중되지 마라, 쾌락 추구 쪽으로 가지 마라, 방송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라는 입법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종편이 도입됐습니다. 종편 도입의 취지는 수치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 나온, 균형 있고 다양하고 조화로운 편성을 하는 채널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기준이 보도·교양·오락 3개 영역, 3개 장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신에 비추어 3개 장르이면 33%를 넘어서면 이것은 편중이라고 봐야 한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편성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보도·교양·오락 장르 말고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해졌습니까? 스포츠 보도, 스포츠 중계, 또 스포츠 평론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생활에서, 지금은 4개의 장르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 장르를 4개로 나누어야 한다면 각 장르별로 25%를 넘어서면 편중된 편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규정대로 하더라도 33%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평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정법주의로 꼭 가야 한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아니면 수치로 명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한다면, 역시 승인,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종편 심사위원들은 처음 도입할 때나 재승인 심사 때나 학계 인사들, 전문가들 전부 다 외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실정법주의가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점검요구, 지적사항은 이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재승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심사위원들의 조건부와 권고사항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입니다. 그것을 엄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서 4개사 다 공통 재승인 조건으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또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콘텐츠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방비율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확인해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성실히 준수하라는 의미에 대해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100% 이행하는 것이 바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종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실적과 관련해서 해당 퍼센티지에 미달했을 때는 비록 그 미달된 부분이 아주 적더라도 시정명령을 했던 전례가 있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있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역방송 제작비 투자 부분에 대해 '14년 7월에, 저희들이 원래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4%를 제작비에 투자하도록 하는데 작년에 KNN은 13.7% 정도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97% 정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성실히 준수하고'는 그것을 완전하게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95%를 이행한 것과 72%를 이행한 것에 대해 같은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이행분이 적은 방송사의 경우에는 올해 추가로 이행해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신 미이행분이 많으면 올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걸으로 봐서는 같은 시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편의 편성과 관련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편성이 어떠한 편성이냐? 법적으로 장르별로 편성비율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정비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입니다. 보도·교양·오락이 있다고 할 때 보도가 50%를 차지하고, 교양과 오락이 각각 25%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균형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조화라는 것은 '구성요소 간에 서로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보도·교양·오락이 있는데 어느 특정 장르가 과도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조화로운 편성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러나 저희가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심사할 때 그 평가기준들을 보면 대부분 비계량 평가입니다. 즉, 심사위원들이 볼 때 보도 장르가 과도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편성이다, 그래서 균형 있게 조화롭게 편성하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화롭고 균형 있는 편성, 그 조화와 균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잘 감안해서 앞으로 관련된 법제를 정비할 때는 그러한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면 방송법 제69조제2항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 이것이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69조제2항·제3항 규정을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등을, 우리 사무처만의 생각을 모을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모으면서, 또 저희와 수시로 논의하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 근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정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14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3사
시정명령 (안건, '15.7.9)**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의안번호 | 제2015 - 35 - 165~167호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결일자 | 2015. 7. 9. | |
| 공개여부 | 공개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3개 사업자 -

| | |
|-------|------------|
| 제 출 자 | 위원장 |
| 제출일자 | 2015. 7.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3개 사업자 -

<2015. 7. 9.(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 의안번호 | 법인명 (채널명) | 시정명령(안) |
|---------------|--------------------|---|
| 제2015-35-165호 | (주)조선방송 (TV조선) |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말까지 이행할 것 |
| 제2015-35-166호 | (주)제이티비씨 (JTBC) |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5년 재방 비율을 준수할 것 |
| 제2015-35-167호 | (주)채널에이 (채널A) |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말까지 이행할 것 |

2. 제안이유

-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4. 3.19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14.11.18 중편PP 1사(MBN)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조건 등 부과
- '15. 1.30 중편PP 4사 '14년 이행실적 자료* 접수
 - * MBN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계획을 재승인 의결일('14.11.18)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15년 하반기부터 실적 점검, 기타 실적은 '14.12월 1개월치 제출
- '15. 6. 4 중편PP '14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 보고
- '15. 6. 8 방통위, 중편PP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기타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해 이행촉구
 - * TV조선·채널A(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JTBC(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미이행)
- '15. 6.24 중편PP 3사(TV조선·JTBC·채널A),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4.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

-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 사업자별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

| 법인명 |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
|----------|--|
| (주)조선방송 |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 |
| (주)제이티비씨 |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 및 '14년 재방비율을 미이행 |
| (주)채널에이 |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 |

○ 피심인의 주요 의견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고, 재승인 조건에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며, '14년에 세월호 사태의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였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람(TV조선·채널A)
- 개국 이후부터 '1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과 '14년에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사고가 있었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함(JTBC)
- EBS는 '11년~'13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12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 미준수에 대해 '14년 시정명령을 받은 KNN의 경우 수년간 경영조건이 혹자였고 허가조건이 수치로 명시되어 있었음(TV조선·채널A)
- '15.6월 현재 재방비율 48.95%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이 아닌 이행촉구를 요청함(JTBC)

5. 검토 의견

- 재승인조건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편PP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재승인 시 종편PP 도입 목표 실현을 위해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건으로 부가한 취지, 재승인조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은 완전한 이행을 의미함
- 피심인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이 전년대비 대폭 축소된 반면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함

- EBS의 경우 '10년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매년 점검하지 않았으며, '14년 재허가 시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15년 실적부터 점검할 예정이며, KNN의 경우 '10년 재허가조건에 따라 '11년에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정하고 '12년 실적부터 적용기로 의결하였으며, '13년 재허가 시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14.3월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 마련 후 '14.8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 시정명령은 재승인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자의 경영조건에 따라 부과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며, EBS의 '14년 재허가조건도 종편PP의 재승인조건과 같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프로그램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편PP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종편PP 재승인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 종편PP 재승인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고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 종편PP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함

6. 향후 계획

- 시정명령 통보 : '15.7월 중

- 붙임 1. 심의·의결서
 2. 피심인 제출 의견
 3. 종편PP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4. 관련 법령. 끝.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5-35-165호

안 건 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조선방송 (대표이사 변용식)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0 조선일보씨스퀘어빌딩

의결연월일 2015. 7. 9.

주 문

(주)조선방송은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편PP'라 한다)이다.

나.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2014년 3월 19일 재승인 의결 시에 부가된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나,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서 ‘14년 48,312백만원의 콘텐츠 투자계획(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을 제시하고 그 중 45,964백만원(95.1%)을 투자하였다.

2. 피심인의 의견

피심인은 2015년 6월 24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인정하나,

방송사업자가 재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기계적인 숫자 달성 여부가 아니라 당해 경영실적 등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나 이행 노력을 열심히 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으며, 재승인 조건에 콘텐츠 투자계획을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세월호 사태의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최대한 이행(95.1%)하였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BS가 ‘11년~’13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을 100%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으며, KNN이 ‘12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 미준수에 대해 ‘14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수년간 흑자였고 허가조건이 수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였으므로,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위법성 판단

재승인조건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편PP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재승인 시 종편PP 도입 목표 실현을

위해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건으로 부가한 취지, 재승인조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이행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이 전년대비 대폭 축소된 반면, '14년에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EBS의 경우는 '10년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매년 점검하지 않았으며, '14년 재허가 시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재허가조건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프로그램 투자를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15년 실적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KNN의 경우는 '10년 재허가조건에 따라 '11년에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정하고 '12년 실적부터 적용기로 의결하였으며, '13년 재허가 시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14년 3월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 후 '14년 8월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또한, 시정명령은 재승인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자의 경영조건에 따라 부과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EBS 등 타 방송사업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1.나.의 행위는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그 재승인조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이의제기방법 및 기간

본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원 장 최 성 준 (인)

부위원장 허 원 제 (인)

위 원 김 재 홍 (인)

위 원 이 기 주 (인)

위 원 고 삼 석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5-35-166호

안 건 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제이티비씨 (대표이사 김수길)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의결연월일 2015. 7. 9.

주 문

(주)제이티비씨는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고, '14년 재방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5년 재방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한다)이다.

나.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2014년 3월 19일 재승인 의결 시에 부가된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나,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서 '14년 161,226백만원의 콘텐츠 투자계획(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을 제시하고 그 중 117,441백만원(72.8%)을 투자하였다.

피심인은 2014년 3월 19일 재승인 의결 시에 부가된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서에서 '14년 49.5%의 재방비율을 제시하였음에도 재방비율이 57.0%에 이르렀다.

2. 피심인의 의견

피심인은 2015년 6월 24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인정하나,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는 개국 이후부터 '1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과 '14년에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사고가 있었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14년말 현재 자본금이 1,428억원인 상황에서 '15년에 총 2,424억원('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 +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의 콘텐츠 투자를 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시정 명령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밝혔고,

재방비율에 대해서는 '15.6월 현재 재방비율 48.95%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이 아닌 이행촉구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위법성 판단

재승인조건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편PP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재승인 시 종편PP 도입 목표 실현을 위해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건으로 부가한 취지, 재승인조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이행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이 전년대비 대폭 축소된 반면, '14년에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피심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1.나.의 행위는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그 재승인조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이의제기방법 및 기간

본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 최성준 (인)

부위원장 허원제 (인)

위원 김재홍 (인)

위원 이기주 (인)

위원 고삼석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5-35-167호

안 건 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임채청)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

의결연월일 2015. 7. 9.

주 문

(주)채널에이는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편PP'라 한다)이다.

나.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2014년 3월 19일 재승인 의결 시에 부가된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나,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서 ‘14년 62,151백만원의 콘텐츠 투자계획(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을 제시하고 그 중 50,552백만원(81.3%)을 투자하였다.

2. 피심인의 의견

피심인은 2015년 6월 24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인정하나,

투자계획은 미래를 예측하여 만든 잠재적 수치이고 재승인 조건에 100% 이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의 성실한 준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14년 137억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81.3%)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지상파(EBS, KNN)에 비해 종편 사업자에 대해서만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함께,

시정명령에 따른 추가 투자액 116억원은 ‘14년 매출액 924억원의 12.5%로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위법성 판단

재승인조건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편PP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재승인 시 종편PP 도입 목표 실현을 위해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건으로 부가한 취지, 재승인조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이행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이 전년대비 대폭 축소된 반면, '14년에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EBS의 경우는 '10년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매년 점검하지 않았으며, '14년 재허가 시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면서 재허가조건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프로그램 투자를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15년 실적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KNN의 경우는 '10년 재허가조건에 따라 '11년에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정하고 '12년 실적부터 적용기로 의결하였으며, '13년 재허가 시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14년 3월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 후 '14년 8월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EBS 등 타 방송사업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1.나.의 행위는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그 재승인조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이의제기방법 및 기간

본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 최성준 (인)

부위원장 허원제 (인)

위원 김재홍 (인)

위원 이기주 (인)

위원 고삼석 (인)

피심인 제출 의견 (요약)

< TV조선 >

| 시정명령 대상 | 의견 |
|----------|--|
| 콘텐츠 투자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으며, 재승인 조건에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사태의 영향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최대한 이행 (95.1%)하였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람 ○ EBS는 '11년~'13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을 100%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12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 미준수에 대해 '14년 시정명령을 받은 KNN의 경우 수년간 경영조건이 흑자였고 허가조건이 수치로 명시되어 있었음 |

< JTBC >

| 시정명령 대상 | 의견 |
|----------|---|
| 콘텐츠 투자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국 이후부터 '1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과 '14년에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사고가 있었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함 ○ '14년말 현재 자본금이 1,428억원인 상황에서 총 2,424억원의 콘텐츠 투자는 사업의 연속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시정명령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
| 재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6월 현재 재방비율 48.95%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이 아닌 이행촉구를 요청함 |

< 채널A >

| 시정명령 대상 | 의견 |
|----------|--|
| 콘텐츠 투자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계획은 미래를 예측하여 만든 잠재적 수치이고 재승인 조건에 100% 이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실한 준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137억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투자 이행 (81.3%)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함 ○ 지상파(EBS, KNN)에 비해 종편 사업자에 대해서만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시정명령에 따른 추가 투자액 116억원은 '14년 매출액 924억원의 12.5%로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침 |

종편PP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 방통위는 종편PP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14.3.19, 11.18)

| | |
|----------------------------|--|
| 재승인 조건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2.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 권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 (주)매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관련 법령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4. '14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3사
시정명령 (속기록, '15.7.9)**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7. 9.(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재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5-35-165~16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각 사업자별로는 (주)조선방송의 경우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할 것, (주)제이티비씨의 경우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하고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5년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 (주)채널에이의 경우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할 것을 명한다. 제안이유로는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별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자별로는 (주)조선방송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였고, (주)제이티비씨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및 '14년도 재방비율을 미이행하였으며, (주)채널에이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고, 재승인조건에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며, '14년에 세월호 사태의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였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국 이후부터 '1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점과 '14년에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사고가 있었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EBS는 '11년도부터 '13년까지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12년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 미준수에 대해 '14년 시정명령을 받은 KNN의 경우 수년간 경영조건이 혹자였고 허가조건이 수치로 명시되어 있었다'라는 의견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6월 현재 재방비율 48.95%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이 아닌 이행촉구를 요청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승인조건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편PP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재승인 시 종편PP 도입 목표 실현을 위해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건으로 부가한 취지, 재승인조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은 완전한 이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심인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이 전년대비 대폭 축소된 반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BS의 경우 '10년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매년 점검하지 않았으며, '14년 재허가 시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15년 실적부터 점검할 예정이며, KNN의 경우 '10년 재허가조건에 따라 '11년에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정하고 '12년 실적부터 적용기로 의결하였으며, '13년 재허가 시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14년 3월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 마련 후 '14년 8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은 재승인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자의 경영조건에 따라 부과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며, EBS의 '14년 재허가조건도 종편PP의 재승인조건과 같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프로그램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편PP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종편PP 재승인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종편PP 재승인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고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 종편PP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늘 의결해 주시면 7월 중 시정명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에서 종편 중 한두 개 회사의 보도편성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결주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없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거기에 대해 시정조치는 하지 않고 이행촉구를 하였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 6월 4일자 보고 안건에서 보도비율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도비율을 낮추라는 이행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 **김재홍 상임위원**

- 권고처럼 한다는 말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가 아니었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권고사항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권고사항이지만 조선방송의 보도편성이 몇 퍼센트였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51%였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51%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51%였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채널A는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44.1%...

○ 김재홍 상임위원

- 44.1% 이상이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번번이 지적당하고 학계나 전문가단체,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인데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편성을 지켜라' 하는 것뿐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분명하게 몇 퍼센트라든가 그것도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도·교양·오락 3개의 장르로만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냥 상식선에서 33%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결주문에 보면 공히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각각 미이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선방송의 경우에는 미이행 금액이 24억원이고, JTBC의 경우에는 438억원입니다. 그리고 채널A의 경우에는 116억원 정도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조선방송은 콘텐츠 투자계획을 많이 한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자기 계획에 대비해서는 95% 정도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자신들이 정해 놓은 목표치,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들으면 '24억원, 제일 적게 미이행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목표치를 따지고 검증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미니멈을 정해서 예를 들면 방송사업 매출총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하라든가 최소한 광고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하라든가 그렇게 정책당국이 정해 주고 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정한 사업계획서상만 따지면 그것은 목표치를 그냥 낮추어도 아무런 지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각각 얼마였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콘텐츠 투자 목표치가 TV조선의 경우 483억원, JTBC가 1,612억원 정도, 채널A가 621억원, MBN이 40억원 정도 됐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400 몇 십억원이면, 예를 들면 JTBC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JTBC의 1/3 정

도의 목표치를 내걸고 했는데 미이행 금액만 놓고 보면 '제일 많이 이행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에 '어린이프로그램을 몇 퍼센트 이상 하라'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시청시간대에 새벽 4시, 새벽 5시에 해서 다 100점 맞고, 90 몇 점 맞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것을 이제야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고쳤습니다.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똑같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콘텐츠 투자 실적이라는 것은 오보·막말·편파방송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시정, 권고도 지난번 이행촉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정명령은 아닙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해서는 이행촉구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도 이행촉구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도 사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심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작년 초에 지적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말·편파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지만 평균 3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역주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게 들어가는 보도분야의 높은 편성을 줄이고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 많이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편성이 높은 보도분야에서 오보·막말·편파방송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콘텐츠 투자계획과 그 이행, 그 목표치에서부터 엄정하게 제도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안은 어쩔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들이 콘텐츠 투자계획을 재승인 받을 때 제출하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승인 조건에 그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라고 부과한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콘텐츠 투자금액이 같은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각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방송과 JTBC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매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선방송의 경우에 2014년도 매출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2014년도에 TV조선은 885억원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JTBC는….

○ 최성준 위원장

- 원래 처음에 계획을 낼 때 얼마였나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획을 낼 때는 704억원 계획을 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704억원, 그다음에 JTBC는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1,798억원 매출을 올리겠다고 제출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그 704억원 중에 콘텐츠 투자를 얼마 한다고 한 것이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704억원 중에서 콘텐츠 투자는 483억원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상에 제출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JTBC는 1,798억원 중에서 콘텐츠 투자는 얼마였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1,798억 중에서 1,612억원을 콘텐츠 투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실제로 자신의 실제 매출계획과 거기에 대한 콘텐츠 투자계획, 그다음에 매출계획과 콘텐츠 투자계획은 재승인 평가할 때 심사가 된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실제 실적을 보면 TV조선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TV조선은 목표가 계획상으로 매출액이 704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885억원을 올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JTBC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JTBC의 목표는 1,798억원이었는데 1,308억원을 올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결국에는 또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콘텐츠 투자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그 비율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단순히 금액이 적다, 많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계획상의 매출액과 거기에 대한 콘텐츠 투자액, 또 실제로 매출액과 거기에 대한 콘텐츠 투자액, 그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게 그 방송이 제대로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도움이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방송사들의 콘텐츠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번 시정명령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사업자들의 판단이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승인 조건의 표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승인조건 세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리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을 보니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판단이 실무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업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종편 3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사실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 힘든 상황 안에서도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성실히 준수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준수'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승인 허가 하는 기간이 3년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3년 기간 중에 매년 중간에 평가를 하는 재승인조건을 뒀는데 '성실히 준수'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업자와 방통위 간에 합의된 의견을 이제는 좀 더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반드시 지켜라'든지 '성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상당히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 그러니 이해해 달라'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하면 죽한 것이지, 당장 시정명령을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나름대로 보니까 사업자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승인하는 조건을 달 때 막연히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 수치를 그대로 수용해 놓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규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승인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JTBC 같은 경우에 보면 지

난 2013년도에 매출이 890억원이었습니다. 890억원이었는데 2014년도 재승인을 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1,612억원을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매출의 2배를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 물론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종편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출 대비 콘텐츠 투자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거의 자본잠식을 다해 갈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좀 더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과연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투자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매출 대비 콘텐츠 투자가 매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수치를 보면 어떤 한 사업자가 자기 총 매출 대비 콘텐츠 투자라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것을 넘어가고 오버를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자칫하면 보여 주기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허가, 재승인을 할 때도 이런 목표수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수치가 좀 더 합리적인 수치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부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에 일부 같은 생각을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JTBC의 경우에 콘텐츠 투자액과 관련해서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너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나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의 경우 '충분히 이행가능하다'고 했고, 특히 지금 계획을 달성 못하고 있는데 매출액 자체도 굉장히 높게 잡았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높은 매출액 하에서는 그런 콘텐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견지했던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실히 이행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을 서로 약간 다르게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이행하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성실히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성실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 촉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안건으로 접수를 해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지금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단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보고안건을 접수한 다음에 각 방송사에 의견을 조회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을 조회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꽤 많은 양의 설명이 저희에게 제출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러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원래 이런 계획으로 하려던 것이 취소가 됐다'라든지 또는 '연기가 됐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것은 나름대로 이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어서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랬는데 저도 같이 의견서를 봤습니다만,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다시 그런 구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또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하여간 나름대로 콘텐츠 투자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방송의 경우에는 제가 쪽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이행실적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대비 비율이라든지 이런거에서 뒤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을 뿐이고,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투자조합에 얼마를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펀드를 통

한 간접투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콘텐츠 투자액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콘텐츠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감안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투자조합 형태로 해서 실제로 방송사는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방영이 된다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콘텐츠 투자액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방송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외주나 직접제작이나 구매했던 부분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프로그램이 설사 방송이 되더라도 그것은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액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이군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쪽 살펴본 것처럼 종전에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일단 비율이 미달되지만 그 비율 미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가 검토한 것이 맞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성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쪽 검토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고삼석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PP들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그것대로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행정행위는 법에 기반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직접투자, 간접투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펀드 등을 통해 제작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는 계획과 '콘텐츠에 대해서 직접 얼마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상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계획서상에서 집계해 주는 부분은 조선방송이 주체가 되어서 구매를 한다든가 외주를 한다든가 자체제작을 한다든가 이 부분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체, 펀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잡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는 펀드를 통한 투자계획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방송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일 텐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종편들이 투자계획 미이행, 그다음에 재방비율 미준수로 해서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받은 것이 첫 번째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닙니다. '12년 실적 부분에 대해서 '13년 8월 23일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최초 승인기간 3년 동안 대부분의 종편PP들이 최초 제출했던 투자계획을 미이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 미이행에 대한 점검과 제재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입장과 종편사들 간의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것이 성실한 이행에 대해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편들은 성실한 이행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완전한 이행'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적으로 보면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있는 재승인조건 이행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지금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들의 재승인조건 첫 번째를 읽어주시겠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조건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3개 종편사들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겠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직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완전한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재승인조건을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 저희가 완전한 이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2년도 재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에 대해서 종편 4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판부의 판단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대로 완전하게 이행을 해야 하고, 재방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는 시점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종편 4사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은 승인조건이 아니라 권고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통위가 종편사업자 도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볼 때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승인조건은 단순한 권고적 의미가 아니라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의 승인조건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제가 달리 해석한 것은 없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성실히 이행하라는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내린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종편사업자들 일부가 '100% 완전한 이행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나, 지금 현재 계획도 최초 사업계획 대비, 투자계획에 대비해 보면 1/3이 축소가 됐고, 많은 경우 절반 가까이 투자계획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 축소된 투자계획마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로서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적 사업자로서 정부와의 약속, 그 다음에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책무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준비된 의결주문 안건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다만, 좀 더 분석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투자목표액이 적은데도 다 달성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다 이행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JTBC 콘텐츠 투자계획액이 너무 높은데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이행실적을 보면 비율은 낮지만 절대액수는 또 높습니다. 다른 종편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다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심인들의 주요 의견들이 다 작년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영이 어려웠다고 하지요. 그런데 매출액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다 초과달성했네요. 다가 아니라 TV조선과 채널A는 초과달성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자신들의 매출액 목표치에 25% 이상이나 초과달성했습니다. 180억원 안팎의 초과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 투자액을 매출액 대비로 규정해 놓았으면 초과달성한 만큼 25% 이상 콘텐츠 투자비율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가령 50억원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 200억원 정도 미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놓은 사업계획서 말고 방송사업 총 매출액이든지 광고 총 수주액에 대비해서 콘텐츠 투자 목표치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해야 보도 편성비율을 낮추라 하는 권고인지 조건부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오락·교양 쪽에 투자를 해야 보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도 분야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엄정하게 하게 계속 권고하고 점검을 해서 콘텐츠 투자를 높여 주어야 교양과 오락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보도비율이 낮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보·막말·편파방송이 주로 나오는 보도 편성비율을 낮추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종편으로 갈 수 있게 정책을 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더 검토하고 앞으로 정책을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6월 4일 종편의 2014년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에서는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점검했던 것이 종편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 이행여부였습니다.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당시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종편들의 오보·막말·편파방송이 감소하기는커녕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에 관련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이행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이행촉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이행계획 접수를 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 이 계획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행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V조선의 경우에는 심의제제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3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저격수>, <뉴스1>, <황금편지> 3개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건수가 57% 정도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TV조선에서는 심의제제를 많이 받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자체심의규정이나 출연자심의협의체 이런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도 보도국 내에 사실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성보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팩트 체크, 그다음에 보도원, 취재원 부분을 3단계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도 사실검증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원래 1명이 CP가 이 부분을 검증하던 부분을 2인 이상 교차 복수 검증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출연자 사전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전인터뷰를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방송책임자 내부 징계기준 강화 부분들도 개정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PP들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 이행실적 점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실시를 했고, 지금 또 금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하신 대로 종편들에 대해서는 사실검증시스템의 강화, 진행자·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교육 내실화, 오보·막말·편파방송 책임자에 대한 방송사 내부 징계 강화 및 제재기준 명확화 등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막말·편파방송이 집중된 프로그램 몇 개 폐지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종편방송을 보는데, 여전히 특정 종편의 경우에는 막말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선정 문제나 패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강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개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TV조선의 경우에는 출연자 심의협의체 운영규정 같은 것을 제정해서 출연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출연금지를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JTBC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시사·보도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해서 공정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4단계 검증을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채널A 같은 경우에도 시사토크 프로그램 대상자는 사전 인터뷰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현재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견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종편방송사들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재승인 심사나 또 그 전에 방송평가 등을 통해 철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지향을 떠나서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합리성을 갖춘 시청자라면 일부 종편과 보도PP의 현재와 같은 방송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할 종편이 사회적 흥기로 변해 가고 있다', 심지어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종편PP나 보도PP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지만 금년부터는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 그다음에 이행을 촉구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저희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지적대로 준비해 주시는데, 다만 한두 가지는 조금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편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먼저는 '종편들이 전혀 그것에 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승인할 때 이런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들을 나름대로는 종편들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2014년도에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강력한 이행촉구를 하게 된 것은 소위 제출된 계획대로는 다 이행을 한 것인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방심위에서는 오히려 더 종전보다 오보·막말·편파방송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계획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이행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행촉구를 한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 부분에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런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업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방송통신위원회로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행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면 그것이 결과로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해서 심의를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과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계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상반기에 또 집계를 할 것이니까 과연 그런 프로그램들이 폐지됨으로써 오보·막말·편파방송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판단을 바꾸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면 저희가 주문했던,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진행자·출연자에 대해서 사전모니터링, 교육 내실화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일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과 그 패널들은 오보·막말 그리고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도 심의 요청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개선방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그것을 성실히 이행했다, 그것이 나중에 객관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편성 TV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왔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보고를 받고 강력하게 이행촉구를 한 이유도 나름대로는 이행을 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심의건수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행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고 위원님과 제가 의견이 같은데, 다만 ‘전혀 노력을 안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도하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1시간째 참석하는데 오늘 회의에 참석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고 위원님은 3번 의견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김재홍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저에게 한 번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준비한 조치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왜 이렇게 피심인과 위원님

들 간에 성실한 이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니까 방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허가, 재승인이 3년, 5년 단위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허가권자인 방통위도 그렇고 대상자인 방송사업자들도 그렇고 재허가조건, 재승인조건 베이직에 대해 조금, 개념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업 허가라면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 허가라면 허가는 한 번 해 주면서 허가조건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조건 이행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전제로 허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바로 승인 취소가 들어가기 전에 시정명령이다, 거기에 만약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일종의 듀프로세스(due process)로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법에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뿐이지, 그 정신 자체는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용어에 따라서 ‘성실히’ 이 말이 붙으니까 자칫 이렇게 보면 그것이 꼭 이행을 안 해도 되는 듯한 그런 어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종편뿐만이 아니고 모든 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 재허가나 재승인할 때 그 조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고 명확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이행할 것’ 앞에 붙는 어떤 수식어를 앞으로, 저는 종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후단에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금년 말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2015년 말까지 투자를 하라’, ‘이행을 하라’ 이런 시정명령인데 2015년 것을 굳이 넣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꼭 그 말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명령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이것으로 끝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만약에 종편 3개사 중에 어느 누가 2015년도 콘텐츠 투자금액을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을 못 하겠으니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물론 사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2014년도 것이 2015년도로 이렇게 넘어와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보나..., 그러면 금년에 소화해야 할 투자금액을 또 이월시키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편사업자들이 그런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앞으로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잘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겠지만. 여하간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시정명령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히 준수한다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확한 의미를 한 번 더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성실한 준수의 의미와 지금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성실한 준수의 의미는 분명히 제가 볼 때도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성실히 준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각각의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건을 달 때는 사업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지,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누구든지 각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의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고삼석 위원님께서 평소답지 않게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방통위가 언론사, 방송사의 편성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종편을 마치 '사회적 흥기'라고 하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과연 우리 행정부 차관의 입에서 언론사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내용에 관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분명히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의 한 위원회로서 언론에 대해서 공정성 부분에 관해서 특히 우리가 발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나 또는 정치권에서나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부에서 언론에 대해서 내용의 공정성 부분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듣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 위원님께서 아주 종편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느낌을 표시하시기에 저로서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좀...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먼저 하시겠어요?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논의의 방향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에 관한 시정명령을 논의하는 것인데 마치 지금 이 자리가 종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안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논의해서는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 안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됐고….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입장은 해명해야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이 최근에 아주 강해지셔서….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발언을 하실 것까지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흥기’라고 이렇게 단언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부 종편의 보도내용과 행태와 관련해서 밖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적 흥기여야 할 방송이 사회적 흥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사회적 흥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방송내용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또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성실히'가 무슨 의미냐? 글썬요. 법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라면 100% 이행하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적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부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의 100%를 다 이행하라' 하는 것이 성실한 이행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상의 매출규모를 훨씬 초과해서 실적을 달성한 방송사는 종편 2개사 외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정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개 종편이 자신들이 정해 놓은 매출액보다 25% 이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콘텐츠투자액도 올려서 이행하는 것이 성실한 이행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만 100%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업의 총 수익액이나 총 매출액이나 광고매출액에 대비한 콘텐츠 투자비율, 콘텐츠 투자액 이것을 우리가 놓고 평가를 해야 한다,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성실한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삼석 위원 본인께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현재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방심위의 심의조치, 제재와 행정지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냐, 흥기냐? 이것은 고삼석 위원 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밖에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룹에서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고 소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캐비닛 멤버는 아닙니다. 여기는 정부기구지만 독립된 정책기구로서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 교류해야 하고, 전문그룹의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직 공직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깥의 여론층이, 전문가층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인용할 때는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방송 언론을 표방하면서 보도분야를 그렇게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언론이라면 정말 사회적 공기인데 그것이 흥기로 변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많은 지식인들이 하고 있다, 그것을 여기 와서 인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상임위원의 의무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재승인조건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의 의미는 제시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입니다. 즉, 완전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고, 다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이것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비록 수치상으로 100%가 아니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고려해 줄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편 3사의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의견들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 허원계 부위원장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편 3사 중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집행된 부분을 미집행된 부분에 관해서 내년에 반드시 집행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 최성준 위원장

-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 허원계 부위원장

- 올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과가 되면, 지금 JTBC 같은 경우에는 438억원이 미달되어 있고, 채널A가 116억원이 미달되어 있고, TV조선은 24억원입니다만, 이 2개사가 과연 이것을 이행을 하느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특히 JT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올해 이행될 부분에 합쳐지게 됩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각 종편사가 판단해서 그것이 이리이러한 사정 때문에 올해…,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계획만 이행하는 것도 참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작년의 미이행분이 더 합쳐졌을 때는 ‘이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정도는 더 이행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더 이행하기 힘들다’라든지, 합리적인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준비해서 콘텐츠 투자계획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이나 주요내용의 변경을 신청해 오면 그때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의 길을 완전히 막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2014년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2015년에 합쳐서 꼭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사정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유연성 있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은 표현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5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저희 회의의 내용이 종편사에 전달이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

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콘텐츠 투자금액이 2014년도 것이 2015년에 합쳐져서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2015년에 콘텐츠 투자계획을 줄이겠다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이행해야 할 부분이 이만큼인데 사정이 이만저만하고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더해졌으니까 더해진 것만큼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정명령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20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할 것' 여기에 후단을 쓸 필요가 있는지를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 금액을 다 합쳐서 2015년 12월 말까지 이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위원장님도 이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인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 '15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3사
과징금 (안건, '16.8.18)**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의안번호 | 제2016 - 46 - 176~178호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결일자 | 2016. 8. 18. | |
| 공개여부 | 공개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 -

| | |
|-------|------------|
| 제 출 자 | 위원장 |
| 제출일자 | 2016. 8.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 -

<2016. 8. 18.(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의안번호 | 법인명 (채널명) | 과징금 부과(안) |
|---------------|--------------------|----------------------|
| 제2016-46-176호 | (주)조선방송 (TV조선) | ·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 |
| 제2016-46-177호 | (주)제이티비씨 (JTBC) | ·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 |
| 제2016-46-178호 | (주)채널에이 (채널A) | ·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 |

2. 제안이유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4. 3.19 종편PP 3사(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조건 등 부과
- '15. 2~6월 종편PP 4사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 '15. 7.30 종편PP 3사(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에 시정 명령 통보

- '16. 2~6월 종편PP 4사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 '16. 7. 20 종편PP 3사(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에 행정 처분 사전통지
- '16. 8. 4 종편PP 3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4. 시정명령 내용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 (시정명령('15.7.30))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에게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을, (주제이티비씨)에게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과 재방비율 준수를 명함

| 법인명(채널명) | 시정명령 내용 |
|-------------------|---|
| (주조선방송 (TV조선) |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 (주제이티비씨 (JTBC) |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고, '14년 재방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서 제시한 '15년 재방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주채널에이 (채널A) |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 ('15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법인명(채널명) | 시정명령 이행 내용 |
|-------------------|---|
| (주조선방송 (TV조선) | · 콘텐츠 투자 : 계획 58,064백만원 / 실적 47,602백만원 (82.0%) (미이행 금액 : 10,462백만원) |
| (주제이티비씨 (JTBC) | · 콘텐츠 투자 : 계획 242,497백만원 / 실적 130,660백만원 (53.9%) (미이행 금액 : 111,837백만원) · 재방비율 : 계획 47.2% / 실적 48.0% |
| (주채널에이 (채널A) | · 콘텐츠 투자 : 계획 82,062백만원 / 실적 60,072백만원 (73.2%) (미이행 금액 : 21,990백만원) |

5. 피심인 의견

- 재승인조건에 ‘성실히 준수하고’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 없음에도, 재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림(주)조선방송 · (주)채널에이)
- 주어진 여건 내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주)조선방송), 2014년과 2015년 계속되는 영업적자 상황에서도 매출총액보다 9%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한 점을 감안해 줄 것(주)제이티비씨)
 - 재방비율은 콘텐츠 투자와 연관이 있으며, 목표 대비 98.3%를 달성한 만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주)제이티비씨)
- 재승인조건을 위반하였더라도 위반의 정도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반하며(주)채널에이),
 - 지상파 등 타 방송사업자에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함(주)조선방송 · (주)채널에이)

6. 검토 의견

- **(제재여부)** 피심인들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시 피심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시정명령은 재승인조건을 이행하라는 법적 의무 자체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피심인들이 재승인조건을 위반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재조치가 불가피함
- * 종편PP 과징금 취소소송 2심('16.1.13) 및 3심('16.5.24) 판결, 종편PP((주)조선방송)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16.6.24) 판결
- **(제재방법)**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승인유효기간 단축 3개월 단축이 가능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동법 제19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함

- 승인유효기간 단축은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미가 없고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제재수준)** 방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며, 사업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기준금액 3,000만원에서 가중 또는 감경(±50%)이 가능함

-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과 콘텐츠 투자금액, 재방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편PP 3사에 각각 4,500만원(50% 가중)을 부과함

※ 2012년도 종편PP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14.1.28 의결) 시 사업 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종편PP 4사에 각각 과징금 기준금액 3,000만원에 25% 가중한 3,750만원을 부과

7. 기타 사항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 관련)

○ 종편PP 재승인조건에 따른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 4사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외형상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경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출연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조치 건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종편PP '14년~'15년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현황 >

(단위 : 건,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분 | TV조선 | | | | JTBC | | | | 채널A | | | | MBN | | | |
|------------------|------|------|----|-----|------|------|----|----|-----|------|----|----|-----|------|---|----|
| | '14 | '15년 | | | '14 | '15년 | | | '14 | '15년 | | | '14 | '15년 | | |
| | | 상 | 하 | 계 | | 상 | 하 | 계 | | 상 | 하 | 계 | | 상 | 하 | 계 |
| 총 심의건수 | 110 | 55 | 52 | 107 | 24 | 12 | 12 | 24 | 71 | 43 | 28 | 71 | 27 | 25 | 8 | 33 |
|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 | 95 | 77 | 50 | 127 | 16 | 4 | 3 | 7 | 54 | 50 | 17 | 67 | 18 | 8 | 5 | 13 |
| - 법정제재 | 18 | 11 | 10 | 21 | 8 | 3 | 1 | 4 | 10 | 8 | 5 | 13 | 4 | 2 | - | 2 |
| - 행정지도 | 77 | 66 | 40 | 106 | 8 | 1 | 2 | 3 | 44 | 42 | 12 | 54 | 14 | 6 | 5 | 11 |

※ 오보·막말·편파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건수로 산출

○ 2015년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주)조선방송은 95건에서 127건으로, (주)채널에이는 54건에서 67건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타 종편PP에 비해서도 현저히 많으므로,

-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철저한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함

*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15.6.8)

8. 향후 계획

○ 행정처분 통보 및 이행촉구 : '16. 8월 중

- 붙임 1. 피심인 제출 의견
2. 종편PP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3. 관련 법령. 끝.

피심인 제출 의견 (요약)

< TV조선 >

| 구 분 | 의 건 |
|----------|--|
| 콘텐츠 투자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조건에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여건 내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피심인과 비슷하게 ‘제작비 투자를 계획대로 준수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받은 EBS의 경우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었을 뿐 재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심인과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중간에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음 |

< JTBC >

| 구 분 | 의 건 |
|----------|--|
| 콘텐츠 투자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14년과 '15년 계속되는 영업적자 상황에서 2년간 매출 총액 3,281억원보다 9% 많은 3,580억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출하여 콘텐츠 투자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만큼 매출액보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더 지출한 지상파 또는 종편PP 사업자는 없음 ○ 피심인은 자체시설 및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간접비용(콘텐츠 투자금액에서 제외)이 1,100억원으로 타 종편PP 3사의 '14년도 콘텐츠 투자 합계인 1,004억원보다 높음 ○ 미이행 콘텐츠 투자 금액은 콘텐츠 제작의 축소가 아니며 경영 여건과 방송시장 환경에 따라 드라마 편수를 줄이고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드라마가 예능보다 회당 표준제작비가 5배 높음 |
| 재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방비율은 콘텐츠 투자와 연관이 있으며 목표대비 98.3%를 달성한 만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 채널A >

| 구 분 | 의 건 |
|----------|--|
| 콘텐츠 투자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조건의 ‘성실히 준수’는 완전한 이행을 요하는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려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 ○ 재승인조건을 위반하였다라도 시정명령은 위반의 정도 및 이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 반하며, 지상파 및 흡소필방 방송사업자는 재승인조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함 |

중편PP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 방통위는 중편PP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14.3.19, 11.18)

| | |
|----------------------------|--|
| 재승인 조건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2.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 권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 (주)매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관련법령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 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9조(시정명령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 ⑤ (생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의2]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 | |
|-----------------------------------|---------------|-------------------------------|----------|
| 2. 개별기준 |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 거.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별표 5]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 | | |
|---|-----------|--|--|
| 1. 일반기준 | | | |
| <p>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p> | | | |
| 2. 개별기준 |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 |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전송망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 파.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 5,000만원 | 3,000만원 |

**6. '15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3사
과징금(속기록, '16.8.18)**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8. 18.(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2016-46-176~17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에 대해서 각각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14년 3월 19일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 종편PP 3사에 대해서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15년 2월에서 6월까지 종편PP 4사에 대한 201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고, '15년 7월 30일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년 2월에서 6월까지 종편PP 4사에 대해 2015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고, 2016년 7월 20일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에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바 있습니다. 시정명령 내용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입니다. '15년 7월 30일 내린 시정명령은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에게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을, (주)제이티비씨에게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과 재방비율 준수를 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조선방송은 콘텐츠 투자계획 580억원에 대해서 실적은 476억원 정도로 이행률은 82%입니다. (주)제이티비씨는 콘텐츠 투자의 경우는 계획이 2,424억원 규모인데 반해 실적은 1,306억원 규모로 이행률이 53.9%였고, 재방비율의 경우는 계획은 47.2%인데 실적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주)채널에이는 콘텐츠 투자계획이 820억원 규모인데 비해 실적은 600억원 규모로 이행률은 73.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재승인조건에 '성실히 준수하고'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 없음에도, 재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재승인조건을 위반하였더라도 위반의 정도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반하며, 지상파 등 타 방송사업자에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재여부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시 피심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시정명령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라는 법적 의무 자체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방법입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방송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승인유효기간 3개월 단축이 가능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인 유효기간 단축은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미가 없고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재수준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징금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며, 사업규모와 위반행

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서 50%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과 콘텐츠 투자금액, 재방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편PP 3사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50% 가중한 4,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종편PP 재승인조건에 따른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 4사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외형상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경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출연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조치 건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이행추구에도 불구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주)조선방송은 2014년 95건에서 2015년 127건으로, (주)채널에이는 54건에서 67건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타 종편PP에 비해서도 현저히 많으므로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추구하고, 철저한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8월 중에 종편3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 피심인 의견을 보면 첫 번째, 재승인 조건에 '성실히 준수하고'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준이 제시된 바 없다, 이것이 이번에 낸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번에 제출한 의견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성실한 준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기존 2014년에 부과한 과징금에 관련된 취소 소송에서 다툴 바도 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를 '성실히 준수하라'는 100%를 완벽하게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판단한 바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승인조건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 의무로 보는 것입니다. 방송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권을 받을 때 우리가 부과하는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라는 의미는 바로 100% 준수, 100% 이행하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90 몇 퍼센트 되더라도 성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사업자들은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또 이행이 안 됐을 때 제재하는 기준은 100%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기준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4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송 진행 상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5년 7월에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서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 (주)조선방송은 바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주)채널에이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조선방송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즉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성실히 준수하고' 부분이 그 정도면 충분히 준수가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4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채널에이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판결이 예상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콘텐츠 투자에 대한 실적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JTBC 같은 경우는 실적만 보면 투자액은 2,40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행률은 비록 53.9%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1,30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두 방송의 실적은 476억원, 또 600억원에 불과합니다. JTBC가 약 2, 3배 정도 많은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콘텐츠

투자가 많은 방송사와 적은 방송사의 평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정책이라고 볼 때 방송의 경쟁력도 높여줄 수 있고, 또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의 질이 그만큼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과징금 부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니까 제재수준이라는 항목에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 콘텐츠 투자금액, 재방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사에 공히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콘텐츠 투자를 많이 했던 방송이 비록 이행률은 낮지만 투자금액을 고려해서 2, 3배나 많은 투자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이렇게 과징금이 같은 액수가 나왔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TV조선이나 채널A가 JTBC에 비해서 과징금 금액이 낮아야겠지만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2배 이상 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형량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일한 과징금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어긴 부분이 있는데 재방비율을 어겼습니다. 타 방송은 콘텐츠 투자만 우리가 시정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가 재방비율도 어겼지만 이런 콘텐츠 전체 액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각 종편 방송사들이 종합편성이라는 승인조건에 걸맞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종합편성으로서 충실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종편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성장을 했고,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력이 미치는 과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공적 책임도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현황이 작년도에 5페이지 하단에서 나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작년까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심위의 올해 상반기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며칠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편프로그램과 관련한 민원이 1,021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1년 전 지난 상반기지요, 550건보다도 1,021건이니까 무려 85.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내용이 유형별로 보니까 공정성 위반이 504건으로 49.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올해는 심사대상이 아니고 내년에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만 미리 나온 보도를 보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공적 책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겠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위반도 176건이나 됩니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출연자의 발언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심위 올해 상반기 민원접수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작년에도 공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행촉구가 나왔었지요?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나왔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올해도 이행촉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행촉구만으로 과연 이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지켜질 것인가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이미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행촉구 외에는 달리 행정지도를 할 방법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 종편사들이 좀 더 자각을 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노력, 그것이 아주 강화되어야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자가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마구 편파적으로 해서 민심을 오도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점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행정노력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방송사들이 출연진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분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 또는 아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증하고, 또 자율적으로 그것을 걸러내는 방송사의 노력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적을 우리가 받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확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적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재승인 심사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재승인 심사 시에도 방송심의에 대한 실적 부분이 정량적인 평가 감점요인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정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승인 심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심사위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방송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물론 방송평가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방송을 하도록 우리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청률은 그저 이목을 끌고 검증되지 않는 자극적인 언사를 쓰는 방송프로그램에 더 시청률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혹을 방송들이 철저하게 절제를 하면서 방송의 품격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연진을 잘 검증하는 장치가 과연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방송사들이, 사업자들이 깨닫고 자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의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오늘 안건은 종편4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제일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니까,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오보·막말·편파 방송 문제입니다. 5페이지 하단 <표>를 보면 오보·막말·편파 방송, 오보·막말은 공정성 평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공정성 평가는 각기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보·막말, 이것은 그냥 합의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고쳐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지난번 방송규칙 개정에서도 오보·막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정성 평가 부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2배, 1.5배 높이는 것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표>를 보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완전히 후퇴한, 더 악화된 방송이 4개 종편 중에서 2개입니다. TV조선은 2014년 심의조치가 95건에서 127건으로 정말 대폭 증가했습니다. 채널A는 2014년 54건에서 2015년 67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JTBC는 16건에서 7건으로, MBN은 18건에서 13건으로 개선됐다고 할까, 낮아졌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심의조치는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로 나누어지는데 TV조선의 경우 2015년 127건의 심의조치 중에서 법정제재가 21건으로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지도로 별점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행정지도 부분은 별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별점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채널A도 비슷합니다. 67건 중에서 역시 법정제제는 20%도 안 됩니다. 다 행정지도로 그냥 넘겼습니다. 실제 내용이 이렇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방송프로그램의 3대 장르 보도·교양·오락 장르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장르별 구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확인을 못해 봤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보도 분야입니다. 보도 분야가 확실합니다. 여기 시정명령과 이번 처분에서 보도편성 비율을 낮추라는 재승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보도편성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도비율 부분은 애초부터 재승인 조건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촉구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도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토론이 됐었는데 보도 편성비율이 실제로 낮아진 것이냐, 아니면 보도 분야에 들어 있어야 할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대폭 옮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뉴스 말고도 뉴스가 있으면 뉴스해설, 논평, 심층분석, 뉴스의 뒷얘기 이런 것은 보도 분야입니다. 시간차도 그날 뉴스에 대해서 그날 뉴스 심층분석을 하면서 이것은 스트레이트뉴스가 아니다 하고 보도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실사·검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분야 편성비율이 수치로만 낮아진 것이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적어진 것은 아니다,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도 중편인데 종합편성 조화로운 편성이 아니라 보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편성비율이 과도한 보도 분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제일 많이 터지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심의조치를 제일 많이 받은 방송사의 순서로 보도편성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도편성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방송사 순서로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직접 상관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보도편성비율 규제를 매우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 이따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연관해서 콘텐츠 투자액의 규모가 작은 방송사 순서로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관성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과학

적인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권장해야 하고 자기들이 낸 사업계획서도 안 지키면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상관성이 매우 강한 보도편성 비율과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규제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 부분을 보니까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 제작년 처음부터 콘텐츠 투자 목표액에 관해서..., 각 방송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우리는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권장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 품질이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너무 허무맹랑하게 콘텐츠 투자목표액을 높여서 재승인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데 얼마나 큰 뒷받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로서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목표액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액 중 이행비율이 다른 사보다 낮다, 그러나 이행액은 투자액, 절대액은 다른 사보다 2배, 3배 높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행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안 했다고 제재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콘텐츠 투자액과 이행비율을 함께 반영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가 세운 목표를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는 이행율만으로 채점할 것이 아니라 절대액수도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그러면 그 방송사는 보도편성비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책목표대로 간 것입니다. 정책 취지대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장려하고 권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내세운 목표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행비율만 가지고 따지고 제재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방송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JTBC 투자목표액이 조선방송보다는 3배, 채널A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JTBC의 보도편성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2014년, 2015년 23~24%입니다. 23~24%이면 우리가 권장하는 수준 25%, 27%보다 훨씬 낮아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보도 편성비율 40% 안팎을 넘나들 때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보도편성비율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 상관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보·막말 방송은 보도·교양·오락 중에서 보도 분야에서 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고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라도 보도 편성비율 낮추기와 콘텐츠 투자액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펴 나가고, 방송사들이 그렇게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 평가제도가 콘텐츠 투자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실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순히 이행률만 본 것이 아니라 이행금액을 반영해서 과징금 금액을 산정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에 행정처분할 때 그것을 일종의 정상 참작처럼 해서 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처음부터 심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것을 제대로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추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2014년 방통위가 종편4사를 대상으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그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1심은 방통위가 패소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2심과 3심에서 승소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제가 2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길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들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일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승인조건을 원고, 즉 종편사업자들의 주장과 같이 가벼운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업자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할 의도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이후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승인 유효기간 내에는 피고, 즉 방통위가 그러한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계획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방송발전과 공공복리 등의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위원회가 부과한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콘텐츠 투자계획은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종편PP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대한 항목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우리가 최초 종편을 승인해 줄 당시에 그 정책목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정책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

속적으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해서 감독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종편들의 투자계획을 보면 특정사를 빼면 2014년 1차 재승인 심사 당시에 투자계획을 최초 사업승인 대비 최대 2분의 1, 그리고 최소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 준 규모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앞서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보도·시사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재승인 심사는 당초 종편PP 도입 정책 목표, 도입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기타 사항으로 분류한 것은 이것은 재승인 조건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그런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재승인 조건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승인 조건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재승인 조건에서 자기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과연 그러한 자기들의 조치내용이 실질적으로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하고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가적인 이행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코 이것이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편이 올해로 출범 6년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는 JTBC를 제외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3사는 BEP(Break Even Point,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지금 BEP에 거의 근접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방송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공정한 방송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정성 시비가 지속적인

로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막말, 선정적인 방송 그리고 오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은 종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종편의 정상화,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막말·편파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행자나 패널들을 지속적으로 방송에 출연시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막말, 편파 방송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진행자나 패널에 대해서는 종편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 자체적으로 낸 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편에서는 자체적으로 외부 출연자에 대한 심의, 제재기준을 가지고 있고 TV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법정제재를 2회 받은 출연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나 출연정지, 출연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진행자에 대해서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 같은 경우에 TV조선은 없었고, 채널A와 MBN 같은 경우에는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종편사나 진행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진행자가 최근에 출연자에 대해서 “성매매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8월 4일 날 방송분에 나타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자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전에 타 종편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종편에 오기 전에 타 종편에서 막말·편파 방송으로 해서 15차례 이상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영입해서 시사 라이브쇼 진행을 맡겼습니다. 이분이 진행을 맡자마자 지난 한 달 동안 무수히 많은 편파·선정·막말방송에 가까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타 종편에서 막말·편파 방송을 해서 하차한 진행자를 다른 종편이 또 기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진행자나 패널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위원회에서 기용해라,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종편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제출한 계획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 계획을 내용적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서 방송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행촉구를 하고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특정 종편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철저한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종편 관련된 안건이 이번이 세 번째 같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이 직전에는 재승인 세부계획 그리고 그전에 또 뭐가 하나 있었지요? 방송평가 할 때 또...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종편과 관련된 안건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의 유사한 우려점이나 문제점이나 이슈가 계속 지적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편이 출범한 이후 매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 5년 정도 됐다고 치고, 지난 5년 동안 오늘 자료에도 보면 콘텐츠 투자실적이라든가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승인조건이나 권고사항 내용에 보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등등 방통위가 그간에 승인조건이라든지 권고사항을 통해서 매체별로 유의해서 이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쭉 있더라고요.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질적·양적으로 한 번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우리 위원회 내에서 과거 5년 동안에 방통위가 각종 행정절차,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종편들에게 제시했던 사항들과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실적, 현황을 쭉 분석해서 앞으로 방통위는 종편에 대해서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평가 내용을 논의할 때도 그렇고, 또 재승인 심사 세부기준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시정명령에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방통위가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계기가 있을 때마다 조치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로 봤을 때 지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닌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화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하는 실천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사무처와 위원님들 간에 논의, 토론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끝으로 방송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방송정책 규제와 관련해서 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요.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업무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 보니까,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과징금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방송정책, 방송에 대한 우리의 규제업무, 크게 2가지이지요. 진입규제라는 것이 있고, 사후 행위규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작년에도 시정촉구 공문도 보냈고, 또 시행계획서 제출요구하라는 안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데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보도편성비율을 낮춰 달라고 계속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 부과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투자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티타임에서도 논의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정말 하기 어려운 고언을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끊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이내 업무정지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진입규제를 잘못해서인지, 하여튼 방송사들이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책 규제 그리고 촉구 공문을 보내도 이것이 잘 먹히지 않으면 사후 행위규제로서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후 행위규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재승인 심사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종편4사와 보도전문PP 2개사 6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인 것 같은데 그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허가 거부는 현실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후의 보루는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고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말 지금부터 내년 1월에 있을 종편4사, 보도채널 2사 6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를 잘 지켜보고 그때 심사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지적하고 또 시청자들이 못 견뎌하고 지겨워하고 그런 민원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업무정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정비해서 방송사업을 새롭게 시작해라'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못하는데, 왜 못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10여년 전에 지상파 방송사도 재허가 거부에 준하는 결정이 있었습니까, 2004년 말, 2005년도에도 방송위원회와 국회에서... 이것은 국민 여론과 시청자들과 또 방송정책의 기구인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너무한다, 거꾸로 가고 있다, 아무리 지적하고 시정요구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써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해야 할지 검토해야 할지, 하여튼 그것도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검토할 단계가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할 수 없지', 놔두면 그것을 악용하는 방송사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할 수 있어' 하고 규제기구가 적극 대처해도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잘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특히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토론회를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저

도 여기에 꼭 토론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업정지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어서 이행촉구가 올해도 또 나가는데 내년에 이것이 우리가 다시 평가할 때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저 사업자가 돈이 드는 일이고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되어야 그런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재하는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치열하게 서로 고민해 보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건을 검토하면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종편이 6년차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줄어들지 않을까?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 즉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아주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의 정책목표, 종편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보·막말·편파 방송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종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을까? 결국 이것이 시청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렇게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일삼는 진행자나 패널을 출연시키지 않으면 과연 종편이 운영이 안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상파들은 이런 진행자나 패널 없이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또 역으로 봐서 과연 이런 진행자나 패널들이 지금 문제되는 이러한 막말·편파 방송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지상파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점검하는 계기가 있어서 종편들이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심하고 이것이 개선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종편 내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꽤심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종편들이, 그리고 종편들의 대주주들이 다 우리나라 언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 종편은 이렇게 운영될까? 과연 그것이 종편사들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위처럼 규제하고 또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그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우리가 제재하고 이것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현실에 반영해서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내년 재승인 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편 정책에 대한 평가, 종편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정책에 다시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이 종편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서 이제는 시청률도 많이 올라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내용면에 있어서 과연 실질적인 평가를 했을 때 품격이라든지 수준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에 따라서 종편들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지금 법적으로 시정명령 또 행정지도적인 성격으로 이행촉구 등을 해 오고 있는데, 그에 관한 개선이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 번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년 초에 있을 재승인 심사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초반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콘텐츠 투자금액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1개 더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상 과징금 기준금액이 3,000만원이고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사 모두에 대해서 50% 가중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주신 말씀들은 종편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15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MBN 시정명령
(안건, '16.8.18)**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의안번호 | 제2016 - 46 - 179호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결일자 | 2016. 8. 18. | |
| 공개여부 | 공개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

| | |
|-------|------------|
| 제 출 자 | 위원장 |
| 제출일자 | 2016. 8.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

<2016. 8. 18.(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 의안번호 | 법인명 (채널명) | 시정명령(안) |
|---------------|------------------|---|
| 제2016-46-179호 | (주)매일방송 (MB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및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6년 콘텐츠 투자 계획 금액과 함께 '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 '15년 재방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서 제시한 '16년 재방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것 |

2. 제안이유

-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4.11.18 (주)매일방송(MBN)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조건 등 부과
- '15. 2~6월 종편PP 4사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 '15. 6. 8 (주)매일방송(MBN)에 이행촉구*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15년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

- '16. 2~6월 종편PP 4사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 '16. 7.20 (주)매일방송(MBN)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 '16. 8. 4 (주)매일방송(MBN),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4.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

-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및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및 2015년 재방비율 미이행
 - (콘텐츠 투자계획) 2015년에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 178백만원과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63,296백만원을 합하여 총 63,474백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49,995백만원(78.8%)을 투자
 - (재방비율) 2015년 재방비율 계획 49.5%, 실적 52.0%으로 미이행
- (피심인의 주요 의견)
 - 재승인조건의 '성실한' 이행은 반드시 100%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방송광고시장 등 경영여건과 매출액,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하여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당사는 출범 이후 누적된 대규모 적자와 2015년에도 지속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49,995백만원의 콘텐츠 투자를 집행하였음
 - 2014년, 2015년 미이행 금액과 2016년 계획 금액을 2016년 내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송제작의 특성상 프로그램 기획에서 방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어 5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정 명령이 요구하는 투자금을 모두 집행할 수 없음

5. 검토 의견

- 종편PP 재승인조건에 따른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피심인이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여 재승인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함

6. 향후 계획

○ 시정명령 통보 : '16. 8월 중

- 붙임 1. 피심인 제출 의견
2. 종편PP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3. 관련 법령. 끝.

피심인 제출 의견 (요약)

| 시정명령 대상 | 의 건 |
|--------------------------|--|
| <p>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조건의 ‘성실한’ 이행은 반드시 100%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방송광고시장 등 경영여건과 매출액,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출범 이후 누적된 대규모 적자와 ’15년에도 지속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49,995백만원의 콘텐츠 투자를 함 ○ ’14년도, ’15년도 미이행 금액과 ’16년도 계획 금액을 ’16년도 내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제작의 특성상 프로그램 기획에서 방송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5개월이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정명령이 요구하는 투자금을 모두 집행할 수 없음 |

중편PP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 방통위는 중편PP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14.3.19, 11.18)

| | |
|----------------------------|--|
| 재승인 조건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2.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 권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 (주)매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관련법령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 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9조(시정명령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 ⑤ (생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의2]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 | |
|-----------------------------------|---------------|---|--|
| 2. 개별기준 |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방송사업자(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신고·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 | 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신고·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 거.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별표 5]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 | | |
|--|-----------|--|--|
| 1. 일반기준 | |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2. 개별기준 |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 |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전송망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 파.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 5,000만원 | 3,000만원 |

**8. '15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MBN 시정명령
(속기록, '16.8.18)**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8. 18.(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2016-46-17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대상법인은 ㈜매일방송입니다. 시정명령(안)은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및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6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과 ‘15년 재방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6년 재방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 11월 18일 ㈜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조건을 부과하고, ‘15년 2월에서 6월까지 2014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6월 8일 ㈜매일방송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행촉구한 내용은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15년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년 2월부터 6월까지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고, 7월 20일 ㈜매일방송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은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및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및 2015년 재방비율 미이행입니다. 콘텐츠 투자계획의 경우 2015년에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 1억 7,800만원과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632억 9,600만원을 합하여 총 634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49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방비율은 2015년 재방비율 계획이 49.5%인데 실제로는 52%로 미이행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재승인조건의 ‘성실한’ 이행은 반드시 100%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방송광고시장 등 경영여건과 매출액,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하여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출범 이후 누적된 대규모 적자와 2015년에도 지속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499억여원의 콘텐츠 투자를 집행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14년, 2015년 미이행 금액과 2016년 계획 금액을 2016년 내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송제작의 특성상 프로그램 기획에서 방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어 5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투자금을 모두 집행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종편PP 재승인조건에 따른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피심인이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승인조건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8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 다른 종편3사에 대해서 했던 것과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나가는 것이고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피심인의 의견 중에 2015년 미이행 금액을 2016년 내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시간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판단 대상이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추구를 하였고, 다른 종편3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즉 시정명령을 어떻게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세워 왔다면 저희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더라도 그 시정명령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의견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는데 장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편에도 과징금이 부과 됐고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서도 당연히 이런 이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명령이 나가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피심인의 의견 중에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중에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적 약속입니다. 그런 공적 약속을 다만 시기상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여러 번 사업자에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가 가기에는 결정이 따르고 심의가 있어야 하는 공식 절차가 시간이 걸리지만 구두로라도 사업자에게 계속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했고 충분히 사전에 MBN 측에서 저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못 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피심인 의견에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그런 지도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번 건은 MBN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2014년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시 권고사항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이것이 두 번째에 있고, 세 번째로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건 본문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재승인 조건 미이행에 대한 점점이라서 권고사항에 대한 점검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권고사항 실적에 대해서 점검하지는 않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아서 나름대로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소수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나름대로 공익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다른 종편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편성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 일정 정도 공익성을 가미합니다. 소수자 계층이라든가 특정 계층에 대해서 한다거나 특정 주제를 다룬다거나,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예능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방송사에서는 ‘이것

은 공익적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나 사업계획서에 했던 계획들을 이행했다고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순수 공익적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고도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분류되듯이 사업자도 계획서에 냈고 우리도 재승인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내는 이런 공익적 프로그램은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 공익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편성됐느냐는 것입니다. 타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점검이 안 됐다면 실질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공익성이 가미된 것과 별개로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계획은 어느 정도 이행이 했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 취지 아시겠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주)매일방송이 이 권고사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어차피 재승인 심사 때도 필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재승인 심사 기간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9. '16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안건, '17.2.7)**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보고일자 | 2017. 2. 7. | 보 고 사 항 |
| 공개여부 | 공개 | |

종합편성 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 |
|------|------------|
| 작성과 | 방송지원정책과 |
| 작성일자 | 2017. 2. . |

종합편성 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17. 2. 7.(화),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보고사유

-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16년도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방향을 보고하기 위함

※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제99조(시정명령 등) 및 종편PP 재승인 조건에 근거

2. 주요경과

- '14.3월,11월 종편PP 4사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TV조선·JTBC·채널A('14.3.19), MBN('14.11.18)
- '15. 6. 8. 종편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촉구
- '15. 7. 9. 종편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의결
- '16. 8.18. 종편PP '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TV조선, JTBC, 채널A) 및 시정명령(MBN) 의결
- '17. 1.31. 종편PP 4사 '16년도 이행실적 제출

3. 이행실적 점검대상

- '16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 사업계획 상의 '16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
- 사업계획 상의 '16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 '16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35% 이상) 이행 여부

4. 이행실적 점검결과

① '16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 종편PP 4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16년 8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이행촉구에 따른 이행계획 포함)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 건수는 증가했음

- 다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TV조선 7건, 채널A 4건 감소하고, JTBC 1건, MBN 1건 증가하였음

< 2014년~2016년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법정제재 현황 >

(단위 : 건,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분 | TV조선 | | | | | JTBC | | | | | 채널A | | | | | MBN | | | | |
|----------------|------|-----|------|----|-----|------|-----|------|----|----|-----|-----|------|----|----|-----|-----|------|----|----|
| | '14 | '15 | '16년 | | | '14 | '15 | '16년 | | | '14 | '15 | '16년 | | | '14 | '15 | '16년 | | |
| | | | 상 | 하 | 계 | | | 상 | 하 | 계 | | | 상 | 하 | 계 | | | 상 | 하 | 계 |
| 총 심의건수 | 110 | 107 | 66 | 67 | 133 | 24 | 24 | 7 | 34 | 41 | 71 | 71 | 42 | 45 | 87 | 27 | 33 | 18 | 22 | 40 |
|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 | 95 | 127 | 102 | 59 | 161 | 16 | 7 | 0 | 29 | 29 | 54 | 67 | 38 | 36 | 74 | 18 | 13 | 9 | 18 | 27 |
| 법정제재 | 18 | 21 | 8 | 6 | 14 | 8 | 4 | 0 | 5 | 5 | 10 | 13 | 2 | 7 | 9 | 4 | 2 | 2 | 1 | 3 |
| 행정지도 | 77 | 106 | 94 | 53 | 147 | 8 | 3 | 0 | 24 | 24 | 44 | 54 | 36 | 29 | 65 | 14 | 11 | 7 | 17 | 24 |

※ 오보·막말·편파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건수로 산출

② 사업계획 상의 '16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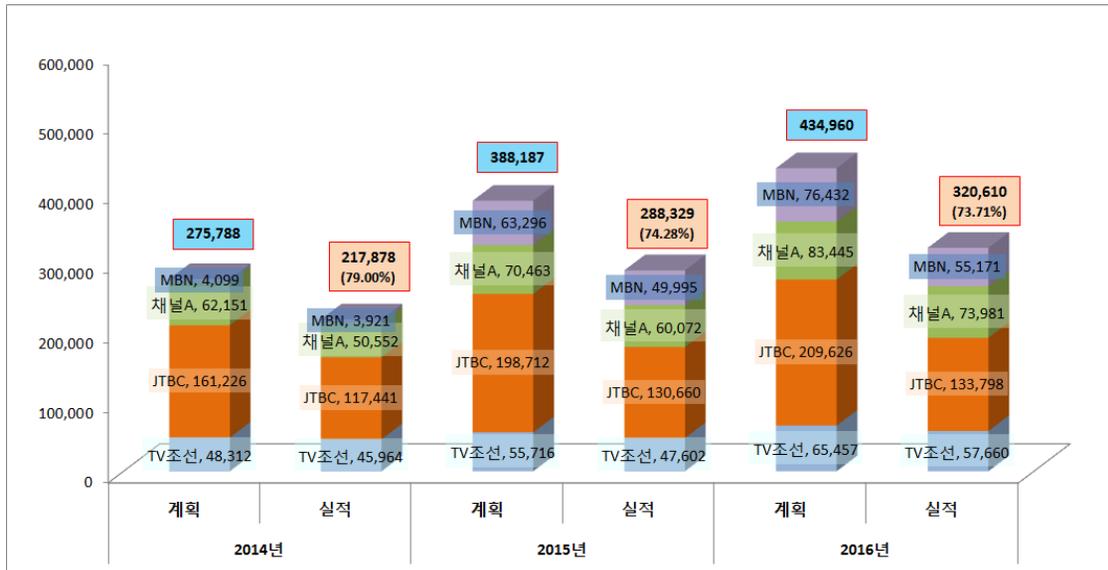
○ 종편PP 4사의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가 미흡함

< 2014년~2016년 종편 PP 4사 콘텐츠 투자 계획 및 실적 >

| 연도 | 구분 | TV조선 | JTBC | 채널A | MBN |
|------------|---------------|-------------------------|---------------------------|-------------------------|-------------------------|
| '14년 | 계획 / 실적 (이행률) | 48,312 / 45,964 (95.1%) | 161,226 / 117,441 (72.8%) | 62,151 / 50,552 (81.3%) | 4,099 / 3,921 (95.7%) |
| | 미이행 금액 | 2,348 | 43,785 | 11,599 | 178 |
| '15년 | 계획 / 실적 (이행률) | 55,716 / 47,602 (85.4%) | 198,712 / 130,660 (65.8%) | 70,463 / 60,072 (85.3%) | 63,296 / 49,995 (79.0%) |
| | 미이행 금액 | 8,114 | 68,052 | 10,391 | 13,301 |
| '16년 | 계획 / 실적 (이행률) | 65,457 / 57,660 (88.0%) | 209,626 / 133,798 (63.8%) | 83,445 / 73,981 (88.6%) | 76,432 / 55,171 (72.1%) |
| | 미이행 금액 | 7,797 | 75,828 | 9,464 | 21,261 |
| '16년도 이행여부 | | 미이행 | 미이행 | 미이행 | 미이행 |

※ 출처: 사업자 제출자료 재구성

< 2014년~2016년 종편 PP 4사 콘텐츠 투자 계획 및 실적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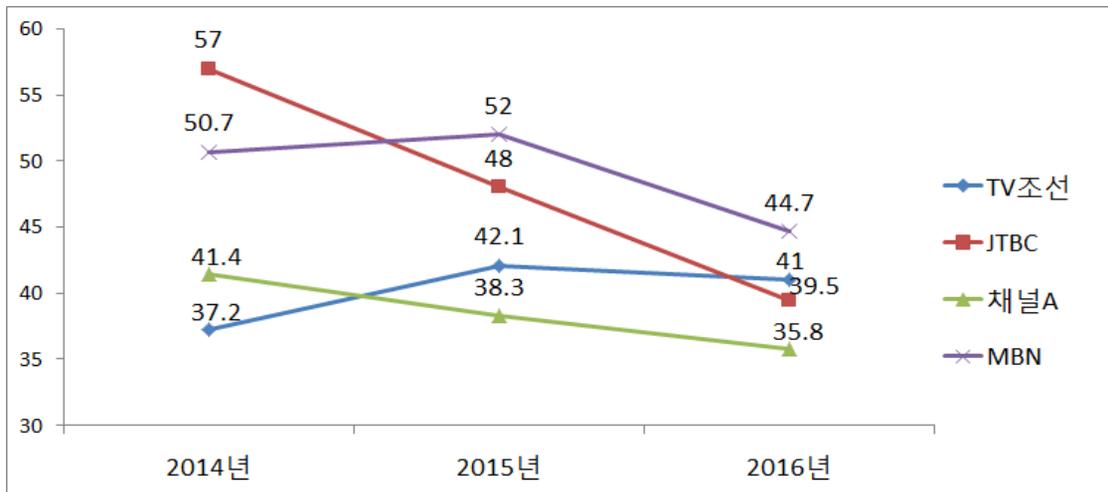
③ 사업계획 상의 '16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 종편PP 4사가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하였음

| 구분 | TV조선 | JTBC | 채널A | MBN |
|-------|---------------|---------------|---------------|---------------|
| 계획/실적 | 43.7% / 41.0% | 39.9% / 39.5% | 39.3% / 35.8% | 48.2% / 44.7% |
| 이행여부 | 이행(-2.7%) | 이행(-0.4%) | 이행(-3.5%) | 이행(-3.5%) |

※ 출처: 사업자 제출자료

< 2013년~2016년 종편 PP 재방비율 추이 >



④ '16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35% 이상) 이행 여부

○ 종편PP 4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른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이행함

| 구 분 | TV조선 | JTBC | 채널A | MBN |
|------|-------|-------|-------|-------|
| 상반기 | 56.5% | 47.8% | 44.4% | 58.1% |
| 하반기 | 51.7% | 53.6% | 38.9% | 52.7% |
| 이행여부 | 이행 | 이행 | 이행 | 이행 |

※ 출처: 사업자 제출자료

5. 조치방향

○ TV조선·JTBC·채널A는 재승인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현장조사, 사업자 의견수렴 등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고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 없이 이행실적을 재승인 심사('17년 2월 예정)에 반영하여 평가

※ 이행 미흡 항목은 그 불이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승인 심사위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심사사항 평가에 반영(비계량 평가)

○ MBN은 재승인 심사까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16.8월에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이행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

< 점검사항별 조치계획(안) >

| 점검사항 | 조치내용 | 대상사업자 |
|---------------|-----------------------------|---------------|
|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 재승인심사에 반영 | TV조선·JTBC·채널A |
| | 자문반을 통한 점검 및 현장조사 후 제재조치 결정 | MBN |
| 콘텐츠 투자 | 재승인심사에 반영 | TV조선·JTBC·채널A |
| | 자문반을 통한 점검 및 현장조사 후 제재조치 결정 | MBN |
| 재방비율 | 재승인심사에 반영 | TV조선·JTBC·채널A |
| | 자문반을 통한 점검 및 현장조사 후 제재조치 결정 | MBN |
| 외주제작 편성비율 | 재승인심사에 반영 | TV조선·JTBC·채널A |
| | 자문반을 통한 점검 및 현장조사 후 제재조치 결정 | MBN |

6. 향후 계획

- '17.2월 종편 PP 재승인 심사 ⇨ TV조선·JTBC·채널A
- '17.3월 ~ 전문가 자문반의 이행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후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 ⇨ MBN

붙임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끝.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방통위는 종편PP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14.3.19, 11.18)

| | |
|----------------------------|--|
| 재승인 조건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2.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 권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 (주)매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

**10. '16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속기록, '17.2.7)**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2. 7.(화)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다. 종합편성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종합편성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16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방향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4년 3월과 11월 종편PP 4사에 대한 재승인을 하면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5년 7월 9일 종편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한바 있고, '16년 8월 18일 종편PP '15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라서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그리고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 31일 종편PP 4사가 '16년도 이행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행실적 점검대상은 '16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사업계획상의 '16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여부, 사업계획상의 '16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16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입니다. 종편PP 4사 모두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서 TV조선 7건, 채널A 4건 감소하였고, JTBC는 1건, MBN는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상의 '16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부입니다. 종편PP 4사 모두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하단에 '16년도 이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행률이 60%~80%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상 '16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여부입니다. 종편PP 4사 모두 사업계획상 재방비율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16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해서도 종편PP 4사 모두 재승인 조건에 따른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조치방향입니다. TV조선·JTBC·채널A는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현장조사, 사업자 의견수렴 등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고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이행실적을 '17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행 미흡 항목은 그 불이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승인 심사위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심사사항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까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16년 8월에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한바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이행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TV조선·JTBC·채널A에 대해서는 이번 2월에 예정된 종편PP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MBN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전문가 자문반을 구성해서 이행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후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먼저 점검결과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TV조선 같은 경우에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매년 증가를 했고, 3년 중 작년에는 161건으로 거의 폭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숫자가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채널A도 74건의 심의조치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제재를 보면 161건의 심의조치를 받았지만 법정제재는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정제재는 적게 받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건건별로 세부내용까지 분석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만큼 심의와 관련된 신고건수가 많을 경우 방심위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건수가 많아질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또 심의를 반드시 받았다고 해서 꼭 법정 제재로 가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심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행정지도까지 받았습시다. 우리가 재판을 예를 들면 무죄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다 덮여지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것도 실형 유죄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감점이나 무슨 패널티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정량적으로 행정지도 제재 부분에 대해서 감점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행정지도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참작해서서 정성평가에서 고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161건이나 되는 심의건수 중에 147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재판으로 치면 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집행유예라든가 선고유예는 우리가 거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데 대한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행정지도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떠한 심의를 했을 때 그 내용에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재까지 갈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개선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권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널티로 바로 연결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법정제재만 벌점이 들어가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TV조선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패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패널이 이런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 그 제재를 하는, 물론 자율적인 제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출연 패널에 대해서는 출연정지가 간다든가 그런 실적들이 나와 있는 것 혹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서 외부 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내역에 대해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기반국에서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했던 패널은 다음에 못 나온다든가 하는 불이익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개별 건건별로 다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 방송기반국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각 방송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 이런 패널에 대한 출연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편의 경우는 모두가 지적합니다만 보도편성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행실적 점검에는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도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V조선에 대해서 지난 재승인 때 권고사항으로 조화로
운 편성을 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승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가 매년 하는 이행실적 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새로 주시청시간대 보도편성비율이 42%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
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을 받아서 재승인 심사에는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방송평가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평가에 관한 부분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반영되겠네요? 그렇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방송평가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016년 하반기 분부터 그것이 반영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
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까도 담당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행실적 점검한 결과 공적책임 부
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을 이행했지만 여전히 심의제재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 투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반영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정성평가에 들어가겠네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김석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히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저희가 제작년에 이행실적 점검을 했었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 이행 촉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행 촉구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점검을 했었고, 그 결과 사실은 보도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이행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에 맞춰서 낮추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인데 지난번에 순수 공익적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따로 제출받았고, 그래서 이번 재송인 심사 시에 심사위원들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께서 보시고 이것이 과연 자기들이 제출한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들만 포함시켜서 실적을 낸 것인지 판단하시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확보 방안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기본책무지요. 그러니까 방송이 국민 화합에 기여해야 하고 지역, 세대, 계층 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리고 방송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소수·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내용을 다룰 때는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하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핵심적인 사항이지요.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법정제재는 감소하였으나 총 심의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편 4사 공통적인 내용이고, 행정지도 또한 심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우리 위원회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행정지도로 분류된 부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 논란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여러 입장에 따라서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일부에서는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제도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 투자 계획,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실제로 종편을 새롭게 승인해 준 이유가 콘텐츠에 투자 제작해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 국제 경쟁력 제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책목표였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을 심사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심사 평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보면 종편 4사 모두 재승인 기간 내내 미이행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를 투자한 JTBC가 1,300억원을 투자했고, 작년만 놓고 보면 순서로 보면 MBN이 550억원, 그다음에 TV조선이 570억원, 그리고 채널A가 739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여기에서 어느 종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광고실적도 한번 점검할 때 보면 어느 종편은 공식적인 광고매출이 500억원에 비공식적인 협찬이 광고를 뛰어넘는 500 몇 십 억 정도까지 달성했던 종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금액이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종편들이 그 나머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출범한지 6년 됐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방송 인력들을 대거 고용 창출해서 경상비를 지출할 것도 아닌데 혹시 수입·지출내역을 본 것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는 받고, 그것을 보면 특정사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사마다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출 대비 핵심 투자가 바로 콘텐츠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재정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 종편PP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심사위원들 꾸려서 이루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 기본계획을 우리가 의결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심사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부분들은 심사위원들께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품격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종편이 출범 6년차 그리고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방송의 공적책무나 공공성·공정성이 계속해서 시비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김석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막말이나 오보·편파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문제되는 패널들이 계속해서 제재를 받지 않고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패널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널들의 경력들을 표시하도록 그런 지도도 하신 적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저희가 이행추구를 하면서 오보·막말·편파 방송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하라고 사업자 측에 요구했고, 사업자 측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 예전에 경력들을 사전에 출연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스스로 적어서 체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이유가 이 패널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매치를 한번 시켜 보는 것이지요. 편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금년에 대선에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만 지난해 총선에 특정 정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신청했던 그런 패널들이 대거 다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활동 경력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활동 경력에 대해서 일절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다, 특임교수다, 이렇게 전문가인양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선거가 있는 해라면 패널들의 정당활동 경력이나 당적 여부 이런 것들은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패널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인지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완전히 중립적인 전문가인양 그렇게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의 경영의 자율성이나 편성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이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종편PP 위상에 걸맞은 그러한 방향으로 콘텐츠 제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되어야지요. 최소한 여기에 투자 절대규모도 지난 1차 재승인 심사를 거치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행률이 90%도 안 됩니다.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투자금액은 비슷한 추세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재승인하면서 투자계획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승인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첫 번째 재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것들, 물론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은 잘못된 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제작 투자계획들은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광고 영업이나 협찬 유치 그리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재전송 협상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나중에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점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역시 이행실적 점검에서도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있을 종편 보도PP들의 재승인 심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둔 항목인데 재승인 심사 대항목 5개 거기에서 더 나누어서 30여개의 세부기준이 있습니다만 총점 1,000점에서 65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그러나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핵심 항목,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에서 50%를 받지 못하면, 50%에 미달하면 과락제를 적용해서 재승인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재승인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적인 항목이고 일종의 유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단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고 많은 토론, 또는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에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TV조선 2014년, 2015년, 2016년 법정제재만 보더라도 18건, 22건, 14건입니다. 채널A 10건, 13건, 9건 이런 데 이것이 조금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그러나 JTBC나 MBN이 봤을 때는 늘었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법정제재 수가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JTBC는 8건, 4건, 5건, 그러면 TV조선의 3분의 1 수준이지요. MBN은 그것보다 더 아래, 그런데 1년마다 한두 건씩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 총 양이 있고 법정제재, 행정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공정하게 해서 총 심의조치 중에서 아무

런 감점이 없는 행정지도와 별점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를 어떻게 갈랐는가, 그것도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요한 항목이 이 사안이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실은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심사결과를 낸 것인데 그것을 종편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법정제재가 타당하고 행정지도가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짧은 시간에 모든 건에 대해 다시 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다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문제에서 종편들이 개선되고 있느냐, 오히려 더 악화되느냐, 역주행이나, 아니면 담보상태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재승인 심사항목 여러 개 중에서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비중을 둔 것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말고 기획·편성의 적절성 여부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그것이 2014년 심사에서 조건부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의 적절성, 애초에 종편이 도입됐을 때 방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입법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의 장르를 편성하도록 한다' 그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거기에서 점수를 못 얻으면, 50%에 미달하면 그것은 총점 650점이 넘어도 과락,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양대 핵심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론은 우리가 이행실적 중간점검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콘텐츠 투자 문제입니다. 콘텐츠 투자는 편성비율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방송사는 콘텐츠 투자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 알다시피 보도 분야의 프로그램 제작은 제작비가 싸게 먹힙니다. 싼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교양이나 오락, 다큐멘터리, 드라마 다른 오락프로그램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콘텐츠, 자신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보도편성비율도 안 지켜, 콘텐츠 투자 약속도 안 지켜, 이중적으로 정책규제 당국의 의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속 요청하고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시 JTBC 목표치가 다른 종편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데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지 이행률은 제일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행률이 낮다,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만 비판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잡을 때에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수주와 연계해서 광고 수주액의 몇 퍼센트 이상은 콘텐츠 투자에 쓰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방송사업을 하면서 전파나 방송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광고, 그 광고에 대비해서 콘텐츠 투자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품격 높은 방송으로 가는 방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송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맡겨 왔는데 어느 정도는 규제도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방송을 하면서 최소한 광고 수주액에 연계시켜서 얼마 이상 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종편 4사가 콘텐츠 투자 목표치가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률이 높다, 낮다고 평가해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정부에서 적절한 콘텐츠 투자액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 투자는 있어야 한다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해 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014년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재승인 조건 공통입니다. 재승인 조건이 모든 종편에 다 부과가 되고 있고, 권고사항이 개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 중에서는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편PP 위상에 걸맞게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이라는 가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재정적 능력 보완책 수립할 것이라는 가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재승인 조건으로 올라갈 만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또 그것이 안 지켜지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재승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는 JTBC, 그리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여타 종편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조건 또한 전혀 다르게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공통 재승인 조건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공통 재승인 조건을 주리되 그 외 부분들은 종편의 특성에 맞게 승인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가 있는 것 중에 승인조건으로 부과해서 강제성 있게 우리가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하고 미이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종편 재승인심사의 재승인 조건이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까지 번져서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행실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음 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재승인 심사 전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재승인 조건이나 또는 권고사항을 검토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마치 심사를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 올리는 목적이 아까 개요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행실적 점검 결과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처분방향,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14년 이행실적, '15년 이행실적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분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데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실적 점검결과 공익성 부분이나 콘텐츠 투자 부분은 여기에 팩트로 이야기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조치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위원회에서 조치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보고안건으로 안 올리고 의결안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치방향 첫 번째에 이런 저런 시간제약 때문에 듀프로세스(Due Process)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따라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이행실적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표현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이행실적 중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폭넓게 깊이 있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결국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이행실적 그 부분과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여부가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행했지만 심의초치 건수는 증가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콘텐츠 투자가 미흡하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행정처분 없이' 이 말이 정확한 것인지 그것이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 나온 점검결과에서 처분해야 하는데 이런 적법절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거처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판단이 먼저 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처분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위당대로 해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앞부분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치방향만 주로 쪽 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없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려면 위에 기술되어 있는 현장조사라든지 사업자 의견수렴 등 적법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야 사실은 확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라는 표현보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없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표현의 문제니까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없이'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행실적 점검을 한 내용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지만 다양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다 제공하실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원래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 심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표현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 이외에 이 안건은 그 부분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Ⅵ. 재승인 심사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 순번 | 분야 | 성명 | 소속 |
|----|----------------|-----|---------------------------------------|
| 1 | 심사 위원장 | 이광재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
| 2 | 방송 미디어 | 이효성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
| 3 | 방송 미디어 | 김경환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 4 | 방송 미디어 | 이상원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 5 | 법률 | 안수화 | 안수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
| 6 | 법률 | 차명심 | 차명심 법률사무소 변호사 |
| 7 | 경제 경영 회계 | 김진기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8 | 경제 경영 회계 | 이태민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9 | 경제 경영 회계 | 곽지영 | 세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10 | 기술 | 허남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소 Project Leader |
| 11 | 시청자 소비자 | 장해량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 12 | 시청자 소비자 |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 13 | 시청자 소비자 | 최경진 |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2. 세부 심사기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안)

2017. 2.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기본 원칙 >

'14년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준용하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등 중점심사 항목을 보완

1 개요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분류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서는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제시
 -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그에 따른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2 세부평가 방법

- **(기본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2인) 전원이 각자 신청 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시정명령, 법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하여 계량항목의 중복을 최소화
- **(평가유형)**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평가 : 방송평가와 재정적 능력, 법령 위반 정도, 시정명령 건수 및 이행여부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 비계량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 구분 | 등급 | 내용 | 평점 환산비율(%) |
|----|----|-------|-----------------------|
| 1 | 수 | 매우 우수 |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
| 2 | 우 | 우 수 |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
| 3 | 미 | 보 통 |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
| 4 | 양 | 미 흡 |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
| 5 | 가 | 매우 미흡 |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 (점수 계산)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함

○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 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재승인 여부 결정)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세부계획에서 정한 재승인 여부 결정 방안 >

| 총점 | 심사사항 점수 | 재승인 여부 |
|---------|--|------------------------------|
| 650점 이상 | 다음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재승인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
| | 상기 심사사항을 제외한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 재승인 / 조건부 재승인 |
| 650점 미만 | .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

【 세부심사항목 구성 】

- 각 심사항목을 과거실적과 미래계획 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 구성

< 세부심사항목 구성 예시 >

| | |
|--------|--|
| 심사항목 |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 세부심사항목 | -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u>이행실적의 적정성</u> -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u>실현계획의 적정성</u> |

- 일부 심사항목*은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실적만 반영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 권고 이행여부

【 세부심사항목 배점 】

- (1안) 종편 · 보도PP의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외 심사항목의 배점(600점)에서 실적(275점)보다 계획(325점)의 비중을 높게 하여, 총점 1,000점 중 실적 675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계획 325점으로 구성

※ 2014년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 : (종편PP) 실적 675점(방송평가 350점 포함) 및 계획 325점, (보도PP) 실적 650점(방송평가 350점 포함) 및 계획 350점

※ 지상파 재허가 심사 : (2013년도) 실적 675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및 계획 325점, (2016년도) 실적 705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및 계획 295점임

<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 >

| 심사항목 | 종편PP | | 보도PP | |
|--|------------|------------|------------|------------|
|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400) | 400 | - | 400 | - |
|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20, 150) | 40 | 80 | 50 | 100 |
| ③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80) | 25 | 45 | 30 | 50 |
|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30) | 6 | 14 | 10 | 20 |
|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90, 60) | 30 | 60 | 20 | 40 |
| ⑥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70) | 30 | 50 | 25 | 45 |
|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30) | 7 | 13 | 10 | 20 |
| ⑧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40) | 20 | 30 | 16 | 24 |
|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 30 | - | 30 | - |
|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10) | 7 | 13 | 4 | 6 |
| ⑪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30, 30) | 10 | 20 | 10 | 20 |
|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 | - | - | - |
|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감점) | - | - | - | - |
| ⑭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70) | 70 | - | 70 | - |
| 합 계 | 675 | 325 | 675 | 325 |

□ (2안) 종편·보도PP의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외 심사항목의 배점(600점)에서 실적(300점) 및 계획(300점) 비중을 같게 하여, 총점 1,000점 중 실적 700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계획 300점으로 구성

※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 (종편PP) 실적 675점(방송평가 350점 포함) 및 계획 325점, (보도PP) 실적 650점(방송평가 350점 포함) 및 계획 350점

※ 지상파 재허가 심사 : (2013년도) 실적 675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및 계획 325점, (2016년도) 실적 705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및 계획 295점임

<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 >

| 심사항목 | 종편PP | | 보도PP | |
|--|------------|------------|------------|------------|
|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400) | 400 | - | 400 | - |
|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20, 150) | 50 | 70 | 60 | 90 |
| ③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80) | 30 | 40 | 35 | 45 |
|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30) | 8 | 12 | 12 | 18 |
|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90, 60) | 30 | 60 | 20 | 40 |
| ⑥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70) | 34 | 46 | 30 | 40 |
|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30) | 8 | 12 | 12 | 18 |
| ⑧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40) | 20 | 30 | 15 | 25 |
|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 30 | - | 30 | - |
|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10) | 8 | 12 | 4 | 6 |
| ⑪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30, 30) | 12 | 18 | 12 | 18 |
|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 | | - | |
|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감점) | - | | - | |
| ⑭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70) | 70 | - | 70 | - |
| 합 계 | 700 | 300 | 700 | 300 |

□ (심사위원회 의결 : 제3안) 종편·보도PP의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외 심사항목의 배점(600점)에서 일부 심사항목*의 실적과 계획의 비중을 같게 하여 총점 1,000점 중 종편PP는 실적 731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계획 269점으로, 보도PP는 실적 720점과 280점으로 구성

* (종편PP)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보도PP)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 >

| 심사항목 | 종편PP | | 보도PP | |
|--|------------|------------|------------|------------|
|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400) | 400 | - | 400 | - |
|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20, 150) | 60 | 60 | 75 | 75 |
| ③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80) | 30 | 40 | 35 | 45 |
|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30) | 8 | 12 | 12 | 18 |
|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90, 60) | 45 | 45 | 20 | 40 |
| ⑥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70) | 40 | 40 | 35 | 35 |
|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30) | 8 | 12 | 12 | 18 |
| ⑧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40) | 20 | 30 | 15 | 25 |
|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 30 | - | 30 | - |
|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10) | 8 | 12 | 4 | 6 |
| ⑪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30, 30) | 12 | 18 | 12 | 18 |
|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 | - | - | - |
|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감점) | - | - | - | - |
| ⑭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70) | 70 | - | 70 | - |
| 합 계 | 731 | 269 | 720 | 280 |

4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평가 지표 |
|------------------|------------------|-------------------|-----|-----|----------|
| | | | 종편 | 보도 | |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 | 400 | 400 | 계량 |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
 - TV조선, JTBC, 채널A와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13년도, '14년도, '15년도 방송평가 평균 점수를 반영하고, YTN의 경우에는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방송평가 평균 점수를 반영
 - 다만, 동일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14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 점수('13.1.1.부터 '14.1.31.까지, YTN은 '11.1.1.부터 '11.12.31.까지 해당)를 제외하고 반영
-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재승인 심사에 적용되는 방송평가 점수 >

| 구분 | TV조선 | JTBC | 채널A | YTN | 연합뉴스TV |
|--------------------------------------|---------------|---------------|---------------|---------------|---------------|
| 방송평가 (종편PP 700점, 보도PP 500점 만점) | 574.92 | 587.59 | 564.12 | 408.31 | 408.68 |
| 재승인 환산점수 (400점 만점) | 328.53 | 335.77 | 322.36 | 326.65 | 326.94 |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평가 지표 |
|-----------------------------------|------------------|----------------------|----|----|-------|
| | | | 종편 | 보도 |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여부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 감점 | 감점 | 계량 |

○ (적용대상 및 기간) 재승인 신청법인의 '14.2.1.부터(YTN은 '12.1.1.부터) '17.1.31.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심사위원회 의결 : 형벌에 대해서도 감점) 형벌은 불법행위에 부과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벌에 대해서도 감점

○ (관계법령 범위)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1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

- 다만,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

○ (참조기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

| 법령위반 | 기준점수 |
|-----------|---|
| 방송법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10점, 5천만원 초과 - 15점 · 심의제재 :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
| 공정거래법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4점, · 시정명령 : -8점, · 과징금 : -10점 |
| 그 외 법령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2점, · 시정명령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5점, 5천만원 초과 - 7.5점 |

※ '16.7.1. 이후 방송실적분에 대한 심의제재의 감점을 강화(위반유형별로 3회 이상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공정성,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관련 유형은 2배 감점, 기타 유형은 1.5배 감점)

- (감점기준)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법령위반 | 행정처분 | | 종편PP 감점점수 | 보도PP 감점점수 |
|--------------|------------|---------------------------------------|--------------|--------------|
| 방송법 위반 | 과태료 | | -2.29 | -3.2 |
|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5.71 | -8 |
| | | 5천만원 초과 | -8.57 | -12 |
| | 심의제재 | ① 주의 | -0.57 | -0.8 |
| | | ② 경고 | -1.14 | -1.6 |
| | |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 -2.29 | -3.2 |
| | |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2.29 | -3.2 |
| | | ②+③, ②+④ | -2.86 | -4 |
| | ③+④, ②+③+④ | -3.43 | -4.8 | |
| 공정거래법 위반 | 과태료 | | -2.29 | -3.2 |
| | 시정명령 | | -4.57 | -6.4 |
| | 과징금 | | -5.71 | -8 |
| 그 외 법령 위반 | 과태료 | | -1.14 | -1.6 |
| | 시정명령 | | -2.29 | -3.2 |
|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2.86 | -4 |
| | | 5천만원 초과 | -4.29 | -6 |

※ '16.7.1. 이후 방송실적분에 대해 강화된 심의제재를 반영하여 감점 적용

※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벌에 대해 그 외 법령 위반의 시정명령 수준(종편PP - 2.29점, 보도PP - 3.2점)의 감점 적용

◆ '15년까지는 연평균 감점 사항(방송평가 결과)을, 방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16.1.1.부터 '17.1.31.까지는 감점 합계를 반영

- 방송법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위반에 대한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의 감점 결정 필요
 - (1안) 과태료 처분의 전치 절차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 1.14점 감점
 - (2안) 현행 방송평가규칙(운영영역)을 적용하여 - 4.57점 감점
 - (3안) 현행 방송평가규칙(편성영역)을 적용하여 - 6.86점 감점
 - (심사위원회 의결 : 2안)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에 대한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은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현행 방송평가규칙(운영영역)을 준용하여 - 4.57점 감점
 -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여부) 방송평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과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확정된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안정된 심사평가가 가능하도록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 유예
- ※ 소송 제기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개시일 직전 근무일 18:00 기준으로 확정

【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평가 지표 |
|---|------------------------|------------------------------------|----|----|----------|
| | | | 종편 | 보도 |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여부 | 시정명령 건수, 시정 명령 이행여부 |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감점 | 감점 | 계량 |

- (적용 대상 및 기간) 재승인 신청법인의 '14.2.1.부터(YTN은 '12.1.1.부터)
'17.1.31.까지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범위)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등은 제외
 - 소송중인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감점 유예
- (참조기준)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

| 구분 | 기준점수 |
|----------------------|--|
|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 · 시정명령 : -8점 · 시정명령 불이행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10점 5천만원 초과 - 15점 |

- (감점기준)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의
환산비율을 고려하여 적용
 -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행정처분 | | 종편PP 감점점수 | 보도PP 감점점수 |
|------|---------|--------------|--------------|
| 시정명령 | | -4.57점 | -6.4점 |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5.71점 | -8점 |
| | 5천만원 초과 | -8.57점 | -12점 |

◆ '15년까지는 연평균 감점 사항(방송평가 결과)을, 방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16.1.1.부터 '17.1.31.까지는 감점 합계를 반영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평가 지표 |
|--------------------------|-------------------------|----------|----|----|----------|
| | | | 종편 | 보도 | |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80)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 부채비율 | 12 | 12 | 계량 |
| | | 자기자본순이익율 | 9 | 9 | 계량 |
| | | 총자산증가율 | 9 | 9 | 계량 |

- (세부심사항목) 지상과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마련

※ '10년 및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 재정적 능력 평가지표와 동일

- (대상기간)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14년, '15년, '16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16년의 경우 신청법인의 재무현황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

- YTN은 최근 5년간('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16년의 경우 신청법인의 재무현황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

- (평가방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와 대상회사의 지표값(A)을 비교

- (최저점 설정)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와 같이 30%로 부여하는 방안, 지상과 재허가 심사 시와 같이 20%로 부여하는 방안 가능

- (심사위원회 의결 : 제2안)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평가의 최저점을 지상과 재허가 심사 시와 같이 20%로 부여

◆ 제1안 : 최저점수를 30%로 부여하는 방안('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 세부심사항목 |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 | |
|------------------|-----------------|--|--------------|
| | $A < m - 2a$ | $m - 2a \leq A \leq m + 2a$ | $A > m + 2a$ |
| 부채비율(12점, 12점) | 12점, 12점 | $[0.65 + 0.7 \times (m - A) / 4a] \times$ 배점 | 3.6점, 3.6점 |
| 자기자본순이익율(9점, 9점) | 2.7점, 2.7점 | $[0.65 + 0.7 \times (A - m) / 4a] \times$ 배점 | 9점, 9점 |
| 총자산증가율(9점, 9점) | 2.7점, 2.7점 | | 9점, 9점 |

◆ 제2안 : 최저점수를 20%로 부여하는 방안(방송평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 세부심사항목 |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 | |
|------------------|-----------------|---|--------------|
| | $A < m - 2a$ | $m - 2a \leq A \leq m + 2a$ | $A > m + 2a$ |
| 부채비율(12점, 12점) | 12점, 12점 | $[0.6 + 0.8 \times (m - A) / 4a] \times$ 배점 | 2.4점, 2.4점 |
| 자기자본순이익율(9점, 9점) | 1.8점, 1.8점 | $[0.6 + 0.8 \times (A - m) / 4a] \times$ 배점 | 9점, 9점 |
| 총자산증가율(9점, 9점) | 1.8점, 1.8점 | | 9점, 9점 |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안)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중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를 4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
|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210, 260) |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15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 실적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실적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실적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적(심의제재 건수 감축 노력, 출연자 자질 검증 및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패널의 다양성 포함)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 방송언어 순화실적 · 편성규약 제정·공표 현황 및 이행실적 |
| |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 방안의 구체성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현 계획(심의제재 건수 감축 노력, 출연자 자질 검증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중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및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실현 계획의 적정성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실현 계획의 적정성 · 방송언어 순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의지 · 편성규약 이행 관련 향후 계획의 적정성 |
|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80) |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0, 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실적(방송법 제89조) ·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 실적 ·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 실적(방송법 제86조) |
|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80) |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0, 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적정성(방송법 제89조) ·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방송법 제86조)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중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3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8,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 |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2,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 6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45,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방송분야, 장르별 조화로운 편성 포함) 이행실적의 적절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방송법 제4조) |
| |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45,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방송분야, 장르별 조화로운 편성 포함) 향후 계획의 적절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의 실현가능성 (방송법 제4조) |
|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70)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40, 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투자 이행 실적의 적절성(재무상태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중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
| | | <p>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40, 3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투자 계획의 적절성(재무상태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향후계획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향후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향후계획 |
| | <p>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30)</p> | <p>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8, 12)</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 광고·캠페인 등) 편성 실적 · 재난방송 편성 및 개선 실적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실적 ·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이행실적 |
| | | <p>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12, 18)</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 광고·캠페인 등) 편성 계획 · 재난방송 편성 및 개선 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적정성 ·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의 적정성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중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적정성 |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80) |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40) |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20,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 운영 실적 · 교육훈련 실적의 우수성 · 경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전략의 이행실적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
| | |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30,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의 적정성 · 교육훈련 계획의 우수성 · 경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계획의 적정성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계획의 적정성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규모의 실현가능성 ·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
| | 재무적 안정성과 | 부채비율(12,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총액/자기자본 |
| | 수익성(30, 30) | 자기자본순이익률(9,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중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10) | 총자산증가율(9, 9) |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 |
| |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8, 4) |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실적의 적정성 · 국산장비 도입실적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편집기술 등 방송기술 확보 관련 이행 실적의 적정성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적의 적정성 |
| |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12, 6) |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국산장비 도입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편집기술 등 방송기술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30)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2, 12) | · 방송장비산업 기여 및 연구 개발(R&D) 이행실적 · 방송인력 양성 이행실적 ·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실적 ·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
| |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18, 18) | · 방송장비산업 기여 및 연구 개발(R&D) 계획의 적정성 · 방송인력 양성 계획의 적정성 ·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환원 계획의 적정성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감점)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이 위반한 법 위반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반영된 법 위반 건수는 제외하고 평가 · 종편PP 감점기준 (방송법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2.29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71점 5천만원 초과 -8.57점 - 심의제재 : ①주의 -0.57점, ②경고 - 1.14점, ③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 2.29점, ④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 2.29점, ②+ ③, ②+④ - 2.86점, ③+ ④, ②+③+④ - 3.43점 (공정거래법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 2.29점 - 시정명령 : - 4.57점 - 과징금 : - 5.71점 (그 외 법령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 1.14점 - 시정명령 : - 2.29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2.86점 5천만원 초과 - 4.29점 · 보도PP 감점기준 (방송법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3.2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8점 5천만원 초과 - 12점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종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제재 : ①주의 -0.8점, ②경고 - 1.6점, ③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 3.2점, ④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 3.2점, ②+③, ②+④ - 4점, ③+④, ②+③+④ - 4.8점 (공정거래법 위반 시) - 과태료 : - 3.2점 - 시정명령 : - 6.4점 - 과징금 : - 8점 (그 외 법령 위반 시) - 과태료 : - 1.6점 - 시정명령 : - 3.2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4점 5천만원 초과 - 6점 ※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벌에 대해 그 외 법령 위반의 시정명령 수준의 감점 적용 ※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현행 방송평가 규칙(운영영역)을 준용하여 - 4.57점 감점 |
| |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감점) |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감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이 받은 시정명령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반영된 시정명령은 제외 · 시정명령은 방송법 위반에 한정 · 종편PP 감점기준 - 시정명령 : - 4.57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5.71점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중편PP, 보도PP) | 평가방법 |
|------|-----------------------------------|-------------------------------|---|
| | | | 5천만원 초과 - 8.57점 · 보도PP 감점기준 - 시정명령 : - 6.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8점 5천만원 초과 - 12점 |
| |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70, 70) |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 실적의 적정성(70, 70) | ·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 취득 여부 - 재승인조건에 따른 이행 실적 제출 여부 - 이행실적 점검 관련 필요 사항 협조 여부 -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의 적정성 - 이행촉구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여부 - 이행촉구에 따라 제출한 이행 계획 대비 이행실적의 적정성 · 재승인시 부과한 권고사항 이행의 적정성 - 권고사항 이행실적 제출 여부 - 권고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

3. 심사평가 결과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별 심사결과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평가지표 | TV조선 | JTBC | 채널A | YTN | 연합뉴스TV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계량 | 328.53 | 335.77 | 322.36 | 326.65 | 326.94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10 | 260 | | 108.40 | 148.15 | 124.85 | 165.35 | 157.28 |
|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120 | 150 | 비계량 | 57.30 | 87.43 | 67.68 | 97.83 | 91.28 |
|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 60 | 75 | 비계량 | 25.20 | 43.14 | 32.80 | 49.00 | 45.05 |
|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 60 | 75 | 비계량 | 32.10 | 44.29 | 34.88 | 48.83 | 46.23 |
|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70 | 80 | 비계량 | 39.40 | 46.65 | 44.50 | 48.71 | 47.88 |
|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 30 | 35 | 비계량 | 16.20 | 19.55 | 18.90 | 21.48 | 21.90 |
|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 40 | 45 | 비계량 | 23.20 | 27.10 | 25.60 | 27.23 | 25.98 |
|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30 | 비계량 | 11.70 | 14.07 | 12.67 | 18.81 | 18.12 |
|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 8 | 12 | 비계량 | 4.58 | 5.51 | 4.67 | 7.74 | 6.92 |
|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12 | 18 | 비계량 | 7.12 | 8.56 | 8.00 | 11.07 | 11.20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90 | 160 | | 95.67 | 140.40 | 109.70 | 99.59 | 99.37 |
|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90 | 60 | 비계량 | 45.33 | 66.77 | 49.93 | 38.95 | 39.37 |
|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 | 45 | 20 | 비계량 | 20.23 | 32.57 | 22.15 | 13.85 | 13.99 |
|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 45 | 40 | 비계량 | 25.10 | 34.20 | 27.78 | 25.10 | 25.38 |
| 3-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80 | 70 | 비계량 | 39.00 | 58.90 | 47.81 | 41.33 | 41.30 |
|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 40 | 35 | 비계량 | 19.00 | 29.00 | 22.40 | 20.20 | 20.35 |
| 3-2-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 40 | 35 | 비계량 | 20.00 | 29.90 | 25.41 | 21.13 | 20.95 |
|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20 | 30 | 비계량 | 11.34 | 14.73 | 11.96 | 19.31 | 18.70 |
|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 8 | 12 | 비계량 | 4.40 | 5.80 | 4.67 | 7.64 | 7.52 |
|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 12 | 18 | 비계량 | 6.94 | 8.93 | 7.29 | 11.67 | 11.18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80 | | 58.91 | 61.69 | 63.94 | 50.24 | 44.44 |
|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 | 40 | 비계량 | 28.75 | 31.55 | 33.77 | 25.65 | 25.04 |
|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 20 | 15 | 비계량 | 11.80 | 12.40 | 13.30 | 9.42 | 9.75 |
|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 30 | 25 | 비계량 | 16.95 | 19.15 | 20.47 | 16.23 | 15.29 |
|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30 | 30 | 계량 | 18.22 | 15.12 | 17.08 | 18.11 | 13.41 |
| 4-2-1. 부채비율 | 12 | 12 | 계량 | 12.00 | 11.52 | 12.00 | 10.01 | 9.54 |
|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 9 | 9 | 계량 | 3.15 | 1.80 | 2.60 | 4.06 | 1.80 |
| 4-2-3. 총자산증가율 | 9 | 9 | 계량 | 3.07 | 1.80 | 2.48 | 4.04 | 2.07 |
|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10 | 비계량 | 11.94 | 15.02 | 13.09 | 6.48 | 5.99 |
|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 8 | 4 | 비계량 | 4.80 | 6.28 | 5.10 | 2.53 | 2.27 |
|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 12 | 6 | 비계량 | 7.14 | 8.74 | 7.99 | 3.95 | 3.72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 33.62 | 45.38 | 41.06 | 52.01 | 60.21 |
|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 | 30 | 비계량 | 17.03 | 22.65 | 18.61 | 16.21 | 17.11 |
|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 12 | 12 | 비계량 | 6.58 | 9.00 | 7.44 | 6.42 | 6.68 |
|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 18 | 18 | 비계량 | 10.45 | 13.65 | 11.17 | 9.79 | 10.43 |
|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 감점 | 감점 | 계량 | -18.55 | -20.86 | -15.69 | -14.40 | -5.60 |
|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감점 | 감점 | 계량 | -5.71 | -5.71 | -5.71 | 0.00 | 0.00 |
|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 70 | 70 | 비계량 | 40.85 | 49.30 | 43.85 | 50.20 | 48.70 |
| 합 계 | 1,000 | 1,000 | | 625.13 | 731.39 | 661.91 | 693.84 | 688.24 |

■ (주)조선방송(TV조선)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계량 | 328.53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10 | | 115.00 | 114.00 | 94.40 | 113.00 | 65.40 | 118.00 | 93.60 | 146.00 | 121.00 | 104.00 | 92.00 | 130.00 | 108.40 |
|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 120 | 비계량 | 50.00 | 62.00 | 48.00 | 63.00 | 34.00 | 72.00 | 45.00 | 80.00 | 70.00 | 51.00 | 48.00 | 69.00 | 57.30 |
|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 60 | 비계량 | 10.00 | 30.00 | 24.00 | 31.00 | 10.00 | 35.00 | 21.00 | 30.00 | 35.00 | 20.00 | 24.00 | 27.00 | 25.20 |
|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계획의적정성 | 60 | 비계량 | 40.00 | 32.00 | 24.00 | 32.00 | 24.00 | 37.00 | 24.00 | 50.00 | 35.00 | 31.00 | 24.00 | 42.00 | 32.10 |
|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50.00 | 45.00 | 36.00 | 38.00 | 28.00 | 35.00 | 36.00 | 50.00 | 40.00 | 41.00 | 30.00 | 49.00 | 39.40 |
|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0.00 | 16.00 | 12.00 | 17.00 | 12.00 | 15.00 | 18.00 | 15.00 | 17.00 | 18.00 | 14.00 | 21.00 | 16.20 |
|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 40 | 비계량 | 30.00 | 29.00 | 24.00 | 21.00 | 16.00 | 20.00 | 18.00 | 35.00 | 23.00 | 23.00 | 16.00 | 28.00 | 23.20 |
|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5.00 | 7.00 | 10.40 | 12.00 | 3.40 | 11.00 | 12.60 | 16.00 | 11.00 | 12.00 | 14.00 | 12.00 | 11.70 |
|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 8 | 비계량 | 5.00 | 3.00 | 3.20 | 6.00 | 1.00 | 4.00 | 4.80 | 6.00 | 4.00 | 5.00 | 6.00 | 4.80 | 4.58 |
|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12 | 비계량 | 10.00 | 4.00 | 7.20 | 6.00 | 2.40 | 7.00 | 7.80 | 10.00 | 7.00 | 7.00 | 8.00 | 7.20 | 7.12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90 | | 105.00 | 88.00 | 80.40 | 101.00 | 29.00 | 110.00 | 65.25 | 163.00 | 105.00 | 107.00 | 102.00 | 91.40 | 95.67 |
|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90 | 비계량 | 50.00 | 43.00 | 38.00 | 45.00 | 11.00 | 58.00 | 29.25 | 75.00 | 52.00 | 51.00 | 42.00 | 45.00 | 45.33 |
|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 45 | 비계량 | 15.00 | 19.00 | 18.00 | 23.00 | 2.00 | 29.00 | 11.25 | 35.00 | 26.00 | 23.00 | 20.00 | 18.00 | 20.23 |
|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 45 | 비계량 | 35.00 | 24.00 | 20.00 | 22.00 | 9.00 | 29.00 | 18.00 | 40.00 | 26.00 | 28.00 | 22.00 | 27.00 | 25.10 |
| 3-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80 | 비계량 | 40.00 | 38.00 | 32.00 | 44.00 | 10.00 | 40.00 | 22.00 | 70.00 | 42.00 | 44.00 | 50.00 | 38.00 | 39.00 |
|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 40 | 비계량 | 15.00 | 18.00 | 16.00 | 22.00 | 2.00 | 20.00 | 12.00 | 35.00 | 22.00 | 21.00 | 26.00 | 18.00 | 19.00 |
| 3-2-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 40 | 비계량 | 25.00 | 20.00 | 16.00 | 22.00 | 8.00 | 20.00 | 10.00 | 35.00 | 20.00 | 23.00 | 24.00 | 20.00 | 20.00 |
|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20 | 비계량 | 15.00 | 7.00 | 10.40 | 12.00 | 8.00 | 12.00 | 14.00 | 18.00 | 11.00 | 12.00 | 10.00 | 8.40 | 11.34 |
|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 8 | 비계량 | 6.00 | 3.00 | 3.20 | 5.00 | 3.20 | 5.00 | 5.60 | 7.00 | 4.00 | 5.00 | 4.00 | 2.40 | 4.40 |
|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 12 | 비계량 | 9.00 | 4.00 | 7.20 | 7.00 | 4.80 | 7.00 | 8.40 | 11.00 | 7.00 | 7.00 | 6.00 | 6.00 | 6.94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 63.22 | 52.22 | 58.22 | 55.22 | 26.02 | 54.22 | 69.72 | 77.22 | 64.22 | 62.22 | 51.22 | 58.62 | 58.91 |
|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 | 비계량 | 30.00 | 27.00 | 27.00 | 28.00 | 6.30 | 25.00 | 37.50 | 41.00 | 35.00 | 30.00 | 23.00 | 25.00 | 28.75 |
|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0.00 | 11.00 | 15.00 | 10.00 | 4.00 | 10.00 | 15.00 | 16.00 | 14.00 | 13.00 | 10.00 | 10.00 | 11.80 |
|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0.00 | 16.00 | 12.00 | 18.00 | 2.30 | 15.00 | 22.50 | 25.00 | 21.00 | 17.00 | 13.00 | 15.00 | 16.95 |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30 | 계량 | 18.22 |
| 4-2-1. 부채비율 | 12 | 계량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 9 | 계량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 4-2-3. 총자산증가율 | 9 | 계량 | 3.07 | 3.07 | 3.07 | 3.07 | 3.07 | 3.07 | 3.07 | 3.07 | 3.07 | 3.07 | 3.07 | 3.07 | 3.07 |
|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5.00 | 7.00 | 13.00 | 9.00 | 1.50 | 11.00 | 14.00 | 18.00 | 11.00 | 14.00 | 10.00 | 15.40 | 11.94 |
|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 8 | 비계량 | 6.00 | 3.00 | 5.00 | 4.00 | 0.50 | 4.00 | 5.60 | 7.00 | 4.00 | 6.00 | 4.00 | 6.40 | 4.80 |
|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 12 | 비계량 | 9.00 | 4.00 | 8.00 | 5.00 | 1.00 | 7.00 | 8.40 | 11.00 | 7.00 | 8.00 | 6.00 | 9.00 | 7.14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 25.74 | 36.74 | 29.74 | 35.74 | -11.66 | 39.74 | 46.64 | 62.74 | 34.74 | 39.74 | 22.74 | 24.64 | 33.62 |
|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0.00 | 11.00 | 20.00 | 15.00 | 5.60 | 15.00 | 21.90 | 27.00 | 17.00 | 19.00 | 14.00 | 17.40 | 17.03 |
|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 12 | 비계량 | 5.00 | 4.00 | 7.00 | 6.00 | 2.00 | 6.00 | 8.40 | 10.00 | 7.00 | 8.00 | 6.00 | 8.40 | 6.58 |
|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 18 | 비계량 | 15.00 | 7.00 | 13.00 | 9.00 | 3.60 | 9.00 | 13.50 | 17.00 | 10.00 | 11.00 | 8.00 | 9.00 | 10.45 |
|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 감점 | 계량 | -18.55 |
|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감점 | 계량 | -5.71 |
|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30.00 | 50.00 | 34.00 | 45.00 | 7.00 | 49.00 | 49.00 | 60.00 | 42.00 | 45.00 | 33.00 | 31.50 | 40.85 |
| 합 계 | 1,000 | | 637.49 | 619.49 | 591.29 | 633.49 | 437.29 | 650.49 | 603.74 | 777.49 | 653.49 | 641.49 | 596.49 | 633.19 | 625.13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주)제이티비씨(JTBC)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계량 | 335.77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10 | | 145.00 | 116.00 | 138.00 | 125.00 | 164.10 | 151.00 | 168.50 | 178.00 | 153.00 | 151.00 | 131.00 | 151.20 | 148.15 |
|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 120 | 비계량 | 80.00 | 66.00 | 82.50 | 71.00 | 95.80 | 90.00 | 99.00 | 107.00 | 94.00 | 95.00 | 76.00 | 87.00 | 87.43 |
|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 60 | 비계량 | 30.00 | 34.00 | 47.50 | 37.00 | 47.90 | 45.00 | 48.00 | 55.00 | 47.00 | 45.00 | 38.00 | 42.00 | 43.14 |
|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계획의적정성 | 60 | 비계량 | 50.00 | 32.00 | 35.00 | 34.00 | 47.90 | 45.00 | 51.00 | 52.00 | 47.00 | 50.00 | 38.00 | 45.00 | 44.29 |
|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50.00 | 37.00 | 43.00 | 40.00 | 53.00 | 47.00 | 54.50 | 55.00 | 49.00 | 42.00 | 42.00 | 49.00 | 46.65 |
|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0.00 | 16.00 | 17.00 | 18.00 | 23.00 | 21.00 | 22.50 | 20.00 | 21.00 | 17.00 | 18.00 | 21.00 | 19.55 |
|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 40 | 비계량 | 30.00 | 21.00 | 26.00 | 22.00 | 30.00 | 26.00 | 32.00 | 35.00 | 28.00 | 25.00 | 24.00 | 28.00 | 27.10 |
|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5.00 | 13.00 | 12.50 | 14.00 | 15.30 | 14.00 | 15.00 | 16.00 | 10.00 | 14.00 | 13.00 | 15.20 | 14.07 |
|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 8 | 비계량 | 5.00 | 5.00 | 4.50 | 6.00 | 6.30 | 6.00 | 6.00 | 6.00 | 4.00 | 6.00 | 5.00 | 5.60 | 5.51 |
|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12 | 비계량 | 10.00 | 8.00 | 8.00 | 8.00 | 9.00 | 8.00 | 9.00 | 10.00 | 6.00 | 8.00 | 8.00 | 9.60 | 8.56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90 | | 145.00 | 127.00 | 119.00 | 122.00 | 163.90 | 138.00 | 155.95 | 177.00 | 133.00 | 150.00 | 119.00 | 137.60 | 140.40 |
|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90 | 비계량 | 70.00 | 58.00 | 58.00 | 61.00 | 75.90 | 68.00 | 69.75 | 83.00 | 63.00 | 78.00 | 56.00 | 63.00 | 66.77 |
|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 45 | 비계량 | 30.00 | 25.00 | 30.00 | 33.00 | 35.90 | 34.00 | 33.75 | 40.00 | 31.50 | 38.00 | 28.00 | 31.50 | 32.57 |
|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 45 | 비계량 | 40.00 | 33.00 | 28.00 | 28.00 | 40.00 | 34.00 | 36.00 | 43.00 | 31.50 | 40.00 | 28.00 | 31.50 | 34.20 |
| 3-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80 | 비계량 | 60.00 | 56.00 | 48.00 | 46.00 | 73.00 | 56.00 | 70.00 | 74.00 | 56.00 | 58.00 | 50.00 | 58.00 | 58.90 |
|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 40 | 비계량 | 25.00 | 29.00 | 21.00 | 25.00 | 38.00 | 28.00 | 36.00 | 38.00 | 28.00 | 28.00 | 25.00 | 28.00 | 29.00 |
| 3-2-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 40 | 비계량 | 35.00 | 27.00 | 27.00 | 21.00 | 35.00 | 28.00 | 34.00 | 36.00 | 28.00 | 30.00 | 25.00 | 30.00 | 29.90 |
|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20 | 비계량 | 15.00 | 13.00 | 13.00 | 15.00 | 15.00 | 14.00 | 16.20 | 20.00 | 14.00 | 14.00 | 13.00 | 16.60 | 14.73 |
|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 8 | 비계량 | 6.00 | 5.00 | 3.50 | 6.00 | 6.00 | 6.00 | 6.00 | 8.00 | 5.60 | 6.00 | 5.00 | 6.40 | 5.80 |
|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 12 | 비계량 | 9.00 | 8.00 | 9.50 | 9.00 | 9.00 | 8.00 | 10.20 | 12.00 | 8.40 | 8.00 | 8.00 | 10.20 | 8.93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 70.12 | 51.12 | 58.42 | 64.12 | 57.42 | 63.12 | 63.22 | 81.12 | 54.12 | 64.12 | 62.12 | 59.12 | 61.69 |
|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 | 비계량 | 40.00 | 26.00 | 28.00 | 33.00 | 25.00 | 34.00 | 32.50 | 46.00 | 25.00 | 35.00 | 34.00 | 28.00 | 31.55 |
|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5.00 | 10.00 | 11.00 | 15.00 | 10.00 | 14.00 | 10.00 | 18.00 | 10.00 | 15.00 | 14.00 | 10.00 | 12.40 |
|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5.00 | 16.00 | 17.00 | 18.00 | 15.00 | 20.00 | 22.50 | 28.00 | 15.00 | 20.00 | 20.00 | 18.00 | 19.15 |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30 | 계량 | 15.12 |
| 4-2-1. 부채비율 | 12 | 계량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11.52 |
|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 9 | 계량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 4-2-3. 총자산증가율 | 9 | 계량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5.00 | 10.00 | 15.30 | 16.00 | 17.30 | 14.00 | 15.60 | 20.00 | 14.00 | 14.00 | 13.00 | 16.00 | 15.02 |
|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 8 | 비계량 | 7.00 | 4.00 | 6.30 | 7.00 | 6.30 | 6.00 | 7.20 | 8.00 | 5.60 | 6.00 | 5.00 | 6.40 | 6.28 |
|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 12 | 비계량 | 8.00 | 6.00 | 9.00 | 9.00 | 11.00 | 8.00 | 8.40 | 12.00 | 8.40 | 8.00 | 8.00 | 9.60 | 8.74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 48.43 | 42.43 | 45.43 | 42.43 | 48.43 | 43.43 | 37.93 | 65.43 | 43.43 | 41.43 | 50.43 | 32.43 | 45.38 |
|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5.00 | 14.00 | 19.00 | 21.00 | 25.00 | 21.00 | 22.50 | 30.00 | 21.00 | 22.00 | 26.00 | 24.00 | 22.65 |
|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 12 | 비계량 | 10.00 | 6.00 | 8.00 | 9.00 | 9.00 | 8.00 | 9.00 | 12.00 | 8.40 | 9.00 | 10.00 | 9.60 | 9.00 |
|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 18 | 비계량 | 15.00 | 8.00 | 11.00 | 12.00 | 16.00 | 13.00 | 13.50 | 18.00 | 12.60 | 13.00 | 16.00 | 14.40 | 13.65 |
|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 감점 | 계량 | -20.86 |
|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감점 | 계량 | -5.71 |
|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50.00 | 55.00 | 53.00 | 48.00 | 50.00 | 49.00 | 42.00 | 62.00 | 49.00 | 46.00 | 51.00 | 35.00 | 49.30 |
| 합 계 | 1,000 | | 744.32 | 672.32 | 696.62 | 689.32 | 769.62 | 731.32 | 761.37 | 837.32 | 719.32 | 742.32 | 698.32 | 716.12 | 731.39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주)채널에이(채널A)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계량 | 322.36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10 | | 120.00 | 111.00 | 117.70 | 122.00 | 95.00 | 144.00 | 132.70 | 156.00 | 121.00 | 126.00 | 111.00 | 143.60 | 124.85 |
|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 120 | 비계량 | 55.00 | 66.00 | 66.00 | 68.00 | 51.00 | 86.00 | 67.80 | 90.00 | 70.00 | 67.00 | 52.00 | 77.00 | 67.68 |
|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 60 | 비계량 | 20.00 | 34.00 | 35.00 | 35.00 | 25.00 | 43.00 | 33.00 | 40.00 | 35.00 | 30.00 | 26.00 | 35.00 | 32.80 |
|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계획의적정성 | 60 | 비계량 | 35.00 | 32.00 | 31.00 | 33.00 | 26.00 | 43.00 | 34.80 | 50.00 | 35.00 | 37.00 | 26.00 | 42.00 | 34.88 |
|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50.00 | 34.00 | 40.00 | 42.00 | 36.00 | 44.00 | 52.50 | 51.00 | 40.00 | 45.00 | 46.00 | 53.00 | 44.50 |
|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0.00 | 15.00 | 16.00 | 19.00 | 20.00 | 20.00 | 22.50 | 16.00 | 17.00 | 20.00 | 20.00 | 21.00 | 18.90 |
|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 40 | 비계량 | 30.00 | 19.00 | 24.00 | 23.00 | 16.00 | 24.00 | 30.00 | 35.00 | 23.00 | 25.00 | 26.00 | 32.00 | 25.60 |
|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5.00 | 11.00 | 11.70 | 12.00 | 8.00 | 14.00 | 12.40 | 15.00 | 11.00 | 14.00 | 13.00 | 13.60 | 12.67 |
|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 8 | 비계량 | 5.00 | 4.00 | 4.50 | 5.00 | 3.20 | 6.00 | 4.00 | 5.00 | 4.00 | 5.00 | 5.00 | 5.20 | 4.67 |
|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12 | 비계량 | 10.00 | 7.00 | 7.20 | 7.00 | 4.80 | 8.00 | 8.40 | 10.00 | 7.00 | 9.00 | 8.00 | 8.40 | 8.00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90 | | 120.00 | 100.00 | 96.60 | 108.00 | 91.30 | 133.00 | 111.60 | 165.00 | 109.00 | 94.00 | 104.00 | 105.90 | 109.70 |
|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90 | 비계량 | 55.00 | 49.00 | 44.00 | 52.00 | 45.00 | 65.00 | 36.00 | 76.00 | 52.00 | 43.00 | 42.00 | 49.50 | 49.93 |
|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 45 | 비계량 | 15.00 | 23.00 | 18.00 | 28.00 | 18.00 | 31.00 | 11.25 | 34.00 | 26.00 | 20.00 | 20.00 | 22.50 | 22.15 |
|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 45 | 비계량 | 40.00 | 26.00 | 26.00 | 24.00 | 27.00 | 34.00 | 24.75 | 42.00 | 26.00 | 23.00 | 22.00 | 27.00 | 27.78 |
| 3-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80 | 비계량 | 50.00 | 41.00 | 39.90 | 44.00 | 38.00 | 54.00 | 61.20 | 72.00 | 46.00 | 40.00 | 52.00 | 48.00 | 47.81 |
|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 40 | 비계량 | 20.00 | 19.00 | 16.00 | 22.00 | 16.00 | 26.00 | 30.00 | 36.00 | 23.00 | 20.00 | 26.00 | 22.00 | 22.40 |
| 3-2-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 40 | 비계량 | 30.00 | 22.00 | 23.90 | 22.00 | 22.00 | 28.00 | 31.20 | 36.00 | 23.00 | 20.00 | 26.00 | 26.00 | 25.41 |
|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20 | 비계량 | 15.00 | 10.00 | 12.70 | 12.00 | 8.30 | 14.00 | 14.40 | 17.00 | 11.00 | 11.00 | 10.00 | 8.40 | 11.96 |
|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 8 | 비계량 | 6.00 | 3.00 | 3.20 | 5.00 | 3.50 | 6.00 | 6.00 | 6.00 | 4.00 | 6.00 | 4.00 | 2.40 | 4.67 |
|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 12 | 비계량 | 9.00 | 7.00 | 9.50 | 7.00 | 4.80 | 8.00 | 8.40 | 11.00 | 7.00 | 5.00 | 6.00 | 6.00 | 7.29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 67.08 | 54.08 | 62.08 | 60.08 | 56.08 | 65.08 | 69.30 | 80.08 | 64.08 | 64.08 | 61.08 | 64.48 | 63.94 |
|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50 | 비계량 | 35.00 | 30.00 | 32.00 | 31.00 | 27.00 | 35.00 | 38.70 | 44.00 | 35.00 | 33.00 | 33.00 | 32.00 | 33.77 |
|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0.00 | 14.00 | 15.00 | 11.00 | 8.00 | 14.00 | 15.00 | 16.00 | 14.00 | 13.00 | 13.00 | 14.00 | 13.30 |
|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5.00 | 16.00 | 17.00 | 20.00 | 19.00 | 21.00 | 23.70 | 28.00 | 21.00 | 20.00 | 20.00 | 18.00 | 20.47 |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30 | 계량 | 17.08 |
| 4-2-1. 부채비율 | 12 | 계량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 9 | 계량 | 2.60 | 2.60 | 2.60 | 2.60 | 2.60 | 2.60 | 2.60 | 2.60 | 2.60 | 2.60 | 2.60 | 2.60 | 2.60 |
| 4-2-3. 총자산증가율 | 9 | 계량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15.00 | 7.00 | 13.00 | 12.00 | 12.00 | 13.00 | 13.52 | 19.00 | 12.00 | 14.00 | 11.00 | 15.40 | 13.09 |
|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 8 | 비계량 | 5.00 | 3.00 | 5.00 | 5.00 | 3.50 | 5.00 | 6.32 | 7.00 | 4.80 | 6.00 | 4.00 | 6.40 | 5.10 |
|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 12 | 비계량 | 10.00 | 4.00 | 8.00 | 7.00 | 8.50 | 8.00 | 7.20 | 12.00 | 7.20 | 8.00 | 7.00 | 9.00 | 7.99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 33.60 | 39.60 | 40.60 | 40.60 | 19.60 | 47.60 | 50.76 | 62.60 | 37.60 | 47.60 | 44.60 | 27.50 | 41.06 |
|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0.00 | 11.00 | 21.00 | 17.00 | 11.00 | 20.00 | 23.16 | 26.00 | 17.00 | 19.00 | 20.00 | 17.40 | 18.61 |
|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 12 | 비계량 | 8.00 | 4.00 | 7.00 | 7.00 | 3.00 | 8.00 | 9.48 | 9.00 | 7.00 | 8.00 | 8.00 | 8.40 | 7.44 |
|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 18 | 비계량 | 12.00 | 7.00 | 14.00 | 10.00 | 8.00 | 12.00 | 13.68 | 17.00 | 10.00 | 11.00 | 12.00 | 9.00 | 11.17 |
|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 감점 | 계량 | -15.69 |
|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감점 | 계량 | -5.71 |
|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35.00 | 50.00 | 41.00 | 45.00 | 30.00 | 49.00 | 49.00 | 58.00 | 42.00 | 50.00 | 46.00 | 31.50 | 43.85 |
| 합 계 | 1,000 | | 663.04 | 627.04 | 639.34 | 653.04 | 584.34 | 712.04 | 686.72 | 786.04 | 654.04 | 654.04 | 643.04 | 663.84 | 661.91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주)와이티엔(YTN)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계량 | 326.65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60 | | 200.00 | 141.00 | 148.80 | 139.00 | 116.00 | 180.00 | 174.05 | 178.00 | 181.00 | 167.00 | 162.00 | 190.50 | 165.35 |
|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 150 | 비계량 | 120.00 | 82.00 | 88.00 | 90.00 | 65.00 | 106.00 | 108.75 | 105.00 | 109.00 | 89.00 | 92.00 | 112.50 | 97.83 |
|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 75 | 비계량 | 55.00 | 42.00 | 49.00 | 45.00 | 30.00 | 56.00 | 52.50 | 45.00 | 59.00 | 47.00 | 46.00 | 52.50 | 49.00 |
|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계획의적정성 | 75 | 비계량 | 65.00 | 40.00 | 39.00 | 45.00 | 35.00 | 50.00 | 56.25 | 60.00 | 50.00 | 42.00 | 46.00 | 60.00 | 48.83 |
|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80 | 비계량 | 60.00 | 42.00 | 45.00 | 36.00 | 33.00 | 52.00 | 47.00 | 54.00 | 50.00 | 58.00 | 50.00 | 60.00 | 48.71 |
|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 35 | 비계량 | 25.00 | 18.00 | 18.00 | 16.00 | 15.00 | 25.00 | 24.50 | 15.00 | 25.00 | 28.00 | 22.00 | 26.25 | 21.48 |
|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 45 | 비계량 | 35.00 | 24.00 | 27.00 | 20.00 | 18.00 | 27.00 | 22.50 | 39.00 | 25.00 | 30.00 | 28.00 | 33.75 | 27.23 |
|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0.00 | 17.00 | 15.80 | 13.00 | 18.00 | 22.00 | 18.30 | 19.00 | 22.00 | 20.00 | 20.00 | 18.00 | 18.81 |
|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 12 | 비계량 | 8.00 | 8.00 | 5.80 | 5.00 | 8.00 | 9.00 | 8.40 | 7.00 | 9.00 | 8.00 | 8.00 | 7.20 | 7.74 |
|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18 | 비계량 | 12.00 | 9.00 | 10.00 | 8.00 | 10.00 | 13.00 | 9.90 | 12.00 | 13.00 | 12.00 | 12.00 | 10.80 | 11.07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60 | | 110.00 | 82.00 | 94.40 | 96.00 | 64.50 | 100.00 | 113.45 | 136.00 | 111.00 | 93.00 | 80.00 | 114.55 | 99.59 |
|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60 | 비계량 | 50.00 | 36.00 | 37.50 | 36.00 | 25.00 | 37.00 | 38.00 | 54.00 | 43.00 | 36.00 | 28.00 | 48.00 | 38.95 |
|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 20 | 비계량 | 15.00 | 14.00 | 13.50 | 12.00 | 8.00 | 13.00 | 16.00 | 18.00 | 15.00 | 14.00 | 10.00 | 16.00 | 13.85 |
|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 40 | 비계량 | 35.00 | 22.00 | 24.00 | 24.00 | 17.00 | 24.00 | 22.00 | 36.00 | 28.00 | 22.00 | 18.00 | 32.00 | 25.10 |
| 3-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40.00 | 35.00 | 37.00 | 42.00 | 27.00 | 44.00 | 53.55 | 56.00 | 46.00 | 40.00 | 32.00 | 43.75 | 41.33 |
|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 35 | 비계량 | 15.00 | 18.00 | 17.00 | 21.00 | 13.00 | 23.00 | 26.25 | 28.00 | 23.00 | 20.00 | 16.00 | 22.75 | 20.20 |
| 3-2-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 35 | 비계량 | 25.00 | 17.00 | 20.00 | 21.00 | 14.00 | 21.00 | 27.30 | 28.00 | 23.00 | 20.00 | 16.00 | 21.00 | 21.13 |
|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30 | 비계량 | 20.00 | 11.00 | 19.90 | 18.00 | 12.50 | 19.00 | 21.90 | 26.00 | 22.00 | 17.00 | 20.00 | 22.80 | 19.31 |
|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 12 | 비계량 | 9.00 | 4.00 | 5.60 | 7.00 | 5.00 | 8.00 | 8.40 | 10.00 | 9.00 | 8.00 | 8.00 | 8.40 | 7.64 |
|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 18 | 비계량 | 11.00 | 7.00 | 14.30 | 11.00 | 7.50 | 11.00 | 13.50 | 16.00 | 13.00 | 9.00 | 12.00 | 14.40 | 11.67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80 | | 56.11 | 51.11 | 50.01 | 48.11 | 38.31 | 52.11 | 57.56 | 64.11 | 39.11 | 55.11 | 42.11 | 46.01 | 50.24 |
|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40 | 비계량 | 30.00 | 25.00 | 25.00 | 24.00 | 16.00 | 27.00 | 32.95 | 38.00 | 16.00 | 29.00 | 19.00 | 22.50 | 25.65 |
|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 15 | 비계량 | 12.00 | 2.00 | 11.00 | 9.00 | 6.00 | 11.00 | 11.70 | 14.00 | 8.00 | 11.00 | 7.00 | 7.50 | 9.42 |
|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 25 | 비계량 | 18.00 | 23.00 | 14.00 | 15.00 | 10.00 | 16.00 | 21.25 | 24.00 | 8.00 | 18.00 | 12.00 | 15.00 | 16.23 |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30 | 계량 | 18.11 |
| 4-2-1. 부채비율 | 12 | 계량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 9 | 계량 | 4.06 | 4.06 | 4.06 | 4.06 | 4.06 | 4.06 | 4.06 | 4.06 | 4.06 | 4.06 | 4.06 | 4.06 | 4.06 |
| 4-2-3. 총자산증가율 | 9 | 계량 | 4.04 | 4.04 | 4.04 | 4.04 | 4.04 | 4.04 | 4.04 | 4.04 | 4.04 | 4.04 | 4.04 | 4.04 | 4.04 |
|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10 | 비계량 | 8.00 | 8.00 | 6.90 | 6.00 | 4.20 | 7.00 | 6.50 | 8.00 | 5.00 | 8.00 | 5.00 | 5.40 | 6.48 |
|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 4 | 비계량 | 3.00 | 4.00 | 2.90 | 2.00 | 1.70 | 3.00 | 2.00 | 3.00 | 2.00 | 3.00 | 2.00 | 2.40 | 2.53 |
|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 6 | 비계량 | 5.00 | 4.00 | 4.00 | 4.00 | 2.50 | 4.00 | 4.50 | 5.00 | 3.00 | 5.00 | 3.00 | 3.00 | 3.95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 45.60 | 62.60 | 53.60 | 45.60 | 38.10 | 61.60 | 68.16 | 65.60 | 51.60 | 44.60 | 41.60 | 52.60 | 52.01 |
|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10.00 | 11.00 | 16.00 | 18.00 | 12.50 | 20.00 | 19.56 | 24.00 | 17.00 | 17.00 | 13.00 | 18.00 | 16.21 |
|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 12 | 비계량 | 4.00 | 4.00 | 7.00 | 7.00 | 5.00 | 8.00 | 6.96 | 8.00 | 7.00 | 7.00 | 5.00 | 7.20 | 6.42 |
|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 18 | 비계량 | 6.00 | 7.00 | 9.00 | 11.00 | 7.50 | 12.00 | 12.60 | 16.00 | 10.00 | 10.00 | 8.00 | 10.80 | 9.79 |
|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 감점 | 계량 | -14.40 |
|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감점 | 계량 | | 0.00 |
|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50.00 | 66.00 | 52.00 | 42.00 | 40.00 | 56.00 | 63.00 | 56.00 | 49.00 | 42.00 | 43.00 | 49.00 | 50.20 |
| 합 계 | 1,000 | | 738.36 | 663.36 | 673.46 | 655.36 | 583.56 | 720.36 | 739.87 | 770.36 | 709.36 | 686.36 | 652.36 | 730.31 | 693.84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계량 | 326.94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60 | | 190.00 | 134.00 | 149.50 | 135.00 | 124.00 | 180.00 | 175.20 | 166.00 | 172.00 | 153.00 | 151.00 | 154.50 | 157.28 |
|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 150 | 비계량 | 110.00 | 81.00 | 86.00 | 86.00 | 60.00 | 102.00 | 108.75 | 95.00 | 100.00 | 82.00 | 92.00 | 86.25 | 91.28 |
|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 75 | 비계량 | 50.00 | 42.00 | 48.00 | 43.00 | 25.00 | 52.00 | 56.25 | 40.00 | 50.00 | 42.00 | 46.00 | 37.50 | 45.05 |
|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계획의적정성 | 75 | 비계량 | 60.00 | 39.00 | 38.00 | 43.00 | 35.00 | 50.00 | 52.50 | 55.00 | 50.00 | 40.00 | 46.00 | 48.75 | 46.23 |
|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80 | 비계량 | 55.00 | 40.00 | 47.00 | 36.00 | 48.00 | 55.00 | 48.75 | 54.00 | 50.00 | 53.00 | 40.00 | 50.25 | 47.88 |
|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 35 | 비계량 | 25.00 | 19.00 | 19.00 | 16.00 | 21.00 | 26.00 | 26.25 | 16.00 | 25.00 | 25.00 | 22.00 | 21.00 | 21.90 |
|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 45 | 비계량 | 30.00 | 21.00 | 28.00 | 20.00 | 27.00 | 29.00 | 22.50 | 38.00 | 25.00 | 28.00 | 18.00 | 29.25 | 25.98 |
|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25.00 | 13.00 | 16.50 | 13.00 | 16.00 | 23.00 | 17.70 | 17.00 | 22.00 | 18.00 | 19.00 | 18.00 | 18.12 |
|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 12 | 비계량 | 11.00 | 6.00 | 6.00 | 5.00 | 5.00 | 9.00 | 6.00 | 6.00 | 9.00 | 7.00 | 8.00 | 7.20 | 6.92 |
|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18 | 비계량 | 14.00 | 7.00 | 10.50 | 8.00 | 11.00 | 14.00 | 11.70 | 11.00 | 13.00 | 11.00 | 11.00 | 10.80 | 11.20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60 | | 100.00 | 94.00 | 90.70 | 94.00 | 64.20 | 98.00 | 101.50 | 138.00 | 115.00 | 111.00 | 81.00 | 109.30 | 99.37 |
|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60 | 비계량 | 45.00 | 35.00 | 35.70 | 36.00 | 27.00 | 37.00 | 35.00 | 54.00 | 43.00 | 43.00 | 36.00 | 48.00 | 39.37 |
|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 20 | 비계량 | 15.00 | 14.00 | 11.90 | 12.00 | 9.00 | 13.00 | 15.00 | 18.00 | 15.00 | 16.00 | 12.00 | 16.00 | 13.99 |
|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 40 | 비계량 | 30.00 | 21.00 | 23.80 | 24.00 | 18.00 | 24.00 | 20.00 | 36.00 | 28.00 | 27.00 | 24.00 | 32.00 | 25.38 |
| 3-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35.00 | 43.00 | 36.00 | 40.00 | 26.50 | 44.00 | 45.50 | 60.00 | 50.00 | 49.00 | 32.00 | 38.50 | 41.30 |
|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 35 | 비계량 | 15.00 | 25.00 | 16.00 | 20.00 | 12.50 | 23.00 | 21.00 | 30.00 | 25.00 | 25.00 | 16.00 | 17.50 | 20.35 |
| 3-2-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 35 | 비계량 | 20.00 | 18.00 | 20.00 | 20.00 | 14.00 | 21.00 | 24.50 | 30.00 | 25.00 | 24.00 | 16.00 | 21.00 | 20.95 |
|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30 | 비계량 | 20.00 | 16.00 | 19.00 | 18.00 | 10.70 | 17.00 | 21.00 | 24.00 | 22.00 | 19.00 | 13.00 | 22.80 | 18.70 |
|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 12 | 비계량 | 8.00 | 9.00 | 5.40 | 7.00 | 3.50 | 7.00 | 8.40 | 8.00 | 9.00 | 9.00 | 5.00 | 8.40 | 7.52 |
|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 18 | 비계량 | 12.00 | 7.00 | 13.60 | 11.00 | 7.20 | 10.00 | 12.60 | 16.00 | 13.00 | 10.00 | 8.00 | 14.40 | 11.18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80 | | 55.41 | 37.41 | 45.31 | 45.41 | 33.41 | 44.41 | 42.71 | 52.41 | 34.41 | 49.41 | 45.41 | 45.91 | 44.44 |
|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40 | 비계량 | 35.00 | 20.00 | 25.40 | 26.00 | 16.00 | 25.00 | 23.50 | 31.00 | 16.00 | 28.00 | 27.00 | 26.50 | 25.04 |
|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 15 | 비계량 | 12.00 | 8.00 | 10.50 | 10.00 | 6.00 | 10.00 | 9.00 | 11.00 | 8.00 | 12.00 | 10.00 | 9.00 | 9.75 |
|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 25 | 비계량 | 23.00 | 12.00 | 14.90 | 16.00 | 10.00 | 15.00 | 14.50 | 20.00 | 8.00 | 16.00 | 17.00 | 17.50 | 15.29 |

|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평점 |
|---|--------------|------------|---------------|---------------|---------------|---------------|---------------|---------------|---------------|---------------|---------------|---------------|---------------|---------------|---------------|
|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30 | 계량 | 13.41 |
| 4-2-1. 부채비율 | 12 | 계량 | 9.54 | 9.54 | 9.54 | 9.54 | 9.54 | 9.54 | 9.54 | 9.54 | 9.54 | 9.54 | 9.54 | 9.54 | 9.54 |
|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 9 | 계량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 4-2-3. 총자산증가율 | 9 | 계량 | 2.07 | 2.07 | 2.07 | 2.07 | 2.07 | 2.07 | 2.07 | 2.07 | 2.07 | 2.07 | 2.07 | 2.07 | 2.07 |
|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10 | 비계량 | 7.00 | 4.00 | 6.50 | 6.00 | 4.00 | 6.00 | 5.80 | 8.00 | 5.00 | 8.00 | 5.00 | 6.00 | 5.99 |
|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 4 | 비계량 | 3.00 | 1.00 | 2.50 | 2.00 | 1.60 | 2.00 | 2.20 | 3.00 | 2.00 | 3.00 | 2.00 | 2.40 | 2.27 |
|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 6 | 비계량 | 4.00 | 3.00 | 4.00 | 4.00 | 2.40 | 4.00 | 3.60 | 5.00 | 3.00 | 5.00 | 3.00 | 3.60 | 3.72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 59.40 | 61.40 | 60.40 | 58.40 | 48.40 | 68.40 | 76.96 | 70.40 | 60.40 | 52.40 | 46.40 | 64.70 | 60.21 |
|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30 | 비계량 | 15.00 | 12.00 | 16.00 | 22.00 | 12.00 | 18.00 | 19.56 | 22.00 | 17.00 | 18.00 | 13.00 | 21.30 | 17.11 |
|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 12 | 비계량 | 7.00 | 6.00 | 7.00 | 9.00 | 4.80 | 7.00 | 6.96 | 7.00 | 7.00 | 6.00 | 5.00 | 7.80 | 6.68 |
|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 18 | 비계량 | 8.00 | 6.00 | 9.00 | 13.00 | 7.20 | 11.00 | 12.60 | 15.00 | 10.00 | 12.00 | 8.00 | 13.50 | 10.43 |
|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 감점 | 계량 | -5.60 |
|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감점 | 계량 | | 0.00 |
|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 70 | 비계량 | 50.00 | 55.00 | 50.00 | 42.00 | 42.00 | 56.00 | 63.00 | 54.00 | 49.00 | 40.00 | 39.00 | 49.00 | 48.70 |
| 합 계 | 1,000 | | 731.75 | 653.75 | 672.85 | 659.75 | 596.95 | 717.75 | 723.31 | 753.75 | 708.75 | 692.75 | 650.75 | 701.35 | 688.24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4. 심사의견서

20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총평

1. 종합 의견

- 종편PP는 '11년 최초 승인 이후 도입 5년이 지나면서 3개 채널이 공히 출범 초기의 부진을 딛고 시청률 향상 및 매출액 증가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내었음
-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의 품질과 편성, 제작 투자 등에서 신청법인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종편PP 도입 시의 정책 목표인 '방송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의 달성여부에 대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평가를 받았음
- 종편PP의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투자한 채널은 시청자에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방송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음
- 다만,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라도 사업자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시청자의 불권리를 우선시 하여 재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향후 종편PP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2. 중점 심사사항 별 소견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제고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유효기간 중 관련 심의제재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특히, 시사 논평·대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막말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 출연자 자질 검증, 사후제재 강화 등 출연자로 인한 방송의 품격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시청자 권익 보호)** 종편·보도PP 5사가 시청자 센터 등을 통해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된 시청자 불만을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경우 뉴스, 탐사보도, 시사 논평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 종합편성채널로서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노력이 매우 부족함
-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종편PP 3사 모두 콘텐츠 투자 실적이 재승인 계획에 지속적으로 미달하였으며, 특히 (주)조선방송은 콘텐츠 투자 계획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종편PP 3사 모두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

20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주]조선방송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제재가 타 종편PP보다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가 계속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 실현계획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움
- 출연자의 자질 검증, 막말, 정치적 편향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심의제재가 외부단체의 의도적 문제제기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자체적인 개선은 요원하다고 판단됨
- 공정보도가이드라인, 위기관리팀, 리얼타임 시사옴부즈맨 및 출연자 사전 검증·사후관리 등 각종 제도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의제재가 계속 증가한 점은 오보·막말·편파방송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을 보여줌
-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자체 시스템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됨. 시청자 모니터링단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이를 강화 및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청자 불만 상위 내역 1, 2위의 건수나 비율이 연도에 따라 변함없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 불만 상위 사유를 내용 위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다양한 시청자를 대표할 필요가 있으며, 회의 진행도 시청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자체심의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실 인원 ○인 중 실제로 심의 가능 인원은 겸직 팀장을 제외한 ○~○인으로서 심의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막말 오보 등 쉽게 사전심의로 걸러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외부 출연자의 막말, 추측성 발언, 정보의 오류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부 진행자의 막말로 시청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의 외면은 더욱 급격해질 것으로 보임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종합편성채널이면서도 프로그램의 보도분야 편중이 심하고 교양과 오락 분야의 빈곤성이 두드러짐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함. 본질적인 장르와 포맷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행실적과 계획에서의 보도분야 프로그램 비율 개선은 실질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본래 보도분야에 속하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교양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분류하여 나타난 결과여서 진정한 개선으로 보기 어려움
- 재방송이 어려운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전체 방송시간의 약 절반이 재방송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어 종편도입 시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함
- 소수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을 ○%로 계획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3년간('14~'16) 콘텐츠 투자액은 연평균 ○원으로 재승인 당시 제시한 높지 않은 수준의 연평균 ○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며 타 종편PP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향후 5년간('17~'21) 계획도 연평균 ○원으로 최근 달성한 3년간 콘텐츠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되어 콘텐츠 투자 의지에 의구심이 있음
-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성상생투자조합의 투자가 수익성에 치중한 영화에만 투자되고 있는데, 본래 설립 목적인 방송콘텐츠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보수적인 경영으로 재무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고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우려됨

-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등이 '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이에 따른 콘텐츠 투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0%로 종편PP 3사 중 가장 낮음. 지난 3년간 투자 액수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투자 계획도 0%대에 머물러 콘텐츠 투자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실행이 따라야 할 것임
- 미디어사업본부 신설, 해외플랫폼 진출, 공동제작 확대는 바람직한 비전 제시로 보임.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도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독창적 포맷의 프로그램 제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애니메이션·가족프로그램을 소수시청자 프로그램으로, 행사나 스포츠 중계·재테크정보·의학 프로그램을 공익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등 공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방송설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임. 제작·송출 장비에서 외산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장비가 있을 경우 국산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국산장비 도입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제70조의2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방송산업 발전이나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너무 저조함
- 방송심의규정 준수 등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제작진과 경영진의 노력이 요구됨

5. 기타 심사의견

-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및 공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보·막말·편파가 심하고 보도PP와 종편PP의 구별을 무색케 하는 보도 편중 편성으로 종합편성채널로서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한국의 콘텐츠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2017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주]제이티비씨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다운 방송을 구현하고자 하는 CEO의 의지와 공정성, 공익성 실현 노력이 돋보임
 - JTBC는 타사에 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면에서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이 우수하며 뉴스 보도 등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됨
- 품격제고를 위한 '공정성가이드라인', '진행자·출연자 가이드라인',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출연정지·해제 가이드라인' 등 4대 가이드라인이 돋보이며 6단계 공정보도시스템과 JTBC 공정보도 위원회, 노사공정보도위원회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좋은 장치가 되고 있음
 - 다만 3회 이상 막말 논란이 있는 진행자나 출연자에 대해 출연 정지에 그치는 등 출연자 자질에 대한 관리 대책에 다소 소극적이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방송언어의 순화 계획이 미흡해 보임
 - 공정보도를 위한 사내 모니터링 효율화 및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전체 방송의 30%이상의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 관련하여 방송법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맞도록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제고 보다는 일반적 프로그램에 의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함
- 기본적인 시청자위원회 외에 노사가 참여하는 공정보도위원회 및 청년의회 조성 등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이 인정됨

- 다만 시청자 위원회의 구성이 사회지도층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대표성이 떨어지며, 청년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청년이외 다른 세대의 의견 반영 제도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청자 불만처리 내용이 체계적으로 논의 되고, 그 결과가 시청자 위원회 및 제작진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체계 확립 노력이 필요함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그간 실적(2016년말까지 ○명 고용)과 향후 5년간 추가로 ○명의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 방안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보도/교양/오락의 균형있는 프로그램 편성과 장르별 편성비율이 적절하여 다양한 장르의 편성이라는 중편의 존재 이유에 맞는 편성 이행실적과 실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도부분 편성이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탐사보도프로그램,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 기획 편성도 긍정적임
 - 균형적 편성과 의욕적 콘텐츠 투자결과, 흥미·공익·다양성·유익함·창의·신뢰·공생 등 7개 부문 항목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고, 시청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썰전'은 2위, '비정상회담'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었음
- 콘텐츠 투자금액이 3년(2014~2016)간 ○원으로 연 평균 ○원 수준으로 향후에도 5년간(2017~2021) 총 ○원, 연평균 ○원의 콘텐츠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타 중편채널과 달리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종편사 모두 투자계획 이행목표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은 0%로 타 종편채널을 압도하였음
- 다만 2014~2016년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 실적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콘텐츠 투자계획이 필요함
- 또한 콘텐츠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증빙과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함
- 자체 제작 콘텐츠 경쟁력을 자신하며, 해외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콘텐츠의 해외유통을 통해 3년간 0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향후 전망도 긍정적임
- 외주제작비율은 평균 0%로, 계획대비 초과실적을 달성하였고 향후 5년간 0원의 외주구매 계획도 긍정적임
 - 다만 2014~2016년 자체제작비율과 특수관계자 제작비율이 외주제작비율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므로 외주제작비율을 높임으로써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특수관계자 제작비율 계획 축소가 필요)
 -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향후 계획에서 오락프로그램 부문보다 월등히 높는데 교양프로그램의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승인 후 사업계획서 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방비율을 낮추는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매년 0%이상의 공익 프로그램의 편성이 긍정적이거나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정·노약자·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 실적이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확대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이행 점검이 필요할 것임
- 사회적으로 재난방송 강화가 요구되나 장비 구축 현황을 보면 기초장비 수준에 그쳐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 방송이 가능하도록 재난방송 장비를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 계획이 필요함

- 저작권 보호 및 합리적 배분정책, 공정한 제작비 지급 시스템 구축 등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으나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증거이며 회사 대표와 최대주주의 자금조달계획과 추가출자에 대한 의지로 볼 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닌 듯함
 - 종편 최대의 시설투자(○원)와 국산장비구입 목표초과달성(○%)을 넘어, 새로운 신사옥에 ○원의 방송시설투자, ○원의 국산장비구입, UHD 시스템 도입 등의 계획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초기의 투자와는 달리 향후 상당히 조심스러운 투자전략을 구상하는바 지나치게 재무건전성을 견지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현재 재무구조에서는 먼저 안정적인 자금조달 계획 등 재정능력 보충 대책이 선행 된 후,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매출액과 투자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정건전성과 경영의 안정성이 우려되며, 2021년까지 ○원 이상의 콘텐츠 투자와 신사옥 건설계획이 상정되어 있어 증자 및 자금조달 등에 있어 문제점이 예상됨
 - 해외 시장 개척 의지/전략, 신사옥 건립 계획 등 적극적 경영 계획은 높이 평가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시장전망에서 국내유통 매출액을 해외 유통매출액보다 높게 잡았으나 국내유통 매출액이 2016년 기준으로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2021년까지 국내 유통액을 ○원까지 ○%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은 과도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콘텐츠 투자계획(향후 5년)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 따라서 계획 수정이 필요함

- 방송사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2016년 말 현재 ○명을 고용하고 있어 긍정적임. 향후에도 5년간 ○명의 직접고용을 계획하고 있고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도 바람직함
- 방송기술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산장비의 구매실적이 다소 저조함
 - 제작·송출 장비에서 외산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장비가 있을 경우 국산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국산방송장비 도입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UHD 프로그램 편성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재승인 후 연도별 편성 실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타 종편사보다 월등한 그간 투자액과 향후 계획으로 볼 때 한국 방송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외주제작 확대, 연구개발, 방송장비 구입, 방송 인력 양성,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타 종편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외부 위탁교육을 통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도 주목됨
 - 다만 현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콘텐츠 투자를 통한 유료 방송시장에 대한 기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무구조의 안정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재승인 조건 이행 미흡으로 2015년 시정명령, 2016년 과징금 처분을 받음. 이는 매우 부적절하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됨.
 -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등에 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특히 방송심의와 관련해서는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중징계 사안이 타 종편사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자체적인 심의와 체크시스템 강화가 요구되며, 방송법 위반에 따른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태료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차후 개선 노력이 필요

5. 기타 심사의견

- 동일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편성분야 비율을 적용받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분류기준 적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분류할 수 없도록 방송프로그램 분야와 세부프로그램 분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검토 필요
- 프로그램 분야 분류적용을 자의적으로 실시하여 자료제출 시 재승인 심사 또는 승인 이후 해당사실이 밝혀질 때는 승인기간 축소, 재승인 취소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가 필요
- 재승인 심사 시에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 분야 분류기준의 자의적 적용 및 분류사례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논의와 방통위 차원의 세부기준안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재승인 되는 종편PP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 또는 권고사항 부과 검토가 필요함
 1. 보도(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프로그램을 반기별로 전체 방송 시간의 33.3% 이내로 편성할 것
 2. 보도(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프로그램 장르기준 및 정의는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시 방통위가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르되, 방통위가 심의·의결로서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르게 함
 3. 위 1,2호의 조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준수하고, 재승인 유효기간동안 반기별로 장르별 프로그램 목록 및 방송시간을 포함한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20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주]채널에이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의 공정성 관련 자체심의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대한 기여도도 낮다고 판단됨
- 방송법 제6조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하는 오보·막말·편파 심의 조치 건수가 비교적 많고(3년간 심의조치 195건, 법정제재 31건) 관련 이행 실적도 저조하나, 향후의 실행계획은 평가할 만함
-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가동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사전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제도나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인식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음
- 막말방송, 사실왜곡과 관련하여 출연진의 종편채널 영구 출연금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학계·시민단체 등의 공개 추천으로 출연자 이력 검증자문단을 위촉하여 철저적 투명성과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편성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회의기록 내용을 보면 단순한 정보 공유 절차로 보이므로 편성위원회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청자 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운영실적과 시청자불만 처리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는 편이나, 시청자 불만 상위 사유에 대한 통계 작성시 내용 위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있음
- 시청자 최다 불만 사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평가원, 고충처리제도, 심의제도 등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 제도간 차별화 및 체계화, 연계 등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이나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나 지역밀착형 지역 발전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일자리 창출 실적이 미비하며, 방송의 사회·문화적 기여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서 상 2014년 보도 비율이 ○%에서 2016년 ○%로 감소한 것으로 제시됐으나, 이는 동일 프로그램을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이 교양 분류한 결과이며 실질적인 편성의 다양성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검증체계 구축과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방통위 조치가 요구됨
- 보도 기능을 갖는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 편성 편중이 심하므로 관련 장르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 시간의 33.3% 이내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보도 편중 개선 의지나 계획은 평가할 만하며, 더불어 교양, 오락 등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 및 투자 노력이 시급함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재해프로그램 편성 실적이 대부분 실제 재난·재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임의로 재해·재난 실적으로 제출하였음
 - 재난방송 편성실적에 사건사고 보도를 포함하는 등 방송의 기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방송시간 산출도 과다 집계된 것으로 판단됨
 - ※ 재난재해 프로그램 부적절 사례 : 화성염총 난사사건, 군사도발 관련 남북 고위급 차 접촉, 미 대사 테러범 구속 등
- 어린이 프로그램 역시 실제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으로 제출했음
 - 사례: 지적장애인 아이에게 폭언하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반응은?, 가출 여고생을 유혹하는 성인남성을 목격하게 된다면(이영돈, 신동엽 젠틀맨)

- 장애인 프로그램은 2016년 전년대비 ○% 감소했고, 다문화 가정·노약자·외국인 프로그램 역시 2016년 전년대비 ○% 감소하는 등 보도의 편성 비율과다로 인해 소외계층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현저하게 낮음
- 보도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절반을 재방송하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는 방송콘텐츠 사업의 활성화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도 제외 프로그램의 재방비율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지난 3년간 콘텐츠 투자 실적이 2014년 재승인 계획의 ○% 가량에 불과했으며 절대금액도 많지 않았으나, 향후 지속적 증가계획을 제시하여 실적이 담보된다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콘텐츠 투자 이행약속은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은 ○%로 양호하고, 향후 5년간 평균 투자계획도 ○%에 달하므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약속이행을 기대함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미래 투자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누적결손금이 출연금의 ○%에 달하고 있는 2016년 약 ○원의 콘텐츠 투자에서 2021년 약 ○원의 콘텐츠 투자로 ○배 가량을 투자 하겠다고 하였음
 - 이러한 투자확대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매출액 미달성 시 콘텐츠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이 요구됨.
- 향후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계획은 매출액 중 광고 및 협찬 관련 의존도를 낮춰 의미 있다고 판단됨
- 국내 경제성장률을 2019년 ○%, 2020년 ○%로, 매출 등도 2020년 ○원을 추정하고 있어 매출 추정치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역시 광고매출액이 2017년 ○원에서 2021년 ○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 고려 시 적절한 자금조달 추정인지 검토가 필요함
- 재난방송 시스템, 조직체계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방송장비투자는 적절한 수준이나 국산장비의 구매 실적은 저조한 수준임
 - 송출장비에 있어서의 국산장비 도입 비율이 지난 3년간 ○%이고, 향후 5년간 국산장비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모색이 필요함
- 콘텐츠 제작 및 첨단방송기술 활용사업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 직접고용 인력이 ○명으로 방송사 운영에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계약직 포함 매년 ○~○명 가량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어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배구조측면에서는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서 경영의 독립성, 편성의 독립성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리터서 교육이 돋보임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의무편성채널인 중편사업자로서 유료방송산업의 상생발전과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에 관한 실적과 향후계획이 매우 미흡함
 - 재허가 신청서의 유료 방송산업 발전 내용은 실제로는 상생발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자사의 영향력 확대, 수익확대의 내용에 해당함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채널A의 기여는 지금까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계획은 진정성이 있어 보임

- 방송발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심사의견

- 종합편성PP로서 채널A의 지금까지의 수행은 상당히 부족하나 앞으로의 실행계획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평가할만함
- 현행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간지를 경영하는 법인은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종편PP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 현재 (주)채널에이의 최대주주인 (주)동아일보와 그 특수관계자는 채널A의 주식을 ○% 소유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자 해당 소지가 있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채널A 주식(○%) 소유분을 합하면 해당 방송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방통위에서 이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투자금액의 세부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방통위가 종편PP와 다른 전문 보도PP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방송법 제69조,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의 '조화로운 편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

2017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주]와이티엔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012년 재승인 조건에서 제시되었던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횟수를 늘려 좀 더 실효성 있게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최근 공정방송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 대표의 편집회의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사측이 공정한 방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라도 전향적인 수용이 필요함
- 과거 YTN사장(○○○) 임명 반대 투쟁 중 해임된 YTN 기자들과 관련된 문제가 공정방송을 위한 노조 및 노조대표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해고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복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강소기업이 힘이다', '캠퍼스24' 등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및 셀카봉 뉴스 등 실질적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후 계획에서는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시청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의구심이 있음. 시청자 위원회가 사회지도층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시청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유 의견 개진 양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시청자 권익 보호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 조치 계획과 실행보완이 필요하며, 시청자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경영진의 관심이 요구됨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보도전문PP로서 YTN의 편성과 제작은 적절했고 공익성도 무리없이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PP라 하더라도 전체 편성의 20%는 전문 외의 분야에 대한 편성도 가능하고 또 장르 융합이 보편화되는 때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콘텐츠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부터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 2014년까지 크게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2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보도전문채널로서 의무편성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공헌과 공익성 기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연도별 비상업적 공익광고 및 캠페인 프로그램 편성실적에 있어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2013년은 증가). 물론 2016년은 2015년과 비교해 0%나 증가는 했지만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프로그램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및 캠페인 프로그램 편성 실적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YTN의 공적 기여 축소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보도PP의 특성상 외주제작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겠으나 전체의 0%에 불과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향후 5년을 위한 콘텐츠 투자계획의 금액이 낮은 수준이며, 외주제작 및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경영진이 지난 재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추정 수입 및 재무제표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현 재승인 신청서의 향후 추정수입과 자금운영 계획 등은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제출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판단됨
- 다만 재허가 신청 시 향후 계획 등의 작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경영진이 허위기재를 시인한 만큼 앞으로 동일한 문제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방통위의 엄정한 사후조치가 요구됨

- 매출 추정 계획을 보면 방송매출 비중은 서서히 감소('17년 ○%→'21년 ○%)하는 대신 기타사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17년 ○%→'21년 ○%) 제시되고 있는데, 방송전문 채널로서 신규 방송 서비스 개발 등과 같은 방송 분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출 구조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 지난 3년간의 방송시설 투자실적에 비해 향후 투자계획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매우 저조하게 집행되었음. UHD 제작, 송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은 향후 지상파 방송의 UHD 실시 및 방송제작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투자 및 개발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작·송출 장비에서 외산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장비가 있을 경우 국산 장비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국산장비 도입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난 재승인 당시 권고사항인 직원 전문성 교육이 국내외 교육, 뉴미디어 교육,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간부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음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재승인 기간 동안의 심의제재현황을 보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제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향후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심의 제재 발생이 없도록 내부의 체크시스템 보완이 요구됨
- 공익성 관련 소수 시청자 그룹에 대한 프로그램 실적이 미흡함

5. 기타 심사의견

- 장기적인 안목으로 '뉴스의 글로벌 전략'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며, 인력투자 확대가 요청됨

2017년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주]연합뉴스티브이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신생 보도전문PP로서 비교적 무리없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구현하고 있으나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수백억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만큼 방송의 사회적, 공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떨칠 수 있는 임직원의 자세와 논조를 확고히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합뉴스TV의 대표가 연합뉴스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경영의 독립채산제 원칙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겸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프로그램의 심의나 시청자 위원회의 구성 등 다양성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며, 출연자의 자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 시청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계획도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됨. 다만,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지닌 단체의 중복 추천이 불가하더라도 최소한 동일 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은 시청자위원회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시청자 불만 사유 1위인 패널(출연진)관련 사항, 2위인 북한 관련 뉴스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패널 섭외 시 공정성과 자질, 전문성 확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특정 분야의 뉴스보도 내용이 과다하거나 의도적 부각이 없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청자 불만 해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이 요구됨
-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청자 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실적 등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시청자 센터의 구성 및 관련부서와의 업무 연결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시청자 불만 해결을 위한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의 검토 및 해결 체계 마련이 필요
- 시청자 불만 상위 1, 2위 내역의 건수나 비율이 연도에 따라 변함이 없어 시청자 불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자체제작비율이 종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는 보도전문채널로서 뉴스편성비율이 높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됨. 다만 자체 제작 이외의 외주제작, 구매프로그램의 경우 재허가 기간 동안 외주 제작 프로그램보다 구매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음

※ 구매 프로그램 비율: 2014년 ○%, 2015년 ○%, 2016년 ○%

외주 프로그램 비율: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또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구매프로그램 비율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비율보다 높게 계획되어 있어 유료방송산업의 상생발전과 방송제작 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향후 5개년 방송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포괄적 용어로 된 비전과 단순 수치 나열 제시는 편성 계획으로서는 미흡함
- 향후 5년간 콘텐츠 투자계획이 낮은 수준임. 콘텐츠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보도전문PP로서 편성과 제작에 무리가 없었으나 보도전문 PP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전통적인 보도프로그램들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까지는 보도외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편성하여 제한적이거나 편성의 다양성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노약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수자·소외계층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실정이고 향후 확대 계획이 제시되지도 않았음
-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심의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공정보도위원회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횡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 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함
-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와의 협약과 협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뉴스공유, 사내망 공동이용, 인력 공유 및 활용 등에 명확한 독립경영원칙을 적용해야 함. 이는 연합뉴스TV의 발전에도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함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과거 각종 언론관련 재단의 후원 형식으로 직원 장기교육을 실시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사내의 직접지원을 통한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영진의 대응이 필요함
-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위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모기업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티브이와의 재정, 인력, 시설 등의 활용에 있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래 등의 소지가 없도록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 방송시장의 변화에 따라 광고매출의 급감, SO송출료 수익의 감소 등을 감안한 경영상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고려가 필요함

- 2015년까지 지속적인 영업적자임. 계획서상 매년 흑자 전환을 예상한 추정치를 제시함.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됨. 특히 향후 방송광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5개년 사업추진 계획으로 제시된 신사업 발굴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신사업 발굴, 매출 달성 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작·송출 장비에서 외산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장비가 있을 경우 국산장비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국산방송장비 도입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난방송 시스템, 조직체계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첨단방송 기술 촬영과 사업화에 적은 액수지만 꾸준히 VR/AR 외부 데이터 연동 시스템, 멀티터치 모니터 개발 등 투자를 지속,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방송산업 또는 유료방송산업 전체에 대한 기여 및 지원계획에 대한 향후계획이 매우 미흡함
 - 특히 연합뉴스티브이는 모회사이자 최대출자자가 국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연합뉴스라는 점에서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가 요구됨
- 방송법령 준수와 관련해서는 타 재승인 허가 대상사업자와 비교하여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점이 부재하고 방송법 위반에 따른 감점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양호하다고 판단됨

- 상생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함. 경영이 흑자로 전환되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음
- 외주제작 비율이 매우 낮고, 향후 5개년의 프로그램 수급 및 제작 부문 연간 금액도 지난 실적보다 낮게 설정되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 개발 투자 실적이 계획 대비 미흡함.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

5. 기타 심사의견

- 연합뉴스TV는 신생사로서 아직까지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앞으로 세인들의 평가가 좀더 냉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독립성을 위한 종사원 전체의 결연한 의지와 방송발전예의 기여라는 짐을 감당할 자세를 갖추어야 함
- 시청자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과감한 콘텐츠 투자가 미래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뉴스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종합·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2. 20.(월) 11: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2. 20.(월) 11: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화 (안수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차명심 (차명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곽지영 (세명대 회계학과 교수)
허남호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 프로젝트 리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3명)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11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총 열세 분 중 열세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자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편에 보시는 자료가 회의 순서와 서면으로 보고 받으실 안건 하나 그리고 이번 심사의 종합적인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른쪽으로 보이는 자료 3개가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보고드리고 의결할 안건입니다. 먼저 오른쪽 맨 앞에 있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주요일정입니다. 오늘 1일차인 오늘은 심사위원회 운영계획과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청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차인 수요일은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그다음 날인 4일차인 목요일은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시고 심사평가 및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5일차 마지막 날에는 종합심사 의견서를 의결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세부계획을 토대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류를 검토하시고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셔서 평가하시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통위가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안건은 심사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분과를 구성해서 심사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보고하기 위해 분과별로 심사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서 및 속기록 작성 관련입니다. 심사위원회 안건 의결 시, 출석 심사위원이 확인 서명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내용은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심사위원별 평가결과와 심사의견은 개별 심사위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지만 백서 등을 통해 익명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실에 저희가 다 올려 드렸는데 신청법인이 제출한 신청법인 본문, 부속서류, 보정서류 및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서류를 자료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심사위원회는 신청법인에 보정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 채택여부는 의결로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신청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 자료도 심사자료에 해당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편성책임자 행정처분 등 조사결과도 해당합니다. 이후 신청법인 대상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1일차인 월요일 오늘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시고, 사전 기본계획과 심사 세부계획은 보고받을 것입니다. 이 중에 심사 사전 기본계획은 '15년 9월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심사기준(안)도 보고받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제2차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최 예정인데 세부심사기준과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를 의결합니다. 세부심사기준에 대해서는 1일차에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신 후에 의결 여부는 제2차 회의 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으로 종편·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 분과별 위원 구성을 제2차 회의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제3차 회의는 4일차 목요일 개최되고 분과별로 논의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4차 회의 때는 말씀드렸듯이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시고 심사 5일차인 금요일 개최되는 제5차 회의에서 의견서를 의결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회 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제1분과, 제2분과 2개의 분과를 심사 1일차에 구성하고, 운영 횟수는 분과별로 논의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1분과는 방송·미디어분야 3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2인, 법률분야 1인으로 구성되며, 신청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분야 및 장르 편성의 적정성” 관련 검토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제2분과는 시청자·소비자 분야 1인, 경제·경영·회계분야 3인, 기술분야 1인, 법률분야 1인으로 구성되며, 신청사업자의 “콘텐츠 투자의 적정성 및 계량평가” 관련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업자 의견청취 관련 내용, 대상, 일시, 처리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시에는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취하시는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가 되겠고, 배석하는 실무자는 4인 이내로 제한입니다. 심사위원회 3일차 수요일에 진행 예정인데 의견청취 순서를 지난 2월 14일 2시에 사전추첨을 통해 먼저 9시 반에 JTBC,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가 오후 6시 30분에 종결되는 순서로 추첨이 되었습니다. 각 청취는 각사마다 1시간씩 소요되고 30분 정도씩 논의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결과는

별도의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청취 준비를 위해 심사 2일차 3시부터 논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심사 의견청취 당일 날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붙임> 심사장 배치도, 주요일정, 생활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운영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2페이지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회의가 있는데 시간을 보면 지극히 제한된 시간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소분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뜻입니까?

○ **심사지원반**

- 나머지는 분과회의로 진행하시고 분과회의는 필요한 시점에 분과회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은 전체회의에 저희가 보고 드려야 하거나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분과회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의견청취는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의견청취는 같이 합니다.

○ **심사위원**

- 대표자, 편성책임자는 다 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까지 오는 것으로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다 놓아드렸지요?

○ **심사지원반**

- 서면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 우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심사지원반에서 왜 서면을 하는 것이 편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사전 기본계획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5년에 의결한 계획이고, 이 사전 기본계획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 지상파DMB 사업자에 대한 사전 기본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각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나 재승인할 때 별도의 심사 세부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든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보시면 기본계획 내용도 알 수 있을 것이라서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안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심사지원반**이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그래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보고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입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장을 넘기시면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8월 11일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뒤에 안건 붙임 떠지가 붙은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입니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어 MBN에 대한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입니다.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입니다. 또한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한다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포함 13인으로 구성합니다. 방송미디어 분야 3명, 법률 분야 2명, 경제·경영·회계 분야 3명, 기술 분야 1명, 시청자·소비자 분야 3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통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위촉기준입니다.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입니다. 4페이지 심사위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이미 저희가 심사위원님들께 여러 번 공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심사위원회 임무입니다. 방통위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고 마지막으로 심사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앞서 의결한 운영계획에 있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 방안입니다. 평가원칙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열두 분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방식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되는데 계량평가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계량평가에 대해서는 같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비계량 평가는 계량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합니다. 6페이지 <표>를 보시면 등급이 수, 우, 미, 양, 가로 되어 있고 내용은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 있습니다. 먼저 수, 우, 미, 양, 가를 결정하신 다음 해당되는 배점 구간에서 배점을 하게 됩니다.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4자리 이하는 버리고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 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합니다.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사기준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5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개 심사사항은 첫 번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두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

요성,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네 번째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다섯 번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입니다. 7페이지 종편 및 보도PP 심사사항별 배점입니다. 심사사항별 배점과 심사항목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400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의 배점입니다.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평가는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400점은 기존에 있던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점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600점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승인 여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내용이 꼭 보고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빨리빨리 머리에 안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 오후에 또 우리가 회의도 계속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그때 다시 질문해도 좋겠지만 지금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 **심사위원**

- <의결-가> 6페이지에 보시면 심사위원회 임무 중에 세 번째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 날 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먼저 판단이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필요시'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 **심사지원반**

- 의무사항은 아니고, 다만 의견청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실 경우에 하는 것인데 사실 의견청취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셨을 때 바로 그 사업자들이 그날 딱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저희는 다 세팅을 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가 전혀 필요 없겠다 하시면 안 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준비는 해 놓았으나 위원회에서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결정이 되면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미리 준비는 해 놓은 것이네요.

○ 심사지원반

- 통상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심사사항과 배점을 해 놓으셨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체 1,000점 중에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점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400점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2>, <3>, <4>, <5>에 있는 600점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한다는 뜻입니까?

○ 심사지원반

- 방송평가 부분은 이미 점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점수를 평균한 값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계량평가라는 측면이 있어서….

○ 심사위원

- 방송평가점수는 저희들에게 공개하십니까?

○ 심사지원반

- 물론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이번 심사위원회 임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재승인 여부 결정에 650점 중에서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프로그램 편성·기획 부분 배점의 50%, 210점과 190점인데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이 기준들을 정하는 것은 제가 잠깐 보니까 뒤에 <붙임> 9페이지에 보시면 심사항목(중분류)에 계획의 적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붙임>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일단 9페이지에 있는 재승인 심사 기준에 있어서 심사항목(중분류)과 그 배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전 기본계획과 심사세부계획을 통해 의결한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평가하시게 되는데 사실상 평가하실 때는 이 심사항목(중분류) 아래 단계인 세분류 항목이 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세부심사기준을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셔서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시게 되는데, 다만 이 배점 안에서...

○ 심사위원

- 배점은 어긋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심사지원반

- 중분류 안에서 어떻게 배점하실 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9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2> '항목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이 부분 중에서 심사항목이 120점 비계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성평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심사위원회에서 내부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결(가) 6페이지, 7페이지를 보고 느낀 점인데 6페이지 심사위원회 운영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심사 결과를 보고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승인 여부 결정 7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재승인이다, 조건부 재승인이다, 재승인 거부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서 그다음에 약간 재량행위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 심사지원반

-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의견을 주시는 것이니까, 물론 종편에 대해 특정사는 매우 미흡해서 재승인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내에서 그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셔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의결에 의해 최종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결국은 의결을 통해 이 3가지 중 하나를 정하기는 해야 하는 것이네요?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그것을 정해야 한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들께서 동일하게 어떤 의견이 합치가 되시면 그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승인의 권한은 우리 심사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준이라든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빨리빨리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 오후에도 또 계속 회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승인이 나면 얼마큼의 기간을 주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래는 저희 방송법에 따르면 최대 5년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무조건 승인하면 5년을 주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5년 내지는 단축했을 경우에 3년입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2017년도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원칙입니다. 2014년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준용하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등 중점심사 항목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으로 분류되는데 각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서는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제시하였고,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세부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에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세부항목별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부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각 심사항목을 과거실적과 미래계획 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표> 세부심사항목 구성 예시를 보시면 심사항목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부심사항목을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과 계획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이처럼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일부 심사항목의 경우는 과거 실적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 및 권고의 이행여부 이 3가지 항목이 과거 실적만 반영하는 심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심사항목 배점입니다. <1안>과 <2안>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1안>은 방송평가 400점을 제외한 심사항목의 배점 600점에서 실적보다 계획의 비중을 높게, 즉 실적은 275점, 계획은 325점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2013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때와 같은 배점입니다. 4페이지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을 보시면 전체 1,000점 중에서 실적과 계획이 각각 675점과 32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안>은 방송평가 400점을 제외한 600점에서 실적과 계획의 비중을 같게, 즉 실적과 계획을 각각 300점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2014년도 재승인 시 종편PP에 대해서 방송평가 300점을 제외한 650점을 실적 325점, 계획 325점으로 한바 있고, 2016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도 비슷한 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을 보시면 전체 1,000점 중에서 실적과 계획이 각각 700점, 3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세부심사항목 배점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방송평가 점수는 사전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즉, TV조선, JTBC, 채널A와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2013년, '14년, '15년도 방송평가 평균 점수를 반영하고, YTN의 경우에는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도 방송평가 평균 점수를 반영합니다. 다만, 종전 재승인 시 기 반영된 제재 감점은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이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점수를 제외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재승인 신청법인의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YTN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감점한 점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가 700점이기 때문에 이를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가 500점이기 때문에 이를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승인 대상 사업자별 방송평가 점수와 재승인 환산점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 항목입니다. 재승인 신청법인의 2014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YTN의 1월 1일부터 '17년 1월 31일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의 범위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공정위 등 11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기준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저희가 참조한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감점, 그리고 그 외 법령위반에 따른 감점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 아래의 설명은 2016년 8월 개정된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방송실적분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로 3회 이상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공정성,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관련 유형은 2배 감점, 기타 유형은 1.5배 감점하는 것으로 심의제재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의 참조기준에 따라 재승인 심사에 실제 적용할 감점기준입니다. 앞서 방송평가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고, 보도PP는 방송평가 점수 5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표>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박스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방송평가 결과로 연평균 감점사항을 반영하고, 방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는 위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의 합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강화된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이후 방송실적분에 대해서는 심의제재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에 대한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의 감점 결정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0페이지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여부입니다. 방송평가 및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과 행정행위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안정된 심사평가가 가능하도록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때에도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을 유예한바 있습니다. 소송 제기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개시일 직전 근무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10페이지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입니다.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관계법령 위반이지만 이렇게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둔 것은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사업자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따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승인 신청법인의 2014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YTN의 경우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의 범위는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등은 제외됩니다.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와 마찬가지로 소송중인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합니다.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하였고, 종편·보도 PP 각각의 방송평가 점수 환산 비율을 고려하여 감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과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는 방송평가 결과로서 연평균 감점사항을 반영하고, 방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는 감점의 합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있는데 방송법 제99조의 시정명령과 다르고, 또 감점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점기준 결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깔아드린 3장짜리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 관련 감점 기준 검토 자료입니다.

○ 심사지원반

- 먼저 배경을 보시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법 제70조의2를 위반한 재승인 신청법인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을 명하고, 1년 이내에 위반사항 재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고지하였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승인 심사에 준용하고 있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에 대한 감점 규정이 명확치 않습니다. 방송평가에서는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편성영역 평가항목에 방송법 제69조 내지 제72조가 해당 된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문구상으로는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음량은 방송법상 방송편성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에 보시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량이 방송편성이 아니라면 운영영역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운영영역 평가항목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제재 조치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심사를 위한 감점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위한 감점기준을 보겠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편성영역 위반일 경우에는 방송평가에서 12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환산비율을 적용해 보면 저희가 6.86점을 감점하게 되고, 운영영역 위반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8점 감점하기 때문에 환산비율을 고려했을 때 4.57점을 감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전파관리소의 시정명령은 제99조의 시정명령과는 달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치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희가 과태료는 2.29점을 감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과중한 감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어서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9페이지 다시 보시면 <1안>, <2안>, <3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의 전치 절차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1.14점을 감점하는 안, 이것은 과태료 2.29점의 한 50% 정도로 저희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방송평가규칙(운영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4.57점을 감점하는 안, 그리고 <3안>은 현행 방송평가규칙(편성영역)에 해당된다고 봐서 6.86점을 감점하는 안, 이렇게 3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논의를 통해 이 감점기준에 대해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세부심사방법입니다. 세부심사항목은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2014년도 종편·보도PP(재)승인 심사 시와 동일한 지표입니다. 대상기간은 최근 3년간 YTN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2016년도의 경우는 신청법인의 재무현황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를 대상회사의 해당 지표값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최저점 설정입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는 보통 최저점을 만점의 20%를 부여하였고,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때는 30%를 최저점으로 부여하였는데 이번에도 30%로 하는 방안, 그리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와 같이 20%로 부여하는 방안 2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표>를 보시면 각 심사항목별 최대점과 최저점,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읽을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금방금방 안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미진

한 부분은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쪽 보고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 심사위원

- 재승인 심사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감점 여부에서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재승인받기 전에 최근 한 달 전에 소송제기된 것들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최근 한 달 전은 없고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씩 3사에 부과한 사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 심사위원

- 2가지 여쭙 볼 것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점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송중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원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치 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따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 소송이라고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 심사위원

-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소송하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고...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치 절차입니다. 그 전치 절차를 제기해도 소송중인 것으로 보는지...

○ 심사지원반

- 여태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법원에 제기한 경우만...

○ 심사위원

- 두 번째는 앞에 8페이지의 감점기준과 7페이지의 시정명령에 대해 감점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어차피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8페이지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한 감점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과징금 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것이 다른 규정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벌칙규정 자체가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제70조의2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고, 방송법 제99조의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그리고 승인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 심사위원

- 심사사항과 점수가 종편·보도 약간씩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상파방송을 참조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기준이 같습니까?

○ 심사지원반

- 기준이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상파방송의 경우에 심사사항은 같고 점수 배점이 다르지요?

○ 심사지원반

- 아까 서면으로 보고드렸던 사전기본계획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기준이 7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종편은 11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유사하고 일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파 심사기준은 7페이지, 종편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공정성과 편성·제작 이것이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250점·210점, 190점·150점, 이것은 이미 다 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심사위원

- 얼마 차이가 있는가 보려고, 왜냐하면 지금은 지상파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굳이 차별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전부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상파 재허가 심사 때 2013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실적평가 점수가 계획보다는 높아졌지 않습니까? 배경이 있었습니까?

○ 심사지원반

- 통상 재허가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부분들보다는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방송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허가·재승인 때는 아무래도 실적 쪽의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이런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작년 5월입니다.

○ 심사위원

- 이제 <1안>, <2안>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심사지원반

- 추가로 제가 조금 고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에 어차피 세부심사기준에 대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심사지원반

- 먼저 봐야 할 자료는 심사 참고자료인데 심사 참고자료 11페이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심사세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 방송, 상사, 공정거래 등 분야별 법령 위반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내역을 계속 심사할 때마다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밑에서 보시면 사업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을 받았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금융 위로부터는 과징금 처분내역을 받았습니. 행정처분이지요. 그런데 검찰청에 저희가 조회했을 때 형사처벌 내역 2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1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것은 재판 진행 중이라서 이것은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재판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유예를 하기 때문에, 다만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벌 실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행정처벌에 대해서만 감점을 해 왔었고 형사벌 부분은 따로 감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형사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법률전문가가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감점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오후에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할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소송중인 것은 감점에서 빼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재승인해 줬는데 재판이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5년 뒤든 3년 뒤든 재승인을 할 때 재승인 기간에 재판 결과가 다시 반영되니까?

○ 심사지원반

- 유예되면 이번에 반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반영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저희가 심사하는 대상에 그 전에 소송과 관련된 건도 다 따라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그런 것이지요. 지난번에 반영 안 됐던 것 중에 확정판결이 나온 부분은 이번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심사지원반**

-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법인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최대주주의 지분소유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 오기 직전에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향후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심사위원님도 알고는 계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채널A의 최대주주가 동아일보인데 그동안 일간신문사가 종편에 대한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이 0%로 저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동아일보의 대표자가 000 씨이고, 그리고 고려중앙학원의 대표자가 또 000 씨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또 연결고리가 있어서 저희가 고려중앙학원의 동아일보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심사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 차후에 저희가 조치함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게 되면 차기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고려중앙학원에서 또 별도로 0% 말고도 추가로 지분이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일단 고려중앙학원도 지분이 있는데...

○ **심사위원**

- 그것 확인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지분은 있는데, 다만 고려중앙학원과 동아일보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같은 재단인데...

○ 심사지원반

- 사실상 그렇습니다. 같은 재단이고 대표가 같고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이 ○○○ 씨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보니까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어쨌든 검토하게 되면 만약에 최대주주 지분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분에 대해서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지키게 되면 또 별도의 형사벌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 심사위원

- 매각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심사는 지금 눈앞에 와 있고….

○ 심사지원반

- 그런데 저희 심사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저희 심사에서 최대주주 부분은 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청법인에 대해서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하여튼 우리 이 자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지금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각 분야별로 아마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70조의2 같은 프로그램 음량에 대한 이런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봐야 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기술분야,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보고드린 <보고사항 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그 이외 다른 공지사항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현재 저희가 회의를 1시까지 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잡아놓아서 식사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논의하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제안인데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보시면 재승인 참고자료라고 주신 것 중에 지금 심사하는 방법이 방송의 품격과 방송의 공정성 등, 지난 재승인 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심사참고자료로 주신 것 중에 2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2014년에 종편의 재승인 조건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드시오'라고 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이후에는 각 종편들이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이 근거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읽어야 할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보시면 들어가 있고 사업계획서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는 그 안에 있으면 관계없지만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2가지이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방법이 과거 이행을 했느냐, 두 번째는 미래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전제조건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재승인 조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짧게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지원반

-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14년도와 '15년도 이행실적 부분은 심사참고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16년 실적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릴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따로 하실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따로 드릴 것입니다. 다만, '14년과 '15년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요약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년 3월에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서 재승인 조건을 부가했고, 11월에는 MBN에 대해서 재승인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그리고 '15년 6월 8일에는 저희가 '14년도 이행실적에 대해서 점검해서 이행추구를 했습니다. 이행추구 내용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 시스템의 강화라든가 진행자·출연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교육 내실화, 오보·막말·편파 방송 책임자에 대한 방송사 내부 징계 강화, 제재 기준 명확화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별도로 보도비율 축소 부분에 대한 이행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MBN에 대해서는 콘텐츠 투자계획의 이행, 재방비율의 준수 이런 이행추구를 했습니다. '15년 7월 30일에는 이행추구와 별개로 콘텐츠 투자 미이행분이나 재방비율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서 콘텐츠 투자 부분을 시정명령 했습니다. JTBC에 대해서는 재방비율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8월부터 10월까지 '15년 상반기 공적책임 이행실적 점검을 별도로 또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공적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종편 4사가 기 제출한 계획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16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종편PP '15년도 이행실적 점검

을 했고 그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TV조선과 JTBC, 채널A에 대해서는 과징금 각 4,500만원,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와 관련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행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과징금 4,500만원이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이것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실제로 이것은 행정처분했지만 이 평가에는 아무런 의미를 미칠 수 없는 것이네요?

○ 심사지원반

- 다만, 지난번에 승인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판결이 나서 방통위가 승소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에 감점이 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타임씩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번 것은 빠졌는데 지난번 것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외부인들이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평가도 하시지요?

○ 심사지원반

- 별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 결과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다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치를 시정명령이든 과징금을 했을 때 데이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뒷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행정벌에 대해서는 감점규칙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벌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점기준을 방송평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방송평가에서는 형사벌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따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 심사위원

- 아예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평가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벌보다는 형사벌이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 규칙에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규정, 규칙이 없다는 것은 방송평가 그 부분에 대한 감점기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부심사기준에 보시면 저희가 방송평가에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파의 심사기준을 준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송평가에 있는 감점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없다면 그 부분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그것도 지상파의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 7페이지에 보시면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송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송평가에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준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감점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평가에 기준이 없으면 사실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점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준 자체는 지난번 재승인 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는 했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1안>, <2안>….

○ 심사위원

- 시간이 남으면 그것 논의하면 되겠다고….

○ 심사지원반

- 추가로 더 논의하실 내용이 없고 혹시 자료를 좀 더 보시고 난 다음에 논의하시려면 일단 먼저 이 회의를 마치시고 조금 쉬셨다가 식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회의는 종결을 짓고….

○ 심사지원반

- 방에서 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옆방에서 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

○ 심사위원

- 식사 준비될 때까지 자료를 보든지….

○ 심사지원반

- 그렇게 하시지요.

○ 심사위원

- 자료는 그대로 놓아두어야지요?

○ 심사지원반

- 자료는 항상 그 자리에 두시고, 혹시 야간에도 봐야 하면 이 자리에서나 옆에 방에서 봐야 하고 방에 가져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

- 여기나 저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은 괜찮습니다.

○ 심사위원

- 회의 장소는 이 자리이고 저쪽은 검토실이고….

○ 심사지원반

- 예, 회의 장소는 여기이고 자료 검토는 거기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5. 폐 회

○ 심사위원장

-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5분 폐회】

종합·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2. 20.(월) 14: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17. 2. 20.(월) 14: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이호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화 (안수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차명심 (차명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해량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곽지영 (세명대 회계학과 교수)
허남호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 프로젝트 리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3명)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14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재적위원 열세 분 중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먼저 전차회의에서 보고받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는데 하는 방법이 분량이 많이 있는데 먼저 문제되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 중심으로 안건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는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받으신 이 문건을 보시고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접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페이지수로 넘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제1차 회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 한 3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제1차 회의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적 대 계획은 다 결정된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음량도 있고….

○ 심사지원반

- 여기 보시면 <1안>, <2안> 제시해 드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있으니까...

○ 심사위원

- 쟁점별로 하나씩 하나씩...

○ 심사지원반

- 쟁점별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시면서 의견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페이지수가 많은데 1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기본원칙 1페이지에 개요가 있고 세부평가방법이 있는데 기본원칙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고, 평가유형에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이 두 항목이 있습니다. 비계량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도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수, 우, 미, 양, 가가 나중에 점수로 환산되니까?

○ 심사지원반

- 수, 우, 미, 양, 가를 부여하시는데 수, 우, 미, 양, 가는 점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점수를 매겨야 합니다. 수를 주시면서 80점을 주실 수도 있지만 수를 주시면서 100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수 매기시고 점수도 몇 점 이렇게 정해 주셔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수, 우, 미, 양, 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예를 들면 수가 80~100점이 되면 80~100점까지 90점을 줘도 좋고 95점을 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일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할 때 잣대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면 점수 계산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것은 다 문제없을 것 같고, 제일 밑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시킨다라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 것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승인 여부 결정도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심사

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40%가 미달될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은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여기에도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저희가 따라야 할 것이니까요.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부항목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심사항목 구성을 보면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심사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심사항목으로 들어가면 이행실적의 적정성과 실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심사항목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2개의 안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1안> 종편·보도PP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외에 심사항목의 배점에서 실적보다 계획의 비중을 높게 하여 총점 1,000점 중 실적 675점, 계획을 325점으로 하는 것이 <1안>의 핵심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면 <2안>은 종편·보도PP의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외에 심사항목의 배점에서 종전 것은 275점인데 여기에서는 실적이 300점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종전 <1안>은 325점인데 여기에서는 300점 비중으로 하여 총점 1,000점 중 실적 700점, 계획 300점으로 구성하는 차이입니다. 요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계획보다는 과거에 얼마나 충실하게 방송해 왔느냐는 실적, 그 실적을 보고 평가하는데 점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2안>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1안>은 계획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차이점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2안>을 보시면 실적 300점, 계획 300점 비중은 같다고 했는데, 5페이지 <표>를 보면 <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으로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실적은 50점이고 계획은 70점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면 각 항목의 실적과 계획이 같은 점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편 계획에 의한 실적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보다는 계획이 더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체 <1안>과 <2안>을 봤을 때 <1안>은 실적보다 계획을 높게 준다고 이야기했고, <2안>은 지금 설명대로 실적과 계획 기준을 같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 개인적인 견해로 실적은 계속 하면서 계획 쪽만 계속 채점을 두어서 그랬을 경우에 실적은 관계없이 계획 부분만 했다가 실적이 아무것도 없이 되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3안>을 만들어서 실적이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안이 가능한지, 이 2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심사지원반

-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사실상 항목별로 보면 실적보다 계획이 높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방송평가 점수가 기본적으로 실적이고,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종편이나 보도채널들의 재무적 상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이나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70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점수들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개별항목에서는 실적보다 계획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 말고 제3의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실적을 높게 평가하는 안을 만드셔서 논의하고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계획에 해당사항이 없는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그다음에 승인 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 이 점수가 100점이어서 나머지 항목들은 계획에 많이 비중을 둔 것이네요?

○ 심사지원반

- 그렇게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이 <1> 세부항목에서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가 기본적으로 400점이 먼저 실적으로만 잡혀서 평가가 된다면 물론 텍스트상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실적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일단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을 보면 계획들이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약간 착시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심사지원반이 말씀해 주신 장밋빛 어떤 계획을 배제한다는 그런 기본 의도,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3안>으로 방송평가 400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대비 기준을 달리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예를 들면 방송평가 400점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에 있어서 계획보다 실적을 좀 더 높이 해서 강화시킬 수 있게 한다면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부분은 일단 점수가 없어서 보고서에 안 냈을 텐데 이런 것은 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까?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심사지원반

- 지금 만들어진 평가지표 자체는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는 것이고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사업계획서는 나름대로 종편에서 추정한 향후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있기는 있는데 지금 배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지금 평가기준상으로는 그것은 정성평가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 심사위원

- <9>번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14>번 승인 시 부과된 조건 권고이행 여부 등 이것은 실적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데 실적과 계획 실적을 더 많이 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획을 더 많이 보게 된 것이 됐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9>번과 <14>번을 그렇게 실적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점수가 불균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14>번 같은 경우에는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이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간 사항들이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계획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 점수가 왜곡이 돼서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더 보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별도로 처리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실적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실적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점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실적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방송의 공적책임이 2배로 계획이 더 높이 평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 제가 보기에라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부분은 방통위에서 의결한 재승인 심사 기준에 보시면 이 항목과 평가방식과 배점이 딱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계량평가로 해서 보는 것으로 이미 픽스가 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종편들이 전망하는 재정적 전망이나 경영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서 정성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과 실적의 배점을 바꾼다면 기본적으로 실적만 보는 부분이 방송평가 400점,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점, 그다음에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가 70점 총 500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실적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00점을 가지고 계획과 실적 간 다시 배분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이야기하시면 방송평가가 400점이고 <9>번과 <14>번 배점 500점을 빼 놓고 그 500점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 <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적 부분의 배점을 좀 더 높이고 계획을 좀 더 깎아서 다른 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이 <표>가 바뀌겠네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9>번과 <14>번의 배점을 이 안에서 똑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실적보다는 계획이 더 중시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대로 그 배점을 이미 방송평가로 평가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빼놓고 나머지 500점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500점 가지고 하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각 중분류했던 <2> 120점, <3> 70점 이 점수는 다 메울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 점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점수를 <2>번 항목에 실적 50점, 계획 70점이 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점을 120점 맞추고 실적, 계획간 옮길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반반 하면 되겠지요. 실적과 계획을 반반 한다면 기본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것이 500점이고, 그 500점을….

○ 심사위원

-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조금 전에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2페이지에 있는 재승인 여부 결정에 다만, 심사항목 중 중요한 부분이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들, 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입니다. 오보·막말·편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 부분, 편성에 대한 기획·편성 부분은 보도 중심으로 만들어서 50% 이상이 대부분 다 종합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과 보도와 예능을 다 골고루 방송하는 것이었는데 보도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50% 미달이면 조건부 재승인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보면, 특히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재심의 건수가 계속 증가만 합니다. 처음에 10건, 20건, 100 몇 십 건, 180건, 190건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방통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는 이행여부를 촉구하더라도 그 방송행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 부분이 계획만 높게 똑같은 점수를 봤을 경우에는 그동안 해 왔던 평가하는 부분들은 계속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계획만 우리 이렇게 바팔래'라는 부분을 평가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문제의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제3안>에서 실적 부분들을 훨씬 더 평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 심사위원

- 결국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승인 여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프로그램 기획·편

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재 승인 거부조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항목의 점수가 계획 배점이 더 높으면 우리가 중요한 항목이라고 평가해서 50% 미만이면 문제가 되는데 계획이 가령 예를 들면 실적은 40점을 주는데 계획을 80점을 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써 놓은 것만으로 이 평가를 잘 받아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중요한 항목의 점수 평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지원반에서 고민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전체 점수로 보면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7:3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항목에 한해서는 실적과 계획을 반반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일부 조정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항목이라고 돌려놓은 배점에 50%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을 전부 계획으로 평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기본적으로 어디 심사를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기본정신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심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 연차별로 종편 채널들의 공정성이나 막말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수치로 그대로 나오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매년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종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이렇게 가는 것은 심사를 통해서 교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획 위주로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지적건수들은 더 많이 누적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지난번 심사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승인을 많이 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것이니까, 이미 했었던 것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이니까 예를 들면 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충분히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실적을 좀 더 평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런 생각은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실제로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지수를 보면 관심이 굉장히 큼니다. 종편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평가자들이나 정책에 계신 분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1>번, <9>번, <14>번을 제외하고 최소한 실적과 계획이 같아야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항목 같은 경우라면 실적이 좀 더 높은 배점을 받아야 이것이 시청자 만족에 있어서도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이전의 기록들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실적을 제대로 이행했다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계획을 내놓고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심사위원

- 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송 초기에는 실적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계획이 더 중시될 수 있을 것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물론 실적이 중요하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자칫 잘 못하면 이중으로 실적을 더 중하게 평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방송법 위반에 관한 감점이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보·막말·편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따로 비계량하지 않고라도 계량화 되어서 이미 감점이 다 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실적과 계획의 비교에 있어서 실적을 중시한다고 해서 또 거기다 가중치를 두게 되면 자칫 지나친 실적 중심의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되, 시정명령이나 방송법 위반 정도에 기본적으로 감점되는 것, 이행권고 여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균형 있게 이 실적과 계획을 조정해야지, 무턱대고 실적 위주로 평가한다고 해서 기존의 500점에 관한 것을 도외시키고 나머지를 무조건 실적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면이 지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충분히 맞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별점이 이중으로 방송계획에서도 반영되고 여기에서도 가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되었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허가 심사에 있어서 지상파도 여기 나온 안보다 훨씬 강화해서 실적이 705점이고 계획이 295점으로 재허가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안>보다 <2안>이 훨씬 더 계획 배점을 낮게 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재허가보다는 실적 점수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면 지상파에 준하게 실적과 계획 점수를 조정하는 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점 정도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조정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목 안에서도 다른 것은 손대지 않고 중요한 예를 들면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은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은 있긴 합니다. 종편이 지역성을 해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점수를 더 주거나 공정성에 실적 점수를 더 주는 것으로 약간 부분항목 조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의 견해는 조금 전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중처벌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제 견해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혹시 이미 이행 부분에 대한 점수를 이미 깎았는데 또 하면 이중처벌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14>번에 승인 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는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평가 정성평가는 <2>, <3>, <4>번 이렇게 큰 항목에서 <2>, <3>번에 있는 그 평가와, 그러니까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이 부분들은 다른 항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을 좀 더 키우더라도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1안>보다는 <2안> 정신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2안>에 제시되어 있는 심사항목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나 배점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배점을 다시 하면 방통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 심사지원반

- 실적과 계획 부분에 대해 배점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장

- 예를 들면 총점이 700:30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500으로 한다든지 600:40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아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잠깐 계산해 봤는데 만약에 실적만 평가하는 항목 외에 실적과 계획을 같이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을 실적과 계획 부분을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배점이 120점이 지 않습니까? 지금 50점, 7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서 60점, 60점 이렇게 배점한다면 총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실적 점수가 750점이 되고 계획이 250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조정하시는 건 심사위원회 권한이시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데, 다만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 안을 우리가 채택하되 배점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조건으로 <2안>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TF팀이 30분이고 얼마고 시간을 거쳐서 검토해서 개정된 배점표를 여기에 다시 놓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여기에서 간단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 없이...

○ 심사위원장

- 지금 잠시 휴정해 놓고...

○ 심사위원

- 왜냐하면 <2안>이 700:3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동일하게, 500점을 제외한 나머지 실적과 계획을 동일하게 할 때가 750:250입니다. 그러니까 편차라는 것이 5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상과 했을 때 평가가 705:295였습니다. 그때 보다는 좀 더 실적이 강화된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720대나 730대 그 사이로 정하고 그 점수를 여기에서 바로 분배하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을 세이브하고 좋은 방법이네요.

○ 심사위원

- 제가 제의한 실적을 더 높이 주자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이 아니지요. 실적을 더 중시해서 이것을 조절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 심사위원

-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조정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여기 이 자리에서...

○ 심사위원

- 총 점수를 먼저 정해 놓고….

○ 심사위원

-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점을 700 얼마로?

○ 심사위원

- 여기에서 정해야지요.

○ 심사위원장

-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상과 심사가 705:295였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실적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 중론이니까 725:275로 정해 놓고 25점을 현재 <2안>에서 중요한 것만 조절하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미 500점은 정량평가이고 저희가 하는 평가는 정성평가입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나누어 준 자료에 보면 방송평가도 항목도 있습니다.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725:275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나 아니 720:280 정도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미래계획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심리적으로 편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적평가가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평가 내용 자체를 보면 하나는 정량이고 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량평가 항목과 정성평가 항목과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소화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래서 문제는 배점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시 5페이지 <표>를 보면 예를 들면 전체가 14개 심사 소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현재 중편에서 여론적으로 시민사회 쪽에서 문제제기하

고 있는 부분이 <2>번 항목과 <5>번 항목이라고 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분이고, 그다음에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중심의 편성을 하고 있는 50%, 60%를 교양이라고 편성했지만 사실은 보도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5>번에 있는 편성·기획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이 두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부분은 계획 쪽 부분들은 계획성을 보더라도 관계없지만, 특히 <2>번과 <5>번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라도 아까 제가 <제3안>을 말씀드렸는데 실적 부분을 좀 더 배점하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있는 데서 크게 전반적으로 계획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두 부분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부분과 편성에 대한 합리성, 적절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점수를 조금이라도 실적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 심사위원

- ○○○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평가표를 작성해서 <2>번과 <5>번의 실적을 10점씩 더 올리면 20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720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2>번과 <5>번을 중시하셨으니까 <5>번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30:60입니다. 그것을 45:45로 조정하시면 25점이 거의 점수가 딱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725가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2>번과 <5>번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견을 좀더 보면 괜찮겠네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예를 들면 <2>번과 <5>번에서 20점이 늘어나면 720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오히려 20점이 감점되는 것이고….

○ 심사위원

- 그러면 <2>번은 60:60이 되는 것입니까? <2>번이 60:60이 되고 <5>번이 45:45가 됩니까?

○ 심사위원

- 25로 올리면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25점이 올라갑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2>번을 60:60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좋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저는 <8>번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가지는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지적한 2가지 항목에 이 항목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위원장님, 결론적으로 다시 종합하면 <2>번 50:70을 60:60으로 변경하고….

○ 심사위원장

- <2>번을 60:60으로….

○ 심사위원

- 예. <5>번을 40:50으로 변경하고….

○ 심사위원장

- <8>번은요?

○ 심사위원

- <8>번을 25:25로 하시면 725점이 됩니다. 보도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725점과 275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세 항목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2>번의 공적책임을 60:60으로 하면 실적이 +10이 되지요? 그다음에 <5>번 항목 45:45로 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40:50으로 하면 10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8>번에 5가 추가됩니다.

○ 심사위원장

- 40:50 그리고 <8>번을 25:25...

○ 심사위원

- 기왕에 하는 김에 <5>번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45:45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730:270이 되겠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730:270이 나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5>번을 50:50, 아니면 40:40입니까?

○ 심사위원

- <2>번, <5>번, <8>번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5>번도 45:45...

○ 심사위원장

- 45:45요?

○ 심사위원

-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730:270이 됩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730:270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2>번을 60:60, <5>번을 45:45, <8>번을 25:25로 하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위원회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것은 없고, 보도PP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둘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위원회 입장에서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 보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점수 배점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종편에 대해서는 이 세 항목이 문제도 많고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적 비중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보도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보도PP에는 <5>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번과 <8>번만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종편은 일단 그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2>번이 60:60, <5>번이 45:45, 그다음에 <8>번이 25:25, 그다음에 보도PP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심사위원

- <2>번과 <8>번을 거기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보도도 <2>번과 <8>번….

○ 심사위원

- <5>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75….

○ 심사위원장

- <2>번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 심사위원

- 75:75로 해야지요.

○ 심사위원장

- 75:75, 그다음에 <8>번은 20:20이요?

○ 심사위원

- 예, 20:20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보도PP <2>번과 <8>번의 배점이 75:75, 20:20 이런 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종편과 보도PP의 비율이 점수가 다른 것입니까? 앞에 것은 730과 270이었지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다르게 해도 괜찮은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다른 항목들 때문에 달라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럴 때 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별 문제없지요?

○ 심사지원반

-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 심사위원

- 2015년에도 종편과 보도PP는 달랐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부심사항목 배점 관계는 <2안>으로 하고, 그다음 배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결정짓도록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와서 주요심사항목의 평가방법, 이것은 방통위 평가방법이니깐 그대로 꼭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와서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이것이 2014년 2월 1일~2017년 1월 31일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데 아직은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처분, 형사처분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지 못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이 기준만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에서 감점기준이 없기 때문에….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고….

○ 심사지원반

- 어떻게 감점할지를 논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참조기준, 법령위반, 방송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그 외 법령위반인데 방송법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4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도 과태료가 되면 -4점이고, 그 외 법령은 과태료가 -2점이 됩니다. 시정명령 뒤에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법 전문가들 두 분이 계신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님과 ○○○ 위원님 두 분….

○ 심사위원

- 일단 감점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를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이 중에서 방송법 위반이나 공정거래법….

○ 심사위원

- 저희가 의논해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고사항 제70조의2 형사처벌 대상일 때와 제70조의2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는 감점기준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지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은 바꾸기는 어렵고 그것은 방송평가에서 적용한 감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감점할지 여부와 감점 점수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 안건에서는 위원장님, 9페이지에 아까 회의시간에 보고했던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점해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형사처벌인 경우에 그것도 감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2가지를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9페이지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에 대한 감점에 관해서 제가 먼저 의논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1안>을 과태료 처분의 전치 절차의 특성을 감안해서 50%를 감해서 감점하는 것으로 <1안>을 내주셨습니

다. 그런데 그 논리가 앞장 8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그 외 법령 위반이 시정명령이 훨씬 더 감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그것에 한 절반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시정명령을 내릴 때 그 자체를 감점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잘 시정하면 추가로 감점은 없는데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과태료 처분에 대한 감점을 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과징금 처분합니다.

○ 심사위원

- 공정거래법이나 기타 법령에도 과태료 처분을 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통상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위원

- 함께 간다는 말씀이네요?

○ 심사지원반

- 방송법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시정명령하게 되면 시정명령한 이후에 이행을 안 했을 때 과징금 처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이하게 먼저 시정명령하고 나서 안 지켰을 때 과태료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방송법과 다른 행정법령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행정명령은 보통 위반이 생기면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더 이상의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이행을 안 할 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공정거래법이나 그 외 법령위반에 보면 시정명령 점수가 감점이 많고, 과태료 처분 점수가 적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과태료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니까 추가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추가 감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방송법에서는 바로 과태료 하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위반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음량 위반으로 지적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 공정거래법이나 그 외 법령위반과는 다른 방송법에 오히려 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50% 정도 감하는 것으로 <1안>을 만드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 심사지원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은 방송법에서도 먼저 어떤 법령위반이 있을 때는 시정명령을 먼저 합니다. 물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통상은 과태료 처분이 나가기 전에 시정명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정명령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과징금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재승인 조건을 안 지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지키라고 시정명령하고, 종편 같은 경우 저희 콘텐츠 투자계획을 지키라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지켰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절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가거나 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서 과징금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방송법에서 대부분 방송평가 같은 경우에 점수를 보시면 시정명령이 -8점, 과징금으로 가면 -10점, -15점 과징금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70조의2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안 지키면 과태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로서 과태료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정명령이 -8점이고, 시정명령을 안 지켰을 때 과태료로 가면 방송평가에서 -4점이 아닙니까? 조금 다른 경우와는 다르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음량기준 위반에 와서 <2안>, <제3안>을 적용하려면 음량기준 위반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상정해서 음량기준 위반에 관한 조항을 만든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저희가 방송채널을 돌리다 보면 갑자기 소리가 굉장히 큰 방송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만 상정하신 것입니까? 타사보다 주목을 끌기 위해 음량을 과도하게 키워 놓는 사례….

○ 심사위원

- 광고 때 확 커지지요.

○ 심사위원

- 음량은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고지라든지 이런 음량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타사에 대해서 그것은 운영인지, 그러면 평가규칙의 운영 부분은 단순히 하게 기술로 봐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각 방송사에서 소리를 키워서 자기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키우는데,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무지하게 해악입니다. 그런데 모든 채널이 다 골고루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들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지요. 그냥 시정명령 했는데 과태료만 물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규칙에서 자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편성영역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것 같고, 과태료만 주는 것도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2안>이나 편성이나 운영영역 쪽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운영영역 쪽에서 다루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심사지원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이 과태료지만 내용적으로는 과징금 성격이지 않습니까? 시정명령 해서 말을 안 들었을 때 과태료 왜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워딩은 과태료로 되어 있지만 과징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1.14점보다는 운영영역 <2안>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기술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 기술 운영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방송법 시행이 작년 8월이고 중앙전파관리소가 시행한 것이 올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초기라서 <1안>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이 부분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심사지원반

-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통상 방통위에서 부과하는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에서 의결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이 중관소의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중관소에서 결정해서 담당부서에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직접 처분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 어디에 포함되든 그것은 규제만 확실하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7페이지에 방송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법령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받았을 때 -4점인지 -2점인지...

○ 심사지원반

- 이 사안은 정확하게는 이것이 방송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나 그 외 법령위반에 해당된 사안이 아니고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놓고 봐야 합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으로 봐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첫 번째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4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다른 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과태료를 받은 항목이 나오면 어떻게 감점할 것인지, 이것이 아마 금년이 처음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작년 2016년에 시행됐고 실제로 처분이 나간 것이 2016년 12월 29일에 처분이 나갔습니다.

○ 심사위원장

-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되면 평가할 때 바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방송법 위반과 같은 비중으로 감점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 심사지원반

- <1안>, <2안>, <제3안> 중에 혹시 결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 심사위원

- <2안>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제가 볼 때는 <2안>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형식상으로 보면 방송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방송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사이에 위반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방송법에 있는 행정처분의 감점기준 안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물론 법규 규정상 미비인지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음량에 관한 것이 편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운영영역으로 평가해서 감점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가 우선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법 위반에 대한 감점규정이 과태료를 했을 때 마이너스, 8페이지에 보면 중편 점수로 하면 -2.29인데, 아직 과태료 처분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안 나왔습니다.

○ 심사위원

- 과태료 처분이 안 나가 있는 상태인데 과태료 처분보다도 높은 점수를 감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법규상 서로 간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아니면 새로이 이것을 만들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보여서 저는 오히려 <1안>으로 해야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이 문제가 걸려 있는 해당 방송사가 1개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걸려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지금 사전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해당되는 방송사는 한 군데입니다.

○ 심사위원

- 방송사가 첫 적용을 받는데 예를 들면 <2안>으로 적용받았을 때 심각한 마이너스를 받게 됩니까?

○ 심사지원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만약 <2안>으로 적용받게 되면 4.57점이 감점됩니다.

○ 심사위원

- 악영향을 끼칩니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 심사지원반

- 감점이 되니까 감점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방송평가 규칙에서는 이 부분을 편성영역에 포함시켜서 상당히 높은 점수로 감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과연 이 부분을 편성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 부분은 방송평가에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니지요?

○ 심사지원반

- 안 됐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 관련해서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돼서 소송이 걸렸을 때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전혀 총점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최저 감점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최소감점을 적용하는 것이….

○ 심사위원

- <1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타협안인데 새로 적용되는 것 때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일사부재리도 있는데 갑자기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이번은 예를 들면 <1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2안>을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보호 차원에서….

○ 심사위원

- 명확하게 저희가 그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나중에 바뀐다는 것은….

○ 심사위원

- 그것은 다음 재승인할 때 기준을 정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다음에 규정을 바꾸든지 제정하든지 하겠지요. 그것까지 저희가….

○ 심사위원

-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차후에 방통위에서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틀림없이 있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이번에 어떻게 감점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자는 심사 의견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달 수 있지 않을까?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편성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성이라는 것이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것인데 이것은 관심 끌려고 큰소리 내는 것이지 않을까?

○ 심사위원

- 다시 <2안>과 <3안>으로 돌아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편성영역이라기보다는 기술의 운영영역이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안>으로 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9페이지 <1안>, <2안>, <3안>은 표결을 부쳐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점수가 가운데니까 가운데로 하시지요. <1안>은 너무 약하고, <제안>은 너무 강하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절차대로 하려면 <1안>, <2안>, <3안> 거수로 해야겠는데 <2안>에 별 의미가 없으면 일단 잣대를 정해 놓는 것이니까 <2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처리할까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심사위원

- 그 대신 사족을 하나 달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규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제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정도로 조건을 달아놓으면 어떨까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런 조건을 달면 좀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70조의2는 일단 <2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과태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 위원님, ○○○ 위원님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셨지요?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7페이지, 8페이지에 점수 환산을 하면….

○ 심사위원

- 심사지원반,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우리가 의결하는 데는 내용이 없네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형사처벌 부분은 처음 이런 사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점을 할지 여부와 감점한다면 얼마나 할지 이 부분이 다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감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린 것입니다. 감점할지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8페이지 결과를 보면 이것이 7페이지 법령위반 세 종류에 근거해서 점수 환산해서 나온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8페이지 부분은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그대로 평가하실 때 이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 심사지원반

- 이것은 더 논의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8페이지를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 적용, 대상기간 및 기간, 또 시정명령 범위, 소송 중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조기준, 감점기준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의 환산비율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그다음에 이것은 계량으로 다 나가는 것이고, 세부심사항목 그다음에 대상기간인 최근 3년간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YTN은 최근 5년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가방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 표준편차와 대상회사의 지표값을 비교하고, 최저점 설정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와 같이 30%로 부여하는 방안,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와 같이 20%로 부여하는 방안 가능 그렇게 해서 <1안>과 <2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공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해서 최저점수를 30%로 주느냐, 20%로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심사위원**

- 일관성 측면에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차이가 0.9점 차이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방송 현실을 보면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이나 보도PP를 굳이 차별해야 할 것인가? 지금 지상파도 다 케이블TV를 통해서 보는데 보면 가구수도 비슷하고 시청률은 오히려 지상파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상파를 20%로 했다면 보도나 종편도 20%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지상파와 똑같이 20%로 하는 것이 좋겠냐?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장**

- ○○○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크게 보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보게 되면 저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바꾼다면 왜 바꾸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일단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 심사위원

- 저도 이렇게 수치를 계산할 때 항상 재무제표 분석은 3년치, 5년치 장기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봐야 하는 항목이라 특히 증가율 계산할 때는 전년도 대비 체인지도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관되게 해서 계속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관성 있게 지상과 방송과 동일하게 20%이니까 <2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예전의 종편 기준을 적용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 심사위원

-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경영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1안> 쪽 의견을 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왜냐하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계산이 되어야 하니까….

○ 심사위원장

- 지금 2시간 15분이 지났는데 휴식을 하고….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이것까지는 결정하시고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20%, 30%인지는 결정하시고 휴식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안>과 <2안>을 해결해야겠지요?

○ 심사위원

- 궁금한 것이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편에서는 그때 왜 30%로 했습니까? 보통 생각할 때 방송국이니까 차이 없이 20% 하지 않고 2014년도에 심사할 때 30%로 했던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 심사위원

- 보호 측면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신생기업들이니까 안정적인 것을 봐 줬던 부분이 있겠지요.

○ 심사위원

-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최저점수 나온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점수를 많이 깎지 않고 30% 정도는 미니멈을 주자는 생각에서...

○ 심사위원

- 예, 그런 것이라고 봐야지요.

○ 심사지원반

-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신생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저점을 조금 높게 주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장래 지상파와 같이 가야겠지만 종편이 아직도...

○ 심사위원

- 그런데 이미 케이블과 지상파와 종편은 이미 한 그룹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종편을 보호한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동등한 식으로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최저점을 20%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문제가 있을 때 2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기본점수를 준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 위원님 말씀대로 0.9점 차이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예.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결정을 합시다. 그러면 <2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 심사위원

- 20%냐, 30%냐...

○ 심사위원장

- 20%에 반대하시는 분!

○ 심사위원

- 반대까지는 아니고...

○ 심사위원장

- 최저점수를 20% 부여하는 방안,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20%로 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예. 최저점수를 여기 <2안>으로 나와 있는 20%로 하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시는 것이 30%로 논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을 하신 분들이...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아까 여기에서 종전이라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 교수님들은 종전에 30%를 했으니까 계속 30%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 위원님은 지상과와 차이를 둘 필요가 이제는 없지 않느냐, 지상과와 동일하게 하자는 이야기셨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1안> 최저점수를 30%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섯 분이고, 그다음에 <2안> 20%로 부여하자는 방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5:7로 최저점수를 20%로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부터는 쪽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지원반, 13페이지 이후 문제는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논의된 것에 따라서 쪽 하는 것이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논의하신 것에 따라서….

○ **사위원장**

- 문제는 여기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의결된 대로 해서….

○ **심사지원반**

- 다시 <3안>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할 것이고….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내일이든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정확히 전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냥 이렇게 놓지 말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갖대를 정확하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평가를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유인물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다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렇게 하시고, 또 평가방법 부분에 이 항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논의하셔서 여기에서 빼야 되거나 혹시 추가해야 하는 것이 있으시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 현 상태에서 이 논의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디테일을 지금 모르는데 논의

하면서 자료도 읽어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의견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안 읽어본 상태에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만든 평가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3페이지를 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평가할 테니까, 13페이지는 <1안>과 <2안>인데 아까 우리가 정한 것 바뀐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은 별 문제 없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그다음에 거기가 문제가 되겠네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이행 실적 적절성, 그렇지요?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점수 배점 부분은 아까 수정하신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점수 배점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평가방법이나 세부심사항목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와서 방송 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현계획의 적절성,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또 이행계획의 우수성도 서류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런 것들은 매년 하던 것을 항목으로 집어넣은 것이지요? 이것이 몇 년 거쳐서 다듬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서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계획서 낸 것을 보고 해야 하는데….

○ 심사위원장

- 지금 심사지원반이 한번 제목이라도 보자는 이야기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목 만이라도 보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17페이지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 증가율입니다.

○ 심사위원

- 이런 것은 위원회 측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 심사위원장

- 그래서 제가 페이지 넘기면서 문제가 있으면 심사지원반이 부연설명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보시지요.

○ 심사위원

-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지표를 3개 했는데 재무제표가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기는 합시다만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채비율은 걱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이 후에라도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잘 씁니까?

○ 심사위원

- ROA로...

○ 심사위원

- ROA로 해서, 그러면 총자산증가율은...

○ 심사위원

- 평가세부방법은 저희가 안에서 추가해도 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약간 조정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주어진 자료 안에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 심사지원반

- 꼭 이 항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항목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항목들이 저희가 승인 때, 재승인 때 계속 써 왔던 항목들이고 방송평가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기초로 하지만 추가해도 되고 빼도 되고...

○ 심사위원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계량 아납니까?

○ 심사지원반

- 계량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계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계산되어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이 아니고 추후에라도 방송사들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평가할 때 이 지표가 대표적인 것

인가에 대해서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 **심사위원**

- 여기 있는 것들을 별도로 저희가 심사항목을 다른 연구반에서 별도로 만드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 관한 것도 내용이 복잡하니까 쪽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이야기, 대강 내용이 그런 것인데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읽어보시고 내일 평가할 때 이 기준에 맞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승인 때, 재승인 때 이 3가지 항목을 썼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평가에서는 이 3가지 항목 외에 다른 항목들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평가에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을 항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항목들을 찾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 항목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보통 수익을 당기순이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영업이익을 보는데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배당하는 것에 따라서 확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라고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4시 2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 **심사위원장**

-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아까 <의결사항 가>가 아직 최종 의결이 안 났습니다.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안 하셨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을 더 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재승인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 심사지원반

- 아까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검찰청에 형사처벌 내역 의견조회를 했고, 그 결과 특정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여부와 감점 정도를 논의해서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작권법 위반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재판 판결 결과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자에게 그것을 받아봐야 하는데 해당 사업자에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 저작권법 위반이면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저작권법에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허락 없이 갖다 썼거나 아니면 갖다 쓰면서 갖다 썼다는 것을 표시해야 하는데 표시를 안 했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평가할 때 참고하시고...

○ 심사위원

- 패널티를 저희가 줄지 안 줄지를 정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저작권법 위반한 것을 감점할 것이냐 말 것이냐...

○ 심사위원

- 감점하면 몇 점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아까 우리가 원칙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저작권법 위반만...

○ 심사위원

- 금융위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2016년 4월에 과징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징금 내역에 포함되고, 그러면 아까 세부심사기준에서 그밖에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됩니다.

○ 심사위원

- 법적으로 벌금은 과징금, 과태료 어느 법에 준합니까?

○ 심사위원

- 벌금은 형사벌이고 과징금,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벌금은 형사범죄에 관한 처벌입니다.

○ 심사위원

- 벌금이 더 큰 것이네요?

○ 심사위원

- 보통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요.

○ 심사위원

- 보통은 행정벌보다 형사벌을 더 세게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물론 경중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벌은 행정법규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 건축 짓는데 조금 잘못 지었다라도 다 벌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형사벌은 자기가 형사 범죄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형사벌을 더 중하게 생각하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행정벌과 비교해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2페이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내역 2건을 통보해 왔는데, 위반 법령은 자본시장법, 위반내용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처벌일자 및 내역이 2016년 4월 20일 과징금 600만원, 이것을 아까 세부기준 7페이지 그 외 법령위반 해당사항은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따로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2.8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 외 법령위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도록 의결하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것은 그 외 법령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찰청은 형사처벌 내역 2건을 통보해 왔는데 위반법령이 한 법인은 저작권법 위반이고, 처벌일자 및 내용이 2015년 11월 26일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 두 번째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일자는 2016년 3월 24일 불구속 공판 재판 진행 중인데, 우선 위에 것 저작권법 위반은 따로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같이 처리합니까?

○ 심사위원

- 위원장님, 두 번째 것은 재판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심사할 의미가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냥 유예하는 것으로...

○ 심사위원

- 첫 번째 것만 하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 심사위원

- 조금 우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벌보다는 벌금이 형사벌이니까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원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선고유예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벌금도 안 냅니다. 아예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이니까 아예 벌금도 안 내고 사실상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정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감점기준을 마련해 놓았는데 형사처벌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점기준을 마련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운데, 그것은 앞으로 방통위에서 알았으니까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없던 것이니까 그래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행정벌보다는 중한 책임을 주는 것이 형사벌이니까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신문법에 의하면 형사처벌...

○ 심사위원장

- 지금 결론을 내시지요.

○ 심사위원

- 결론이 아니라 무시할 수는 없고 감점을 해야 하는데 감점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실 때

선고유예, 그러니까 벌금 100만원이 아니라 선고유예된 점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

○ 심사위원

- 신문법을 보면 형사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실제 신문 현장에서 일어나는 형사처벌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검찰, 경찰로부터 자료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별이 중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벌금 100만원이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디어저작권법을 중요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런 현상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처벌대상으로 올라와 있지만 실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문법에, 역시 신문도 매체니까 중하게 다루는 것도 방송매체를 위해서 건강한 조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선고유예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검찰이 일단 기소는 하고….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2가지 단계가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를 하고 재판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어떤 이유인지 일단 유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일단 유죄라고 검찰에서도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사 법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적어도 법인이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실로 어떤 행위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의는 법인 중에서 대표자가 적어도 알고 있었다, 또는 감독의무를 해태했다는 부분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의 불법성이라고 할까, 단순히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검찰청에서 나온 2가지 사안이 동일 법인입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별도의 개별 법인 사항입니까?

○ 심사지원반

-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이요?

○ 심사위원

- 예. 혹시 동일 사항 아십니까?

○ 심사지원반

- 동일 사항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 심사위원

-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회사입니까?

○ 심사지원반

- 다른 회사입니다.

○ 심사위원

-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이 형사별이니까 최소한 행정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널티가 그 이상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더 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논의해야겠지만 형사별인데 이것을 더 낮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심사위원

-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벌을 받았으면 기계적으로 무조건 다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적용 기준을 과태료 기준으로 할 것이냐, 과징금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정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행정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징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액이 저희가 보기에는 부과가 되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200만원만 되면 당선이..., 이 정도로 굉장히 금액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라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감점기준을 정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 아까처럼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선고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인은 징역형이 없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이것이 그 외 법령 위반이면 과태료가 -2점, 시정명령이 -4점입니다. 예를 들면 방송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빼고 행정적인 것인데 참고를 한다면...

○ 심사위원

- 과징금 5,000만원 이하는 또 -5점이니까, -2점에서 -5점 사이에서 뭔가 택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장

- 발언 안 하신 분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어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위반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콘 하나 딱 썼을 때 그것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미세할 수 있고, 영상 15분짜리를 했다, 그것은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듯하지만 그래도 -2점에서 -5점 사이에서 우리가 정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과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기준만 정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변호사님들께서 정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제가 아까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이 벌금 100만원 했으면 오히려 쉬운데 벌금 100만원에 선고까지 유예를 해 준 것은 참작할 사항이 엄청 많아서 법원에서 볼 때 가벌성의 가치가 적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혹시 차감 점수에도 혼란이 있는 것이 7페이지에 있는 기준점수로 하면 이것은 방송법에 의한 기준점수이고, 8페이지에 있는 것이 저희가 심사할 때 700점에서 400점으로 환산한 감점기준입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법령위반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보다는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태료와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선고유예가 된 점을 감안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가 정하는 것이니까 -2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법률 전문가는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2점으로 하시자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2.29점이 된 것은 앞에 방송법 7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수를 400점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런 점수가 나온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이것이 종편입니까, 아니면 보도입니까?

○ 심사위원

- 종편 심사에 관련된 것이니까 다 종편이지요.

○ 심사위원

- 종편이지요. 종편이나 보도PP나….

○ 심사위원

- 감점 점수가 다르니까 점수가 다르네요.

○ 심사위원

- 종편이든 보도든 -2점으로 하는 것으로….

○ 심사위원

- 저는 ○○○ 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 정해져 있는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절대값으로 어떤 값을 주는 것보다는 그 외 법령위반, 시정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점수가 종편일 경우에는 -2.29점이고 보도PP는 -3.2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추후에 마련하라….

○ 심사위원

-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 외 법령위반에 시정명령 정도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해당 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종편 라인인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지금은 종편 라인, 보도 라인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준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 심사위원

- 시정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 심사위원

- 예, 시정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감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

- 예, 시정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2.29나 -3.22나...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동의합니다.

○ 심사지원반

-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13페이지 이후에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안)에 대해서 ○○○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심사기준을 먼저 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이 심사기준별로 해서 기존 재승인 때 고려했던 부분이나 새롭게 저희가 중점을 두고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외에 다른 항목이 있을지 저희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의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채워 넣거나 뺀 것이 있으면 빼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주시면서...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2페이지 검찰청 형사처벌 받은 것 - 2.29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추후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1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정리해 주시고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재승인 때와 항목이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기준이긴 한데, 저희가 이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특히 중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적, 계획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절성 부분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적이라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제재 건수 감축 노력이나 출연자에 대한 자질 검증,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실적을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 부분에서도 밑에 보시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현 계획에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사항 중에 또 하나가 15페이지를 보시면 중편사들이 기본적으로 조화롭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에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방송분야, 장르별 조화로운 편성포함) 이행실적의 적절성, 마찬가지로 계획 부분에서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향후 계획의 적절성 이 부분을 보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의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이행실적의 적절성(재무상태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 이 부분은 콘텐츠 투자 부분이 중편사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획대비 실적을 이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주십사 하고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계획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해서 수급계획의 적절성 부분을 보시도록 추가해 두었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이 있는데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이행실적의 적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세운 계획을 이행한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가지 종류의 수급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비율이 됐다는 뜻입니까?

○ 심사지원반

- 그 부분은 적절한 비율 부분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제시한 계획을 이행했는지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정성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방송사들은 이 평가방법에 대한 항목들도 알고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지난 재승인 때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승인은 모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나름 신청서에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겠네요?

○ 심사지원반

- 예,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더 강조하실 것은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이해가 되실 부분들인 것 같고 저희가 강조드리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은 다 들어가 있지요? 그것 가지고 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없지요?

○ 심사지원반

-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것 외에도 평가방법에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보고드리고 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만약에 꼼꼼하게 한다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하나씩 동의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고, 또 그러고 나서도 다른 질문 있으면 저희가 드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띄워서 빨리빨리 보면서 넘어가면서 한 번씩 더 개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저는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안으로 그

대로 의결하고 여기에서 빠질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자기 판단에 심사를 안 하면 되니까, 다만 공론화시켜서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직 실질적으로 손을 보기 전인 상태에서 언론학부 교수님들은 많이 접해 보셨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서류를 보고 해야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때 회의시간에 공론화시켜서 추가할 수 있는 안으로 유예해 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어긋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적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체화하자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 심사위원장

- 더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잠깐만요. 굳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송언어 순화, 품격제고와 거의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고 이것을 별도로 뺐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은 말할 것도 없고 종편조차도 계속 몇 사람 등장시켜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고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패널들이 너무 고정되어 있습니다. 패널의 다양성을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항목에서 소화할 수 있겠으나 방송언어 순화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저도 패널의 다양성은,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패널의 다양성을 문자화한 항목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패널의 다양성을 딱 적시를 해서 문자화한 항목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의 적절성 이런 항목에 포함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널 다양성 부분을 별도로 보신다면 심사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해서 받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심사기준에 넣자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런 것이 여기 어디에 표현된 자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에….

○ 심사지원반

- 여기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여론 다양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 심사위원

- 그런데 여기서 넣으면 이것이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이 안 나오지요. 방송언어 순화 실적이 따로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도 따로 빼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적시하시겠다면 여기에 괄호해서 '그런 부분 포함' 이렇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 심사위원

- 그렇게 해 주시든가….

○ 심사위원

- 그 데이터를 받을 시간이 됩니까?

○ 심사지원반

- 보시다시피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데, 심사기간 중에 그 자료가 딱 나올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패널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하니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왜 ○○○만 계속 나오냐라는 문제제기, 잘하니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바꾸라면 방송사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 심사위원

- 오락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과 시사프로그램은 다르지요. 우선 성향이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 맞지요. 그다음에 또 성향이 같더라도 매번 그 사람만 나오면 그쪽 진영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종편을 보면 너무 사람이 고정되어서 다 같은 시각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방송사들이 계획서를 쓸 때 이 항목을 안다면 나름의 그런 노력을 자기 스스로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든 표현했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여기에 괄호 해 놓고 적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적시하고 관련되는 항목이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자료 요청을 지금이라도 해서 낼 수 있으면 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

- 자료가 나오면 그것으로 평가하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 심사위원

- 이것은 국감에서도 지적받았으면 충분히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따로 모아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

- 모든 방송사 동일하게….

○ 심사지원반

- 하계 되면 추가 자료를 동일하게 받아야겠지요.

○ 심사위원장

- 몇 페이지입니까?

○ 심사위원

- 13페이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입니다.

○ 심사위원

- 출연자의 다양성에 관한 분석데이터를, 시사보도 패널의 다양성에 관한 예를 들어 남녀 비율이라든지 중복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 심사위원장

- 여기에 괄호를 칩니까?

○ 심사위원

- 저는 별도로 하나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예, 별도 항목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남녀, 성향 그다음에 사람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 심사위원

- 그런데 중복출연과 관련해서 분명히 데이터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다양성 문제가 되지요. 중복출연을 많이 할수록 다양성이 없는 것이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동일인이나 중복출연...

○ 심사위원

-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에 동시다발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연하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사업자인데...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구체적인 워딩을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출연하는 패널들이 자질에도 문제없고 여론 다양성에도 부합하고 품위 유지하는데 계속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재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면 점수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이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동일한 패널이 계속 나오는데 전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동일하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점을 한다….

○ 심사위원

- 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송사의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당연히 썼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심사항목에 이런 것이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쓸 때 여론 다양성 해야지, 나름대로 성향이 다르신 분,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 방송사는 그렇게 운영했다는 실적을 아마도 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쓰긴 썼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 의견은 이 심사에서 재승인에서 탈락하면 분명히 소송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향이 균질되지 않아서 편향되어서 재승인 점수를 적게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가면 주관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성향이 아니라 출연진이 계속 중복이 되더라, 다른 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복도가 높아서 점수가 낮다라든지, 아니면 출연자 중에 남녀의 비율이 여기는 다양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균질한데 이쪽은 남자만 나오더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데 성향이 치우쳐서 점수가 낮았다면….

○ 심사위원

- 성향이 아니라 이런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성향이 아니고 동일인이 계속 중복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워딩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받아야지,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때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종편에 특히 문제 중 하나가 지금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전에는 보면 ○○○ 측이나 ○○○ 측을 지지하는 사람만 왕

창 나오는데 ○○○ 이런 쪽은 또 적고….

○ 심사위원

-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누가 내가 ○○○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승인 때는 그런 식의 접근법보다는 계량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 나름이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빼도 좋은데….

○ 심사위원

- ○○○ 지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 지지하다가 다 옮겨 탑니다. 이것은 그런 워딩으로 자료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가 북도에서 얼핏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 할 때 바로 그런 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제 17대였으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옮겨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위원 구성이 아무래도 그때 집권여당에 좀 더 유리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 왜 어제 계속 그쪽 성향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날만 딱 보면 공정성에 어긋나는데 이것을 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1주일 내지 2주일까지 쪽 보면 공정합니다. 오늘내일 ○○○, 그러면 그다음과 그다음 날은 ○○○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검증해 보면 나타나더라고요.

○ 심사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일해보셨으니까 ○○○ 위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대칭으로 데이터로 표현하기는 결국 정성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대선후보 하는데 오늘은 여당, 야당 간에도 진보성향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성격이 아닌 정말 일방적인 편파, 왜곡, 심지어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작까지 해 버리는 이런 카더라방송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 문제 부분이 훨씬 큼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문제제기가 되고 그런 방송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있다면 누가 나왔느냐, 몇 번 나왔느냐 그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의제재 수가 지금 몇 건 나오고 뭐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2016년에 190건이 나왔다는데 그중에 제재한 것은 겨우 1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뭐가 올라왔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는데 심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 그러면 실제로 그 190건이 누군가 제기를 했을 텐데 제기됐다면 뭐가 문제인지 패널의 문제도 있고, 조작의 문제도 있고, 혹은 막말이 있고, 심지어 범죄물 같은 경우에는 선정성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면 방송평가에서 400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보·막말·편파 혹은 조작, 왜곡, 선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예를 들면 누가 더 나왔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봤을 때 심의에서 예를 들면 개인 대상으로 해서 징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제재를 했다, 혹은 방송에서 자기들끼리 이행계획 해서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나와서 하고 있고 계속 같은 방송을 하고 있고 편파, 왜곡방송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조작, 가짜뉴스까지 나오는데 이미 가짜뉴스는 사실 중편이다 해 버린 것이지요. 그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제를 해서 최소한 방송이 가지고 있는 품위, 객관성, 공정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것인가, 이것은 중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론을 위해서라도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데이터적으로 패널의 다양성, 패널의 다양성보다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 위원님께서 데이터를 많이 받아 보자고 한다면 예를 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몇 건 올라왔는지, 올라온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보자, 그랬을 때 그 방송에서 어느 방송사가 제일 많은지, 그 방송사가 고쳐지고 있는지 보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분석이 훨씬 더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다양성에 의해서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 남녀 기준이나 이 비율은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출연진의 문제는 중편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허카재승인할 때도 조건이 부여되어서 이 안에 방송사들이 계획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중편에서 충분히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적격 출연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들 Pool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편이 실제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편향적인 사람이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채허카재승인에서 탈락했을 때 이런 점수는 적절하지 않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행정소송하면 100% 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들은 아예 넣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심의가 걸릴 때 문제가 있었나, 아니었나 판단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하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넣어놓았을 경우에는 패널의 다양성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니까 저는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누가 편파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 평가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양성을 충족했냐, 그런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패널이 다양하냐, 너무 중복적이냐 그 정도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심사지원반에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공익성, 공정성, 공적책임은 굉장히 모호하고도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평가방법이 쪽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정성평가할 때 했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트를 다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이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예를 들면 토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까지 방송심의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적용해야 하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소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벗어나서...

○ 심사위원

- 그런데 제 이야기는 리스트업을 끝까지 컴플리트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 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지, 왜냐하면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서 무엇이 공적인 책임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출연자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떤 편파적인 것은 이미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항목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출연자가 편향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되고 호불호가 갈리고 이것들은 재승인이라는 평가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 말은 뼈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향이라는 말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뼈대라도 저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다섯 번째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패널 다양성을 포함한 여론 다양성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패널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하는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기 개념적으로 공정성 이런 부분에 다 포괄적으로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하게 되면 모든 심사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실제로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분을 보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심사위원

- 출연자의 중복성이나 패널의 남녀 비율, 패널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연진의 남녀 비율에 대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에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는 선으로 해 보시지요.

○ 심사지원반

- 그러면 정확하게 시사보도 패널의 중복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그렇지요. 패널의 중복성, 남녀의 비율 이런 것들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다양성이라고 말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저희 커뮤니케이션 정책 원칙 중 하나인데 그것을 다양성이라는 말을 꼭 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아까 콧○ 위원님 말씀하신 인물의 다양성, 물론 드라마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다 연결되니까 넣는다고 해도 굳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지원반

- 당연히 ○○○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할지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하나가 아닐 테니까….

○ 심사위원장

-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지요. 현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공정성과 여론 다양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예를 들면 워딩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패널의 다양성과 같은 단어를 넣어서 이 평가방법을 바꿔 보자는 그러한 2가지 의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평가방법을 바꾸자라기보다 지금 종편들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신경 쓰라는 뜻으로 그런 취지로….

○ 심사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워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말로 우리가 평가할 때 그것을 참조해서 평가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은 처음부터 있는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안 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지금 ○○○ 위원님께서서는 예를 들면 패널의 다양성과 같은 것을 집어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심사위원

- 패널의 다양성을 포함한 여론 다양성….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의견이 2가지인데 워딩을 예를 들면 패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6자를 집어넣는 안 하나와 그냥 종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는 2개의 안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찬반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만약에 워딩을 한다면 ‘공정성 및 여론의 다양성, 패널의 다양성 관련’ 그 워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 심사위원

- ‘공정성 및 패널 다양성을 포함한 여론 다양성’ 그러니까 여론 다양성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론 다양성에 들어가지만 특별히 패널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패널 다양성 포함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공정성, 여론 다양성 및 패널의 다양성 관련' 이런 식으로...

○ 심사위원

- '공정성, 여론 및 패널의 다양성'

○ 심사위원

- 그렇게 해도 되고...

○ 심사위원장

- '여론 및 패널'

○ 심사위원

- 굳이 그것을 집어넣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심사위원

- 아니면 괄호 해 놓고 패널의 다양성 이렇게 해서 포함...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 2가지 안으로 결정을 하지요? 우선 원안대로 그대로 놓아두자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공정성 및 여론 및 패널의 다양성, 공정성 콤마가 되어야겠네요. '공정성, 여론 및 패널의 다양성' 그렇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1안>, 그다음에 수정하는 것을 <2안>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거수투표로 해서 결론을 내리지요. 평가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하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없습니까?

(거수 투표)

그러면 지금 수정한 것 '공정성, 여론 및 패널의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이렇게 고칠지...

○ 심사위원

- 패널 다양성이 여론에 포함되니까...

○ 심사위원

- 괄호 열고 패널다양성 포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투표)

거의 대부분 수정안에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 평가방법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평가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예를 들면 실현계획을 제출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든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돌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앞인데 끝에 합이 안 맞고 비율이 틀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오기나 아니면 이것이 틀렸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정도 실수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실현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문제를 삼을 것인지, 아니면 평가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점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저희가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오기네'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단순오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오기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실현계획에 적절하게 작성이 안 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행실적도 그렇지만, 특히 실현계획에 관해서는 오기가 있다든지 뭔가 그 안에서 정합성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자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일종의 자료 왜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의도적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실수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추가자료 제출을 실적이고 계획이고 문제가 있다면 추가자료 제출을 꼭 리스트업해서 요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는 시정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영터리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그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실제로 영터리로 만들어 옵니다. 지상파 해 보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재허가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10, 20, 30, 40 이렇게 써 옵니다.

○ 심사위원

- 의견청취 하시면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판단하셔서 점수를 매기시면 어떨까요?

○ 심사위원

- 그런 것은 감점요인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이 부분에서는 너무 엉터리로 너무 단순하게 연도별로 10, 20, 30, 40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그것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다른 것과 같이 맞춰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계획에는 항상 적정성이라는 것이 붙지 않습니까? 계획이 적정하게 짜였나, 판단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먹구구로 했다면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치상의 오류들은 보정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기를 한 경우에는 뒤에 보정자료를 낼 수 있으니까 단순오기가 아니라 정말 충분한 어떤 근거 없이 계획을 작성했다면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저희가 보정자료는 받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는 보정자료를 하지요.

○ 심사지원반

- 내일 오후쯤에 추가로 꾸며진 자료들에 대해서 리스트업 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심사 전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 심사위원

-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합병비율도 안 맞고 이것이다 안 맞는 것입니다. 합병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다시 서류받아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에서 다 받아 왔는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합병 불허인데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오기로 봐줄 것이냐, 다시 자료를 고쳐서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니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대폭 감점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을 것인지 이러한 원칙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자료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원래는 그것이 맞습니다. 원칙이지요.

○ 심사위원

- 저도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적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거기에 점수를 안 줘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들어온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자꾸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 원칙을 저희가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자는 원칙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는 오기로 봐주고 어디는 자료를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회의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서 할 수 없지요. 시간이 안 되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회의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면...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방통위나 어느 기관이든지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논의한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개선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아닙니다. 우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엉터리가 들어오면 엉터리에 대한 평가를 10점이나 20점 주는 것이고, 잘했으면 100점을 주는 것이고 그 원칙으로 하면 별 문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사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니까,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된 것이냐라는 것을 평가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것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더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이야기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 심사위원

- 원칙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수정이라든지 보정자료를 안 받고 있는 자료에서만 원칙적으로 판단하자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외에 여기에서 들어왔는데 더 가져와라 그렇게 합니까? 평가할 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관례가 또 있으니까 모르는데...

○ 심사지원반

- 팩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세부자료를 요청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장

-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보충자료를 내라, 그런 것이 관행입니까?

○ 심사지원반

- 그렇게 세부내역을 내게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가능하단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평가하면 되겠지요.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요.

○ 심사위원

- 저희가 연구비 심사할 때처럼 100개 중에 50개를 뽑는다, 20개를 뽑는다고 할 때는 그냥 평가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일단 허가 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개선시켜서 끌고 가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 미처 내지 못한 자료를 내게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심사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이 방통위 평가기준이 그런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은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와서 콧바람 치라든지, 이름을 쓰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학생이 커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빠뜨린 것입니다. 시험인데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평가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채점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행을 물어보는 것인데 관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 심사위원

- ○○○ 위원님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나 방심위에서도 심의할 때 소명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작PD가 와서 하든 그래서 오해가 풀리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딱 찍어서 이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심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도 관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자료를 가지고 상대를 이해시킨다거나 격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원칙에 따라서 내일 평가하시다가 ‘이것은 조금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보완하도록 하지요.

○ 심사위원

- 예를 들어서 ○○○ 위원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실 때 이것은 교정의 필요성이 있다, 또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해야 한다면 이것은 판단이 안 선다, 모르겠다, 그래서 소명을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 심사위원

- 100% 풀리지는 않았지만….

○ 심사위원장

- ○○○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어쨌든 자료 요청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꼭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이 자료는 받는 것으로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가 진행해 온 것을 보면….

○ 심사위원

- 그때 이슈가 나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지요.

○ 심사지원반

- 논의를 해서 의결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보겠다고 해서 결정하신 다음에 요청하고 받아서 평가에 반영하시는 형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판단이 안 선다, 이것을 내가 봐야지 판단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관행도 그렇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서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니까 내일 평가하시면서 이것은 보충자료를 받아야겠다 면 요청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지요.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심사위원

- 세부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패널의 다양성 부분을 우리가 다시 표기를 했지만 방통위 진행 쪽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평가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보완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심사지원반

- 불가능하지 않고 이것은 어차피 심사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결하셨더라도 차후에 이것을 바꾸셔야 되겠으면 다시 의결하시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바꾸시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시 평가를 해야겠지요. 실제로 평가서를 쓰시는 것은 4일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실제로 바꾸시면 4일차에 이것을 다시 수정하시고 다시 평가서를 쓰는 것으로 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진행해 가면서 혹시 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봤는데 하나쯤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종편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글로벌미디어를 키우고 국제 콘텐츠를 생산하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종편을 하는 회사들에게 적절한 투자를 요구했고 투자약속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부분 수지도 맞춰 가면서 수익도 생기고 투자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을 보면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약속된 투자 이행여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현재 수익구조 속에서 콘텐츠에 어느 정도 투자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주 모호한 표현들만 있습니다. 투자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 종편이 좋은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여론의 다양성이라든가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자는 뜻이 결정적인 종편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것이었는데 없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투자 이행약속, 투자 이행여부 혹은 현재 수익구조 안에서의 콘텐츠 투자 적정성,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은 뭔가가 더 들어가 주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 심사위원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설명을 드리자면 종편채널들의 사업실적을 보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업손익에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다든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편채널들에 대한 경영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광고도 많이 받았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아주 양호한 보호막을 쳐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의 다양성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방비율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50% 이상의 재방비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경영 호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투자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안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더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강제한다는 것이 어렵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편채널들의 건강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만 놓아두면 안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지원반

- 15페이지 하단에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에 보시면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해서 계획과 실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 또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항목에서도 콘텐츠 투자의 적정성 부분을 추가로 다시 더 보자는 말씀이신지요?

○ 심사위원

-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 심사지원반

-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방법을 보시면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 항목을 보면 되겠네요.

○ 심사지원반

-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계획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콘텐츠 투자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 그것 외에 또 경영·투자 실적 부분에서도 추가로 더 보자는 말씀입니까?

○ 심사위원

- 이 부분과 그 부분은 콘셉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속한 투자, 약속에 대한 이행여부, 수익 중에서 콘텐츠 투자 비율 적정성 여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수급에 대한, 물론 그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2가지입니다. 자체제작 비율이 있고 외주제작 비율과 그다음에 재방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방 쪽에만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전체 수익구조에서의 콘텐츠 투자 여부라는 부분은 개념이 다르지요. 투자 여부라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부분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는 수급과 제작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방점이 다르지요.

○ 심사위원

- 수급과 제작이라는 텍스트와 투자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에 ○○○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추가로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워딩을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만약에 추가로 콘텐츠 투자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또는 계획의 적정성을 넣는다면 사실 앞 부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 이쪽 파트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뒤에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방송사로서 잘하고 있는가라는 쪽이고, 콘텐츠는 방송사로 보면 주제품 아닙니까? 제품관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은 앞쪽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투자실적은 점수도 작지 않습니까? 20점, 15점 이렇습니다. 이것은 오퍼레이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인력에 관한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 이런 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투자실적에 관한 부분은 앞부분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 이쪽 부분에 넣더라도 거기에 넣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이것을 15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말을 조금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수급, 투자 이런 식으로 수급만 해서는 ○○○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제대로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산업의 핵심은 콘텐츠를 제작, 유통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방송사업자들이 그것을 많이 수주해 주어야 하는데 어디 싼 것만 갖다가 하고, 또 한 것을 계속 틀어서 외부 독립제작사들의 발전이 저해가 되는데 그나마 아주 싼 값에 하고 제대로 돈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표현을 집어넣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심사지원반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사항이 맨 앞에 와 있고, 그다음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심사항목에서 여기에 나

와 있는 지역적 타당성 이런 것들, 이 워딩은 방통위에서 스터디 결과를 통한 지침으로 확정된 것이지요? 위원회에서 변경 가능합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항목까지는 확정된 것이고, 세부심사항목은….

○ 심사위원

- 평가방법에서는….

○ 심사지원반

- 세부심사항목이나 평가방법까지가 심사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심사항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세부심사항목에서는 아까 논의하셨던 것처럼 실적과 계획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바꾸신다면 아까 논의하신 것과 다르게 약간 틀이 흔들리게 되겠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부심사항목에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평가방법에 제작이라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해결되려면 세부심사항목에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평가방법에 표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표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같은 경우 보면 콘텐츠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요?

○ 심사지원반

- 평가방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세부심사항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제작·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라는 워딩이 들어가지만….

○ 심사위원

-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된 워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수급' 다음에 '제작'자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 심사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예를 들면 종편에 대해서 종편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출범을 했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광고도 독점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널도 최우선으로 줬고, 의무편성비율을 다 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종편이 우리나라 콘텐츠 발전에 혹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해서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과 여론 다양성에 기여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자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편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기업 효율성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부여받은 종편의 허가 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영·투자라고 하면 경영 효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콘텐츠 투자 안 하더라도 경영이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투자해서 내부구조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콘텐츠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영과 투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방송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방과 재방과 그다음에 자체제작과 외주제작비율을 지상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60% 내려가 있습니다. 외주에 줘야 한다, 왜냐하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에 대한 비율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실제로 콘텐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종편 허가할 때 연도별로 1년차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2년차에는 얼마 투자하라는 것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편이 생각보다, 4개 종편이 다 망한다고 그랬었지요. 빨리 수익적인 안정성을 거두어서 상당한 부분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원래 주어진 종편 재승인 규정에 맞게끔 콘텐츠를 위해서 투자하게끔 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경영과 투자에 대한 공정성·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볼 때 종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과 다른 일반회계에서의 효율성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닌 종편에 우리가 요구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경영과 효율성과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경영과 투자 부분에 아주 강력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투자라는 용어로 바꿔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부사항목에 프로그램 투자, 제작·협력 실적의 적정성으로 넣고 그다음 평가방법에서도 방송프로그램 수급이 아니라 투자, 그리고 자체제작도 투자하고 외주제작도 투자하고 구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들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워딩이 있으면...

○ 심사위원

- 아까 앞에서 저희가 점수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영·투자 실적을 일부러 강조해서 조정한 것은 투자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단순히 자기 회사 경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 심사위원장

- 프로그램에도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투자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는 데, 이것이 아니고 아까 15페이지 하단 것 거기에서 만일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도 고쳐야 합니다. 점수 조정한 것도 다시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15페이지를 그렇게 고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만일 그렇게 되면 그것도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심사위원

- 평가방법은 수정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목은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 심사위원장

- 용어를 그렇게 강조하면 혹시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평가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그렇게 워딩을 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의견을 제의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몫이지요.

○ 심사위원장

- 제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아까 ○○○ 위원님께서서는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정성과 경영 실적과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면 수급, 제작·협력 실적

에 자체·외주 구매에 대한 실적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투자를 얼마나 했다는 실적과 계획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놓고 평가하실 때는 이 항목으로 평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실적 배점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해야 한다면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부분은 그대로 두고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부분의 실적과 계획의 배점을 다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평가할 때 금액이 많은 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 대비 달성한 것이 적정합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럼 ○원 이상씩 투자하는 회사이고, ○○○은 한 ○원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계획은 계획 대비 ○○○은 ○퍼센트 달성했다, 그렇지만 ○○○은 계획은 ○원인데 ○원 정도 하고 달성도 ○퍼센트밖에 안 됐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마이너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많이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을 평가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당위성을 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일반적으로 일단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계획을 높이 잡았는데 성실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높이 잡았다는 것은 지난번 평가할 때 그 계획을 높이 잡은 것으로 해서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블러핑 해서 높게 잡아놓고 실적을 제대로 못 채웠으면 그것은 마이너스지요. 계획을 충족하고 더 투자한 것은 OK이지요. OK인데 그것이 또 양면성이 있는 것이 경영 부분에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회사가 위협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뒷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거의 ○○○ 하나가 나머지 종편3사에 버금가는 투자액과 비슷하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우리가 결정적으로 평가할 때 문제점은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투자계획을 지금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전 재승인에서 자기네들이 실현계획으로 냈던...

○ 심사위원

- 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넣던 실적을….

○ 심사위원

- 맨 처음은 아니고 재승인 받았을 때 자기네가 하겠다고 계획 대비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맨 처음에 허가받았을 때도 원 계획서에 짝 그려놓은 투자계획과 지금 평가하는 투자계획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럴 바에는 다음에 계획 낼 때는 한 300억원 콘텐츠 투자하고 300억원에 맞춰서 계획 90%, 99% 집행했다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문제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만 300억원이라는 계획을 썼을 때 계획 점수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높게 못 받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진행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계획 대비 이행실적과 방금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매출액 대비해서 본다든가, 다양한 지표들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분과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그 적정성의 기준을 계획 대비 이행 부분을 높게 볼 것인지, 아니면 매출액 대비 비율을 볼 것인지, 아니면 가용자금 대비 볼 것인지 다양한 지표들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보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분과위의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

-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하실 때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규정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까?

○ 심사지원반

- 이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이 부분이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방송 수급에 들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15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수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수급에 들어있는 것이고,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5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8>번을 고쳤지 않습니까? 이것 대신에 <6>번을 고쳐야 하는 것입
니다.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의견들 다 내셨습니까?

○ 심사위원

- <6>번은 어떻게 점수를….

○ 심사지원반

- 그러면 <8>번은 원상회복시키고 <6>번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 심사위원

- 아까 <8>번을 25:25로 했었는데 5점이 올라가면 40:40입니다.

○ 심사위원

- 40:40, 35:35….

○ 심사위원

- 40:40으로 하면 되지요

○ 심사위원

- <8>번은 20:30을 놓아두고 <6>번을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6>번은 얼마에 얼마로….

○ 심사위원

- 40:40으로….

○ 심사위원장

- 40:40?

○ 심사위원

- 보도PP는 35:35….

○ 심사위원

- 그러면 총점에 변화가 없습니까? 추가됩니까?

○ 심사지원반

- 총점이 바뀌지요. 1점이 올라갑니다.

○ 심사위원장

- <5>번은 얼마로 놓아두고요?

○ 심사위원

- <8>번은 그냥 놔두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8>번은 그냥 놓아두고….

○ 심사위원

- 그러면 총점이 1점 올라가서 731점이 되네요. 그다음에 269점이고….

○ 심사위원

- 35:35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35:35로 하고요?

○ 심사위원

- 35:35로 하면 거기에는 총점 변화가 없습니까?

○ 심사위원

- <8>번은 그대로 놔두면 변화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배점은 하나 정리하셔서 오늘 짝 돌려서 사인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배점 문제를 그렇게 고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다 맞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워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급을 투자로 바꾸는 것이고….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진행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 위원님께서 평가방법을 더 보시고 사후에 기준을 수정하고 의결하는 방식을 제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세부기준을 첫날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일단 열어보기 전에 의결하는 이유가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나서 의결하시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지요. 아까 ○○○ 위원님이 제기하신 프로그램의 투자에 대한 것은 15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수급을 투자로 바꾸고, 또 평가방법도 그 옆에 방송프로그램 수급을 투자로 바꾸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심사항목 <6>번 방송프로그램 수급을 투자로 바꾸는 것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점이 조금 달라진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40:40, 35:35로….

○ 심사위원장

- <5>번은 45:45 그대로이고, <6>번 방송프로그램이 40:40, 그리고 보도PP는 35:35….

○ 심사위원

- <8>번은 원래대로….

○ 심사위원장

- <8>번 중편은 20:30으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보도PP만 20:20으로 고치는 것으로….

○ 심사위원

- 보도도 원안대로 15:20….

○ 심사위원

- 보도도 원안대로입니다.

○ 심사위원장

- 15:20으로 그대로 놓아두자고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6>번에서 수정했기 때문에….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간도 많이 지나서….

○ 심사지원반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방통위에서 의결해서 정했는데 상위 항목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 하위 항목에서 ‘수급’을 ‘투자’로 바꾸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수급, 제작·협력 투자실적의 적정성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심사항목을 방송 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투자실적의 적정성, 평가방법도 방송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

○ 심사위원장

- 별 문제가 없을 텐데….

○ 심사지원반

- 수급 및 투자 실적의 적정성 이렇게 하시든지요.

○ 심사위원장

- 워딩만 바꾸는 것이니까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 단어만, 오랫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건'을 수정한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를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번 재승인 대상인 종편3사(JTBC, TV조선, 채널A)와 보도PP(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에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간은 2016년도 12월 5일~2017년도 1월 4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유효하게 접수된 총건은 32,696건입니다. 지난 재승인 30여건에 비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수입니다. 단체로 접수된 건이 2건으로 볼 수 있는데 민언련에서 공문으로 접수하였고, 엄마부대에서는 1,486건의 건수를 한 번에 방문하여서 접수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요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유효하게 접수된 총계입니다. 총 32,696이고 우편/방문이 23,896건으로 대부분이고, 팩스 2,404건, 이메일 6,355건, 국민신문고와 국민제안으로 그리고 단체로서 1건이 더 있습니다. 중복과 누락이 있는데 중복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여러 번 제출한 것을 중복으로 파악해서 제외하였고, 누락 부분은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 저희가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누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중복과 누락을 제외한 총 숫자가 접수 총계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엄마부대 등 대다수 접수 의견은 종편3사·보도PP의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종편·보도PP가 편향·왜곡된 내용으로 뉴스를 편성하고 탄핵 찬성 입장만을 방송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하였다. 또한 사실확인이 미흡한 의혹제기를 하였으며, 촛불시위 참가자 숫자를 부풀린 뉴스 보도, 방송시간의 대부분을 국정농단 사태 보도에 치중하는 등 종편·보도PP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의견, 이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견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 소수의견으로 미디어다양성·경쟁력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 종편의 도입취지를 고려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JTBC·TV조선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태블릿PC, 최순실 녹음파일)을 보도하여 뉴스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

리를 제고하였다는 의견, 그리고 개별프로그램에 대해서 JTBC의 <비정상회담>, <스포츠라이프>,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서민잡부> 등의 프로그램이 시청자 공감을 이끌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번에 제출된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0조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재승인 심사, 재승인을 마치고 나서 발간될 백서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워낙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신지 못하였고 10개 정도의 주요한 논리가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뒤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냥 참고하라는 뜻입니까?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하면서 고려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면...

○ **심사지원반**

-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32,000여건의 의견을 전부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자료 검토실에 보시면 맨 뒤에 12박스를 다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메일로 7,000여건 있기 때문에 옆에 노트북으로 인터넷 접속을 해 놓았고, 그래도 시청자들이 제시한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씩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나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셨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

- 엄마부대는 무엇입니까?

○ **심사지원반**

- 엄마부대는 시민단체로 이번에 촛불시위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촛불시위의 주체들입니까?

○ **심사지원반**

- 촛불시위에 반대하는 주체들입니다.

○ **심사위원**

- 반대입니까?

○ 심사위원

- 반대가 아니라 어버이연합과 똑같은, 성이 반대입니다. 어버이연합이 남성이고….

○ 심사위원

- 이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개별 항목에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재승인 심사의 전문가적 의견으로서 진행을 위원들이 하시면서 이런 여론들을 고려하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 있는 시청자 권익보호의 실적과는 상관이 없는….

○ 심사지원반

- 특정 항목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 심사위원

- 실제 이것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청문회를 엮니까? 방송사 허가, 재승인할 때는 시청자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사할 때 하는 것이고, 원래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시청자들의 대표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런 절차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별도로 청문회를 연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고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별도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심사위원

- 백서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쓸 때 이것을 참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자료도 보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했다는 취지입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기존 백서를 살펴보면 저희가 보고드리고 이 시청자 의견을 유효하게 접수하였고 심사위원님들이 참고하였다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엄마부대가 1,000 몇 건을 접수했고, 민언련은 1건인데 민언련은 집단적으로 1건으로 단체에서 한 것이고, 엄마부대는 여러 사람 것을 모아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회원들의 개별 이름으로 1,486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그 개수를 중시해야 하나, 엄마부대는 1건으로….

○ 심사지원반

- 개수를 중시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엄마부대를 1건으로 봐도 됩니까?

○ 심사위원

-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건수로 숫자를 세서 감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당연히 민언련에서 내는 의견과 엄마부대에서 개인이 내는 의견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서 개별적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참고로 한 번씩 봐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데 의견을 보시면 좀 더 논리 있게 성의 있게 쓴 의견도 있고, 아니면 단체로 일괄적으로 보낸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을 잡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엄마부대 빼고도 꽤 많네요. 이것을 낸 사람들이 많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중에 사람 이름으로 정리하신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 심사지원반

- 저희가 다 읽어봤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99%의 의견은 중편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왜곡한 주체이고 의혹을 중심으로 제기하였고 이러한 의견으로서 재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는 아주 간략한 주장을 주로 한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요약해 놓은 것은 근거를 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조금 성의 있게 고려할 만한 의견은 요약해 놓았습니다.

○ 심사위원

- 99% 중에는 말도 똑같은 것들이 많겠네요. 똑같이 복사해서….

○ 심사지원반

- 대부분 복사해서 이름만 연명한 식이 대부분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방송사 재허가 할 때 단체나 관련 시청자의 중요한 인물들 초청해서 공식 절차로 청문회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송위원회 때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이것도 사실은 공식 절차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통위에서 공고문을 내고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 심사위원

- 공고해서 모집한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한 달 동안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절차였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청문을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심사지원반

- 맞습니다.

○ 심사지원반

- 오전에 의결하셨던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심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아니고 심사자료의 한 가지 항목입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보고드린 이유는 심사자료로 접수하여 의결해 주십사 하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 보고사항

가. 종편PP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17.2월 방통위 의결)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가> '종편PP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종편PP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입니다. 종편PP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의 자료는 저희가 2017년도 2월 7일에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린 공식자료입니다. 보고사유는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MBN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승인 대상에는 MBN 유효기간이 다르지만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의 이행실적 점검 대상에는 MBN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업자가 방통위에 제출한 '16년도 이행실적 점검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조치방향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14년도 3월과 11월에 종편PP 4개사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15년도 6월 8일에 종편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촉구를 하였습니다. '15년도 7월 9일에 종편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16년도 8월 18일에는 이 시행명령을 이어서 '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TV조건, JTBC, 채널A 및 시정명령(MBN)에 대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17년도 1월 31일 올해입니다. 종편PP 4사 '16년도 이행실적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점검 대상입니다. 첫 번째, '16년도 하반기에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두 번째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16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 세 번째 사업계획상의 '16년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네 번째 '16년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35% 이행 여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종편PP 4개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하였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16년 8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이행촉구에 따른 이행계획 포함)을 전반적으로 이행하였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TV조선 7건, 채널A 4건 감소하였고, JTBC 1건, MBN 1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계획상의 '16년 콘텐츠 투자 이행 여부입니다. 종편PP 4개사의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16년도 부분입니다. 이행을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TV조선은 88%, JTBC 63.8%, 채널A는 88.6%, MBN은 72.1%입니다. '16년도에도 4개사 모두 미이행으로 점검되었습니다. 4페이지는 조금 다른 그래프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서상의 '16년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입니다. 종편PP 4개사가 재방비율 계획을 이행하였습니다. <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계획과 실적 대비해서 다 이행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16년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 종편PP 4개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른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4개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드린 조치방향은 TV조선, JTBC, 채널A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사업자 의견수렴 등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기간이 없고, 제출한 자료가 가결산 자료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 없이 이행실적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행 미흡 항목은 그 불이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승인 심사위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심사사항 평가에 반영한다. MBN에 대해서는 심사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16년 8월에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한바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이행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조치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이 보고안건을 보고드리고 참고자료로 심사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승인 조건 부분은 7페이지를 보시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표>에 재승인 조건이 있고 권고사항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보고됐는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임>으로 붙어 있는데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이 4개 종편사에 대한 승인 조건 권고사항의 전체입니까, 아니면 요약된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전체입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연도별로 구체성이 없이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시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답니까?

○ 심사지원반

- 지난번 재승인 때는 그렇게 달았습니다. 연도별로 실적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재승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실적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것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여쭙 보는 것은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승인조건도 그렇고 권고사항도 그렇습니다.

○ 심사지원반

-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재승인 때 보시면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확보 방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확보 방안을 재승인 심사 끝나고 나서 제출을 따로 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실적도 매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점검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2항에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공정성·공적책임 확보 방안을 제출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항, 4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행했는지 점검을 매년마다 한 것입니다. 5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계획서에는 없었지만 별도의 기준을 제시해서 이행실적을 점검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여쭙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이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혹은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편적이라서 이것만 봐서는 잘했는지 모르겠고 이것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를테면 오보·막말·편파도 보면 10건밖에 안 되고 이렇게 돼서 다 좋아지는 것 같고, 조금 미이행 됐지만 나머지 부분들 다 좋아지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3페이지에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의 법정제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것대로 보면 TV조선만 보면 오보·막말·편파 건수가 2014년에 95건에서 2015년은 127건에서 2016년에는 16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법정제재는 14건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지도라고 하고 있어서 저는 예를 들면 161건에 대한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적책임 부분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제재가 된 것은 무엇이고 행정지도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4사에 대한 구체적으로 심의조치에 들어온 것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법정제재는 무엇이었는지, 행정지도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사례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를 주시면,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논의했던 전체 14개 항목 중 <2>번에 있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분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부분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3페이지 심의건수와 관련해서 방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가령 ○○○같은 경우에는 늘지만 이것은 매우 적은 수에서 늘어나는 것이고 ○○○은 매우 많은 데에서 확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 권고를 한다면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그런 점을 잘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도 보면 ○○○ 경우에는 ○○○의 거의 ○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에 비해서도 한 ○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퍼센티지로만 하면 오히려 더 ○○○이 더 높습니다. ○○○은 ○%밖에 안 되고, 이 퍼센티지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 대단히 미스리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아시겠지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권고할 때도 이런 것을 잘 표현해서 무차별적으로 어떤 지시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재승인 조건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견서를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인 문안은 방통위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만약 그렇다면 재승인 조건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숫자로 딱 박혀 있는 것이 35% 이상을 외주편성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입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방송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도 재승인 조건을 못 지켰기 때문에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재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시정명령 정도라면 재승인 조건이 아닌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과 재승인 조건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재승인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승인해 줬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재승인 조건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해야만 저희가 심사의견서를 쓸 때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 심사지원반

- 방송법상 시정명령은 승인조건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제99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고, 그 취소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과징금 절차부터 먼저 가고 그다음에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승인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재승인 조건의 경우에는 재승인을 신청했을 때 수익적인 행정처분을 주는데, 행정처분을 주면서 하나의 의무를 새로 부과한 것이 재승인 조건입니다. 권고는 행정처분은 아니고 단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승인 조건에 따라서 점검하고 시정명령 취소까지 가지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절차상으로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매기고, 과징금을 매겨도 안 되면 그다음에는 재승인 취소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심사위원

- 조건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재승인할 때 기간을 짧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조건부 승인이 없는 것이지요? 재승인 조건을 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지난번에는 사업자들이 650점을 다 넘었습니다. 650점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승인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이 조건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650점 이하에서...

○ 심사지원반

- 그것을 안 지키면 재승인이 취소된다, 이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법률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승인은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론이고 재승인은 됐고, 다만 여기에 부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재승인은 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조건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붙였는데 부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같은 절차를 거치고, 이것이 위증하면 결국에는 승인 취소 사유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권고사항은 법률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행정명령을 받았다거나 시정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고만 어드바이징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650점 이하인 사업자가 나왔을 때 조건부 승인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조건을 만약에 안 지켰을 때는 자동 재승인 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치, 또 과징금 이 절차로 들어갑니까?

○ 심사지원반

- 650점이 안 되면 조건부 재승인하도록 심사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조건부 아니면 취소지요. 둘 중 하나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여태까지 거의 다 조건부로 했으니까 조건을 달게 되면 그 조건을 안 지켰을 때 650점 이상의 재승인 조건과 저희가 조건부 승인했을 때 가령 몇 가지 또 달겠지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이 지난번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례를 잠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OBS가 650점 미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붙이는 조건을 65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붙이는 조건과 같은 성격의 조건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런 형식으로 붙여야 할지, 아니면 이 조건을 붙였을 때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바로 허가 취소 건, 철회 건 유보를 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650점 미만을 받더라도 방통위에서 최종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담을 붙이는 형식으로, 현재 방송법상으로는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하고 2년을 줄여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1년을 줄인다든지 무슨 조건을 걸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OBS에 대해서도 3년이라는 허가를 하면서, 다만 부담을 붙이는데 방통위가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조건 위반 형식을 걸어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형식으로 갔습니다.

○ 심사위원

-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됐군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4가지 옵션이 있겠네요. 재승인, 그다음에 재승인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재승인 권고든 뭐든 붙이는 것 2가지 버전이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650점은 안 되지만 거기에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것이 있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재승인 불허, 허가 취소 이렇게 되는 4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네요?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3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아니지요.

○ 심사위원

-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지상파 검토할 때는 사실상 3가지입니다.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옛날에 경인방송 OBS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심사위원

- ○○○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건이 미성취되면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iTV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허가 취소한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iTV 때는 바로 재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안 해 준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선택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옵션인데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거의 사용한 것은 650점 이하라도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허가해 주면서 단서를 단 것과 같은 효과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심사위원

- 현실적으로 똑같습니다. 650점 이상이어서 조건을 만나, 650점 이하이지만 조건을 만나 이행을 안 해도 시정조치 받는 정도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 대신 그다음 심사에서는 좀 더 불리해지겠지요.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은 커지겠지요.

○ 심사지원반

- 그런 차이는 있는데, 650점이 넘으면 사업계획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50점이 안 됐을 때는 사업계획서 이행담보가 아니라 조금 다른 조건, 추가적인 조건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명확하게 단순 부담이 되는 것 이외에는 650점 이하가 될 때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까?

○ 심사지원반

- 그 조건에 대해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이 심사위원회….

○ 심사지원반

- 철회 건 유보의 의미를 담고자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송법상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철회 건 유보도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을 붙여 놓고 하는 절차들이 아주 세밀하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지만 같음 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 이런 절차를 두고 있는데, 철회 건 유보라는 것은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방송을 중단시키는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방통위가 실무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정말 안 되면 철회 건 바로 간다,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 심사위원

- 제일 중한 것이 허가 취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법에 보면 허가취소 사유가 있어도 과징금 부과하고 취소를 안 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위반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 심사위원

- 그러면 그것을 누가 취소하겠습니까? 그냥 과징금을 부과하고 말지요.

○ 심사위원장

-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그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종편·보도PP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진행사항

가. 분과별 위원 구성

○ 심사위원장

-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다음으로는 우리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과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구성 방안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별다른 아이디어를 드린다기보다는 오전에 운영계획을 의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과별 직무와 구성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더 상기 드리자면 제1분과는 방송프

로그랩 분야 및 장르 편성의 적절성, 조화로운 편성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미디어 분야 3인의 위원님은 1분과가 걱정하시지 않을까 판단하고,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두 분과 법률 분야 한 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제2분과는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 투자의 적정성 부분과 감점사항과 재정적 건전성을 포함한 계량평가 부분, 수적인 부분을 같이 보시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소비자 분야 한 분과 경제·경영·회계 분야 세 분, 기술 분야 한 분, 법률 분야 한 분으로, 법률 분야 두 분은 각각 분과마다 한 분씩 중심을 잡아 주는 것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따르자면 1분과에는 방송미디어 분야 위원님 세 분께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과에서는 경제·경영·회계 분야 위원님 세 분과 기술 분야 ○○○ 위원님께서 해서 네 분이 고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률과 시청자·소비자 분야 부분만 각각 1분과, 2분과를 지금 분야별로 같이 앉아 계시는데 상의하셔서 1분과, 2분과만 명단을 알려주시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설명을 들으셨는데 크게 나누면 방송편성 분과와 또 하나는 재정 담당하는 분과 2개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미디어 쪽은 ○○○, ○○○, ○○○ 세 분 위원님께서 자동적으로 들어가 주시고, 중요한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은 두 분이 계신데 스스로 나는 1분과, 2분과 가겠다고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위원님께서서는 1분과, 2분과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지, 두 분 중에 하나씩은 해야 하나니까….

○ 심사위원

- 두 사람을 각자 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이 지명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이 1분과로 가시고, ○○○ 위원님께서 2분과로 가시면 법률 분야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청자·소비자인데 세 분 중에 자원하시는 분 없습니까? 2분과가 한 분인데 세 분 중에 이쪽으로 가시겠다는 분,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1분과로 배정되는데, 제가 지명할까요?

○ 심사위원

-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이 2분과로 가시고, 나머지 두 분이 1분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1분과, 2분과 나누는 것이 무엇이지요? 다른 것이 다 있는데 한쪽은 프로그램 분야, 장르 편성 적정성 그것 가지고 토론한다는 뜻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요.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간사를 정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연소자 되시는 분이 활동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2분과는 ○○○ 위원님이 간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1분과는 두 분이 되시는 것 같은데 ○○○ 위원님과 ○○○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월일이 어느 분이 빠르십니까? 아니면 두 분이 자원을 하시든지, 연도가 같아서 월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월 ○일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월 ○일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는 좌장이나 회장은 없고 간사님들이 주로 연락, 자료 이런 등등 있으면 오거나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3일 목요일에 제3차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과별 활동보고를 간사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간사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분과의 위원들께서는 간사님들 잘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분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과장님 더 말씀하실 것 없지요?

○ 심사지원반

- 분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저녁 때 식사하시고 한번 모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장소는 저희가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1분과는 여기에서 하시고, 2분과는 세미나실2에서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 심사위원장

- 그 회의 하는 것은 각 분과별로 자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번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의무 규정은 없고 분과별로 필요한 만큼 회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런데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과가 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분과별로 회의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너무 열성적으로 일들을 해 주셔서 2시 반에 시작했는데 6시 반입니다. 4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열성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심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폐 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3분 폐회】

종합·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2. 23.(목) 09: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17. 2. 23.(목) 09: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화 (안수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차명심 (차명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곽지영 (세명대 회계학과 교수)
허남호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 프로젝트 리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3명)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09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재적위원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먼저 각 위원님께서 어제 회의 및 의견청취 과정에서 요청하셨던 종편·보도PP 신청법인 사업계획서 보정자료의 심사자료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입니다. 추가 심사자료 첫 번째는 종편PP 3사(TV조선, JTBC, 채널A)의 2016년도 이행실적 제출 자료입니다. 이것은 2014년 3월 재승인 이후 종편PP 3사가 2개월 내에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종편PP 3사(TV조선, JTBC, 채널A)의 최근 3년간 시사논평 프로그램 출연자 현황입니다.

출연자 중복 출연 관련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중편·보도PP 사업자 의견청취 시 추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입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2016년 심의제재(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포함하여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출한 주간기본편성표의 프로그램 목록별 방송분야, 방송분야 분류기준, 비율 및 교양으로 분류한 6개 프로그램의 대본 등 구성안입니다. 세 번째는 시청자 불만 상위 5대 사유 중 '프로그램 관련' 사항의 상세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JTBC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장비 관련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 계획을 요청하였고, 채널A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제출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유지할 것인지,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세부 데이터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두 번째 시청자 상담실 및 시청자 불만 관련 홈페이지 처리 실적 중 '방송내용'의 상세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YTN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시청자위원회 참석 의무를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사·정보·심층대담 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프로그램의 제목 및 내용을 요청하였고, 향후 5년간 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프로그램의 제목 및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요청된 자료는 뒤편에 묶어서 2부씩 비치했습니다. 용량이 너무 많아서 파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TV조선 1, 2, 3번과 채널A의 2번 자료는 용량이 너무 큰 관계로 출력을 하지 못하고 파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 요청자료 중에 <1>번 '16년 심의제재 상세내역은 TV조선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심의제재 전체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위에서 받은 오보·막말·편파 심의제재 내역과 함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보고내용을 들으셨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파일로 본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일을 어떻게 봅니까?

○ 심사지원반

- 노트북을 열어서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심사위원

- 저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비치해 놓았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시청자 불만에 대한 것을 요청한 것은 이것을 좀 더 세분류를 해서 통계표를 작성해서 페이지 하나를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째로 2년간, 3년간 한 것을 다 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요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겠지요.

○ 심사지원반

- 채널A의 경우에는 ○전 이상입니다.

○ 심사지원반

-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요약하는 데에도 몇 시간 안에 그것을 요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컴퓨터로 본다는 것은 저쪽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뒤에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자리 뒤쪽에 있는데 저것을 옮겨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왜냐하면 제가 제출요청했던 TV조선의 심의제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오보·막말·편파 방송 하는데 어제 대표가 이야기했던 자기들의 특정 집단의 의도적인 것 때문에 자기들이 당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TV조선의 오보·막말·편파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2>번 방송 분야 분류기준도 보면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교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보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2가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것을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 심의할 때 보실 시간들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면 관계없습니까? 혹시 다른 장치가 한두 개 더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추가로 더 제공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 1대로 다 돌아가면서 본다는 것은 조금 벅찬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청자 불만 상위내역 중에 분류가 5가지, 6가지인데 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건이 아니고 많아봤자 ○건 이 정도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세분류를 해서 분석하는 것은 한두 시간 정도면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만약에 그 자료를 다시 요청된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심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제출된 의견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 보고사항

가.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다음으로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우리 전체 심사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1분과 간사이신 ○○○ 위원님께서 <보고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제1분과에서는 주로 방송프로그램의 분야, 장르별 편성에 관련된 심사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분야를 봐야 합니다. 방송분야라는 것은 방송프로그램을 현재 보도·교양·오락의 세분류로 분류하고 있고, 이 3가지 프로그램들이 조화로운 편성을 해서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보도분야의 프로그램들의 편성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방송법령에 따르면 보

도·교양·오락의 조화로운 편성과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상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상한이라는 것은 현재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종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상파와 달리 보도 프로그램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장르별 편성비율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은 규제되어 있는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상한이라든지 하한에 관련된 법적규제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0조제2항 프로그램 분야 정의에 따르면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도·교양·오락에 대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하위 분야에 관한 세부 장르의 적용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보도에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양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분야뿐만 아니라 세부 장르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요청을 받아서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현재 세부 분류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세부 분류기준이라는 것은 소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스포츠, 다큐멘터리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세부 분류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편성비율 산정을 현재 따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는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보도분야다, 교양분야다, 오락분야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보고는 진짜 이것이 보도인지, 진짜 교양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서 세부 분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재승인 시 또는 최초에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를 제외하고 계속 보도, 특정한 장르에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과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종편 PP 보도비율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장르별 편성 제도·현황 및 문제점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도라는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저희가 지적하기 위해서는 이 보도에 해당되는 뉴스, 그다음에 시사논평,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토론·대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의 세부장르를 저희가 분석하지 않으면 보도 프로그램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장르별 편성비율이라든지 장르의 개념, 정의, 법적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라든지 분류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목적했던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과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사 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기준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세부 장르를 가지고 보도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1분과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정자료를 가지고 보시는 5페이지에 나온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부 장르기준에 따라서 각사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 장르 중에서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그다음에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보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토론·대담이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의한 결과를 6페이지에 검토결과로 제시했습니다. 검토결과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다른 위원들께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분야별 편성과 관련해서 보도라는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편성비율을 산정한 것이 종편의 자의적이고 또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부분들이 있어서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분야별 편성비율을 신뢰하여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

히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또는 해설과 관련해서는 특히 보도를 리포트나 기자의 리포팅이 있는 부분을 보도라고 제한적으로 하는 방송사가 있는 반면 좀 더 보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방송사도 있어서 분야별 보도와 관련된 편성비율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종편PP 같은 경우는 같은 제명의 프로그램들을 연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도로 편성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양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연도 내에서 같은 회차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동일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은 교양, 뒷부분은 보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야를 지정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분류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각사별로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도, 어떤 경우에는 교양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에 저희가 반영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발생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야별 편성기준만 갖고는 저희가 보도라든지 교양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장르를 세부 분류기준을 가지고 분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시사논평 프로그램은 토론·대담 등을 자의적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심사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처리방안입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상 15개 장르가 있습니다. 이 세부 장르라는 것은 앞에 있는 5페이지 장르별 세부 분류기준을 말합니다. 이 15가지 장르 중에서 뉴스라든지 탐사보도, 시사논평 프로그램이 방송법 시행령상 보도분야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신청사업자가 시사논평 프로그램을 토론·대담 장르로 분류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론·대담 프로그램이 보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교양에 해당되는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토론방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토론·대담에 관련된 기준을 저희가 활용해서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넓은 범위의 보도 프로그램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종편의 설립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장르에 편성된 프로그램들을 과다 편성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를 편중되게 하거나 또는 투자 감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특히 종편PP와 보도PP가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를 봤을 때 이 종편PP와 보도PP 간의 정체성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도 프로그램과 교양프로그램을 저희가 판단해서 분리해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에 재승인 대상이 되는 종편PP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승인 조건 또는 권고사항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관련 재승인 조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1, 2, 3으로 정리했습니다.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1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먼저 관련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첫 번째는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장르 프로그램을 반기별로 전체 방송시간의 33.3%, 즉 1/3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분류기준이 3가지로 전체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도·교양·오락, 그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들이 조화롭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프로그램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에 반기별로 제시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개편이 봄철, 가을철 2회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반기별로 편성실적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드리려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프로그램의 장르 기준 및 정의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제시된 재승인 심사사업계획서 제출요구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분류기준을 심의·의결해서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정의가 마련될 경우는 그러한 내용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제시한 첫 번째, 두 번째 의견을 2017년 하반기부터 재승인 허가 대상자인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각 내용을 반기별로 장르별 프로그램 목록 및 방송시간을 포함한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서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먼저 시청자의 불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교양·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저희들이 의논했던 것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사실상 시사논평으로 판단되는데 방송사업자들이 그것을 토론·대담으로 분류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재승인 조건을 그대로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상 시사논평을 토론·대담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교양으로 만약에 보고하게 된다면 자칫 재승인 조건(안)이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더 분명하게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6페이지 처리방안 기준마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개 장르 중에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은 보도분야의 정의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시사논평 프로그램을 토론·대담 장르로 분류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에서 토론·대담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선거법상 어디라고 하셨지요?

○ 심사위원

- 토론·대담 제81조에 있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선거법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거기에 보면 대답은 이런 것이지요. 대답은 한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뷰가 대답이고, 토론은 한 이슈에 대해서 찬반양론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정치이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떠들고 하는 것은 토론·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그 법상의 기준에 되어 있는 그 이외의 프로그램 시사 토론·대답은 시사논평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여기에 넣어 주어야만 토론·대답 장르로 분류한 것 감안해서 ‘어찌자는 건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장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맨 아래 하단에 참고표에서 시사 보도를 자료화면 등으로 제시하면서 사안별로 전문가의 논평을 듣는 프로그램은 시사논평이고, 그것이 아니라 특정 시사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찬반 논의를 하는 프로그램은 토론·대답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면 물론 표현의 변경은 여기에 맞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답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 정당의 정당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소속 정당의 정당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답은 1인이고, 토론은 2인 이상이라는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토론·대답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만약에 구체화해서 넣을 수 있다면 시사논평과 토론 그리고 대답이 그런 개념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기는 하지요.

○ 심사위원

- 거기에서 정당정책이니 정치적인 그것을 빼고...

○ 심사지원반

- 그런 부분은 빠지겠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집어넣으면 토론·대답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양으로 봐줄 수도 있겠지요.

○ 심사위원

- 그 기준이 없으면 토론·대답은 여전히 논쟁에서 못 벗어납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을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후보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규정한 규정인데….

○ 심사위원

- 우리가 일반 방송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대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도 형태의 시사 이슈를 가지고 마구 떠드는 것은 시사논평입니다. 그 적용을 ○○○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화시키더라도 방송에서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서도 보시면 토론·대담이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중간 <표>에 보시면 ‘특정 주제에 관해 진행자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묻거나’, 이것은 사실 대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대답이지요.

○ 심사지원반

- ‘관련 전문가가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이것은 토론인 것이지요. 사실 이 취지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 심사위원

- 너무 모호합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유형을 정의하기보다는 내용을 정의했습니다. 유형 자체를 이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갖고 오면 지금의 시사논평을 토론·대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적으로 2인 이상이 그 주제에 대해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질문 답변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인용했을 때는 시사논평과 차이가 오히려 없습니다.

○ 심사위원

- 법에서 준용한다는 말이 있지요?

○ 심사위원

- 준용하려면 준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상의 토론·대담의 규정을 방송법 장르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 왜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다른데 그것을 여기에 바로 준용시키느냐라고 하는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염두에 둔 자체적인 표현이 있어야지,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여기에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토론·대담의 형식입니다. 대담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을 초청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형식을 조금 차용해서 여기는 일반 주제니까 정치적인 후보자, 대상이 우선 후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면 토론과 대담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이 보도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바꿔 봤는데 예를 들어서 토론은 2인 이상의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시사논평 프로그램들이 주제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형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대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담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핵심은 토론프로그램인데 저는 토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토론프로그램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와서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 프로그램 중에 토론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어떤 것은 토론이고 어떤 것은 시사논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방송 프로그램의 토론 프로그램이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 쟁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주제도 될 수 있는데 진행자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토론 프로그램은 이 상황에서 패널과 방청객들이 등장하고 그 방청객들이 패널에 관해서 질문을 하거나 전화연결해서 질문하는 것들은 토론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100분 토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패널도 있지만 패널 이외에 방청객들이 자리하면서 관련해서 일반인들도 패널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아닌 경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방청객, 패널 전화연결해서 시청자의 질문들이 없이 전문가들만 출연해서 사회자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명이 진행하는 것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시사논평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조금 더 형식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일반적으로 토론이라는 것은 대학교 토론에서도 그렇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찬반양론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사토론은 그것이 아니고 의견개진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토론이 아닙니다.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대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양으로 분류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장르가 무엇이다라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사업자들은...

○ 심사위원

- 시사논평과는 다른 형식이고 이것은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우리가 토론·대담은 그렇게 해서 교양으로 넣어주고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유형의 대담이나 토론을 해라, 그러면 교양으로 넣어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채널에서 일반인의 질문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시청자의 질문 전달이 가능한 형식의 프로그램은 토론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또 하나는...

○ 심사위원

- 방청객이나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토론 프로그램...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토론 프로그램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인데 찬반에 방청객이 있냐, 없냐가 하나의 요건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프로그램 형식,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 출연한 패널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반에 명확한 입장을 갖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에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시사논평 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 심사위원

- 저는 언론 분야가 아닌 입장에서 전공이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뉴스는 뉴스이고 그다음에 탐사보도와 시사논평은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에 다 '시사'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토론·대담도 이것이 특정 주제인데 시사가 너무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문제여서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 토론·대담에 있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경우에는 이쪽으로 시사논평의 성격에 가깝다고 본다든가...

○ 심사위원

- 그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대담도 미국에서는 뉴스 인터뷰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대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뉴스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지만 그것이 유명한 디자이너는 너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이런 것을 물으면 시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시사와 관련된 문제 "김정남이를 북한에서 암살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다면 그것은 시사적인 대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뉴스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실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이 교양인데, 종편이니까 교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방송을 편성해야 하는데 교양 쪽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저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양도 건강에 대한 것,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교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정치적인 것은 이루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 심사위원

- 시사논평까지는 분명하게 보도로 들어가는데 논평이라는 것도 그냥 논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사논평이 아닌 것,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대담이나 토론도 사실은 뉴스 같은 성격의 것을 다루면, 시사적인 것을 다루면 그것은 전부다 교양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차별화해서 대담과 토론은 위원회 측에서는 교양으로 다 넣고 싶은 것이지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 힘들드니까요. 그러려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비시사적인 주제의 대담논평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방통위에서 제시한 장르 기준을 보니까 장르를 구별하는 기준을 우선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보신 것 같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형식을 가미해서 했습니다. 주가 내용적 분류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형식의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사논평이나, 시사토론이나, 일반 토론·대담은 문제가 안 되고 '시사'라고 하는 내용적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논평의 형식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대담의 형식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사에 관련된 것이면 기본적으로 보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토론이나, 대담이나, 논평이나 확정적으로 형식으로 구별됩니다. 논평은 전문가들이 나와

서 의견개진 하는 것이고, 토론은 찬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담은 한 사람이 나와서 쪽 기술하는 것이고, 시사논평과 시사토론, 시사대담의 구별을 우선 시사가 들어가 있으면 보도영역으로 보도 형식상으로 논평이나, 토론이나, 대담이나 찬반 토론이 있느냐, 대담 형식이나, 논평 형식이나로 구분해서 시사토론에 관한 것은 보도로 본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세부 분류기준에 시사논평과 토론·대담의 차이점을 보자면 시사논평 프로그램이나 토론·대담 프로그램이나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 시사적입니다. 시사적이 아닌 것은 방송에서 찬밥입니다.

○ 심사위원

-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요.

○ 심사위원

- 않은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한글창제 500주년 됐다, 이런 것들은 굳이 시사적인 것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런 것들은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대체로 보면 방송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보도 또는 토론의 주제로 삼는 것들은 거의 다 시사적일 것입니다. 시사적이 아닌 것은 막 말로 이야기하면 영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사성의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잘 표현했습니다. 시사논평은 국내외 시사쟁점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쟁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야기되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관련 사람들 나와서 떠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형식을 보면 '이렇게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어제 또는 오늘에 있었던 최신의 보도내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르륵 이야기합니다. 한 마디씩 다 돌아가고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뉴스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떠듭니다. 보도내용의 개입 여부가 시사논평과 토론·대담의 상당히 중요한 분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대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론 중에도 언론은 이렇게 보도들을 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으나 형식에 있어서 매번 보도내용을 딱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떠들고 그만두고 보도내용 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의 개입 여부가 시사논평과 토론·대담의 상당히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예를 들면 <박종진의 라이브쇼> 같은 경우에도 <박종진의 라이브쇼>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보도에 해당되는데 그 자료를 보면 보도화면 자료를 넣은 날은 보도라고 했고 화면자료 안 넣은 날은 교양으로 하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화면 자료라니요?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보도내용을 제시한 날은 자기네 보도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안 한 날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교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냐? 거기에서 한 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은 시사논평, 어느 날은 토론·대담 이것은 곤란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때문에 이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은 대충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기준을 정해서….

○ 심사위원

- 그러면 차라리 시사논평이라는 란에 이 장르 분류를 ‘시사논평·토론·대담’ 이렇게 해 놓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꺼번에 짝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박종진의 시사라이브>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시사논평이냐, 토론·대담이냐고 물으면 시사논평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시사토론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토론적 성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사토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는 시사대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 시사논평·대담·토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짝 다 포괄이 되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장르는 여기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 심사위원

-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 심사위원

- 저희가 오늘 회의를 토대로 해서 토론·대담 중 시사에 관련된 토론·대담은 시사논평으로 본다, 이렇게 주석을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앞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야 하니까...

○ 심사위원

- 저희가 심사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뒤에 재승인 조건 안에 제시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은 심사위원의 자유지요. 그런데 문제는 재승인 조건(안)으로 공개문서로 저희가 만들어서 결국은 방통위에 올릴 텐데 그때가 문제지요.

○ 심사위원

- ○○○ 위원님 의견에 타협을 하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논평·토론·대담, 시사를 주제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토론·대담은 조금 입장을 바꿔서 특정 주제에 관한 찬성 반대의 입장을 토론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해서 일반화시켜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시사논평·토론·대담이라는 카테고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시사에 관련된 논평이고 토론이고 대담프로그램이라는 것이지요. 토론·대담 형식도 지금 우리가 토론·대담을 한 형식 안에서 우리가 2개를 쪼개려고 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사적인 부분은 그쪽에 강조해 놓고 토론·대담을 일반 형태의 우리가 생각하는 <100분 토론>이나 아침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이너라든지 누구 불러다가 대답하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켜 놓는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시사논평·토론·대담이 들어갔으면 새로 만들어졌으면 시사적인 주제 외 토론·대담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그것을 다 붙이기는 어려우니까 토론·대담으로 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문안을 만들어 본 것이 이런 것이지요. 특정 주제 혹은 이슈일 수도 있고 '특정 주제에 관해서 명백한 찬성 입장을 토론하거나' 그것이 토론 프로그램이고, 대담은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 하는 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하면 인물에 대한 인터뷰 한 것은 대담이고...

○ 심사위원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 심사위원

- 토론은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100분 토론> 같은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토론·대담의 성격으로 보자면 거기에는 아이템별 보도내용 인용이 거의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갈 수는 있어도, 아이템별 인용되는 보도내용 그것이 시사 논평에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이것이 보도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토론·대담 그렇게 하면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토론·대담도 아예 이쪽으로 포함하자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어디에다가요? 보도 쪽으로?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기술상 이 토론·대담을 정의하면 형식이 논평과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형식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토론이라는 것은 청중이 있어야 합니다. 판정관들이 듣고 누가 잘했다, 이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방청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 심사위원

- 문제는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치고 시사논평과 합쳐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는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는 토론·대담 프로그램이 아닌데 토론·대담프로그램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하느냐, 좁게 잡아야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부 분류기준을 합치고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토론·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특정한 특정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대담 프로그램으로 본다, 또는 토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도 VCR를 활용한다, 그것도 좋긴 하지만 <100분 토론>도 앞에 VCR 돌려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매번 그러지는 않지요.

○ 심사위원

- 예. 예를 들면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예고를 통해 패널의 출연,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가 되면서 그다음에 패널이 명확하게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서 전부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 패널에 대해서 방청객이라든지 시청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면 되지요.

○ 심사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송사의 입장으로서 방청객의 등장 여부에 따라서 비용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그것은 저희가 고민할 것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올라왔을 때 토론·대담들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나머지가 거의 다 보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보도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현재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더 간단하게 하려면 토론·대담에 대한 비시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사논평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대담을 비시사적인 주제….

○ 심사위원

- 너무 형식을 갖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제일 문제가 시사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형식을 맞추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담을 한 사람의 입장을 듣는 것은 대담이다, 그러면 <박종진의 라이브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 교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토론·대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그것은 다 시사인데 시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형식을 하면 형식에 맞춰서 시사는 계속 다룰 것이다.

○ 심사위원

- 토론·대담은 아예 정의를 비시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사논평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 심사위원

- 어렵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사실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드라마나 이런 것 빼고 비시사적인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시사논평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시사에 다 넣는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을 다 시사에 넣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의도적으로 방향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일반적인 토론·대담의 정의에서 아주 벗어나지만 않으면 저희는 이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나누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제가 언론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비시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루느냐? 그러면 할 거리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 심사위원

- 시사적인 것을 다루면 그것은 보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시사적인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선택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 심사위원

- 무엇이 시사적인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요.

○ 심사위원

- 저는 방통위에서 제시하신 장르 기준이 엄청 고심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다 시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이것이 항상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쉽게 변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쪽 하신 말씀을 종합해 봐도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하시는 것처럼 토론·대담에 있는 것을 다시 정의를 바꾸거나 분류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지금 걱정하시는 재승인 조건 안에 이 문제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고 이 정의 자체나 분류 자체를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결국은 반대의견이 나오고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사업실적,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방통위에서 보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네들은 교양의 토론·대담으로 분류해 왔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다 보도영역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통위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보도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행실적을 너희들이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심사지원반

-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원회 의결로서 재승인 조건으로 붙인다면 저희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분류했는지를 확인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 심사위원

- 저희도 권한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하지요. 그것이 있다고 봐야지요.

○ 심사위원

- 이 자리에서 일반화된 기준을 세우시려고 하시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노출되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예민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런 것은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방통위에서 심의하신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여기에서 일반화시켜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결국은 이의가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일반화된 기준을 만들기는...

○ 심사위원

- 방통위도 이런 데서 중지를 모아서 소위 집단 지성을 모아서 클리어하게 하고 방향 제시가 확실해지면 더 좋지요. 우리가 그래서 논의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인데 방통위가 원래 이 안을 잘 만들었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해서 조금 더 흠이 적은, 또 사업자들이 볼 때 확실하게 이 기준에 따를 수 있겠구나, 또 이 기준이 명확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면 좋지요.

○ 심사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마지막 조건에 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준수하되,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반기별로 장르별 프로그램 목록 및 방송시간을 포함한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송은 오늘은 교양이고 또 다른 날은 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카테고리만 넣어서 보고해 달라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왔다 갔다 또 하면 살살 퍼센티지를 올리면서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로 보고, 어제도 그 이야기는 심사할 때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종편채널들이 이 시사논평을 자기들은 이것을 교양으로 넣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보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아까 보도 VCR 동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사논평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 이템별로 바로 어제 오늘에 있었던 보도 VCR를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도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 나온 것만 시사논평으로 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심사위원

- 일단 그것만 없어도 뉴스나 보도라고 하는 아무래도 생각이 줄어들는 것이지요. 그것만 없어도 교양 쪽으로...

○ 심사위원

- 의견을 말씀드리면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저희 방송 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외주프로그램이 뭐냐, 비외주는 뭐냐 가지고 정의가 됩니다. 어떤 것이 외주프로그램이나? 외주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그때 3가지 정도의 사안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외주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 심사위원

- 외주제작이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자체 제작진이 아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이런 것이지요. 가령 연출이라든지 요소, 몇 가지 요소 중에서 2가지가 해당되면

외주 프로그램으로 판정하지요. 그러듯이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보도다, 아니다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가져온 것이 실질적으로 보도인데 교양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심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 향후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가 목적입니다. 개선해 보기 위해 이행실적을 받는다가 목적입니다. 이행실적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이행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보도니 토론이니 할 필요는 없고 많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들어온 자료를 보니 같은 프로그램 쪼개서 보도·교양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기에는 보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교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편성 분류기준이 자의적이다, 그래서 개선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저희가 부과조건을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론·대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의적 판단이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이행실적을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도프로그램에 관련된 판정단이라든지 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판정해서 이런 보도 분류나 교양 편성기준에 대한 수정을 보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기준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명확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분류하고 저기에 분류할 수 있다고 확실히 명확히 해 주어야지,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분류해 주겠다, 이것은 기준이 아니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사업자들에게도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라는 것이 토론·대담 프로그램의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 있습니다. 보도 프로그램의 기준이 다 있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시사적인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디에 포함시켜 주느냐...

○ 심사위원

- 제가 뭐냐 하면 기준은 나와 있는데 개별 사안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적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1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쟁점의 포인트가 뉴스와 교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제 의견인데 시사논평에 순서는 토론·대담·논평 그렇게 하게 되면 뉴스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토론·대담 앞에 '일반'자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양으로

그것을 뉴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토론·대담 앞이에요?

○ 심사위원장

- 예. 거기에 '일반'자를 집어넣어서 그것은 뉴스에 들어가지 않는 주제를 갖고 토론·대담 하는 것은 교양으로 들어간다.

○ 심사위원

- 밑에 해석을 추가해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정리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비슷한 의견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 심사위원

- 시사적인 이슈를 다뤄서 사실상 보도내용에 들어가는 그런 토론·대담은...

○ 심사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시사를 '논평·토론·대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시사'라고 해 놓으면 되지요. 시사는 다 그쪽으로 분류가 되고, 시사가 아닌 토론이나 대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교양으로 분류하고...

○ 심사위원

- 그런 식으로 덧붙이면 되겠네요.

○ 심사위원

- 네거티브, 포지티브 해서 저는 '일반 토론·대담' 하고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비시사적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시지요.

○ 심사위원

-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놔두고 해석을 밑에 쓰는 것이지요. 시사적인 내용의 토론·대담은...

○ 심사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 심사지원반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시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시사의 개념을 정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시사논평에다가 '자사 및 타사의 보도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이것을 저희는 시사적인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굳이 시사적인 개념을 쓰지 않더라도 이것은 시사적인 것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사 이런 표현을 쓰신다면 시사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시사 내지 비시사….

○ 심사위원장

- 시사논평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설명만 그렇게 하자?

○ 심사위원

- 뭐가 시사냐, 시사가 아니냐의 구별이지요.

○ 심사위원

- 토론·대답 앞에 일반을 붙이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여기에 일반을 붙이면서 다른 것은 비시사라는 개념 정의를 넣자,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께서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아예 보도내용을 다루는 그런 식의 토론·대답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도부문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해도 되겠지요. 시사내용에 보도내용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 심사위원

- 문구 정리만 남은 것이면 법령 제작하는 기술의 단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론·대답의 내용 중에서 시사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라는 의미로 내용을 그대로 쓰되, 끝에 '단, 국내·외 시사쟁점 관련 보도내용 자사 및 타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점을 뒤에 단서로 붙이면 이 부분은 위에 시사논평 또는 다른 이럴 때에는 시사논평 아니면 시사토론·대답으로 보아서 시사보도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단서로 넣어주면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어쨌거나 논평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송으로 치자는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설위원들 해설, 그것 당연히 보도지요. 또 신문 같은 것 사설이나 논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시사논평까지는 분명한 뉴스보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토론·대답인데, 아까 위원장님 제안하신 대로 '일반'자를 집어넣으면 약간

뭔가 비시사적이고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주긴 줍니다.

○ 심사위원

- 학술토론 같은 것은 분명히 시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이 학술토론을 중계할 수도 있고 그런 유사한 것들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KBS는 그런 것을 더러 하는데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사적인 토론·대담은 논평과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를 들어서 <100분 토론> 같은 경우 목요일에 하면 아이템 회의를 보통 월요일이나 아니면 그 전주 금요일에 할 것입니다. 쪽 제작진이 준비해 오다가 엄청난 사안이 수요일에 터지면 그때까지 준비한 것을 다 덮고 잘 아시겠지만 수요일 밤 새서 목요일에 시사적인, 왜냐하면 딱딱딱한 뉴스니까, 그러나 이것은 토론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시사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라고….

○ 심사위원

- 그것은 당연히 시사적인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시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보도로 넣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의 토론 프로그램들이 <100분 토론>이나 <심야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시사성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시사적인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시사논평·토론·대담으로 해서 보도로 치자는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한꺼번에 다 묶자는 것입니다. 묶고 일반 토론·대담 또는 비시사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대담은 별도로 교양으로 해 주고….

○ 심사위원

- 생활이라고 넣으면 어떻습니까? 생활토론·대담….

○ 심사위원

- 아닙니다. 학술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장르 기준 내신 것을 보면 쟁점이 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 놓았느냐 하면 시사보도 자료화면을 제시하면 시사논평으로, 같은 시사 주제라도 찬반 논의를 하면 일반 토론·대담으로 구분을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 심사지원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를 들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번 중편에게 보도가 너무 많다, 시사논평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고 요구하는 취지가 단순히 시간적인 양도 있지만 이 사람이 기자로서 리포팅을 하고 취재진으로서 팩트를 전달하는데 그 팩트를 설명하는 해설 부분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이 구별 안 되게 동일 프로그램에 혼재시켰기 때문에 시청자를 오인하고 오독케 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초점입니다.

○ 심사위원

- 쟁점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사건임을, 개인적인 견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 보통 토론·대담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교양 분야에 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대담은 찬반 양론을 쫓고, 모든 시사적인 주제를 포괄해서 주제에 관계없이 이 사람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취지의 토론·대담 프로그램이고, 지금의 중편 프로그램은 이것이 저 사람의 사건인지, 보도내용의 일부인지, 보도에 대한 해설인지 그것을 시청자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재들이 있을 수 있고 규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논평과 토론·대담의 주요한 차이를 보도에 대한 오인을 줄 수 있느냐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

-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시사논평에 대해서 규정 정의를 보면 보도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사건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사건인데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팩트로 시청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양 영역에 뺏겼지요.

○ 심사위원

- 일반적인 기준에서 한다면 단순히 시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도로 본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까지 시사문제에 관한 것이라도 전형적인 토론·대담이면 교양으로 분류해 오던 것을 지금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보도로 본다고 하는 문제도 생기고, 두 번째는 아까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사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데 ‘이것은 시사냐, 아니냐?’라는 쟁점도 또 생길 것이고, 그것을 시사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로 보고 시사 문제가 아니면 토론·대담으로 본다는 구성 방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 보도 VCR를 아이템별로 계속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만 덜어내면 차라리 토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것을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 위원님의 주장이 기존 방통위에서 제시한 안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고 ○○○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확대해서 봐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이상 지났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사와 교양의 한계점을 조금만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도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논평은 장르 이름 그대로 놓아두고, 그 내용 속에는 보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토론·대담이 제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교양으로 우리가 이 장르를 인정하게 되면 ‘일반’자를 하나 거기에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 둘째 주에 ‘특정 시사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찬반 논의를 하는 프로그램은 토론·대담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시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일반으로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교양이라고 하나 정해 놓으면 기존 것보다는 조금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경계선이 조금은 더 분명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일반 토론·대담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일반도 좋고 비시사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것은 조금 분명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 심사지원반

- 결국은 시사와 비시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 선에서 수정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 심사위원

- ‘시사논평의 보도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도내용이라는 것이 시사적인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했던 다른 언론사에서 했던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대담을 하면 그것은 시사논평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정의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도내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 심사위원

- 아까 ○○○ 위원님 내용도 괜찮은 것이 예를 들어 일반 토론·대담이라고 한다면 그것 갖고도 또 굳이 모자란다면 거기에 설명을 별표 하나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언론보도 내용 아이탬의 등장, 이런 것들은 토론·대담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면 토론·대담이 굳이 비시사라고 하지 않고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어도 누가 보기에든 토론·대담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사실상 시사논평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토론·대담은 이쪽에 분류가 된다는 것만 이야기해 주면,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것을 분리하고자 함이니까….

○ 심사위원

- 너무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 심사위원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지금 ○○○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이라는 말을 굳이 안 붙여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토론·대담이라는 것을 놓아두고….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는 일반이라는 단어를 앞에 집어넣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론에 더 가깝다는 인식을 하나 주고, 두 번째는 일단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아래에 별표를 하나 해서 '언론보도 내용의 인용에 대한 의견제시 논평은 제외한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면,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대담과 시사논평이 더 분명하게 구분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일반 토론·대담 그 칸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별표를 하나 더 해서...

○ 심사위원

- 심지어 그렇게 되면 일반이라는 말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굳이 안 써도 되지요.

○ 심사위원

- 어차피 제외만 시키면 되니까...

○ 심사위원

- 그리고 설령 토론·대담에서 시사적인 것을 다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시사라고 해 놓으면 너무 제한하니까, 왜냐하면 시사적인 것을 다룬다 할지라도 언론보도 내용을 자꾸 VTR로 보여주면 그런 것만 안 해도 토론·대담의 성격이 더 진해진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시사논평은 그대로 가고, 토론·대담에 '일반'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이 뒤에 있는 문장을 바꿔 주는데, '특정 주제에 관해'라고 해 놓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명백한 찬성 반대 입장을 토론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단, 보도내용을 인용한 토론·대담은 시사논평으로 본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 '단'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단'은 밑에 내려서 설명하고, 거기에 별표 표시한 다음에...

○ 심사위원

- 뉴스처럼 괄호 치면 되지요.

○ 심사위원

- 아니면 이렇게 괄호로 해도 되고….

○ 심사위원

-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밑에 따옴표 두 줄은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지금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심사위원

- 그 워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가 읽겠습니다. 시사논평은 그대로 가고, 토론·대담에 일반을 붙이는 것은 너무 궁색하니까 일반시사의 논쟁을 다룰 수 있으니까 문제는 시사논평과 같은 토론·대담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데, 그 대신 토론·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 성격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토론·대담물. 그러자면 시사, 비시사 없습니다. ‘특정 주제에 명백한 찬성 반대 입장을 토론하거나’ 명백한 찬성 반대 입장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와서 치열하게 토론한다는 뜻이지요.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단, 보도 내용을 위에 있는 그대로 시사논평에 있는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을 인용하는 토론·대담은 시사논평으로 본다라든지, 제외한다라든지….

○ 심사위원

-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한,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인용한 토론·대담 형식은 예를 들면 시사논평으로 본다.

○ 심사위원

- 그래도 됩니다. 단, 언론보도를 인용한 토론·대담은 시사논평으로 본다. 역시 같은 말이지요.

○ 심사위원

- 괄호 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도 괄호가 있으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되면 결국 시사논평·대답·토론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이런 말을 안 써도 되지요. 여기에 보도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시사논평을 놓아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는 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해도 여기에 시사논평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같은 취지인데….

○ 심사위원

- 지금은 토론·대답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사적인 주제가 아닌 보도내용을 인용하지 않는 토론·대답은 일반 토론·대답에 들어가는 것이고….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결국 시사논평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도를 인용한 토론·대답은 시사논평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단’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단’으로 하지 말고 이어서 문장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지금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사논평에 명확하게 명기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나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시사논평에 한번 더 넣자는 말씀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단, 보도내용을 토대로 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보도는 계란값도 보도이고 다 보도이지 않습니까? 어떤 보도인지를 여기에 해 주시면 계란값 보도도 다 보도이고 김정남도 보도인데 그냥 그렇게 보도로 하시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방송에서 보도내용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림은 항상 동원해서 특정 뉴스의 일정 부분을 보여 주면서….

○ 심사위원

- 지금 그렇게 그냥 보도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도를 토대로 한 것은 제외한다면 계란값도 보도고 채소값도 보도고 다 보도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따지면 보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사가 너무 많은 것,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아니라 지금 토론·대답에 대한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을 아는데 지금 ‘단’ 하고 붙였는데 ‘단, 보도내용 토대로 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보도의 의미를 하려면 거기 위에 한 것처럼 ‘시사 관련 보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시 정리해 봅시다.

○ 심사위원

- ○○○ 위원님이 거기에 조건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시사논평과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물론 조건 문구를 나중에 빼도 되지만 넣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된 것이 논란이 계속 되니까...

○ 심사위원

- 악용될 소지를 줄이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나 제가 이야기한 것이나 똑같은데, 저는 시사논평·토론·대담 하고 '국내·외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대담하거나 토론하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놓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토론·대담은 '일반' 정도 붙여서 그냥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간단하지, '단' 이렇게 붙여서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지요.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 이렇게 할 수 있지요. ○○○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사논평·토론·대담이라고 붙여놓고, 그래서 토론과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고 대담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토론자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론·대담만 해 놓고 '일반'을 붙일 필요 없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찬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개념을 더 강조하자는 이야기지요.

○ 심사위원

- 이름 자체를 시사논평·토론·대담...

○ 심사위원

- 여기에는 그 대신에 '단' 부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정리하면...

○ 심사위원

- 같은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이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 심사위원장

- 준비반에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시사논평 장르의 이름을 시사토론·대담·논평 논평이 앞에 나와야 합니까?

○ 심사위원

- 그래도 상관없겠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붙이고….

○ 심사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뒤에 정의는 조금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토론·대담에는 ○○○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수정하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토론이라는 단어가 양쪽에 들어가면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방송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개념을 놓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해설을 보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갑자기 토론이 들어가는 것이 이상해집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 토론이 들어가면 혼란이 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 장르명은 그대로 놓아두고 내용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심사위원

-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내라고 해 놓고 우리가 이것을 또 바꿔서, 분류기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정의를 저희가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끝이 없으니까 위원회 측에서 이야기한 그 규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사논평 그대로 놓아두고….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안일뿐이고 이것을 정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왜 이것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이것을 방통위에서 만들어 온 것을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저희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 안을 만드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들어 줘서 그러면 심사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방통위가 이것을 인용해서 다른 데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용어를 만드는 부분은 물론 시사논평 단어는 시행령에 용어가 있기 때문이 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안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규정에서만 넣으면 됩니다. 시사논평이라고 토론·대담도 규정에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시사논평은 그대로 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정만 바꿔 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고치자고요.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시사논평하고 여기 '보도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여기에 '제시하고 대담하고 토론하는'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고, 토론·대담은 그냥 놓아두면 되지요.

○ 심사지원반

-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시사논평까지를 묶어서 보도라고 본다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토론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방송법 시행령에 있는 개념과 충돌이 생깁니다.

○ 심사위원

- 토론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자꾸 들어가자고 하시니까....

○ 심사위원

- 시사논평 놓아두고 그 정의에서...

○ 심사위원

- 정의에 '토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정의에 토론이 들어가게 되면...

○ 심사위원

- 일단 토론이 들어가면 혼란이 오지요.

○ 심사위원

- 거기에 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분명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단'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구체화해서, 이 상황에서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거기에서 뭐냐 하면 일반 뉴스성과 교양의 한계를 ○○○ 위원님이 아까 오다가 하나 집어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규정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럼 11시가 다 되어 가니까 ○○○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토론·대답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그렇게 하고, 거기 기준을 삼아서 심사를 하도록 그리고 워딩만 ○○○ 위원님에게 도움 받아서 정리하지요.

○ 심사위원

- 그 워딩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지요. 만들어 놓고 가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 심사지원반

-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심사위원장

-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니까요.

○ 심사위원

- 방통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도 되지요.

○ 심사지원반

- 고려하실 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재승인 조건 안에 저희가 제시한 것이 방금 의견이 수정이 되면 같이 고려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안)은 여기에 분야에 관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도로 규정하는 표현이 없고, 장르별로만 규정을 했고 이것을 33.3%라는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 만들어 놓았지요. 6페이지 처리방안에 보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프로그램이 방송법 시행령상 보도분야의 정의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심사평가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 심사위원

- 그것이 우리 제안이지요.

○ 심사지원반

- 그런데 밖으로 나가고 표현이 되는 것은 재승인 조건(안)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는 보도분야에 대한 표현이 없고 뉴스, 탐사도 시사논평 장르에 대한 표현만 있고 이것을 보도로 본다는 표현은 없고, 때문에 만약에 토론·대담을 여기에 장르만 표현하시려면 시사논평·토론·대담 해서 퍼센티지를 조정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려하실 수 있는 방안들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지금은 이 기준 자체를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 이것이 방통위가 제시한 분류기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기준

에 변경이 있으시면 이것을 ‘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이런 표현으로 고치고 장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조건을 부과할 때 같이 제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하시고, 분야를 보도분야라는 것을 <1>번에 박아서 표현을 꼭 하실 것인지, 보도분야에 대한 의견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르만 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같이 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는 분야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르 하나를 더 붙여서 비율 자체를 조정하시는 방안도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우리가 심사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다음에 이 기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내려면 회의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심사지원반

- 만약에 재승인 조건을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시고 심사의견서를 써서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종합해서 사업자별로 하나의 의견서로 만들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이렇게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으로 권고사항이나 이런 데에 제시하라는 이야기지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을 정리해서 마지막 날 내일 회의를 하실 때 최종적인 사업자 심사 의견서를 의결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문구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정리합니다. 평가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논의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리고 내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논할 때에는 앞으로는 토론·대담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개정했다면 좋겠다는 것을 방통위에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지요. 그 이상 다른 말씀이 없으면...

○ 심사위원

- 참고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TV조선과 채널A가 문제가 되는데 채널A의 경우에는 토론·대담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사논평을 교양으로 분류해 놓아서, 시사논평을 ○%로 전부다 교양으로 분류해서 지금 자기들의 보도 프로그램을 ○% 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널A는 시사논평 부분이 교양으로 넣어놓았지만 보도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사실 ○%를 다시 보도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토론·대담이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TV조선이 상당수의 프로그램 <최희준의 왜?>, <신통방통>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어떤 데는 자기들이 시사논평에 넣어놓고 어떤 것은 일반 토론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 분류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봤을 때 <최희준의 왜?>, <신통방통>은 당연히 시사논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토

론·대답이 논쟁이 됐던 이유가 뭔가 하면 TV조선 때문에 그렇다. TV조선의 프로그램을 보도분야를 평가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해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거기의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잠깐만요. 7페이지 <관련 권고사항>은 그대로 아까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앞에 종편과 PP의 정체성이나 구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 심사위원

- 종합편성채널의 차별성 이런 이야기를 넣을까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정체성이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 심사위원장

- 관련 권고사항에?

○ 심사위원

- 관련 권고사항(안) 맨 앞에 이것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 심사위원

- 간사가 일단 협의를 해서 초안을 다시 마련해서 다시 전체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종편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 심사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 심사위원

- 만약 그렇다면 <관련 재승인 조건(안)> 3번 이 부분이 '17년 하반기부터 준수하되 이 부분

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1년 내에 분명히 명백히 하라든지 뭔가 기준을 확 박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행하라는 부분이...

○ 심사위원

- 하반기부터를 하반기까지로 하면 되지요.

○ 심사위원

- 계속 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지금 말씀대로 조건을 예를 들면 '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되 그때까지의 실적을 각 분기별로 보고할 것.

○ 심사위원

- 어제 논의된 것은 뭐냐 하면 하반기 준수하면 이후 계속 이행 준수하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왜냐하면 <1>번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7년 실적부터 받아서 평가를 하고 못 지켰으면 저희가 시정시켜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1년 안에 완료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 심사위원

- 완료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 워딩은 간사께서 다시 의논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 심사위원

- 5분만 쉬지요.

○ 심사위원장

-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심사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잠깐 제1분과 간사님께서 추가로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 심사위원

- 잠깐 쉬는 동안 논의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법에 따르면 명확하게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까지만 보도입니다. 토론·대담은 교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시사논평 이 기준에 따라서 자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또 변경해서 반영했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말씀드리면 장르 세부 기준의 장르명, 정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부가적인 사항 정도로 우리가 검토결과라든지 처리방안 조건(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기준으로 토론과 대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정도로 제안해 주시는 것이 논란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세부 분류기준….

○ 심사위원

- 거기에 적시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사업자에게 준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놓아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재승인 조건(안)에 부관사항 정도로 달아주는 형태로 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다루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리고 ○○○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을 나중에 따로 방통위는 따로 가는 것이고….

○ 심사위원

-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살펴봤다. 그래서 토론·대담 프로그램에 대해 명백하게 판단했다 이런 정도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무엇으로 바뀌서 했냐, 심사를 가지고 할 것이냐, 저도 그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일단 요청하면 이것 때문에 구속될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위원님 다 이해하셨습니다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동의합니다.

나.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나>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제2분과에서 논의를 주로 했던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편PP 콘텐츠 투자의 적정성 관련 검토와 두 번째는 계량평가 관련 검토입니다. 첫 번째 논의사항은 3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 종편PP 콘텐츠 투자의 적정성 관련 검토 시 이는 의견청취 시에도 중요했던 항목이고 심사 시에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는 종편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고를 위한 적정한 콘텐츠 투자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심사방안 검토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편PP 신청법인은 모두 2014년 재승인 시 제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3페이지 <표>에 보시면 4사가 모두 미이행한 상태입니다. 기존 '14년 종편PP 재승인 시 신청법인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신청법인의 재정현황 등에 근거하여 적정한 투자금액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대비하여 심사위원이 신청법인의 재정현황, 투자지지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지표로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 연평균증가율 지표를 병행하여 표기하고 콘텐츠 투자 중 '자체제작비' 기준에 따른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보정자료를 제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분과에서는 회의 결과, 종편PP의 콘텐츠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된 지표로는 '콘텐츠 투자금액'을 평가하되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 콘텐츠 투자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보완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는 신청법인별 경영 전망이 상이하므로 매출액 등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각 사별로 조건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JTBC, 채널A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의 재승인 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TV조선에 대해서는 매년 매출액 실적 대비 투자비율을 50% 이상, 너무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라는 비율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방어나 논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50%로 조건을 정한 이유는 종편 3개사의 2012년부터 5년간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비율 평균이 모두 50% 이상이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 TV조선의 경우는 2012년부터 5년간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비율에서 최고와 최저비율을 뺀 나머지를 평균한 비율이 50.3%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근거를 대고 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렇고, 두 번째는 14페이지부터 제시하고 있는 계량평가 관련 검토입니다. 먼저 14페이지 <표> 위에 보시면 방송평가 부분은 종편·보도PP 모두 400점입니다. 이렇게 동일 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2014년

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점수를 15페이지에 보시면 제외하여 반영하고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이번 방송평가 심사사항의 배점으로 점수를 환산한 점수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입니다. 아래 <표>는 심사위원회의 결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평가방법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감점 내용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이는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역시 감점항목이고, 아래 <표>를 보시면 심사위원회 결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평가방법으로 이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종편 3사의 감점내용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19페이지부터는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입니다. 세부심사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업종 산정이 중요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도별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했습니다. 부채비율의 18개 업종 평균값과 개별 업종 평균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서 평균값을 왜곡시키는 업종, 즉 부동산업이나 임대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제외한 16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직전 재승인 대상 기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재무현황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결로 사항을 반영해서 최저점을 20%로 설정하여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업자별로 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계량평가 점수입니다. 마지막 23페이지를 보시면 이 계량평가 검토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평가 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되, 부채비율이 전체 업종 평균값과 개별업종 평균값이 2배 이상 차이나서 평균값을 왜곡시킨 업종을 제외하여 16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 방송평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계량평가 결과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분과 논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을 잘 들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JTBC 경우에는 다른 종편 2사에 비해서 투자비가 거의 0배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가중치가 주어진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이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중치를 곱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기준으로 삼은 것이 매출액 실적 대비 투자비율이라는 것을 50% 이상으로….

○ **심사위원**

- 그 데이터가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입니까?

○ **심사위원**

- 예, 5페이지부터 제시된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데이터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지요.

○ 심사위원

- 5페이지는 콘텐츠 투자 실적과 관련한 부분이고, 6페이지에 보시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을 매출액으로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 심사위원

- 그래서 주 지표를 투자금액으로 하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TV조선과 채널A에 비해서 JTBC가 거의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행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클 것이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 액수도 다른 사에 비해서는 실행한 액수도 많고, 점수를 보니까 훨씬 더 불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불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 점수는 뒷부분에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TV조선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다른 회사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하지만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목입니까? 방송 쪽 관련된 그 부분도 그렇고,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못 미치고,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3개사가 다 지난 '14년에 제시한 것을 아무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계획 부분인데 JT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위험할 정도로 많이 투자합니다. 이러다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투자한다고 하고, 채널A는 중간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적정성이 있는데 TV조선은 좋은 말로 하면 보수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측했습니다. 매출액도 연평균 ○% 매출액을 잡고 그 매출액의 ○%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금액 차이가 JTBC의 거의 ○○밖에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보다는 좀 더 높여야겠다, 하지만 개별 회사가 낸 자기 나름의 매출액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너희 더 벌 수 있어, 더 투자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매출액에 기준해서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는 투자해라,

그런데 그 퍼센티지도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는데 저희가 채택한 것은 50%입니다. 50%에 대한 논리는 아까 ○○○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50% 정도면 지금 제시한 안보다는 매년 ○원 정도 더 투자하는 것인데 물론 다른 2개 회사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것이 미니멈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 심사위원

- 2가지 질문입니다. 계량평가 점수가 22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용하게 될 텐데, 그 계량평가 항목을 보면 '방송평가' 이것은 원래 주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위반법령 사례'도 주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및 불이행' 다 주어진 것이고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이것도 아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텐츠 투자실적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면 5페이지 매출액 대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가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콘텐츠 투자대비 같은 경우 2012년~2016년 평균을, 사실 '14년, '15년, '16년을 했어야 하는데 '14년, '15년, '16년으로 했을 때 저도 해 봤는데 아무튼 JTBC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채널A 그다음에 TV조선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 하면 만약에 50%라는 비율을 알려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투자를 안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까지만 하고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자기네가 제시한 것은 ○%입니다. 그것보다 높여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TV조선 매출액 실적 대비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그렇게 조건을 할 경우에 JTBC는 ○%, ○%입니다. 왜 JTBC는 그냥 놓아두고 우리만 50% 이상 하라고 하느냐...

○ 심사위원

- 거기는 일단 볼륨이 워낙 커서 거의 규모 자체가 ○배 정도 됩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수치 자체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논의과정에서는 기준을 2가지를 두자. 콘텐츠 투자액이 연도별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매출액 대비 50% 이상 이렇게 두자, JTBC 때문에 3개사 다 적용하는 룰로 가자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채널A가 이미 0%를 투자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는데 우리가 50%로 걸게 되면 JTBC 투자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효과가 되고, 그렇다고 TV조선은 0% 채널A 수준으로 맞추려면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TV조선은 0%라고 냈는데 0%를 더 내라, 이것은 거의 부딪침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각 사별로 적용을 하자, 그래서 일단 TV조선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미니멈 수준을 50%로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 심사위원

- 답변하신 것은 4페이지 심사자료 검토결과에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콘텐츠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우선 투자금액을 주 지표로 보고 그다음에 비율을 봤던 것은 JTBC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신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이것은 지난 3년을 평가한 것이고 앞으로 3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투자비율 50% 이상 그 앞에 절대액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액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주 지표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3년을 평가하는 것이고 향후에 대한 조건으로….

○ 심사위원

- 방송사별로 절대액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절대액을 평가한다면 50%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1,000억원 벌어서 500억원만 투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직접제작비만이지요? 인건비는 빠져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외주제작 구매까지 해서, 그것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안 지켰습니다. 실적 보면 '14년 것 3개사가 다 안 지켰습니다. 규제가 과연 워킹 하는지, 3사가 다 안 지키고 제재받고 여전히 이려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니멈을 가장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50%도 TV조선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50%로 하게 되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심사위원

-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 올라가면 한 ○원 정도 더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 추정해 놓은 것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기네가 예측한 영업이익 볼륨 내에서 커버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심사위원

- 향후 몇 년간 경제지표를 보면 굉장히 난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다 지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 심사위원

- 혹시 전에 재승인받을 때 수치를 언급해서 주신 적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는 지난번 재승인 때는 항상 조건을 계획대로 이행하라고만 부과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 결과는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사가 다 계획대로 이행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법정소송까지 가 있는 것이고….

○ 심사위원

- 그런데 수치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뒤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 네거티브한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는지 그것이 아니면 너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너는 50%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혹시 없을까,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달리 말하면 TV조선의 콘텐츠에 관한 투자 계획 부분이 부실하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지요.

○ 심사위원

- 기준이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종편 3사 전체 평균도 50%가 넘고, 과거에도 넘었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TV조선만 유독 ○%로 계획 세워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앞에서도 주로 ○퍼센트 했던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JTBC는 최근 3년간 ○%이고 채널A가 ○%이고 TV조선이 ○%입니다.

○ 심사위원

- 절대액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액이 작으므로' 이런 구절, 이 용어 자체를 집어넣는 것이 더 JTBC와 형평성에서...

○ 심사위원

- 지금 방발기금 종편 납부 기준을 어떻게 잡아놓았습니까? 어떻게 부과하십니까? 지상파는 지역은 몇 퍼센트, 다 정해져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종편도 정해져 있습니다. 종편이 0.5%일 것입니다.

○ 심사위원

- 0.5% 지금 다 냅니까?

○ 심사지원반

- 내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0.5%가 과도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관사항으로 개정을 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영업이익을 많이 내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투자계획을 미 이행했을 때는 방발기금을 2배로 증액해서 부과한다든지, 왜냐하면 지상파는 2%도 내고 3%도 내고, 어떨 때는 영업이익의 10%를 내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0.5%라고 해 놓았으니까 결국은 이것과 방발기금 연동을 안 시키면 아무런 제재에 대한 '어려워서 못했다' 내지는 '이행 못했다' 하면 아무런 제제조항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 심사위원

- 그것은 저희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부관조건으로 저희가 걸면 되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건의를 할 수는 있으나...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검토가 바람직하다.

○ 심사지원반

-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진흥기금에 대한 부과체계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감안하려면 그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심사위원

- 고시 아납니까?

○ 심사지원반

- 고시입니다.

○ 심사위원

- 고시는 법령이 아니니까….

○ 심사지원반

- 고시도 엄밀하게는 법령에 들어갑니다.

○ 심사위원

- 법령이지만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에서 하는 것이니까….

○ 심사지원반

- 방통위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고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기게 되는 데에는 또 재량 일탈 남용의 문제가 되어서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아니지요. 기준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동을 해서 어떤 투자계획을 실현하도록 유인하자는 것이지요. 원래 방발기금을 증액해서 부과하는 식의 제도개선을 저희가 부관사항으로 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부관 자체가 또 위법하다고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서….

○ 심사위원

-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6페이지, 7페이지의 <표>를 보니까 가용자금 대비 투자비율이 낮습니다. 그것을 같이 언급해 주면 가능한 면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심사위원

- 가용자원에 대한 계산이 일반적으로 경영이나 회계 쪽에 많이 채택하는 방법론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부가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TV조선을 50% 이상으로 하라면 'JTBC도 50% 안 되는데 왜 우리만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절대액이 많으니까요.

○ 심사위원

- 절대액이 있으니까....

○ 심사위원

- 절대액이 적음으로 이런 용어가 들어가든가....

○ 심사위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캐시플로우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용자금은 방통위에서 계산하셨는데 그렇게 쓰는 데도 있긴 있지만 이 척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볼 것이냐, 하다가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차라리 영업이익으로 보자, 각 사가 작성한 영업 추정재무제표에서 이 정도의 불륨이 그 회사의 경영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부과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영업이익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자 보면서 '이만큼 투자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의 이행조건을....

○ 심사위원

- 시정명령을 부과하겠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은 제2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지원반

-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방송법령에 따라서 명확하게 승인취소, 업무정지, 승인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 정도로 적으면 되겠는데요. 법에 따라서....

○ 심사지원반

- 법에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굳이 안 적어도 사실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적고, 안 적고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한번 더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강조하는 수준에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콘텐츠 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내용의 맨 마지막에 한 줄 적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서 재승인 단축이 가능하다고 적어놓는 것이...

○ 심사위원

- 재승인 허가서 나갈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에 있는 내용을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 심사위원장

-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 심사위원

-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는 계량평가 점수를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지원반

- 오후에 의결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심사위원

- 최근 3년 이행실적을 평가하실 때 저희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12년부터 '16년까지 나와 있는데 원래 평가대상은 3년이지 않습니까? 최근 3년 그 수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5페이지 TV조선 3년 매출액 대비 투자 실제 이행한 부분은 〇%이고, 그다음에 JTBC는 최근 3년 평균이 〇%입니다.

○ 심사위원

-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입니다. 6페이지 〇〇〇 실적은 최근 3년이 〇%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실제 콘텐츠 투자에 관련된 실적을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 부분은 어쨌든 '17년부터 '21년까지 향후 평균 나온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〇〇〇의 앞으로 향후 5년에 보면 가용자금 대비가 〇%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투자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위험합니다.

○ 심사위원

- 현금이 없는데 그냥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YTN과 연합뉴스TV는 없어도 됩니까?

○ 심사위원

- 콘텐츠 투자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항목은 있는데….

○ 심사지원반

- 항목은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항목은 있는데 따로 자료를 정리해 드리지 않았는데….

○ 심사위원

- 그것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현재로서는 근거 없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조금 위험하지요. 다른 자금 소스가 또 있어야 하지요. 증거를 하거나 차용하거나 돈이 더 들어와서 그것을 메우지 않는 이상 현재 보따리로서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어제 1대 주주가 와서 증자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돈을 더 내겠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문제가 생기든 어쨌든 돈 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제출한 계획서상으로는 재정적으로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는데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간의 보완, 주주 측면에서는 서포트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점수를 조금 더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아마 이 점수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계량평가 점수를 이것 그대로 주셔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계량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성평가 하는데...

○ 심사위원

- 앞부분에 아마 경영과 관련된 경영투자 정성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계량점수는 동일하게 부여하지만 그것도 개별적 점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 심사위원

- 계량점수는 다를 수 없지요. 정량점수입니다.

○ 심사지원반

- 다를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계량점수는 똑같이 동일하게 그 내용을 같이 기재하는 것으로...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오후에 의결하시면 동일하게 심사표에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어디선가 그것이 반영되어서 JTBC의 투자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데 대한 평가가...

○ **심사위원**

- 그것이 <3-1>의 경영 재무 투자계획이라는 정성평가 부분이 있으니까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콘텐츠 투자 부분은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적정성 그 부분에서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정성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양적평가에서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장**

- 또 미심쩍은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콘텐츠 투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YTN과 연합뉴스TV는 없는데 이 부분도 회계 쪽에서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로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평가하기 쉬우니까….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1분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서 우리가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심사위원들의 본래의 역할은 우리가 첫날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송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규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논의에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으로 이런 것으로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여러 가지 이야

기도 사실은 의견에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A라고 하는 신문사가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정확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이 회사가 진짜 투자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폐 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종합·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2. 23.(목) 13: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17. 2. 23.(목) 13: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화 (안수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차명심 (차명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곽지영 (세명대 회계학과 교수)
허남호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 프로젝트 리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3명)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13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재적위원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계량평가 결과는 <붙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량평가 결과입니다. 사업자별로 계량평가 결과를 최종 정리한 <표>이고 방송평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등에 대해서 아래 세부사항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 부분은 종편·보도PP 모두 400점입니다. 심사위원회 의결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방법으로 동일 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2014년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점수를 제외하여

반영하고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이번 방송평가 심사사항의 배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평가 점수는 TV조선의 경우 328.53점, JTBC는 335.77점, 채널A는 322.36점, YTN 326.65점, 연합뉴스TV는 326.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배점은 없고 감점 항목으로 처리가 된 항목입니다. 아래 <표>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방법으로 종편PP에 대한 감점 기준은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29점, 과징금 5,000만원 이하는 -5.71점, 이와 같이 방송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입니다. 먼저 TV조선입니다. 첫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주의'는 총 18건이었습니다. 17건에 대해서 0.57점을 감점하고 1건에 대해서는 '16년 7월 1일 이후 방송실적 분에 대해서 강화된 심의제재에 따라 기타 유형에 해당하여 1.5배 감점을 하여 총 10.55점이 감점됩니다. 두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경고'입니다. '경고'는 총 1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벌에 대해 그 외 법령위반에 시정명령 수준의 감점을 하고, 네 번째 방송법 제70조2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4.57점 감점됩니다. 이에 따라서 TV조선은 총 18.55점이 감점됩니다. 두 번째, JTBC입니다. 첫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주의'는 7건 있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감점하고 '16년 7월 1일 이후 1건에 대해서 1.5배 감점을 하여 4.28점이 감점됩니다. 두 번째, 방송법 위반에 따른 경고는 4건 있었습니다. 방송법 위반에 따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1건 있었습니다.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건을 더해서 총 20.86점이 감점됩니다. 아래의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는 12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각 채널별로 심의제재 현황 및 기타 행정처분 현황, 형벌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세부내역을 다시 연도별로 구분하여 세부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역시 감점 항목입니다.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평가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점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TV조선 -5.71점, JTBC -5.71점, 채널A -5.71점입니다. 구체적인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사례는 35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입니다.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로 구성되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도별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의 18개 업종의 평균값과 개별 업종 평균값이 2개 이상 차이 나서 평균값을 왜곡시키는 업종, 즉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제외한 16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재무제표 미확정으로 2016년을 제외한 직전 재승인 대상 기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재무현황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서 세부심사항목별 최저점을 배점의 20%로 설정하여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별 재정적 평가점수는 TV조선은 18.22점, JTBC는 15.12점, 채널A는 17.08점, YTN은 18.11점, 연합뉴스TV는 13.41점입니다. 이상으로 계량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보고 내용을 들으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회계사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셨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너무 완벽하게 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의견 내는 것이 많을 것 같지 않는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평가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 심사위원

- 우리가 계량을 굳이 여기에 써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이 부분을 써야 합니까?

○ 심사지원반

-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집계표에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들이 쓰는 것보다 혹시 또 모르니까 <표>에 넣어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의결해 주시면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사전에 집계표 초안에 없는 것을 드렸으니까 다시 명시해서 새로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의결하고 난 뒤에 아예 적어주시지요.

○ 심사위원

- 연필로 썼다가 새 것 주시면 거기에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다 충분히 논의하셨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제4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 15분 폐회】

종합·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2. 24.(금) 11: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
- 일 시 : 2017. 2. 24.(금) 11: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화 (안수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차명심 (차명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곽지영 (세명대 회계학과 교수)
허남호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 프로젝트 리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3명)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 속기록

【11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재적위원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붙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7년 3월 12일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와이티엔과 2017년 3월 31일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연합뉴스티브이 및 2017년도 4월 21일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종합 의견입니다. 종편PP

는 2011년 최초 승인 이후 도입 5년이 지나면서 3개 채널이 공히 출범 초기의 부진을 딛고 시청률 향상 및 매출액 증가 등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었음.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과 편성, 제작 투자 등에서 신청법인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종편PP 도입 시 정책 목표인 방송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의 달성 여부에 대해 각기 상이한 평가를 받았음. 종편PP의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투자한 채널은 시청자에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음. 다만,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더라도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시청자의 불 권리를 우선시하여 재승인의 기여를 부여하되 향후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관련한 엄격한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2> 중점 심사사항별 소견입니다.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제고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유효기간 중 관련 심의제재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특히, 시사 논평·대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막말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 출연자 자질 검증, 사후제재 강화 등 출연자로 인한 방송의 품격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두 번째, 시청자 권익보호, 종편PP 3사가 시청자 콜센터 등을 통해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된 시청자 불만을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경우 뉴스, 탐사보도, 시사 논평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 종합편성채널로서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노력이 매우 부족함.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종편PP 3사 모두 콘텐츠 투자실적이 재승인 계획에 지속적으로 미달하였으며, 특히 (주)조선방송은 콘텐츠 투자 계획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종편PP 3사 모두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 <3> 사업자별 심사 의견입니다. 먼저 (주)조선방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이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보도 편중이 심하고 교양과 오락 편성이 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함.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등이 ○○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이에 따른 콘텐츠 투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시청자 불만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시청자불만 처리제도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재방송이 어려운 보도를 제외하면 전체 방송 시간의 약 절반이 재방송되고 있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주)케이티비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타 종편PP에 비해 균형이 있다고 판단됨. 콘텐츠 투자금액이 지난 3년간 연평균 ○원 수준이며 향후에도 5년간 연평균 ○원의 콘텐츠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재무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으나 많은 투자를 해 왔다는 증거이며, 회사 대표와 최대주주의 자금조달계획과 추가 출자에 대한 의지와 계획 감안 시 우려할 수준은 아님. ○○년까지 ○원 이상의 콘텐츠 투자와 신사옥 건설계획이 상정되어 있어 증자 및 자금조달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등에 대해 기업의 안정

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다음은 (주)채널에이에 관한 심사 의견입니다.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비교적 많고 관련 이행실적도 저조하나, 향후의 실현계획은 평가할 만함. 보도 기능을 갖는 시사논평 프로그램 등의 편성 편중이 심하므로 관련 장르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 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막말방송, 사실왜곡을 방지하도록 학계·시민단체 등의 공개 추천으로 출연자 이력 검증자문단을 위촉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미래 재정현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미래 투자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난 3년간 콘텐츠 투자 실적이 2014년 재승인 계획의 0% 가량에 불과하고 절대금액도 많지 않았으나, 향후 지속적 증가계획을 제시하여 실천된다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다음 (주)와이티엔에 대한 심사 의견입니다. 공정방송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최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과거 YTN 사장 임명 반대 투쟁 중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을 대승적 차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 조치 계획과 실행보완이 필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요구됨. 전문PP라하더라도 20% 이내에서 전문분야 외 편성이 가능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음.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심의제재 발생이 없도록 내부 점검시스템 보완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심사 의견입니다.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만큼 방송의 공적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연합뉴스 대표의 연합뉴스TV 대표 겸임은 방송과 경영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될 필요가 있음.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지닌 단체의 중복 추천이 불가하더라도 동일 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 있음. 시청자 불만 사유 1위인 패널 관련사항, 2위인 북한 관련 뉴스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패널 섭외 시 공정성과 자질, 전문성 확보에 주의하고 특정 분야의 뉴스보도 내용이 과다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실적상 구매비율이 외주비율보다 높으며, 향후 계획도 높을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유료방송산업의 상생발전과 방송제작산업의 활성화하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다음은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조화로운 편성을 위해 편성의 편중이 심한 보도(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장르) 프로그램을 반기별로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편성할 것. 보도 등 프로그램 분야·장르 기준과 정의는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당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위 1호 및 2호의 조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준수하고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익년 3월 말과 9월 말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관련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방송 심의제재 중 법정제재 건수를 지난 3년간 종편PP 4사의 연평균 법정제재 건수 9건 이하로 감소시키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조선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2017년도부터 향후 3년간 해당연도의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비율을 0% 이상으로 유지할 것.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

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익년 3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방송 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실적은 익년 3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이티비씨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방송 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실적은 익년 3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안)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청자의 불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교양·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자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주)제이티비씨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주)채널에이 편성위원회에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와이티엔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연합뉴스티브이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관련 제도개선 검토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조화로운 편성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 및 시청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편성규제 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관련 검증 절차 마련 등 검토입니다.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콘텐츠 투자금액의 세부내역을 검증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마지막은 재승인 조건 미이행 시 조치 강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외에 방송법령에 규정된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취소 등을 포함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 재승인 심사점수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 차등 방안 검토입니다. 심사위원 의견서는 뒤에 <붙임 1>을 참조하시고,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분야 및 장르 분류기준은 30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원안 수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됩니까?

○ 심사위원장

- 장문의 심사의견서를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보고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 심사위원

- 지금 문안에 궁금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깐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8페이지 정책 건의사항에 방송법 제69조, 제50조 편성규제 관련, 이것이 30페이지에 관련된 이런 규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지요?

○ 심사지원반

- 명확하게 방통위가 방송 프로그램 분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3페이지에 종합의견 두 번째 맨 끝에 '달성여부에 대해 각기 상이한 평가를 받았음' 이것은 약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각기' 대신에 '사별로 상이한 평가를 받았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기 대신에 사별로...

○ 심사위원

- 예, 좋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네 번째 '다만' 이 부분에도 '다소 부진했더라도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경우에' 주어가 없습니다. 방통위가, 심의위가, 각사가 어느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지금 여기에서의 주어는 심사위원회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주어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여기에서 판단의 주체는 심사위원회이고,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종편사업자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종편사업자 같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에 여전히 제 느낌에 '향후 방송 문화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모호해서 앞에 하나쯤 더 달았으면 좋겠습니

다. '중편방송 설립 취지 조건에 충족하기 위한 방송문화 발전 노력'이라든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콘텐츠 다양화, 글로벌 기업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앞에 족쇄를 하나 더 달아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정확하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승인조건에 명시되어 있던 4가지 사항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그 4가지를 다 적시할 수 없으니까 '중편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하지요.

○ 심사지원반

- 중편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 심사위원

- 예. 그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이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4쪽 시청자 권익 보호 시청자 콜센터에서 '콜'자를 빼고 시청자센터로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재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 심사위원

- 뒤에 엄격한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앞으로 옮겨서 재승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승인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바뀌어서 향후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괜찮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구체화됐습니다. 그냥 막연히 방송 발전이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되어 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붙여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뭔가 족쇄가 필요합니다.

○ 심사위원

- 워딩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부여하되 향후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종편방송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지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것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 심사위원

- 저는 두 번 중복할 필요 없이 '방송문화 발전' 대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종편방송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이렇게 하는 것이 간명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청자 보호 ○○○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종편·보도PP 심사인데 앞에 종합의견과 중점 심사사항에 보도PP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청자 권익 보호 문제는 종편PP뿐만 아니라 보도PP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편PP 3사는 부정확하고 종편 및 보도PP에 다 적용해서 종편·보도PP 5사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3페이지 맨 처음에 '다만, 실적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수입 이런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작과 투자….

○ 심사위원

- '계획대비 이행실적'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요.

○ 심사위원

- 예를 들면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계획대비 이행실적이라든지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실적도 필요합니다, 어떤 실적인지.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 심사위원

- 저는 뒷부분인데 8페이지에 저희가 이야기한 취지는 여기 보시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방송법령에 규정된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이미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리고 재승인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는데 저희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은 2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
히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규정에는 재승인 조건보다 더 단축된 기간으로 재승인을...

○ 심사위원

- 유효기간 추가 단축이라든지...

○ 심사위원

- 기존 방송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도...

○ 심사위원

- 보다 더 추가하여 단축하거나...

○ 심사지원반

- 명확하게는 재승인 유효기간과 관련된 관련 법령 개정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유효기간 단축을 더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검토' 그것을 하이픈으로 하나 더 넣어 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 이하로도 단축할 수 있는 방송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 심사위원

- 이하로 단축하는 등….

○ 심사위원

- 3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검토….

○ 심사위원

- 그다음에 권고 이렇게….

○ 심사위원

- 그 위의 것처럼 방송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재승인 유효기간 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 이것은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근거를 밝히는 것이지요. 근거조항을 넣어도 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지원반

- 방송법 시행령 조항 그 위당은 이따 한번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방송법령 조항을 적시하고 어디어디에 규정된 재승인 유효기간보다 더 단축된….

○ 심사위원

- 추가 단축?

○ 심사위원

- 더 단축된, 추가 단축이면 말이 이상합니다. 위원장님, 절차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종합적인 것이 제시가 됐으니까 종합의견서부터 단락별로 결론을 지으시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맞겠네요. 앞에서부터 가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3페이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3페이지에서는 2가지를 아까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각기를 사별로 고치고, 네 번째 실적을 계획대비 이행실적으로 고치고, 4페이지에 아까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종편방송사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사별로가 사업자라는 뜻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사업자별'로 가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사업자별로'가 더 좋네요.

○ 심사위원

- '계획대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우' 그 앞에 '사업자가'라는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앞에 주어가 빠졌네요.

○ 심사위원

- 위에 각기도 사업자별로 상이한 평가....

○ 심사위원

- '사별로'보다 '사업자별'로가 맞겠네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3, 4페이지 종합의견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점 심사사항별 소견,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항목, 이상 없으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시청자 권익 보호입니다.

○ 심사위원

- 종편PP 3사가 아니고 5사입니다.

○ 심사위원

- 예, 종편·보도PP 5사, 아까 '콜'자 지우셨고….

○ 심사위원장

- 그것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입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입니다.

○ 심사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여기도 다 같이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종편 및 보도PP 5사….

○ 심사위원

- 위에도 그렇습니까?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여기도 종편3사, 이것은 종편 3사네요.

○ 심사위원

- 이것은 보도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예. 그 밑에 것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됐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5페이지를 넘어와서 사업자별 심사 의견인데 우선 (주)조선방송의 주요 평가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시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채널A를 보시면 보도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채널A는 전체 방송시간의 33% 내로 제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같이 첨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A 세 번째에 보면 막말방송, 사실왜곡하기 위해 그 뒤에 출연자 검증자문단,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했던 중복 출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2가지입니다. 33%로 제한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출연자 중복 출연 검증장치, 이 2가지도 똑같이, 저는 채널A 부분 같이 올려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조선방송이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채널A는 있는데 조선방송에 그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 채널A라고 말씀하셔서...

○ 심사위원

- 제가 이야기한 것은 채널A에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A에 있는 부분도 똑같이 조선 방송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조선방송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고쳐 주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채널A 2호를 조선방송도 2호로 같이 넣으면 되겠네요.

○ 심사위원

- 조선방송이 빠져 있으니깐 그것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2개는 같이 추가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좋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런데 유념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정리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써주실 때 채널A에 대해서 이 부분을 쓰셨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 조선방송 쪽은 아무도 그것을 안 쓰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셔서 넣겠다고 하시면...

○ 심사위원

- 그런데 솔직히 그것 제가 썼습니다. 조선방송은 뒤에 기타 심사 의견에 썼습니다.

○ 심사위원

- 나중에 재승인 조건에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재승인 조건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그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 심사지원반

- 33%를 쓰셨지요?

○ 심사위원

- 그 이야기는 기타 심사의견 조선방송에 썼습니다.

○ 심사지원반

- 확인해 보니까 33.3% 부분을 조선방송에 쓰셨습니다.

○ 심사위원

- 썼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제2항을 여기에 적으시면 되겠네요.

○ 심사위원

- 예, 썼습니다.

○ 심사지원반

- 출연자 이력 검증은 안 쓰셨습니다.

○ 심사지원반

- 출연자 이력 검증자문단 부분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뒤에 반영되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에 명확하게 들어가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조선방송을 쓸 때 출연진 중복 부분을 썼습니다.

○ 심사지원반

- 워딩이 다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러면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7쪽 재승인 조건에 보면 조선방송과 채널A에 공통으로 33.3%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A를 어떤 식으로든 추가를 할 필요가 있지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뒤에 다른 쪽에서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주)제이티비씨, 되도록 여기에서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자구 수정이라든지 내가 써냈는데 빠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하려면 어저께 우리가 제출한 그 보고서를 다시 또 써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이티비씨입니다. (……) 없으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주)채널에이입니다. (……)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그다음 6페이지에 (주)와이티엔입니다. (……) 그다음에는 (주)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7페이지 재승인 조건인데 우선 공통사항입니다. (……) 그다음에 말씀이 없으시면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의 내용에 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말씀 주시지요.

○ 심사위원

- <4>번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인데 향후 3년간이 필요합니까?

○ 심사위원

- ‘재승인 기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 심사위원

-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가 이해하는 것은 유효기간 줄이는 것은 3년까지 줄이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줄이라는 뜻인지….

○ 심사지원반

- 매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줄이라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매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재승인 기간 동안 매년입니다.

○ 심사위원

- 뒤에 매년이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질문이 있는데 사업자별 심사의견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중요한 것은 재승인 조건과 권고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동의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말, 사실왜곡, 출연자 이력 검증단 자문을 절차적 투명성,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지금 사측에서 다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조선방송과 채널A는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같이 병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조선방송과 채널A에 같이 공통조건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공통조건으로, 동시에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5>번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예,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

- 사업자별 의견에 있는 채널A에 있는 부분을 똑같이 그대로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 심사지원반

- 똑같아요?

○ 심사위원장

- 권고사항 5호로 하자고요?

○ 심사위원

- 이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방송, 채널A의 재승인 조건 5호로 5페이지 채널A 맨 하단에 있는 그것을 집어넣자는 의견입니다.

○ 심사위원

- 다시 한 번 사업자별 의견이 있는 내용 중에 꼭 이것은 권고나 재승인 조건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재승인 조건에 추가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의견은 의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족쇄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출연자 이력검증 자문단이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것인지, 사업자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하시게 된다면 좀 더 실효성 있게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조건으로 붙였을 때 나중에 점검할 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4호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 심사위원

- 목표치를 설정해 줬으면 방법은 각 사업자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지, 그 방법까지도 지정한다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심사지원반

- 사실은 이것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서 다 넣어야 한다는 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런데 이것이 매우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모두 동의를 하시면 이 방식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가 있어서….

○ 심사위원

- 검증하는 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심사지원반

-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출연자의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심사위원

- 실질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심사위원

- 실효성 있는 제도방안 마련….

○ 심사지원반

- 마련해서 이행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투명하고 공개적인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사측이 마음대로 임명한 사람들을 해 놓고 만들었다,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 심사위원

- TV조선과 채널A 제도 장치를 보면 거기에서 안 걸러지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걸러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미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또 계획에도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니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저번 재승인에도 이 사안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했지만 안 됐고, 이번에도 또 무엇을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제도에 대한 제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구체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모호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 심사위원장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5호로 하나 정리해서 넣자는 이야기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저는 5호가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4호에 포괄됐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자는 것이지요. 한번 더 강조해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적실시키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만들었던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장치가 필요하다. 정말로 유효한 투명한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내라.

○ 심사위원장

- 그러니까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강조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 심사위원

-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든가, 아니면 4호에 한두 마디를 더 집어넣어서 넘어가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별도의 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저쪽에 너무 구체적인 무엇을 해라 자꾸 하는 것보다는 가령 이하로 감소시키고 이를 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 심사위원

- 이미 방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행계획에 이미 다 마련해서 왔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방안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 심사위원

- 그런데 거기에 또 마련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투자계획도 다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막말을 막기 위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고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이행실적을 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 심사위원

- 여기에 '객관적인 검증장치를 마련하고' 이렇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지원반

- 이미 있는데 또 마련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성의 가장 큰 문제가 절차적 투명성과 구성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연자 이력을 검증한다고 했지만 사측이 어디 경찰서장 했다가, 거기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경찰서장에서 경찰 출신 누가 이 사람이 괜찮다고 추천해서 이 사람을 출연자로 출연시키고, 그런 식의 어떤 자의적인 임명이나 추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공개성을 담보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학계 및 시민단체 외부의 위원을 포함하는….

○ 심사위원

- 외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아니면 객관적이라고 하든지,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 심사위원

- 검증장치를 마련하고….

○ 심사위원

- 좀 더 큰 제목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것은 실제 운영에 너무 개입한다고 할 수 있고….

○ 심사위원장

- 한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항목을 하나 더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 수정을 해서 그 뜻을 반영할 것이냐 그것을 우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 위원님, 어떤 말씀이시지요?

○ 심사위원장

- 자구 수정은 ○○○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식으로 그 뜻을 반영시키자는 것이고, 지금 ○○○ 위원님께서서는 항목을 새로 하나 넣어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포괄적으로 의미를 강조하시려는 개념이시면 권고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4호에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지금 말씀을 반영하는 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넘어가지요.

○ 심사위원

- 권고사항에서 하나 더 집어넣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또 새롭게?

○ 심사위원

- 예, 새로 나온 의견을….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수치는 어쨌든 객관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심사지원반 한 것은 권고사항에….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여기를 손대지 말고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권고사항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하시지요. 권고사항에 TV조선이 없으니까 TV조선을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넣고 채널A에는 2호로 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권고사항으로?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러면 되겠네요.

○ 심사위원

- 채널A와 TV조선하고?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워딩을 한번 완성해 보시지요.

○ 심사위원

- 워딩은 똑같이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금 있는 워딩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 심사지원반

- 지금 있는 워딩, 출연자 이력 검증단이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검증제도라고….

○ 심사위원

-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제도는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요. 운영의 문제이지….

○ 심사위원

- 보니까 컨트리뷰터 시스템을 막 도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화시키면 너무 그러니까….

○ 심사위원

-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 심사위원

-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진정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 달라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약간 수정의견을 드리면 워딩을 불러보겠습니다. 막말방송, 사실왜곡을 방지하도록 출연자의 이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기구의 절차적 투명성과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출연자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 출연자를 검증하는 정도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

- 출연자를 검증하는….

○ 심사위원

- 그러면 포괄적이 되니까….

○ 심사위원

- 출연자 이력을 검증하면 그것은 사상검증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 위원, 공통사항의 두 번째가 그렇게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 심사위원

- 출연자를 검증하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7페이지는 그대로 놓아두고 권고사항 공통사항 2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워딩을 정리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워딩을 수정할지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아니면 출연자도 빼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출연자를 빼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정도로….

○ 심사위원

-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검증장치를 마련한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워딩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재승인 조건(안)은 그렇게 고친 것으로 일단 지나간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저쪽에 워딩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권고사항으로...

○ 심사위원

- 4호는 그대로 넘어가고 5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권고사항...

○ 심사위원

- 조선방송, 채널A, JTBC 안 했지요? 5호에 넣을 것인가, 권고사항에 넣을 것인가 해서 잠깐 넘어 갔을 뿐이지...

○ 심사위원장

- 아닙니다. 7페이지는 손대지 말고 권고사항...

○ 심사위원

- 알겠는데 지금 저희 논의가 조선방송, 채널A만 이야기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밑에 부분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워딩을 정리하시고...

○ 심사위원

- 이 안건 워딩을...

○ 심사위원

- 지금 ○○○ 위원님께서 하신 멘트가 워딩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투명성과 객관성을 검증,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 심사위원

-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막말방송, 사실왜곡을 방지하도록 출연자 구성의 공정성, 위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

○ 심사위원

- 위촉의 절차적 투명성과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심사위원

- 투명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심사위원

-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면 안 되고 권고사항이니까 '할 것'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마련할 것, 이렇게 하시지요.

○ 심사위원

- 그리고 그것을 넣으신다면 공통사항의 1, 2번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1번으로 가야 하니까, 지금 2번은 시청자 다양한 것이니까 그것이 2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출연자 구성의 공정성이 맞습니까? 공정성, 위촉절차의 투명성 2가지...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공통사항이 아니라….

○ 심사위원

- 마련하고 실효성 제고할 것, 이런 것 추가할 필요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한번 워딩을 불러 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정리된 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 심사지원반

- 막말방송, 사실왜곡을 방지하도록 출연자 구성의 공정성과 위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이번에 채널A나 TV조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 시청자들 여론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넣으면….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은 4호에 아까 그 제재조건은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좋은데 워딩이 그 뜻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빨리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니까….

○ 심사위원

- 차라리 그것을 조건에 집어넣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맨 처음에 주장한 것이 5호 조건에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 심사위원

- 권고가 아니고 조건에 넣는 것이 더 강력하지요.

○ 심사지원반

- 다만,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여부가 명확해야 하고 그런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가치 기준의 차이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결국은 실효성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위반건수 몇 건이냐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저희가 실효성이 있다, 없음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위반건수가 많아서 제재가 이렇게 많았다. 그래서 그 조건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들어가지, 만약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조건에 넣어놓으면 실효성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제재건수 외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권고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 심사위원

- 권고사항 공통사항에 넣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TV조선, 채널A 개별적으로….

○ 심사지원반

- 개별적으로 아까 넣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개별적으로 넣는 것이 낫지요. 그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TV조선 항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1호 채널A가 가지고 있는 것 관계없습니까? 지금 TV조선에 그것을 넣고 채널A는 1호를 넣고 지금 1호에 있는 것은 2호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리고 2가지로 하지 말고 오보·막말·편파 방송 이 3가지를 확실하게 넣으십시오.

○ 심사지원반

- 막말방송, 사실왜곡을 제외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하도록….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권고사항에 넣지 말고 조선방송, 채널A 항목에 넣자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권고사항에...

○ 심사위원

- 다음 페이지에 있는 권고사항 항목으로 TV조선을...

○ 심사위원

- 앞에 것은 놔두고 권고사항으로...

○ 심사위원

- 그런데 우려가 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엄격하게 응징하는 심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실효성 있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일반 한국 사회의 많은 시청자 여론이 오보·막말·편파 방송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조건과 권고, 어느 것이 더 강력하다고 봅니까? 조건이 더 강력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당연하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을 권고에 집어넣으면 이것을 여태까지 시민단체라든지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고.

○ 심사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조건에서는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지요. 지키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권고사항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법조문이지요. 법 정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정치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법조문 하면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실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정당성이나 현실성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법정제재라면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것은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우리가 시정하라고 했으면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위원이라면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안) 정도로 집어넣으려면 권고(안) 정도로 집어넣고, 앞에서는 분명히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지금 시청자단체라든가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은 잘 아시겠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응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고에 넣으면 '권고? 권고사항이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조건에 넣어야지, 이것이 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금방 그 권고안은 그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지켜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지요.

○ 심사위원

-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재승인 조건과, 조건은 사실 구속요건 아닙니까? 권고는....

○ 심사위원

- 조건에 집어넣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조금에는 이미 그 이야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고....

○ 심사위원

- 그런데 그런 워딩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조건은 지키라고 해야지요.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고사항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만약 권고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저는 이것 나중에 언론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굉장히 지적을 받을....

○ 심사지원반

-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이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됩니까?

○ 심사지원반

- 안 됩니다.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재승인 조건 권고사항 등의 이행여부 항목 70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승인취소 이런 사유가 되는 것이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미이행했을 시에 제재수단이 법률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심사 때...

○ 심사위원

-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온도 차이가 꽤 큰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형식적으로 재승인 조건을 안 지켜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재하지 않고 있고...

○ 심사위원

- 제재하고 있지요. 재승인 조건 안 지켜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했지요.

○ 심사위원

- 그 워딩으로 해서 넣으면...

○ 심사위원

-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진짜 현재 종편의 가장 문제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 심사위원

- 제재와 현실과의 법적인 부분과의 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승인 조건으로 4호처럼 매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로 매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 조건으로 해서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4호에 그중에서 법정제재 받은 건수를 줄이고 그 실적을 3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으

로 법정제재 건수뿐만 아니라 오보·막말·편파 방송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하도록 하는….

○ 심사위원

- 그것을 넣고 퍼포먼스를 체크하도록….

○ 심사위원

- 그러되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하든가 워딩을 여기에서 바꿔 주면….

○ 심사위원

- 법정제재 건수 내용과 출연자 막말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호는 4호대로 있어야 하고, 별도로 5호 이야기가 따로 나와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워딩한 내용을 5호로 넣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감소시키고 다음에 막말을 거기다가 그렇게 넣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항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별도 항목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니까 항목을 더 신설하지 말고 뒤에 하나만 더 집어넣자고요.

○ 심사위원

- 5호로요.

○ 심사위원장

- 감소시키고 지금 이야기했던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같이 거기에 집어넣자고요.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 심사위원장

- 왜요?

○ 심사위원

- 그것은 약간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 심사위원

-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들 중에서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재승인 조건이라는 것은 구체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고, 구체성을 지니지 않으면 권고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차이인데, 그러면 저는 수정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구성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행실적...

○ 심사위원장

- 지금 재승인 조건 항목에 그 내용을 넣자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권고사항에 넣을 것이냐, 재승인 조건에 넣을 것이냐라고 할 때 재승인 조건 제4호의 내용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호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4호가 아니라 5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5호로 넣으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다르지요. 제재의 종류를 보면 경영투자 콘텐츠 약속 불이행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보·막말·편파 방송과는 좀 더 다른 의미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5호에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과해서...

○ 심사위원장

-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4호에 1, 2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독립시켜서 5호로 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수로 합시다.

○ 심사위원

- 워딩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 심사위원장

- 권고로 넣을 것인지...

○ 심사위원

- 아까 워딩은 제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5호 워딩이 무엇인지...

○ 심사위원

- 기초 워딩이 있으니까...

○ 심사위원장

- 5호가 어떤 것인가 해서 5호를 넣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자고요.

○ 심사위원

- 앞부분은 원래 권고사항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끝부분은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실적...

○ 심사위원장

- 5호에 넣자는 부분 워딩을 읽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5호로 넣을 것은 워딩을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반대의견을 한번 더 개진하고 싶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부여하려면 조건 자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조건이 추상적이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절차적인 위촉절차의 공정성, 구성의 공정성 이런 것을 넣는다면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져온 계획상으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효성 있게 그것을 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으로서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때문에 또 자의적 판단 가능성 때문에 조건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조건들은 위반하면 당연히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가 나갈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넣었을 때 그것을 위촉 절차의 공정성이나 출연진들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무슨 기준을 가지고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됐다', '안 됐다', 결국 그것을 못 지켰으면 제재건수가 많은 것이고 그것을 지켰으면 제재건수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것을 별도 항목으로 넣어서 법적 승인조건으로는 하는 것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구체화하면 안 됩니까?

○ 심사위원

- 이행실적을 매년 내게 함으로써 사업자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 의미밖에 없겠지요.

○ 심사위원

- 그런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런 의미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이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오보·막말·편파 방송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 하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알 것입니다. 우리는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중요하 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실제로 출연자와 관련해서 출연자 섭외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 심사위원

-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출연자 검증은 하는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 만 약에 출연자 검증하는 기구의 공정성이나 위촉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그 기구 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라고 차라리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외부 인사를 포 함해서 구성하라고 하거나….

○ 심사위원

- 지금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도 다 외부 인사도 있지 사내 인사만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승인 조건으로 붙으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붙이게 되면 나중에 확인해 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에게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 심사위원

-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방식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되지요.

○ 심사지원반

- 그 말씀이 그러한 검증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그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줄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예를 들어서 실효적으로 전년도 이행실적을 법정제재 건수가 10건이나 됐다, 하나도 안 줄었다, 그러면 방통위에서 그 결과를 보고서 '아니, 왜 이것이 줄어들지 않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것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의견을 드리면 일단 이 부분이 조건(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또 방통위에서 다시 조정하고 최종 조건은 방통위에서 결정하시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래서 저는 일단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재승인 조건 안에 그런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넣어놓고,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하실 때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때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은 한번 재승인 조건 안에 포함시켜서 방통위에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

- 안 위원께서 구체적인 좋은 방법을 하나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반대하는데 저보고 방법을 내라고 하시면….

○ 심사위원

- 타협안을 해서 대안을 하나 주시면….

○ 심사위원

- 저는 조건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저도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넣으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

○ 심사위원

- 그래서 안 고쳐진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자 검증단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월 1회 개최하고 개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받도록 한다.

○ 심사위원

- 구성해서 하고 그 평가를 받을 것.

○ 심사위원

-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구성 실적을 보고하여 반기별로 평가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니까 이것이 어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때 각자 위원들이 써내지 않았지요?

○ 심사위원

- 제가 써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장

-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 심사지원반

- 채널A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 심사위원

- 7쪽 조선방송, 채널A 4호에 '심의제재 중 법정제재 건수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심의제재 중 법정제재 건수 괄호 열고 특히 오보·막말·편파 방송….

○ 심사위원

- 그것은 ○○○ 위원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재승인 조건으로서 강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자구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안 됩니다.

○ 심사위원

- 우리가 별도 항목으로 하자는 것은 심사위원단의 결정적인 의지를 표명하자는 것이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또 현재 중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구체성과 법률용어로 추상성과 불명확성 때문에 조건을 달 수 없다면 그런 조건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자는 것이지요. 달아서라도 우리가 그런 방법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이 조건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것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 위원님이 제안한 그 안으로 정말 그것이 막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심사위원

- 막아지겠지요.

○ 심사위원

-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는 그것 없어도 다 문제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사업자들이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승인 조건에 ○○○과 ○○○에 5호로 넣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는 그것이 없어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자들의 의지이지 그것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 제도를 우리가 강요할 필요가 없지요.

○ 심사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투자실적도 의지하지 그것을 한다고….

○ 심사위원

-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이 결국 규제사항이 되는데 자율규제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규제라는 것은 왜 생기냐 하면 자율규제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규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면 OK 괜찮은데 지금 재승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조라도 해 보자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런 검증장치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상당히 모호한데 제가 보니까 그 내용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를 해서 적당히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차라리 권고사항에 그런 문구를 안 넣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사안의 중요성이….

○ 심사위원

-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필요한데 여기에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 논리라면 저희가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알아서 해서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우리가 보완을 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이 못하면 계속 제재를 받는 것이지...

○ 심사위원

- 사실 그것이 이상적이지요.

○ 심사위원

-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줘서 너희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오히려 핑계가 되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방통위로 토스를 하지요. 정책 건의사항에 넣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방통위가 마련해서...

○ 심사위원

-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방통위가 검증기구를...

○ 심사위원

-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방통위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표결할까요? 이럴 때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사실 이것이 품격 향상을 위해서 감소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와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재승인 조건에 어떻게 넣겠다든지 권고사항에 넣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워딩을 해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내십시오. 그래야 결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자꾸 이야기해서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 20분 이상 지나갔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 위원님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시지요.

○ 심사위원

- 써서 냅시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과 ○○○ 위원님과 위원님들 세 분 중 한 분이 그 워딩을 이야기하십시오.

○ 심사위원

- ○○○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 심사위원

-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한꺼번에 꼭 넣으십시오.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안은 이 안을 그대로 지키자는 것과 또 하나는 권고사항으로 넣자는 분은 없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아까 권고사항으로 하자고 했는데….

○ 심사위원

-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순간 숫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이 안 됐으면 저희가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호해집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른 안은 뭐냐 하면 원안을 그대로 지키는 것, 2가지를 가지고 표결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평가에는 물론 질적인 평가도 있고 양적인 평가도 있으나 그것이야 얼마든지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 심사위원

- 저는 차라리 오보·막말·편파 방송은 매달 심의제재에 관한 것 평가를 보고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보고를 받고 강화하는 것이 낫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도를 너무나 잘 갖고 있습니다. 컨트리뷰터 시스템이니 뭐니 아주 기가 막히게, 실시간 움부즈맨 프로그램이니….

○ 심사위원

- 그 검증위원회를 어떻게어떻게 구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검증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꼭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재가 완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 심사위원

- 이번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 언론보도라든가 또는 논평 같은데 보면 그 문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 심사위원

- 우리도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추궁도 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사실은 그런 문구 표현을 조건화시킨 것 자체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것이 안 지켜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든 구체화시키자는 이야기지요.

○ 심사위원

- 그것을 재심사 평가에 더 중요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콘텐츠 투자도 이왕 안 하는 회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이것을 여기에 넣은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들어가서 방법을 강구해서….

○ 심사위원

- 하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4호에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지요.

○ 심사위원

- 어디예요?

○ 심사위원

-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내리지요. 투자 미달이니까 해라. 그것도 안 하면 과징금 부과하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막말, 품격 이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제재건수입니다. 제재건수가 아닌 구성과 검증을 어떻게 평가해서 제재를 합니까?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내용에 학계와 시민단체 위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공정하게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평가를 하게 만드는 점수가 있든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질적으로 평가든 양적으로 평가든 방통위에서 평가해서….

○ 심사위원

- 평가할 객관적 검증장치를 만들고 이행실적을 보고할 것.

○ 심사위원

- 예. 그러면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것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인데….

○ 심사위원

- 자기네들도 다 이 문제점을 이해하고 지금 정확하게 해 왔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가 안 중요합니다. 100페이지이고 1,000페이지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사업계획서 안 중요합니다.

○ 심사위원

- ○○○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구체화된 건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무엇을 한다, 그것이 구체화된다는 것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보·막말·편파 방송 등 그것을 4호에 집어넣자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하나의 제 안입니다. 그 단어를 특별히 괄호 안에 집어넣고 '(특히 오보·막말·편파 방송)' 이런 식으로….

○ 심사위원

- 이렇게까지 해도 안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어떤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압박을 주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 안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지요.

○ 심사위원

- 추상적인 조건 부과는 실효성 없다는 ○○○위원님의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 2, 3, 4호가 다 구체성을 띄고 있는 재승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추상적인 것을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4호에 법정제재 건수(특히 오보·막말·편파 방송)를 향후 3년간 매년 9건 이하로 감소시키고' 이렇게 되면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을 넣으시면 오보·막말·편파 방송 외 다른 제재는 또 제외 아납니까?

○ 심사위원

- '특히'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특히 오보·막말·편파 방송….

○ 심사위원

- 그래서 이 항목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정리를 간단히 해 보면 이렇게 위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 하도록 외부단체, 예를 들면 학계, 시민단체 등의 공개추천으로 추천자 검증기구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것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든 확인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운영실적이라는 말도 모호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운영내용을 평가받도록 할 것….

○ 심사위원

- 그러면 각사마다 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각사마다 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누구에게 평가받습니까?

○ 심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지요.

○ 심사위원

- 방통위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 심사위원

- 위원들이 평가해야지요. 그래야 맞습니다.

○ 심사지원반

-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심사위원

- 평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재건수만 정확한 것이지, 그 구성이 무슨 기준으로 어떤 점수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 심사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내용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제대로 운영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제도는 다 있지만 실제로 그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대부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회의라는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평가에 보시면 외주 공개 상생을 위해서 제작사 간담회를 했다,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분 회의하고 실질적인 회의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몇 명이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서로 악수하고 제작사 간의 어떤 소개를 하는 이런 식의 변질된 운영실적을 제출했을 때도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검증기구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10분 만에 회의가 끝났는지, 아니면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인이 없으면 이 기구, 제도는 만들어 놓았지만 성과도 없고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정도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 위원 만드신 워딩 중에 중간에 10명의 위원을 만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

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숫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하고 유효적 실행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장치를 만들고 그 이행실적을 보고할 것'

○ 심사위원

- 제가 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조건을 넣었느냐 하면 허가 조건은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평가에 10명 이상 이런 것 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나는 30명 하고 싶은데, 나는 6명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주면...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은 난센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 법에 보면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 이상 해야 한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난센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런데 저희가 통상 그렇게 재승인 조건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법률이라면 가능하겠지요. 법률 내에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 심사위원

- 지금 ○○○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 심사위원

- 평가할 검증장치...

○ 심사위원

- ○○○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더 강한 푸시를 하기 위해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

○ 심사위원

- 자기들이 평가한 데이터를 내놔라, 우리는 그것 가지고 평가하겠다.

○ 심사위원

- 더 강한 푸시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일을 확대시키는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4호 내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특히 그 워딩 그대로 괄호 해 놓고 특히 오보·막말·편파 방송 괄호 닫고, 그러면 그 점을 더 강하게 신경 써서 제재건수를 줄이도록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규정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품위위반 이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막말이다, 편파다 이런 내용은 심의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 심사위원

- 막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 심사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심의에서 이것을 막말이다, 오보다, 편파다 이런 것들에 대한….

○ 심사위원

- 그런데 한국 사회 여론에서….

○ 심사지원반

- 심의위원회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오보·막말·편파 방송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나오는 것은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품위 위반 이렇게 나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세부 항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심의기준이 공적책임·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오보·막말·편파 방송 이렇게 해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여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 워딩이 바로 오보·막말·편파 방송입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사안 때문에 4호 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보를 따로 별도로 떼어 내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회의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어떤 식으로든 따르겠습니다.

○ 심사위원

- ○○○ 위원님 하신 것으로 워딩을 해서….

○ 심사위원장

-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몇 인의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인원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 심사위원

- 절충안을 ○○○ 위원님이 내셨네요.

○ 심사위원

- ○○○ 위원님 말씀하신 워딩으로….

○ 심사위원

- 평가할 검증장치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몇 명의 무슨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 월권이고….

○ 심사위원

- 운영만 했지 외부에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예, 그렇지요.

○ 심사위원

- 그 사람들이 딱 내놓는 것이 컨트리뷰터 시스템, 실시간 음부즈맨 프로그램 그것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운영실적을 평가받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워딩을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하도록 외부 학계, 시민단체의 공개적인 추천으로 시청자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함’ 이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 심사위원

- 위원님 말씀은 방통위에서 평가한다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방통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 심사위원

- 공개적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공개적인 장치를 자기들이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방통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지요.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상성과 불명확성이라는 장치를 우리가 뭔가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검증하여 워딩이 하나 앞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해서 그것을 평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평가할지 명확하게 넣어 주어야지요.

○ 심사위원

- 그 안에서 중간만 바꾼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 워딩을 불러주십시오.

○ 심사위원

-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장치를 만들고, 검증장치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평가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평가할 검증장치를 만들고 그 이행을 실적을 보고할 것' 그러면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 심사위원

- 편파라는 것은 일단 딱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있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시민을 넣으라든지 학계를 넣으라든지 혹은 몇 명 하라든지 이것까지는 월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해서 데이터들 너희들이 평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검증장치라고 했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 그것을 통제하는 컨트리뷰터를 딱 내놓을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검증장치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장치라고 하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을 내고 그것을 운영한 실적을 반기별로 내는 것이니까….

○ 심사위원장

- 이제는 결론을 냅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 위원님이 낸 안과 ○○○ 위원님이 낸 안 2개를 가지고 표결하자고요. 이렇게 해서는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납니다.

○ 심사위원

- 그것도 아니고 하려면 3개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넣지 말자는 안이 있기 때문에 3가지 안으로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3가지 안으로 합시다.

○ 심사위원

- 넣는가, 안 넣는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넣을 경우 어떤 안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 심사위원

- 그렇게 해야지요.

○ 심사위원

- 처음에는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호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 심사위원

-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넣기로 하면...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고...

○ 심사위원

- 5호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 심사위원장

- 원안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2가지를 우선 물어봐야겠네요. 원안대로 할 것과 그다음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 위원님과 ○○○ 위원님의 두 안이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치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 것.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그다음에 수정하자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수정해야겠지요. 수정하는 것은 2가지 안인데 하나는 ○○○ 위원안과 하나는 ○○○ 위원 안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위원이 수정하자고 하는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

○ 심사위원

- 문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각각 읽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하도록 외부 단체 등의 공개적인 추천으로 시청자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그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심사위원

- 분기별로 하든가….

○ 심사위원

-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 심사위원

- ○○○ 위원님 읽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제 것은 같은 것인데, 다만 그 아래 구체성만 뺀 것입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평가할 검증기구를 만들고 그 이행실적을 공개할 것….

○ 심사위원

- 아니면 위원회….

○ 심사위원

- 위원회를 만들고….

○ 심사위원

- 두 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 심사위원

-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디테일만 없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두 분이 안의 문구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문구를 조정하면 안 될까요?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 심사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그 안으로 해도 좋고, 거기에 외부의 공개적인 단체추천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라는 것이 안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임명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기별이라는 내용을 뒤에 넣어서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 위원님과 ○○○ 위원님과 지금 워딩을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둘 중 하나의 의견을 채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면 가서 말씀을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이쪽 이야기하면 또 안 됩니다.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외부단체라고 하면 보수단체도 있고 전부다 넣고 싶은 사람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까지 제가….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이….

○ 심사위원장

-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 위원,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되니까 지금 ○○○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안에 찬성하는 사람, 또 저쪽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고 그러고 나서 조금 부족하다면 저쪽 가서 이야기해도 원안대로 해야 일이 되지,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의견으로 표결하겠습니다. ○○○ 위원이 제안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시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 심사위원

- 13명 다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넣는 것을 반대했으니까 손 드는 사람….

○ 심사위원장

- 조용히 하십시오. ○○○ 위원이 지금 제안하신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섯 분입니다. ○○○ 위원이 제안하신 그 안을 정리해서 저쪽으로 넘겨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금 워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해서 7페이지 조선방송, 채널A 5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 심사지원반

- ○○○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하고 평가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만들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 어디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할까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요?

○ 심사위원

- 반기별로….

○ 심사지원반

- 다른 것도 다 반기로 받고 있어서….

○ 심사위원

- 분기별로….

○ 심사지원반

- 반기별로 보고할 것.

○ 심사위원

- 분기별이라고 합니다.

○ 심사지원반

- 표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표결하신 것인지….

○ 심사위원

- 분기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런 장치들은 또 분기별로 최소한 만나니까….

○ 심사위원

- 저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제출하는 것은 반기니까 반기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

- 분기라고 하시니까 분기로 하십시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이행실적 점검을 분기별로 하려면 현실적으로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반기별로 하고 있어서….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권고사항이 있는데 공통사항에 무슨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금 넘어갔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할 수 없지만 7페이지 채승인 조건에 종편은 있는데 보도PP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YTN과 연합뉴스TV는 그냥 승인하는 것으로 조건이 없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권고사항을 조건으로 넣기까지는 어렵습니다.

○ 심사위원

- 어렵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평가할 때 두 보도채널에는 조건을 안 붙여도 되는지 여쭙 보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옮긴다면 연합뉴스TV 같은 경우에 1호를 조건으로 넣을 수는 있겠지요. '차별적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도록 함' 이것은 옮겨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건으로 수정한다면 2호를 1호로 하고요.

○ 심사위원

- 현재 상태로 괜찮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실제 이런 우려가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대하지 않으면 권고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 심사위원

-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채널에 대해서 너무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혹시 받을까 봐서 여쭙 본 것입니다. 넘어가시지요.

○ 심사위원장

- 어떻게 됐습니까?

○ 심사위원

- 수정 없는 것으로...

○ 심사위원장

- 권고사항 연합뉴스TV 1호 항목을 재승인 조건으로 넘기자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권고사항에 JTBC, 채널A, YTN, 연합뉴스TV….

○ 심사위원

- TV조선 항목은 새로 만들어서 넣을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조건 안에 3호로 들어갑니다. 조건 안에 이것을 포함하신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조건이고….

○ 심사위원

- 지금 권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권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권고사항 아까 TV조선에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까 권고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TV조선을 만들어서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아까 만들어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예, 맞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조건으로 붙이겠다고 하신 부분 말씀이십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이 그것이었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처음에 권고사항 넣자고 했다가 조건에 넣자고 해서 조건으로….

○ 심사위원

- 그것을 승인조건으로….

○ 심사지원반

- 그것이 조건으로 왔습니다.

○ 심사위원

- 그 내용이었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아까 붙인 것이 그것이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저도 헛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사지원반

- 조건으로 하시기로 한 것….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권고사항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정책….

○ 심사위원

-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는데 TV조선에는 권고사항이 없습니까?

○ 심사위원

- 예, 없는 것으로….

○ 심사지원반

- 조건만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정책 건의사항에 첫 번째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관련 제도개선 검토, 그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관련 검증 절차 마련 등 검토...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 미이행 시' 이것은 빠진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아까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승인 조건 미이행 시 조치 강화' 이것은 아까 다시 정리해서 넣은 것이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 심사위원장

- 다른 것이 없으면...

○ 심사위원

- 아까 추가하기로 했지요? 추가 워딩을 불러 주시지요.

○ 심사위원장

-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 위원님이 재승인 조건 미이행 시 추가 워딩...

○ 심사위원

- 재승인 심사 점수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 차등 방안 검토에 덧붙여서 방송법 제16조 및 동 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실효적 차등 강화하도록 건의.

○ 심사위원

- 추가 단축으로 하시지요. 지금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현행보다 추가로 단축하여...

○ 심사위원

- 예, 현행보다 추가로 단축...

○ 심사위원

- 현행이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짧게 하자는 것이니까 현행보다 추가로 단축하여...

○ 심사위원장

- 권고사항에 조선방송 하나 넣자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 심사위원

-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추가로 단축하여 이렇게...

○ 심사지원반

- 실효적 차등이 가능하도록 건의...

○ 심사위원장

- 아까 3년 이야기했던 그 항목입니까?

○ 심사위원

- 예. 3년, 2년, 1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 고친 내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맨 마지막 단어를 '검토'로 하실지 '건의'로 하실지 먼저 결정하시고...

○ 심사위원

- '건의'로 하시지요.

○ 심사지원반

- '방송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추가로 단축하여 실효적 차등이 가능하도록 건의' 실효적 앞에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축하여 무엇에 대한 실효적 차등인지...

○ 심사위원

- 점수에 따라서 차등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 심사위원

- 지금도 차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3년까지만 낮출 수 있어서 3년에서 5년 사이로….

○ 심사위원

- 1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실효적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은 차등이 없는데 점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의미 같아서 지금 있는 것이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마지막에 차등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호에 있습니다. 하이픈 1호에 유효기간 차등 방안 검토가 있으니까 2호에도 또 차등해서 넣을 필요는 없고 추가 기간 단축에 대한 것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현행보다 추가로 단축할 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건의….

○ 심사지원반

- 현행보다 추가로 단축할 것을 건의.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괜찮습니까?

○ 심사위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정책 건의사항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이후에 <붙임> 각사별로 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저희들이 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요약한 것이니까 안 봐도 됩니다.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붙임 2>에 이것도 다 의견 내셔서 수정한 것인데 아까도 이것도 고치셨고, 그래서 쪽 봐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아까 ○○○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과 승인 후 조건, 이것에 대한 멘트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줄어들게 했지 않습니까? 안이 이야기가 나갔으니까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으로 충족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아까 논의 나왔던 것인데 이야기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회에서 그것이 법리적으로는 차별이 되지만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이번 제5차 회의가 이번 심사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심사위원들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철저히 해 주신 심사지원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속기사님에게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박 5일 동안 정해진 생활수칙대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생활공간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심사업무를 정말 문자 그대로 열과 성을 다해 공정하게 끝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만들어낸 심사결과는 반드시 우리나라 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심사기간 중에 모두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심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4박 5일 동안 주야로 수고 정말 많이 하시고, 끝까지 맡으신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9분 폐회】

종합 · 보도PP 재승인 신청법인 의견청취 속기록

■ 일 시 : 2017. 2. 22.(수) 09: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법인 의견청취
- 일 시 : 2017. 2. 22.(수) 09: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이호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안수화 (안수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차명심 (차명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해량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곽지영 (세명대 회계학과 교수)
허남호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 프로젝트 리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3명)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법인 의견청취 속기록

【09시 30분 개회】

1.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재적위원 열세 분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신청법인 의견청취

가. (주)제이티비씨(JTBC)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주)제이티비씨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이티비씨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이티비씨 관계자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게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제이티비씨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제이티비씨 대표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예, 제가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제이티비씨 편성책임자

- 예, ○○○입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 님 맞습니까?

○ **(주)제이티비씨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께서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대표님 맞습니까?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데 모두발언을 하실 때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편과 보도채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세 번째 왔습니다. 2010년에 방송허가를 받을 때 제가 왔었고, '14년에 첫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도 왔었고 오늘 세 번째 옵니다. 이번 답변 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왜 방송을 시작했고 그동안에 왜 방송을 해 왔으며, 또 그리고 지금 다시 왜 재승인 심사를 받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도달한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다운 방송을 하겠다는 생각과 실천에 대한 의지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다운 방송이란 무엇이나에 대한 규정은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재승인 심사 자리이니만큼 2010년에 방통위가 방송 허가를 내주면서 천명했던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돌이켜 보면 융합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또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4가지였습니다. 그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올해 방송 6년차입니다만 얼마만큼 저희가 그것을 충족시켰느냐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방송을 했다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다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와

서 돌이켜 보면 자평을 해 보면 그 4가지 기준을 상당히 충족시켰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인 글로벌 경쟁력 조항만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 3년간 해외 콘텐츠 해외 판매 실적만 〇원어치 됩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〇〇년에 해외 판매는 〇원 정도를 보고 있어서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송다운 방송을 하기 위한 과정은 어땠는가 돌이켜 보면 결국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투자를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쌓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조직 문화를 저희가 가꾸고 유지하면서 그다음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밖에는 저희는 방송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돌이켜 보면 방송 〇년차인 〇〇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매출과 이익의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해 가을에 제가 CEO로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JTBC는 방송 사업자로서 정상궤도에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결과 5년차인 작년 2016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까만 KISDI에서 1년에 한번 조사하는 조사라든가 또는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매년 연말 발표하는 조사라든가 또는 껀럽에서 매년 조사하는 조사결과라든가 모두 다 고맙게도 저희가 기존의 방송사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방송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저희도 작년에 또 다시 매출 또는 이익에 있어서 경영목표에 차질을 빚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을 돌이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초과달성한 경우도 있고 목표에 차질을 빚은 경우도 있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좌표에 고정을 시켜 놓고 리니어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해 온 것처럼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방송다운 방송을 꾸준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왜 방송을 하는가, 또 그리고 오늘 왜 다시 재승인 심사를 받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부탁드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종편과 보도 채널 2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가끔 종편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종일 편파방송' 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웃어넘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농담 같은 비판이 바로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취지에 맞는 방송다운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JTBC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신문은 언론자유 또는 사업의 자유와 같이 자유가 강조되고 방송은 공공성이 중시됩니다. 방송의 공공성은 방송법 제5조 공적책임과 제6조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통해 방송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방송에는 이 제5조와 제6조를 방송의 헌법처럼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소수계층의 이익 반영이나 사회교육, 유익한 생활정보, 국민의 문화생활에의 기여와 같이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주문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 제5조와 제6조 준수를 위한 자체심의를 강화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그램 전반이지만 특히 시사프로그램 출연자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6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방송을 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관계된 방송을 왜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정의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저희 시행하고 있는 심의라든가 모니터 또는 사후 검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이고 하나는 창조인데 신뢰는 저희가 방송의 환경을 요즘에 정보의 홍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하나 창조라는 부분은 자극의 범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성,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방송은 유용한 정보를 넘어서 이 사회에 신뢰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자산을 전달해 주어야 하고, 또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이 사회에 감동을 던져줄 수 있는 예능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속에서 저희가 모든 형식적인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공정정보 위원회라든가 또는 시청자 심의위원회 등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하겠다는 모든 조직원들의 의지와 진정성이 매 단계마다 녹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사전심의도 중요하지만 사후심의도 상당히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미처 거르지 못한 부적절한 토론, 발언을 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사후심의에 걸려서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시청자 권익 보호 부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를 월 1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의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월 1회의 시청자위원회는 제가 직접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청자위원들께 논의내용을 저희가 고지하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열 분의 시청자위원들께서 보도, 예능,

또 교양, 시사 이런 부분들로 두 분, 세 분씩 분야별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자유발언처럼 지적해 주십니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회의를 해 보면 대부분 저희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솔한 말씀들을 다 청취하고 그리고 매번 저 말고 같이 예능 쪽이나 보도 쪽, 교양 쪽을 총괄하는 저희 간부들이 배석을 해서 그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번 시청자위원회 할 때는 그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이행실적을 저희가 프린트해서 회의하기 직전에 나누어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한 달 동안 모니터한 것을 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잠깐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위원회에서 소비자 불만접수 내용이라든지 고충처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심의 결과 이런 것을 다루십니까?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 **심사위원**

- 시청자 불만접수 내용, 그다음에 고충처리 내용, 심의한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권익보호 최고 논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루시는지를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시청자 불만이 접수가 되는 창구는 아시다시피 시청자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로 ARS라든가 또는 고충처리센터 불만소리를 듣는, VOC를 듣는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불만이 어떠한 내용들에 집중이 되고 몇 건이 들어왔는지가 매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간부들에게 집계가 되어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저희가 제작에 꼭 반영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안전을 올려서 가끔 토의할 때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 보면 청년의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를 위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다른 세대를 위한 별도의 회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청년카운셀을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다른 시청자위원회라든가 또는 공정정보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장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구성에 대한 보완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청년의회를 5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번에는 편성책임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재승인 시 계획과 그에 따른 실적을 보면 여러 다른 활동들은 있습니다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기여 이게 부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JTBC가 생각하는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역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재승인이 된다면 이에 대한 미흡함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이티비씨 편성책임자

- ○○○입니다. 지금 저희가 특정 지역만을 특히 시골이나 이런 특정 지역을 넣는 프로그램은 현재는 편성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김재동의 토틀유>라든지 <한끼줍쇼>라고 전국의 동네들을 돌면서 그 동네의 특성과 이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 지역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포럼 그런 것들, 그리고 각 지역의 비정기적 행사들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상파처럼 항상 지역정보만 다루는 <내고향> 그런 것들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요 신문사와 공조로 지역기사를 뉴스에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에서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제가 추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지역을 언급하는 것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서 지역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많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 제작의 공영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5년 동안의 제작계획을 설명하는 승인요청서 273페이지를 보면 큰 방향성만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 즐거움, 독창적 콘텐츠, 함께 소통하는 교양 등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송을 하는 기본자세를 말씀드리고 역시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는 보도 부분은 실제 제작에 임하는 간부나 또는 실무자들의 독창성,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이 최대한 담보가 되고 발휘되도록 저희가 조직 문화

를 만들고 그것을 이끌어 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꽃피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기술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반 정도 되고 실현 계획의 적정성 이 부분도 역시 반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안에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지 대단히 곤혹스러워서 혹시 편성책임자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제이티비씨 편성책임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JTBC는 여러 가지 가치를 세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뢰, 즐거움, 독창적 콘텐츠, 차별화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최고 가치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 가치 아래에서 크게 보도와 교양, 오락 내부에서는 드라마와 일반 예능, 스포츠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냐는 몇 가지 이유에서 조금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어쨌든 시청자 시청행태와 방송프로그램의 트렌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 전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콘텐츠가 이미 6개월 이후에는 굉장히 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내부의 구조는 편성과 경영 그리고 제작이 각각 굉장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독립적인 가치를 지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5년 뒤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담아내기가 조금 힘들었던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온 결과,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고 저희는 그런 제작의 가치를 지켜 주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편성적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갖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재승인은 향후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5년의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실현계획의 적절성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획이 정확하게 담겨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경주 지진처럼 재난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도 재난 예방 프로그램을 상시 편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근 방통위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면 JTBC 같은 경우 지진 발생 시에 방송자막은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이게 담당자의 확인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고 조정실에서 전송되어서 송출되는 이 과정 속에서 지진은 발생하면 짧으면 몇 십 초에서 몇 분

내에 다 완료되는 상황이고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고라든지 승인 이런 단계를 많이 거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인명을 구하지 못하는 재난방송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진 대응에 대한 긴급자막이라든지 전송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방통위가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들을 종편사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막을 제공하는 최종 실무책임자가 어떤 급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저희가 실제로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했던 실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민한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가끔 훈련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지만 저희 기술 쪽에서 온 ○○○ 팀장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이티비씨 기술기획팀장

- ○○○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방송 부분은 저희가 주조정실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자막의 표출 부분도 굉장히 신속하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 3.0 이상 지진은 저희가 프로그램 유형과 관계없이 즉각 송출할 수 있게끔 10초 내, 5초 내 바로 송출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쪽 책임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재난방송 담당자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쪽 부분에 재난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기술 쪽은 기술 담당 상무가 책임자이고 보도는 취재부국장이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번에는 경영 투자 실적 및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승인 시에 부과된 조건 중에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 JTBC의 투자액은 타사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대비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액은 많지만 연도별로 사업계획 대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심지어 2015년에는 시정명령과 2016년에는 과징금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인 유효기간 중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대비 저희가 투자 이행을 100% 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구한 변명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을 설명드려야 되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다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리이러한 시청률을 올리는 성과를 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해서 이만한 매출과 이익이 나리라는 것을 저희가 면밀히 프로젝션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와 같이 작업을 했던 ○○○였고 저희가 몇 달 동안 면밀히 검토해서 그 접근법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존의 방송사 중에서 공영성이 강한 방송사는 제외하고 유일한 민영방송사의 지난 20년간의 경영실적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뮬레이션했던 2010년의 방송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20년 경험이 저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또 일정한 시청률을 올리는 그 계획에서는 크게 저희가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올 초만 해도 저희가 프라임타임의 2049타깃 시청률을 보면 기존 방송사들의 ○% 수준까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그동안 노력의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데,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도 뼈저리게 그것을 반성하는데 미리 그것을 예상했었어야 된다고 저희가 뒤늦게 아쉬워했습니다만 이른바 1/n이라는 말씀을 다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잔재가 남아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많이 없어지긴 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큰 광고주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장 상황 때문에 시청률에 상응하는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1/4로 나누어서 집행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초기에 ○○○ 방통위원장께서도 저희 신생 방송사들의 대표자들과 종종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언제까지 신문 등에 업고 광고할 겁니까? 여러분!”이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 위원장의 적절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매출과 이익에 있어서 가장 큰 차질을 빚었던 요인이 물론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차질을 빚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저희는 미래를 위한 콘텐츠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제 기억에는 현재까지 한 ○원 정도의 직접 제작비를 투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도 ○~○원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재무제표가 당연히 타사에 비해서는 현재의 재무제표를 보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예컨대 총자본 회전을 보면 저희는 계속 이것이….

○ 심사위원장

-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이티브이 대표자

- 죄송합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매출과 이익에 차질을 빚었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담보할 투자를 지속해 왔다는 점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답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매출 예측이 벗어나면서 콘텐츠 부문에 대한 투자금액 자체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14년 재승인 시의 투자계획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콘텐츠 부문에 대한 투자 이행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제출하신 향후 계획도 다소 과도하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이행이 가능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저희가 2014년 1차 재심사 때 드렸던 계획서도 역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던 의욕이 넘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차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계획서는 훨씬 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실현 가능한 논리를 세워서 이행 가능하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매출을 예상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년에 현재 기존의 3사 평균 시청률 대비 저희가 ○%까지는 시청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매출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에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중간 답변에 매출액 관련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매출액 계획 대비 달성률이 어쨌든 ○% 수준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계획 가지고 매출액 달성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5년간 광고 매출 비중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타사의 ○%대 수준에 비해서는 약간 광고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고매출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아시다시피 저희가 광고와 유통이 저희의 가장 큰 수입인데 광고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원을 넘어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처음으로 ○원을 저희가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 광고가 ○원을 무난히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년에 저희가 콘텐츠 투자를 통해서 시청률을 기존 방송의 ○%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광고가 충분히 저희 예상한 대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물론 광고가 또 다른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시장이 위축된다든가] 해서 차질이 빚어진다면 당연히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유통 쪽에 굉장히 의욕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진력을 해서 총 매출을 달성하는 전략을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광고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답변은 시간상 제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재승인 신청서와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2016년도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매우 재무적으로 취약합니다. 사업계획서상 향후 안정적인 사업 투자를 위해서 회사채나 차입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하신다고 523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재무구조에서 추가적인 차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재무구조 안정화 측면에서 주주의 추가 출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능력 보충 대책에 대한 신청법인 대표 및 최대주주께서도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 최대액주주로 나오신 ○○○ 사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재무제표가 정태적으로 보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누차 말씀드렸다고 동태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또한 재무제표도 저희가 스스로 동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다고 차입 그리고 증자 그다음에 매출 증대를 통한 이익 실현 이 3가지가 방법인데 저희가 증자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납입자본금 6,000억원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현재 저희가 납입자본금은 5,470억원입니다. 그래서 6,000억원을 생각했던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6,000억원은 투입이 되어야 평균 시총률 6%는 달성하겠다는 계산이 있었고, 또한 나중에 저희가 기업공개를 나가서 저희 투자해 주신 분들께 어느 정도의 기대수익률을 충족시켜 주려면 6,000억원 이상은 자본금이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계획에 비추어 보면 저희가 아직도 530억원 정도의 증자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 저희가 한번 더 올해 안에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해 보고 만약 기존 주주들께서 잘 따라오지 않으신다면 제3자 배정을 해서라도 증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크레딧라인을 한 0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도 저희가 본사 차입이라든가 또는 올해 안에 사모사채를 발행할 계획 등을 따져 보면 충분히 올해 안에 또는 내년에 캐시플로우가 문제없이 넘어가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추가 답변을 ○○○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제이티비씨 최대주주

- 최대주주 회사로서 저희들은 JTBC가 자금 부족 현상이 됐을 때 대여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2월에도 JTBC 회사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유동성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최대주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 기술 관련 짧은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송시설 투자실적 중 지난 3년간 국산 방송장비 도입 실적은 ○% 정도로 우수해 보입니다. 그런데 향후 5년간 투자계획에서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이 ○%로 급격히 낮아지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년까지 UHD 전환 ○% 편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 UHD 전환시기와 맞춘 것인지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IPTV 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이 부분도 물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 기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이티비씨 기술기획팀장

- ○○○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산 장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는 조명등기구, 모니터 등 하드웨어 국산 제품에 아주 우수한 국산 솔루션 부분, 그리고 우수한 국내 기술인력을 기반으로 내부 SI를 진행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의 투자실적을 이룩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배석자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 기술기획팀장

-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이 3개년 실적보다 못 미치는 이유는 JTBC 같은 경우는 일산제작센터와 저희 신사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제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 시설을 이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신사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조정실, 부조정실 UHD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의 국산 장비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으로 계획을 했던 계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산 장비 풀(Pool)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R&D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서 국산 산업발전을 위한 국산장비를 계속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UHD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사옥에는 UHD 구조정실과 부조정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년에는 앞으로 UHD 송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년에는 ○~○%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년에는 ○%의 UHD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부분은 지상파의 UHD 송출 계획 부분과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플랫폼사업자와 협의한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계속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기술적으로 성숙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나온 질문들과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년까지 총 ○원 정도의 콘텐츠 투자계획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다든지, 증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콘텐츠 투자계획에 맞물려서 같이 신사옥까지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과연 현재의 재무구조에서 정상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광고도 증가한다고 예측하셨고 그다음에 광고가 좋지 않다면 유통 부분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 다 현재 사드 때문에 중국 한류 콘텐츠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광고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모바일 쪽의 광고가 증가하고 방송 부분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투자계획이라든가 신사옥 건립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재승인 심사에서 향후 계획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술된 내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옥 건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신사옥 건설은 마지막에 우려하셨다시피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상으로 써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들어 있는 상암동사옥은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처음 생길 때 어느 누구도 방송 승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때이기 때문에 방송사옥으로 지어 올린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스튜디오도 없고 층고도 낮다든가 이런, 그래서 저희가 2가지 큰 계획을 추진 중인데 하나는 일산에 EBS 본사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만 그 앞에 저희 전용 스튜디오를 하나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빛마루라든가 외부의 스튜디오를 빌려서 쓰는 비용들이 ○원을 투자해도 몇 년 안에 다 회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오히려 길게 보면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사옥을 지어 올리는 예산은 저희가 ○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년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매년 투자비용이 분산되어서 저희 자금계획상 충분히 반영하고 가는 것입니다. 마침 저희가 상암동 사옥에 쓰고 있는 바로 앞에 빈터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방송다운 방송을 하기 위한 설계단계부터 하기 위한 신사옥을 지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외 유통은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쪽에 가능성이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같은 돌발변수가 생기지만 저희가 실제로 플랜B를 가동해서 곧 사인을 할 것입니다만 중국이 막혔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넷플릭스와 올해 제작을 하는 <맨투맨>이라는 드라마는 이미 회당 ○불에 16편 ○불계약을 거의 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으로 넷플릭스에도 예를 들면 <썰전>이라든가 이런 시사·교양 또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팔아서 거기에서 ○원 정도의 매출을 곧 올

리계끔 플랜B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시장만이 아니라 다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인도와 터키 쪽을 주목하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유통망을 뚫고 들어가는 힘들어서 ○○○이라든가 영국의 ○○○라든가 저희가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회사들과 예컨대 ○○○, 또는 ○○○를 설립해서 실제로 인도나 터키 등을 매우 활발하게 뚫고 데려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광고시장이 물론 모바일 쪽으로 많이 옮겨 간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시청자 시청습관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VOD 시장 쪽도 저희가 먼저 생각해서 작년 말에 월정액가입자를 ○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CJ E&M이 한 ○명쯤 되니까 저희가 ○~○년 내로 지금의 CJ E&M 수준인 ○명까지 월정액 가입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동시에 모바일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저희가 각 부분에서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를 하고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제이티비씨 최대주주**

- 신사옥 관련해서는 ○원 정도는 본사가 지어서 JTBC에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질문하신 분의 답변으로 재무적인 JTBC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총 170여개의 일반PP 매출액 중에서 종편PP 4개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도에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P 전체 매출 중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결국 일반PP와 매출의 구조에 있어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외주제작사와의 관계에서도 저작권 공유라든지 수익 배분 등을 통한 상생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PP 또는 다른 외주제작사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다른 실적과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먼저 상생을 위한 외주제작 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차 심사 때 외주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로 제출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 외주제작비율이 무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경주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더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외주제작사들에 대해서 ○% 사전 지급이라든가 또는 나머지 부분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저희들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주제작사들과 저희가 활발히 상생해서 그 결과로 시청률을 매우 높게 끌어올리면서 방송하고 있는 것은 <내집이 나타났다> 또 <몽쳐야 뜬다>, <최고의사랑> 등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외주제작사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PP에 대해서는 무슨 질문을 저에게 주셨지요? PP와의 상생 부분을...

○ 심사위원

- 예, 맞습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저희가 PP와의 상생 부분도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큰 성과가 나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외주제작처럼 눈에 띄는 실적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편성책임자인 ○○○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이티비씨 편성책임자

- 대표님께서 한계, 제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자체제작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상파 대비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2차 판매를 다른 PP들에게 열어놓고 있고,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른 채널에서 돌아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PP의 콘텐츠 부족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170개 PP 중에 종편 4개사가 15%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불평등 이슈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종편의 15%보다는 여기에 지상파 그리고 CJ E&M 전체적으로 묶인 시장에서 예를 들면 180개 정도 되는 PP에서 지상파 3사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가 아닌가, 같이 고민해야 할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추가 질의나 또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신청서에 보면 JTBC에서는 ○% 이상의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방송법의 정신, 특히 제5조, 제6조의 정신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제5조, 제6조를 구현하는 것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령 우리가 특별히 한두 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자를 위한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방송법 제5조, 제6조의 기본정신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보기에 승인서의 내용은 공익적 프로그램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질의라기보다는 지적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겸허히 저희도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앞으로 저희가 더욱 더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 공익이라는 것이

녹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돌아해보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능에 있어서도 저희가 JTBC 예능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양과 예능의 하이브리드 같은 프로그램들이 요새는 많이 나오지만 <독투유>, <말하는 대로> 또는 <비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은 비록 재미와 시청률을 항상 PD들이나 제작자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공익이라든가 그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재미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제작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제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재승인 보고서 128페이지에 보면 '재난장비 촬영현장'이라고 리스트를 적어서 내셨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방송사의 재난장비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청계천이나 용산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짝 적어놓으셨는데 보완하셔서 실질적인 재난장비, 종합편성채널로서 최고의 1위를 자랑하시는 JTBC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걸맞은 재난장비를 보강하셔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지금 부분도 저희가 명심해서 보고 추가로 서면답변을 드리거나 보완하는 실행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시청자 불만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불만 상위 내역을 보면 구성과 출연진과 내용 이 3가지에 대한 시청자 불만건수가 전체 건수의 80%를 넘어가는데 이것이 2014년, 2015년, 2016년이 가도록 이 비율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불만접수를 토대로 해서 뭔가 반영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변함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제이티비씨 대표자

-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불만사항들이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제작에 반영하려고 그런 노력이 저희들 일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지적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진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연진에 대한 불만사항은 상당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굳이 보수나 진보를 따지지 않더라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출연진에 대한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늘 귀를 기울

이고 있습니다만 출연진 부분은 시청자들의 불만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만한 출연진들을 가려내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갖춘 출연진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답변 중에 신사옥 건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에 따른 증자계획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재무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 **(주)제이티비씨 최대주주**

- 신사옥 건설 관련되는 재무계획은 미디어네트워크에서 지어서 임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증자계획은 내신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증자계획은 사업계획서에서 쓰지는 않았습니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서 외에도 저희가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린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참고로 ○○년에 총 차입금 규모를 ○원 정도 예상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가 ○원 정도라고 생각해서 차입금을 ○○년 말에 ○원 정도는 끌고 가겠다는 계획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더 이상의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2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이티비씨 대표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질의 도중에 지적해 주신 계획의 구체성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답변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올 하반기에 저희가 드라마 슬롯을 ○개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포맷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편성상의 포맷존을 새로 만들 것이고, 또 당장 3월에도 새로운 교양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해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추가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이런 저런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잘 새겨듣고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더욱 더 방송다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

회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이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 부분에서도 더욱 더 공정한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매우 애를 써서 진행을 하고 있는 리셋코리아 같은 아젠다 세팅처럼 실제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또는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찾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또한 책임 있는 방송사로서 다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위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이티비씨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이티비씨 관계자 퇴장)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나. (주)조선방송(TV조선)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주)조선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조선방송 관계자 분들이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조선방송 관계자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조선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조선방송 대표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 님 맞습니까?

○ ㈜조선방송 최대주주

-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께서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대표님 맞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모두발언을 하실 때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편과 보도채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대표이사 ○○○입니다. 먼저 모두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TV조선이 방송을 시작한지 5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초기에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우선 시청률입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 이상 성장하여 더 많은 시청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5년 여론집중도조사에서 TV조선은 TV 방송 부분의 뉴스·시사 이용점유율에서 KBS, MBC에 이어 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TV조선 USA가 미국 남가주 지역에서 종편 중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지상파채널을 통해서 24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재승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만든 드라마, 예능 등 5개 콘텐츠가 중국과 동남아 등 7개국에서 방영됐습니다. 예능 프로 <엄마가 뭐길래>는 현재 동남아 3개국 방송사와 포맷 수출을 협의 중입니다. 재정 안정성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도 TV조선은 종편 최초로 2015년부터 2년 연속 영업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연간 흑자 달성으로 확보한 재원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늘려나가는 데 쓰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개국 초기부터 야당 출신 인사들의 출연 거부로 본의 아니게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지만 저희들의 끈질긴 출연 교섭 노력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TV조선에 출연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야당 출신 비율은 0%를 접했고 올해 1월에는 0%로 높아졌습니다. TV조선은 늘 다양한 의견이 참여하는 열린 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 재승인 심사 시 부여받았던 재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것보다 재방 비율은 더 낮고 외주제작 비율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해서 외주제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콘텐츠 제작투자도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금이 적어서 콘텐츠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 이행률은 종편사 중에서 가장 높고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비율은 지상파 3사의 비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최대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점은 생방송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품격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2월 1일부터 시사프로그램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시정하기 위한 방송 사상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옴부즈맨은 생방송을 모니터링 하다가 부적절한 표현이나 편파적 발언, 사실과 다른 발언이 튀어나오면 MC 멘트나 자막으로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문제 발언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예방효과를 발휘하여 시행 3주 만에 생방송의 문제점들이 현저히 감소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법정제재를 많이 받은 2개의 시사 프로그램을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시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강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TV조선은 부족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앞으로의 5년은 더욱 공정하고 품위 있고 다양하고 공익적인 방송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아까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린 현재 우리나라의 종편과 보도채널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TV조선방송 대표자**

- 차이점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종편입니다. 종합편성입니다. 그래서 보도와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이 서로 균형 있게 편성되는 것이 보도채널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보도 비중을 신청서에 적어냈듯이 계속 줄어들게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3년 후에는 KBS 수준으로 보도 비중을 낮추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두 채널이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는데 물론 잘 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채널의 존재의 차이 그것을 TV조선이 어떻게 현재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 **TV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보도채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도·오락·교양을 균형

있게 편성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채널이야 말할 것 없이 보도만 하는 채널이겠지요.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주)조선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대표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아마 이것을 의식하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조선방송의 오보·막말·편파 이 심의조치 건수가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조는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고 또 언어 순화에 기여하고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또 모든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TV조선이 다른 사에 비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거나 방송법 제5조, 제6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아까 약간의 의지도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TV조선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방송의 수준이 되고 심의를 계속 많이 제재를 받게 되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와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해 주시길요.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TV조선이 종편 중에서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특정 집단에서 TV조선을 표적으로 삼아서 퇴출운동 차원에서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더기 민원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바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특정 보수신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고 지금은 특정 종편, 특히 TV조선의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편에 출연하는 보수논객 10여명의 퇴출운동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민원 제기 양태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 15일부터 12월 1일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해서 총 〇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민원 중에서 〇%에 달하는 〇건이 TV조선에 집중됐습니다. 종편 및 보도채널 전체에 낸 민원 〇건의 민원 중에서 74%인 48건이 말이 안 돼서 기각됐거나 '문제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지도가 13건, 법정제재인 '주의'는 단 3건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무리한 민원 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방심위가 TV조선에 내린 심의결정 중에서 사안이 경미해서 '의견'이나 '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받은 비율이 〇%였습니다. 방송법 제100조에 보면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 한 경우에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제48조에서는 행정지도

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 **심사위원장**

- 발언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알겠습니다만 이 심의 제재가 너무 저희들한테는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에서는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지도가 처벌이 아닌데 행정지도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편 4개사 중에서 TV조선은 방심위의 전체 심의 결정건수 대비 법정제재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14년과 '15년에는 TV조선의 법정심의 별점이 종편 중에 가장 높지도 않았습니니다. '16년도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지금 특정 단체에서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편파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보나 막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막말 문제는...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TV조선에 쏟아지는 송인 취소니 이런 문제는 특정 단체가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단체들, 보수단체들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단체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잘못도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치겠다는 태도를 가지셔야지 특정 단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없지만'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은 명심해야 할 것이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제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제가 저희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잘못도 있고 또 특정 단체에 집중적인 무더기 민원 제기가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하

튼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방심위의 심의가 적지 않은 점에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월 1회씩 열고 방송언어보고서도 분기별로 만들고 출연자 심의제도를 만들고 보도본부 내 위기관리팀 만들어서 부적절한 발언을 막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개의 프로그램을 폐지도 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법정제재를 받은 출연자에게는 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출연자는 방심위와는 상관없이 출연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MC ○명, 출연자 ○명을 출연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월 이후에 저희들이….

○ 심사위원장

-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어서 아까 이러한 문항과 관련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종편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언론 자유 또는 사업의 자유 등과 같이 자유가 중시되고, 잘 아시겠지만 방송은 공공성이 중시됩니다. 그런데 방송의 공공성은 우리 방송법에 제5조 공적책임과 제6조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통해 방송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인이 숙지해야 할 방송의 헌법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소수계층의 이익 반영이나 사회교육, 유익한 생활정보, 국민의 문화생활에의 기여 같이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주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제5조, 제6조의 준수를 위해서는 자체심의를 강화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프로그램, 특히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의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부 말씀을 해주셨지만 TV조선에서는 이런 것의 실시가 더 강력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 ㈜조선방송 대표자

-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사전 심의팀 제도가 있어서 사전 제작물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느닷없이 출연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편파성 있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옴부즈맨이 실시간으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부조실에서 생방송 모니터링 하다가 문제 발언이 튀어 나오면 진행자 멘트로 혹은 자막으로 즉각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저희들이 ○ 출연자를 퇴출시켰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와 상관없이 저희들의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즉각즉각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센터에 들어오는 민원도 최근 3주 지나면서 급감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저희들이 품격 있고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를 원년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시청자 권익보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어떤 특정 단체가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선방송의 시청자센터에 1년에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건입니다.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특정단체의 무더기 민원 때문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접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심의실장이 배석했는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발언하십시오.

○ ㈜조선방송 심의실장

- 저희 시청자센터에는 일별로 하면 약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정치성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 되고 나머지는 일반 제작과 프로그램 정보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성 민원에 있어서는 어쨌든 보수적인 의견과 진보적인 의견이 골고루 나누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수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자센터에서 대부분 다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의적으로 그런 것이 반영되게끔 또 보도본부나 일반 제작실에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시청자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또 하나 제가 여쭙 볼 것이 조금 전에 방송프로그램 내용이나 출연자나 이런 것이 ○%, 그 다음에 정보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나 비율이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개선을 한다, 위에 이야기해서 개선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선방송 심의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민원이라는 것이 뭔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본인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는 대부분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민원의 해결에 관한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시청자 민원 불만 처리를 주단위나 월단위로 해서 CEO 회의에 보고하고 개선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으십니까?

○ ㈜조선방송 심의실장

- 예. 저희가 시청자센터에서 1일 보고를 항상 아침에 그 전날에 있었던 민원을 전부다 보고

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모든 민원을 다 보고하고 주간단위 그리고 월간단위로 해서 보관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는데 시청자센터를 왜 아웃소싱 하시지요?

○ **㈜조선방송 심의실장**

- 시청자센터에는 센터장과 정직원이 있고 그리고 콜을 받는, 민원을 받는 상담을 하는 센터 상담원만 저희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청자센터는 심의실과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시청자센터장인 제가 직접 관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와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한 가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사회·문화적 기여에 관련된 내용인데 TV조선은 2014년 재승인 시에 국민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한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 ○원 규모의 대성상생투자조합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큐멘터리라든가 해외채널 그리고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 결성된 대성상생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된 콘텐츠 ○개를 보면 그중에서 단 ○개만을 제외하고 그것이 IT 어플리케이션 분야인데 나머지 ○개 사업이 모두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였다고 나옵니다. 물론 영화도 문화콘텐츠의 하나라고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특정 장르에 치중함으로써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진작보다는 오히려 대중적인 인기만을 추구한 영리성 사업 투자는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성상생투자조합은 저희들이 주도해서 ○원 규모로 설립을 한 것인데 사실은 참여자들이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년에 <최고의 결혼>이라는 드라마를 ○원을 대성상생투자조합에서 출자를 받아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그래도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종편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화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TV조선의 경우는 <이문세와 떠나요! 비밥바물라>라고 하는 것을 ○○년에 ○원 정도 투자를 한 적이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결혼>을 ○○년

에 했는데 이미 투자기간은 ○○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쪽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투자조합을 애초에 구성할 때의 기본 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난 방향으로 집행됐다는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문화콘텐츠가 중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르에 치중하고 영리성을 자꾸 추구하는 이런 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경영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경영의 안정화는 언제쯤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전망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들이 그동안에 ○○년까지 쪽 적자였습니다. 새로 ○○년부터 ○○년 사이에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콘텐츠 투자비를 매출액의 ○% 수준으로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짰습니다. 2017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물론 매출액 성장률은 상당히 둔화되겠습니다. 연평균 ○% 정도를 산정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 ○~○% 달성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출액 대비 직접 투자율은 ○%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콘텐츠 투자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방송이 공익성과 영리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을 ○% 내외로 유지하게 되면 영업흑자도 어느 정도 기업으로서 내고 또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콘텐츠 투자도 상당히 늘려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대표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종편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보·막말·편파를 모두에 지적했는데 그 부분들은 보도 분야에서 비롯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보도 분야 편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년 ○%에서 ○○년에는 ○%로 줄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보정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면 <신통방통>이라고 하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때로는 '보도'로 표기해 놓고, 때로는 '교양'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편성표와 설명에 따르면 <윤슬기의 시사Q>,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이것은 보도로 분류해 놓았고, 같은 시사토크 형식인 <김광일의 신통방통>, <고성국의 라이브쇼>, <최희준의 왜?>는 '교양'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둘 차이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도방송 비율은 그대로 하면서 분류만 다르게 해서, 눈가림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제작

투자를 기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편성실장이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실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도프로그램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TV조선이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장르를 교양으로 분류하거나 변경한 데에는 그 근거가 있고 방통위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과 어긋나지 않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상파에서 '90년대부터 편성업무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보도·교양·오락 장르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르간 활발한 융합 현상으로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법 제69조에 보면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방통위 자체 검토자료에서도 보면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서 편성규제의 엄격한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하루 종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 **심사위원**

-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슬기의 시사Q>,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보도'로 되어 있고, <김광일의 신통방통>, <고성국의 라이보쇼>, <최희준의 왜?>는 '교양'으로 분류했는데 그 차별점을 뭐라고 보시고 왜 그렇게 분류했느냐는 것이지요.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분류기준이나 편성비율 관련해서는 고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고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저희 채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편사, 지상파에도 있는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 4시 <뉴스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목에도 뉴스가 들어가 있고 구성도 취재보도가 들어가 있는데 KBS 홈페이지를 보면 '교양'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만의 경우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검토했습니다. 고시안을 가지고 검토한 적도 있었고 2015년도에는 '16년부터 시행하려고 가이드라인 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공통점은 2013년 검토와 2015년 검토의 공통점은 종합뉴스와 분야별 뉴스 등

취재보도가 주인 뉴스 프로그램과 선거방송은 보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 대답은 그만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백서 재승인 신청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뉴스 보도 프로그램을 신설하셨다고 해 놓으시고, 거기에 보면 <자치백서 TV목민관>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지역보도 프로그램 이지요. 승인서 1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3488>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아닙니다. <자치백서 TV목민관> 2016년, 2017년 방영 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도 프로그램 신설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지역보도 프로그램 맞습니까? 맞지요?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정자료 내주신 것 보면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자치백서 TV목민관>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분야를 무엇으로 해 놓았느냐 하면 '교양'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 공식적으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뉴스입니까, 교양입니까? 같은 회사에서 낸 공식적인 승인 신청서에 한쪽에는 '뉴스'로 되어 있고 한쪽에 '교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신청서에 착오가 있으면 재승인 신청이 결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저희는 보도와 교양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을...

○ 심사위원

- 보도와 교양 나누는 기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한쪽은 뉴스로 해 놓고 한쪽은 교양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 틀린 것 아닙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사실 이것이 저희가...

○ 심사위원

-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사실이 아니라….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저희가 그동안 장르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

- 장르를 바꾸는데 같은 프로그램인데 장르가 바뀐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뉴스라고 해 놓고 한쪽은 교양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특히 기존의 <김광일의 신통방통> 같은 프로그램은….

○ 심사위원

-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여쭙 본 것이 아니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도냐, 아니냐를….

○ 심사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신청서의 공익성 부분에 대한 표시로서 우리는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렇게 공익활동을 한다고 주장하시면 공익성 프로그램을 해서 공익 부분의 점수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는 교양으로 해서 우리 보도를 적게 편성하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추가적으로 받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승인 백서에 같은 프로그램을 다르게 기재해서 이중으로 점수를 취하는 행위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그 부분은 하여튼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사전에….

○ 심사위원

- 승인 신청서로 승인을 받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쁜 의도를 갖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재승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도·교양 그다음에 종편의 존재 이유가 3분류 체계, 보도·교양·오락을 균형 있게 편성하기 때문에 종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지적되어 온 결정적인 재승인에 보도편성이 많다는 것이 지적됐는데 이런 식의 허위나 잘못된 기재를 해서 재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그 문제는 우리 의견청취가 끝나면 TV조선 측에서 지금 질문하신 그 요지, 가부간 어느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추가 질의는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 협력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2014년 재승인 시에 콘텐츠 투자계획이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행실적이 미흡해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승인 여부 판단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봤더니 오락 콘텐츠인 경우에 자체제작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도·교양·오락 이런 부분에 균형을 생각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콘텐츠 투자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락 실적 부분은 편성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 직접 투자비는 100%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 이행률은 사실 종편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액수는 저희들이 자본금이 1,000억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비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작성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근거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방송사업 매출 대비 직접 콘텐츠 투자비, 인건비, 시설비, 장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평균 0%였습니다. 지상파 0% 내외나 CJ E&M 0%, 채널A 0%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대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집행률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율은 저희들이 3개년 연평균 0%로 종편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 자기자본 대비 매출원가 비율도 0%로 종편 중에서 역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콘텐츠 투자비를 100% 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앞으로 3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그동안은 콘텐츠 제작비를 얼마 쓰면 시청률이 얼마 올라가고 그에 따라 광고협찬액이 얼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짜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GDP 성장률이나 광고 및 협찬 증가율, 또 매출 성장률을 산정하고 누적결손금이 저희들이 0원이 있습니다만 00년까지 해소하는 수준의 영업이익률 0~0%를 달성하는 선에서 콘텐츠 투자 제작비를 결정했습니다. 적절한 영업이익을 내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의 0% 내외의 콘텐츠 직접 투자비를 반드시 써서 저희들이 신청서에 낸 목표 달성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아주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콘텐츠 제작비 지출 규모는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지금 1, 2월 광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0원 정도는 더 콘텐츠 제작비에 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오락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2014년까지는 00상태라서 오락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콘텐츠 투자를 많이 못 했고, 그러다가 2015년부터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에서 0% 정도 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0%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개년 동안은 0% 후반대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장르라는 것이 특히 저희가 시사가 강한 종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락성 있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편성하면 그것들이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편성비율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상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준비하신 자료가 많고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답변하실 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5번 질문한 것을 문서로 답변 제출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최근에 지진이 나면서 재난보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통위가 점검해 보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에 지진발생 방송자막은 자동 송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자 확인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지연 노출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막 문구 역시 방통위가 매뉴얼로 정해 놓은 것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대책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재난 방송하는 시스템을 점검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조직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부터는 타사에 못지않은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가 아직 하지 않은 민방위 훈련을 자동적으로 자막송출하는 그런 것도 먼저 개발해서 완비할 정도로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콘텐츠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콘텐츠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신 문서에 보면 향후 5년간 콘텐츠 투자계획의 금액이 연평균 증가율을 ○%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하셨는데 최근 3년간 달성한 TV조선의 콘텐츠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콘텐츠 투자계획이 너무 소극적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콘텐츠 투자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향후 콘텐츠 투자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탐다운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우선 GDP 성장률이 향후에 ○% 성장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광고 및 협찬 증가율은 ○%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 성장률 자체가 연평균 ○% 낮게 성장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적결손금을 ○○년까지 해소하는 수준의 영업이익률 ○~○%를 달성하는 선에서 콘텐츠 제작비를 결정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한다는 그런 전략에서 짠 것입니다. 다만 2016년의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였고 매출액 대비 직접 제작투자율은 ○%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만 간접제작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계획보다 조금 늘어나면 콘텐츠 직접제작비는 매출액의 ○% 선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높게 반드시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방송 기술 관련 질문 2가지입니다. 방송법 제70조제2항 디지털방송 음향규제가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TV조선에서는 관련해서 음향 측정, 기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내 지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방송 송출 시설에 대한 국산장비 도입 실적이 ○○, 향후에도 2019년~2021년 도입계획이 ○○○데 이것은 국산 방송장비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우선 국산장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제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증된 관련 장비를 보면 총 58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해당하는 품목은 자막기, LED 조명기구 모니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막기와 모니터는 인정된 국산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LED 조명은 인증됐지만 사용하는 방송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검증되는 것을 보고 국산품을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약 ○원의 기술투자를 했습니다. 우선 2014년에 상암동에 제작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여기에는 UHD 4K 편집실 ○개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비디오, 오디오 카메라 부분 등 해서 순수장비에 ○원, 기타 시설에 ○원을 신규 투자했습니다.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원을...

○ **심사위원**

- 음향규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 기술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발언해 주십시오.

○ **(주)조선방송 기술기획팀 부장**

- 기술기획팀의 ○○○ 부장입니다. 음향규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송출라인이 주라인, 부라인 해서 주/예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라인 쪽에 음향 조절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부라인 쪽에는 2가지의 음향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극단의 상황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작 시에 맞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로 해서 각각의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일 음향일지를 확인해서 그 콘텐츠에 대해서 해당 제작자, 제작 PD를 통해서 재제작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송출시설 중에 인코더 앞뒤 단에서 음향측정을 하고 계시고 측정값을 90일 동안 보관하고 계십니까?

○ **㈜조선방송 기술기획팀 부장**

- 지금 실시한 이후로 계속해서 매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로우데이터도 저장하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자체적으로 저희 본부장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종편사들이 채널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에 따라서 PP에게 돌아가야 할 전체적인 프로그램 사용료가 줄고 있어서 유료방송산업 전체 상생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TV조선의 입장과 그다음에 종편과 같은 의무채널이 황금채널을 부여받으면서 프로그램 채널사용료까지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우선 저희들이 의무전송이면서도 채널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반PP들은 SO 수입 중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놓고 일반PP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종편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일반PP에 손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심사위원**

- 의무전송채널이 황금채널을 받으면서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것에 대해….

○ **㈜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편성채널을 보면 보도나 공익이나 종교나 장애인채널 등도 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제하는 법적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종편PP의 경우에 재원 구조상 광고협찬 매출점유율이 매우 높고 기타 매출 비중이 낮습니다. 지나치게 광고협찬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매출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종편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협찬 비중이 높은 것은 매체의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협찬 비중이 2016년에 더 늘어난 것은 광고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수입이 정상적으로 늘어나면 협찬 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TV조선의 경우에 협찬은 작년올 기점으로 더 늘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찬규모를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1, 2월 광고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찬 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협찬 비중은 높지만 액수는 지상파의 ○○○입니다. 그러나 비중은 높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협찬은 독특한 한국의 미디어 현상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광고주들이 광고를 내면 원톱광고에 시달리게 되고 거기에서 협찬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협찬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콘텐츠를 강화해서 일반광고를 더 많이 할 필요는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성장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를 늘려서 일반광고를 끌어내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자료 제출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심사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것인데 시사토크쇼에서 진행자의 자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 중에는 심의실장님도 나오셨는데 심의실장님 참고하시고 답변은 대표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러하듯이 시사토크쇼에서도 진행자의 역할이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널로 출연한 게스트들의 발언 주의나 막말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할 사람이지요. 그런 진행자가 오히려 막말을 한다면 이것은 프로그램의 품격을 아주 저하시키고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씨의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씨라고 표현한 것은 예의상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작살을 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연한 초대 게스트도 아니고 진행자가, 그러면서 동시에 실시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음부즈맨 프로그램 흘림글씨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옆질러진 물을 담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 출연자가 아닌 진행자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진행자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자 20명을 바꾸고 아예 프로그램을 폐쇄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또 하나의 라이브쇼가 그런 진행을 해서 30번 경고를 했고 출연료를 깎다가 결국 폐쇄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너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옆질러진 물을 담그는 그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자도 저희가 PD나 진행자들에게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자체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퇴출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0명을 출연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회자를 바꾸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 문제는 신청하신 신청서 531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심의제재 현황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씨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015년, 2016년에 지금까지 걸쳐서 계속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추가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도 프로그램 분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분류하고 있는 기준들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는데 그냥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된 시간에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방송 중인 편성표와 제출한 편성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데 현재 방송 중인 편성표에 그 기준에 따른 보도·교양·예능에 대한 분류비율을 밝혀 주시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도 프로그램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다, 예능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분류해 주십시오. 아까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윤슬기의 시사Q>,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이봉규의 정치육타관>은 보도이고, <김광일의 신통방통>, <고성국의 라이브쇼>, <최희준의 왜?>는 교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를 붙이시겠지만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6개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TV조선이 말씀하신 대로 보

도·교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모두발언에서 저는 대단히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보·막말·편파 이 보도에 대해서 물론 TV조선의 잘못도 있지만 특정 집단, 단체의 편파라고 잘못된 민원 제기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다시 한 번 따져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제재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오보·막말·편파 심의 조치건수가 161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법정제재가 14건, 행정지도가 147건입니다. 그러면 법정제재는 아마 14건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잘못을 시인하실 것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대표께서 행정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 147건이 객관적으로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대표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14건과 147건에 대한 지적받은 구체적 내용을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요청한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질의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다음 질문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모든 질문을 포함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모두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TV조선이 시청률도 올라갔고 영향력도 강화됐고 그다음에 음부즈맨 제도도 실행에 옮기고 있고, 그래서 좋은 점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3년 전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백서를 봤는데 그 백서에서 제기된 내용이 저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 하면 3년이 지났는데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또 3년이 흘렀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너무 강력한 의지를 이번에는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심사계획에 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표님의 진정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한지 논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가 막말 공정성 문제는 제 명예를 걸고 제가 있는 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주차가 됐습니다만 3주에서는 딱 0건이 음부즈맨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지 않아도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제로로 막말과 편파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톨러런스 제로(Tolerance Zero) 정책으로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추가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불만 상위내역이 제일 먼저가 정보 문의이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별로 통계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시청자위원회가 전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방송연예과 교수님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대개 소외계층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의 의견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논의기구라고 할 때 구성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서 회의 진행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 심의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방송 심의실장**

- 시청자 위원 중에 방송연예 쪽 분야 전공하신 교수님은 실제로 탈북 관련 단체 활동을 하고 계셨고, 저희가 북한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분야별로 시청자의 의견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이나 공익성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회의에는 전무 이하 모든 본부장과 제작팀장들이 참석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편의 모든 시청자위원회가 지상파보다 굉장히 능동적인 회의이듯이 저희 TV조선도 어떠한 시청자위원회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청자위원회라고 자부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공익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책갈피 요정 또보>는 만화입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만화 프로그램입니다.

○ **심사위원**

- <시크릿췌췌 시즌9>도 만화지요?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만화 프로그램입니다.

○ **심사위원**

- <갤럭시 키즈>도 만화지요?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공익 프로그램 맞습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만화프로그램을 공익으로 분류한 데에는….

○ 심사위원

-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점수 매겨야 하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라서 공익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맞습니까? 그러면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도 공익 프로그램입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지역 생활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3488 오늘!>도 공익 프로그램입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그것은 지역성이 높은 프로그램이어서 공익으로 넣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다 넣으신 것입니까?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

- 그리고 마지막 하나 소수 시청자 그룹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 중에 어린이·청소년도 있고 다문화, 새터민도 있는데 장애인은 왜 1분도 계획에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362페이지입니다.

○ ㈜조선방송 편성책임자

- 저희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브라보 마이 라

이프>라고 장애인 기능올림픽 관련한 휴먼다큐 편성한 바 있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것도 100여일 이상 방송하기도 했습니다만 캠페인은 사실 편성시간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못 했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편 가지고는 비율이 안 나와서 일단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중요한 것이 장애인 대상이나 장애인 소재를 많이 다루는 것보다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방송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프로그램에 녹여서 보도프로그램의 꼭지로 한다든가 일반 프로그램에 구성을 집어넣어서 장애인 관련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장애인 대상 수화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이런 것들은 규제기관에서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접근 우수채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법인은 이 질의 과정에서 오늘 세 분의 심사위원이 추가질의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2분 정도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그 부분은 개선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지적해 주신 막말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예를 걸고 올해 공정한 방송으로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들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님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조선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조선방송 관계자 퇴장)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주)채널에이(채널A)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주)채널에이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채널에이 관계자 분들이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널에이 관계자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게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채널에이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채널에이 대표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채널A 대표 ○○○입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예, 채널에이 편성책임자 ○○○입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이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께서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대표님 맞습니까?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여 3분 정도의 모두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데 모두발언을 하실 때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편과 보도채널이 공존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 이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꼭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반갑습니다. 채널A 대표 ○○○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채널A는 2011년 개국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개국 초기부터 지상파와 케이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채롭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또 청소년 문제를 다룬 <아빠본색>, 올바른 외식문화를 선도해 온 <먹거리 X파일>, 평범한 시민과 사회 소외계층을 주인공으로 한 <두근두근 감동카메라 미사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북한 어린이의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현지에서 밀착 취재한 <특별취재 탈북>은 2014년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채널A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시청자의 꿈과 공정한 여론을 담는 방송사로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우선 품격을 담는 채널A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고품격 콘텐츠,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방송문화의 품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년 ○월 까지 콘텐츠 분야에 약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출연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격 제고 평가지표를 만들어 진행자와 출연자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여론을 담는 채널A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보도와 미래지향적인 의제 설정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양한 세대, 지역, 계층의 꿈을 담는 채널A가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성별, 연령, 주거지, 또 계층,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청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조화로운 장르 편성을 통해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신선한 포맷과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신규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해 젊은 시청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가는 채널A가 되겠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을 적극 제작·편성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외주제작사, 플랫폼사업자 등 방송시장 파트너들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년 ○분까지 확대하고, 재난방송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채널A는 지난해 퀄리티 저널리즘에 이어 올해에는 A 프라이드 콘텐츠 확산을 3대 경영방침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외부의 따끔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재승인 이후 더욱 발전해 나가는 채널A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종편과 보도채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종편과 보도채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시청자 분들도 여기에 계시는 심사위원장, 또 심사위원님께서 종편이 너무 뉴스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아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채널A를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보도기능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는 0% 정도 되는 시청시간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0% 정도, 0% 후반대 정도로 많은 보도 프로그램 또는 시사 프로그램들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올해는 아무래도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0~0% 정도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내년 또 향후 5년 동안의 저희 예정을 보면 한 0~0% 정도로 보도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종합편성채널이 뉴스채널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주)채널에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채널A의 품격을 말씀하셨으나 과거의 성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보·막말·편파와 관련된 심의조치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절대적으로 많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종편방송 평가항목 중에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에서도 채널A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조는 국민의 윤리적 감정의 존중, 언어 순화,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균형성,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이것과 관련하여 고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역대주주

- 심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심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리다면 방송을 처음 시작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에 경영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2012년도에 저희가 0원 이상의 적자가 났고 그다음 해 연도에 0원 이상의 적자가 나면서 적자폭을 점점 줄여 나가면서 지금은 영업이익은 적자이지만 그래도 경상이익을 조금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는 저희가 우리도 품격이 있는 방송을 해 보자는 노력을 사내에서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왔습니다만 그 제도적인 장치를 이행하는 우리 내부의 인력들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걸음마를 댄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익숙하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와 오보·막말 방지에 대한 우리 채널A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지난해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좀 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고쳐 나가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적 완비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매년 3가지 경영방침을 정해서 이를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대 경영방침 중 첫 번째가 퀄리티 저널리즘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역시 첫 번째가 채널A의 자긍심을 심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의미로 A 프라이드 콘텐츠의 확산을 우리 3대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설정한 채널A의 4대 비전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가 품격을 담은 채널A이고 두 번째가 공정하고 건전한 여론을 담은 채널A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채널A의 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고 오보와 막말을 모두 덜어내자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되는 채널A의 숙제이자 목표입니다. 제도적으로도 보완과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방송 전·후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방송 전에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심의실이 저희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심의실에 심의위원이 5명이었습니다만 이를 9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게이트키퍼 회의와 그 출연자 이력 검증 자문단을 만들어서 문제 있는 출연자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연자의 돌출, 편향 발언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터뷰제를 충분히 거쳐서 혹시라도 문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도 시청자 모니터링 요원이 원래 10명이었는데 이 시청자 모니터링 요원을 15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간 뒤에도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해서 문제점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정보도 에디터와 또 공정보도심의회 등을 통해서 재발방지 노력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이런 노력들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가지 심의 위반 항목을 뽑아서 새롭게 설정한 품격 제고 평가지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평가지표를 통해서 출연자나 또 진행자를 평가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출연자나 진행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채널A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에 대해서도 DB를 만들어서 부적절한 출연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기존에는 텍스트 형태의 리뷰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자 무슨 방송에서 어떤 출연자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교육기관….

○ 심사위원장

-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 주십시오.

○ (주)채널A이 대표자/주주

- 예. 마지막입니다만 영상코칭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영상을 틀어주고 보여주면서 이런 것은 왜 잘못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진행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하는 것들을 시작해서 지난해 말부터 그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

-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와 조치들을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사업을 하다가 방송사업을 하셨으니까 신문과 방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셨겠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신문은 언론자유, 또는 사업의 자유로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일도 없고 자유를 더 중시하지만 방송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재심사도 받아야 하고 저희들 질문에 답변도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자세는 되어 있겠지요?

○ (주)채널에이 대표자/총대주주

- 예.

○ 심사위원

- 이런 것들이 방송법의 제5조 공적책임과 제6조 공정성과 공익성 이런 조항을 통해서 방송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방송법의 일부 조항이지만 사실은 우리 방송계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방송인들은 이것을 전부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숙지가 되고 이것에 따를 때 저번 문제 또는 방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직원들에게 방송법 제5조, 제6조를 숙지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아까 공익프로그램을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공익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공익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성 관점에서 그것이 방송법 제5조, 제6조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총대주주

-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시청자 권익보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심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급하는 입장에서 잘 하려고 애를 쓰셔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혹은 시청자 입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와 소통하고 시청자 불만을 접수해서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채널A를 보면 시청자 불만이 해마다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건 정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불만사유 중 제일 큰 것이 방송내용입니다. 그런데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이 ○건, ○건 해서 거의 ○%인 경우도 있고 ○% 넘는 경우도 있고 3년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무슨 증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책임자 ○○○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자 불만 관련해서는 일단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응대를 하고 그다음에 메일이라든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일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청자 지적들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받아서 다시 시청자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지 않은 불만은 없습니다.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리를 못하지만 그렇게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청자 의견, 모든 시청자 분들의 말씀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에 정해진 대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한 번씩 시청자위원들을 모셔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매주 세 번째 금요일에 하는데 대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굉장히 꼼꼼한 부분들까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피드백을 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봐서 시청자위원회 내에 소위를 구성해서 시청자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호사이신 다른 한 분까지 해서 세 분이 소위를 만들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잘 개선됐는지를 좀 더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소위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대답을 하셨는데 방송내용이 최다 불만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건수라든가 비율이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는지, 실효성 있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시청자위원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청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청자평가원도 있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2가지 제도를 왜 따로 두시는지,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시청자위원님들은 저희가 법에 따라 추천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시청자평가원이라고 하시면 모니터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심사위원

- 보고서에 시청자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시청자평가원도 법적기구인데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위원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는데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배석한 실무자가 조금 더 상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 다른 답변으로....

○ 심사위원장

- 됐습니까?

○ 심사위원

- 예, 됐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님께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신문 의 방송겸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미디어법이 한창 입법의 논란 중에 있었는데 그때 정부 출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법 입법 후에 무려 약 30만개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종편PP의 역할이 지배적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종편PP사업자들도 여기에 적극 동조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채널A의 일자리 창출 관련 실적을 들여다봤더니 많이 노력은 했겠습니까만 그래도 여전히 미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서를 보면 현재 채널A와 자회사 인력까지 합해서 모두 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

- 이 0명은 창사했을 당시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의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 현재 인원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상의 여건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채널A의 전체적인 경쟁력도 갖추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재승인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예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심사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명 정도 새로운 추가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모든 프로그램을 채널A가 만들어 낸다면 더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 정도는 외주사들을 통해서 물론 기획은 우리 채널 A 내부에 기획인력들이나 또는 내부인력과 외주제작사에 있는 PD 제작하시는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기획을 하지만 그 ○% 정도 되는 프로그램은 외주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널A 내부의 우수한 인력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뿐만 아니라 외주를 하는 그러한 작은 프로덕션들과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또 그런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또 하나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고, 더불어 외주기획사들과도 또 외주제작사들과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업무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편성채널에서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신입기자, PD, 또 사원을 뽑고 있는 회사는 채널A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이야 능력이 다 검증된 PD들을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젊은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써서 이 친구들의 가능성을 보고 이 친구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자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신입기자들이나 또는 신입PD들을 뽑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비싸게 주고라도 외부에서 능력이 검증된 PD들을 스카우트 해 올까 하는 후회도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젊은 친구들을 키워 나감으로써 우리 회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면에서도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 30초 정도만 제가 추가로 질문이 아니고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보도 쪽에만 앞으로 다른 위원님 중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만 보도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기자 위주로 뽑다 보면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단순한 인력이라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점을 배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보도 프로그램 분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에 대표께서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각오와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도가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보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었고, 중편이라는 것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작하라는 뜻으로 중편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신청서 357페이지를 보면 2014년에 보도가 〇%였는데 2016년에는 〇%로 정말 〇〇로 줄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다른 분류기준으로 바꾼 눈속임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2차 보정자료 2014년 자료에 보면 그동안 <시사포커스>, <쾌도난마>, <이슈속으로>, <돌직구쇼>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보도 쪽에 있다가 2015년 오면 보도·교양으로 혼재가 됩니다. 그랬더니 2016년의 분류기준으로 가면 전부 교양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시사·논평 부분을 20 몇 퍼센트를 전부다 교양으로 분류해 놓고, 다시 말하면 보도 프로그램을 줄이라는 뜻은 보도 중심의 프로그램들인데 다른 장르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지 데이터상으로 분류만 바꿔 놓고 이렇게 신청서에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〇%에서 〇% 줄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류 방법 또 기준 내용 그리고 이렇게 단지 분류방법을 바꾸어서 보도를 줄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 〇〇〇입니다. 말씀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〇〇〇 대표 대신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나 시사 비율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대표께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보도와 특히 교양 장르의 구분에 대해서는 자로 그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과거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의 경위를 조금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방송법에는 보도·교양·오락 이렇게 3개 장르로 구분하고 있고, 거기에 조화로운 편성을 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르 구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방송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보도는 주로 취재보도, 논평,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도라 하고, 교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포트라든지 저희 논설, 해설 위원들이 출연해서 하는 그런 장르는 뉴스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도에는 꼭 뉴스라는 말을 넣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뉴스라는 말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분류에 대한 입장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뉴스를 다 달아 놓은 제목들은 보도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방송 중인 것들을 열거하면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이슈투데이>, <쾌도난마>, <안형환의 시사포커스>, <일요매거진>, <박상규의 이슈속으로>, <선데이모닝쇼>, <토요랭킹쇼> 이 모든 부분을 전부다 교양으로 한 것입니다. 제 질문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부분들은 그전 2014년에는 보도 부분으로 분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같은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이 신청서에 채널A는 보도를 〇%에서 〇%로 줄였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양을 줄였다, 보도를 어떻게 하겠다 그 기준은 방송사의

자율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도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줄여야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가 있고 보도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종편의 역할을 다 해 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교양으로 넘겨 놓고 보도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보기에는 분류기준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류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방송 패턴이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것입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쾌도난마>를 예로 드셨는데 2015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세부 분류 기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교양 프로그램 예시로 <쾌도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고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A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양 장르로 분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양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총량이 제일 많은 시간이 주시청시간입니다. 주시청시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은 7시 20분에서 8시 20분까지 종합뉴스 외에는 일절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시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시사·예능 장르로 구분이 되는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 외에는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 협력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승인 당시에 콘텐츠 투자계획이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널A의 이행실적이 미흡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재승인 조건의 이행여부는 재승인여부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가 매출액 대비로 2015년, 2016년 프로그램 수급 및 제작금액, 즉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를 계산해 보았는데 이 부분에서 타 종편사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콘텐츠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그동안 채널A가 계획한 것만큼 콘텐츠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제출할 때는 향후 매출액 추정치와 실제 매출액 사이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적자가 발

생해서 부득이하게 콘텐츠 투자를 100%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는 지금까지 콘텐츠 투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영업손실을 겪으면서도 매년 콘텐츠 투자비를 늘려 왔습니다. 2014년에는 0원 정도를 콘텐츠 투자에 썼고, '15년에는 0원, 또 '16년 작년에는 0원을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100% 이행은 못했지만 계획대비 콘텐츠 투자 이행률도 매년 높이면서 금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률도 매년 꾸준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0% 정도를 이행했고 '15년에는 0% 또 '16년에는 0%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향후 0년 동안에는 모두 저희가 0억원 가까운 콘텐츠 투자비용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생각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고 저희가 사실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매출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015년 정도만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했다면 아마도 2016년에 경상이익을 0원 이상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좀 더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당분간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지 않더라도 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자는 취지에서 콘텐츠 투자비용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출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꾸준히 콘텐츠 투자비용 금액 자체도 늘려나갈 것이고 이행률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최근에 경주지진처럼 재난보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을 종편에서도 열심히 편성하고 보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신청서 48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방송 편성 실시 내역입니다. 미 대사 테러범 구속, 재난방송입니다. 화성 엽총 난사 사건, 재난방송입니다. 지린성 버스 추락, 그다음에 더 옆에 가면 이런 것입니다. 북 잠수함 기지 이탈, 2016년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넘어가시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버스 화재, 미세먼지 이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재난보도라고 일단 대표님께서 수궁이 가시는지 스스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진이라든지 태풍 같은 직접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재난방송과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점검해 보니까 자막방송은 나가긴 나갔는데 방송자막 나가는 데까지 담당자의 확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지연 송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막 문안 역시 방통위가 제시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재난방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개선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대표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뒤에 질문하신 부분이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답변드리고 000 대표께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책임자 000입니다.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그렇게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더불어서 재난

보도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전파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거의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에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재난보도 관련해서는 재난상황이 예상되면 10분 내 TF를 꾸리고 30분 내 특보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저희가 선진국 사례를 많이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재난 같은 경우에 예방 그리고 2차 피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외국의 이런 재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초반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난을 폭넓게 정의해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막상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저희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신 지적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미국 대사 테러범 분석은 왜 재난인지 사실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버스에 한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국민이 외국에서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으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 본부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다면 향후에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향후 콘텐츠 투자비율 계산 시에도 매우 중요한 매출액이 연평균 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셨는데, 이는 시장상황에 비추어서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정에 대한 세부 근거는 무엇인지 또는 이러한 추정 또는 목표치에 미달했을 경우에 재무적인 어려움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출액을 계속해서 증가로 잡은 것은 역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 또 광고시장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0%라는 연간 매출 증대를 잡은 이유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A가 아직까지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보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보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아야겠다는 절박성이 저희 채널A 내부에서는 더 강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업수지도 개선되고 경상이익도 좋아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보도 프로그램들도 실질적으로 줄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띠를 통째로 버린 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PD들을 교육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벌써 제1기, 제2기 PD들이 자기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주시청시간대에 저희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고, 물론 외주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많습디만,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칸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워런님께셔도 아시다시피 비록 미디어 시장의 광고상황은 나빠지지만 저희가 좋은 예능 프로그램 또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거기에는 당연히 좋은 광고들이 따라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아무리 좋은 뉴스를 만들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광고가 잘 따라붙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젊은 채널A의 PD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나둘씩 만들어서 새로 론칭했던 <개밥주는 남자>라든지 또 저희 채널A가 처음부터 종편과 역사를 아마도 같이 하는 유일한 프로그램 일 텐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듯이, 그리고 또 요즘 역사와 관련되는 일들이 많이 이슈가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역사의 현장 속을 가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원동력을 찾아서 충분히 광고수익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광고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채널A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자본금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본금을 활용해서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매출 추정과 관련해서 저는 매출구조 계획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향후 매출계획에서 협찬매출 비중은 2017년 0%에서 2021년 기준 0%로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대신에 방송 프로그램 판매매출 비중을 '17년 0%에서 2021년 0%로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광고 의존도를 낮추는 측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계획으로 생각되는데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 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시고자 계획하셨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책임자 000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서 질문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광고시장에서 종편에 대한 평가는 광고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

다. 다시 말하면 아직 중편이 광고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시장 추세가 또 최근에 협찬 부분이 광고로 자연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매출이 저희가 추정했던 것이 결코 무리한 추정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경험치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판매매출을 늘려 잡은 것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보도나 시사가 아닌 일반 예능 장르에 대해서 콘텐츠 투자를 작년 하반기부터 예능프로그램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드라마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사·교양 장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판매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 드라마라든지 예능을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판매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또 이 부분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으로 추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다음은 방송 기술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국산 방송장비인 송출장비 도입은 ○○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에도 거의 미미하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와 함께 국산 방송장비 도입 활성화에 대한 채널A의 정책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이 부분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혹시 배석한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답변해 주시지요.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감사합니다.

○ (주)채널에이 경영기획팀장

- 채널A 경영기획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널A는 개국 이후 방송시설 구축 시 국산장비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이후 최근 재승인 이전 3년에도 상암DMC 제작센터를 구축하면서 국산장비를 적극 도입해 전체 투자금액 ○원 중 약 ○원 ○%의 도입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국산장비는 문자 발생기라든지 텔리시스템(Tally system), 텔리시스템(Tally system)은 카메라, VCR 등 사용 중임을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또 CMS라고 하는 콘텐츠 관리시스템, 스튜디오 조명장비 등 약 ○원의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방송시설은 정부에서도 적극 관심 있는 UHD 방송시설입니

다. 약 〇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있고 국산장비 도입을 저희가 〇% 수준으로 낮게 잡아놓았는데….

○ 심사위원

- 전체 방송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송출장비만 말씀드렸습니다.

○ ㈜채널에이 경영기획팀장

- 송출장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국내 업체에서 확인해 봤는데 국산 기술장비가 검증이 안 되어서 주저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저희가 장비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술력 검증을 통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에는 열한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제가 맡은 부분의 질의는 동반 상생 관련인데 아까 공익프로그램 연장해서 그 질문하고 상생은 뒤에 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편성하고 계신데 484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가출 여고생을 유혹하는 성인남성을 목격하게 된다면?’ 이 내용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아에게 폭언하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반응은?’ 이런 것들이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공익 프로그램이라고 편성실적을 넣기 위해 짜맞추기 식으로 넣으신 것이 아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지 대표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취대주주

-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대학교 1학년이 되는 딸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나름대로 우리 딸아이들에게 너희가 밖에 나가서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럴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 되어서 3월부터 대학을 가게 되는 아이에게도 술자리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심사위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불편하다고 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젠트맨이 간다>에서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는 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집에서 집사람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중학교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 열두 번째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동반성장 내지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외주제작이 거의 0%에 육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주제작사와의 관계에서 저작권의 공유라든지 수입 배분을 통한 동반상생의 개념이 필요할 텐데 질문드리자면 외주 관계에서 저작권 0% 이상 공유한다든지 수익 배분이 있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외주제작자와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런 간담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참석 인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로는 신청서에 보면 플랫폼사업자와 공동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상생모델 추진계획을 밝히시고 동반성장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사업자와 상생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일반PP 사업과의 동반성장 문제인데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약 170여개의 일반PP 매출액 중에 종편 4개사의 매출액이 2015년도 기준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 전체 매출 중에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조상 불평등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PP의 동반성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또 여기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책임자 000입니다. 크게 질문이 3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앞쪽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외주제작비율이 전체 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작권과 수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제작비를 산정할 때 권리관계에 따라서 제작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저희가 BBC와 공동제작한 다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그것을 저희가 대행해서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널A는 일단 상생을 위해서 '채널A 표준계약서'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권유하는 외주제작사의 공정성 조항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주제작사에 폭넓게 제작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공식 홈페이지 안에 기획안 공모 페이지를 만들어서 외주제작사 기획안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방영한 <구원의 밥상>, <실화극장 그날>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규 편성까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저도 편성책임자로서 항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홈페이지 접수나 이런 부분만으로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제작사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저희가 편성책임자와 제작본부장 그리고 제작본부의 주요 간부들이 다 참석해서 나온 사항을 정리해서 최대한 개선하고자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쭙 보신 것이 플랫폼사업자 협력 실적인데 그것은 저희 사업계획서 본문 601페이지에 저희가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플랫폼사업자와 새로운 수입 발굴을 위해서 위성사업자 스카이라이프에 VOD 공급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와 신규사업 활성화에 협력한 실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OTT사업자인 콘텐츠 연합 플랫폼 내 VOD 공급을 위한 플랫폼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전략에 협력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UHD 방송용 콘텐츠 제작 및 방영에 협력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유선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과 방영에 예를 들면 단일 SO인 서경방송과는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한 채널A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 본문에 적시해 놓은 이런 사례들이 질문하신 플랫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PP와의 상생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모가 큰 MPP와 일반 군소PP와 차별을 두지 않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관계로 저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홀드백(hold back) 기간도 3주에서 6개월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서 일반작은 PP들이 콘텐츠 생태계 내에서 성장하고 저희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채널A는 종편 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 ○○○에 약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PP 승인에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던 만큼 관련 기여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17년 이후에 콘텐츠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것 같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저희가 일단 콘텐츠 조합에 출자를 한 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 큰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 작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텐츠펀드에 저희 자금을 출자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출자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현재 이 펀드들이 운영단계에 있어서 여전히 투자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계획을 ○○ 않았습니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께 추가 질의나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필요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프로그램 분류방법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보충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왜 중요한가 하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도 프로그램의 편중이라고 한 것은 종편을 허가할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청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우리 콘텐츠 시장을 확대해서 글로벌 미디어로서 크라고 하는 어떤 지시, 지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말씀을 올리면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재승인 평가를 할 때 지금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배점이 대단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유로 이런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분류방법만 다르게 해서 현재 있는 그대로 가면서 물론 분류기준에 대해서 방송법이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를 ○%로 줄였다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보고 평가하라면 저희들이 아마 나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보도로 평가하던 부분을 지금은 교양으로 분류해 놓고 ‘○%를 ○%로 줄였기 때문에 평가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논란을 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를 ○%로 줄였다고 하는 이 근거에 대한 자료들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기획과 편성과 공익성에 대한 확보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편성비율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하고, 프로그램 편성·기획·제작에 대한 공익성 확보방안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분!

○ 심사위원

- 아까 재난방송 관련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마도 경영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무를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편성책임자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신청서의 474쪽을 보면 2014년에 재난방송 방송시간 실적은 ○분, 2015년에 ○분, 2016년에 ○분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과다하게 산출된 편성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89쪽과 481쪽을 보면 예를 들면 2015년에 방송내용이 아까 얼핏 다른 심사위원님이 언급 하셨습니다만 요양병원 화재사고, 화성 염총 난사사건, 지린성 버스 추락, 낚시배 돌고래호 전복, 천안 부탄가스공장 화재, 동아일보에서는 혹시 이런 아이템들을 재난보도로 기사를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건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의 분류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송일시와 시간을 보면 예를 들면 요양병원 화재사건 관련, 이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 뉴스 특보 중 한

아이템으로 보도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2015년 6월 7일 ○분, 또 같은 날 ○분으로 방송이 됐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성 열충 난사사건도 이것은 이상합니다. 2015년 7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분, 지린성 버스 추락 ○분, 제가 볼 때는 편성분류도 잘못됐고 방송시간도 너무 과다하게 산출된 것이다, 이것이 신청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심사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라든가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난감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책임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장**

- 미안하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저희가 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이런 부분을 잘 접해 놓는 것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이라는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여기에 낸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방영한 결과치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지린성 버스추락을 ○분 동안 보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특보 중 한 아이템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분, ○분으로 기록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볼 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저를 납득시킬 만한 명백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자료제출만 1건 요청하겠습니다. 252쪽 <표> 1-146을 보시면 방송내용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세 분류를 하셔서 통계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주)채널에이 편성책임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 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편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도전문PP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보도PP에는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우리 방송산업을 발전시키라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편에는 그런 역할 외에 방송산업, 즉 프로그램 제작산업, 콘텐츠 제작산업을 발전시키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편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보도 부분이 아니고 보도는 판매가 안 됩니다. 오락이나 교양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나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실력이 안 돼서 판매를 못 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실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2014년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14년 12월에 중국의 후난 위성TV와 같이 공동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중국 버전으로 제작해서 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청률 1%면 50만명 정도가 봤다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중국에서는 시청률 1%라면 1,200만 정도가 본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TOP5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광전총국에서 인민들을 몰래카메라로 현혹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정을 해서 5, 6회 정도 방송하다가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개밥 주는 남자>라든지 <머슴아들>이라든지 <아내가 빨났다>, <또 오늘부터 대학생> 같은 프로그램들, 또 <불멸의 국가대표> 이런 프로그램들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포맷 판매회사들이 저희와 계약을 맺어서 이런 것을 팔아볼 수 있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직까지는 외국의 다른...

○ 심사위원장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또 마무리 발언을 대표자님께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짧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포맷을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PD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는 이상으로 끝을 내고 모든 심사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법인은 질의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2건입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 대표님께서 2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하나하나한 소리도 있을 것 같아서 빼놓고 제가 이번이 사실 세 번째입니다. 처음 채널A를 허가받을 때 처음에 여기 왔었고, 또 2014년 재승인 때 왔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오보·막말이라든지 또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방송의 경우에도 저희가 저희 스스로도 고쳐나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훨씬 더 발전하는 그런 채널A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려하셨던 자료의 일부 재난방송이라든지 분류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님들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과다와 관련해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이 뉴스였기 때문에 과다했던 것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뉴스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뉴스를 공급해 보려고 했던 노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같은 경우는 뉴스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보도본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작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신문들을 잘 안 보시니까 그렇다고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의미 있는 신문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등 모든 신문들에 난 소개할만한 기사들을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도 처음 저희가 시도를 했고 사실 지금은 그런 토크쇼가 만연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이 <레도난마>입니다. 채널A <레도난마>가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고, 또 <뉴스 TOP10> 같은 경우도 10가지 뉴스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는 그런 장르의 뉴스 프로그램도 저희가 한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은 모든 방송사들이 다 같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뉴스가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점점 더 저희 스스로가 예능 또는 교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 있는, 또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프로그램에서의 공익성, 공정성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공익성, 공정성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 기본적으로 <먹거리X파일>이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것도 착한 콘셉트를 도입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에 채널A가 그나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는 그런 기초를 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매출을 많이 올리

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 심사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주)채널에이 대표자/최대주주**

- 감사합니다.

(주)채널에이 관계자 퇴장)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라. (주)와이티엔(YTN)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주)와이티엔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이티엔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이티엔 관계자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게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와이티엔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와이티엔 대표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은 편성책임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와이티엔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서 오신 ○○○ 님 맞습니까?

○ ㈜와이티엔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께서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대표님 맞습니까?

○ ㈜와이티엔 대표자

-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법인 대표께서 재승인과 관련하여 3분 정도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안녕하십니까? YTN 사장 ○○○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YTN 재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5년 대한민국 최초 24시간 뉴스전문채널로 개국한 YTN은 지난 22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YTN은 정확하고 빠른 뉴스,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뉴스라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책임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24시간 생방송 뉴스를 이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평가해 주신 덕분에 YTN은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대학 언론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되는 영예를 갖기도 했습니다. 경영면에서도 YTN은 장기화하고 있는 저성장 구조와 중편 출범에 따른 광고시장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0원을 돌파하면서 2년간 이어졌던 적자 고리를 끊고 흑자경영에 복귀했습니다. YTN CEO인 저는 '좋은 방송 없이 좋은 경영 없고 좋은 경영 없이 좋은 방송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환경이었지만 품격을 지키면서 국민 경제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국민신문고>와 <강소기업이 힘이다>를 비롯해 <원포인트 생활상식>,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등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YTN은 앞으로도 공정한 보도, 차별화되고 깊이 있는 뉴스 전달로 시청자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뉴스 채널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아가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시청자들이 손쉽게 YTN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YTN은 지난 2012년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님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배려 덕택으로 5년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간 5년 동안 YTN은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 YTN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듭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주)와이티엔의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보도전문PP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편과는 달리 보도PP는 보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덕목은 방송법 제5조의 민주적 여론 형성에의 기여 그리고 방송법 제6조의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또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 제공, 또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균형성의 유지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겠지만 그간에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공정보도를 위한 내부 장치 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문제로 내부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이행의지를 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심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 9년 전에 저희들이 아픈 상처도 있었고 그것은 보도 관련보다 대표자 임명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위에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보도의 공정성 이런 면에서 공정방송위원회 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된 전부 10인입니다. 노조 5명, 사측 5명 10명으로 해서 꼭 매년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조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사측에서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이 꼭 공정방송이나 저희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노사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어디에 내놔도 품격 있는 그런 방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두 번째 시청자 권익 보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해서 1일 모니터요원 평가제도도 가지고 계시고, 시청자 불만처리 제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련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2015년 3월에 대표로 취임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료가 모니터 요원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지만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보는 그것을 저희들이 늘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기고, 매주 제가 참석하는 회의가 월·수·금 3번인데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모니터요원들이 시청자센터장이 보고 하는데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모니터요원들이 준 모니터 보고서는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에게도 이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2년 사이에 많이 고쳐나갔습니다. 제가 모니터요원들도 계속..., 저희들이 실제로 역으로 모니터 체크하면서 그분들이 혹시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는 그것도 과감히 교체하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불만처리 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의팀도 있고 고충처리인 제도도 있고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도 있고 방송심의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 여기저기 다 관여해서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늘어놓았는데 결국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양하게 늘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와이티엔 대표자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너무 이것이 흠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자와 이것이 흠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씩 성질들이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일반 시청자 불만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또 답을 해 주고, 실무자들도 조금 분담을 해서 나누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경영의 책임을 맡고 계신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여에 관한 문제인데, YTN이 보도전문PP로서 그간 뉴스영역에서의 그 역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는 경영진은 물론이고 언론자유와 공정성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YTN 노조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서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 사장의 임명반대에 투쟁하다가 무리하게 해고된 기자들의 이른바 낭인생활이 벌써 8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언론 관련 학계나 시민단체 그리고 동종업계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해직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와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

았으니 YTN 경영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현재 사회적 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에 앞서서 술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YTN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절절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2015년 3월 말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명인데 정규직 직원이 ○명입니다. ○명 전원을 1명도 예외없이 제가 면담을 다 했습니다. 면담하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YTN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다. 그러나 제가 대표자로서 해고된 ○명 사원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인간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공식적인 구제수단은 없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어떤 결단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국회에서 해직자 문제가 법률 제정도 논의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 이런 것으로 봐서 이쪽저쪽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또 구성원들 여러 가지 생각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이 저한테 한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제가 고민해 가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YTN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가면서 우리 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면서 해결의 방도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제작 협력에 관한 질문을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도전문PP라서 종편과 다른 점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외주제작비율이 대부분의 경우 ○%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연도별 제작계획도 외주제작비율은 ○%에서 ○% 정도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프로그램 수급하고 제작을 위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콘텐츠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이지요. 그런 금액이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울러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실제로 방송이 ○% 되고 ○%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인데 제가 취임해서 한 것이 <국민신문고>, <강소기업이 힘이다>, 그다음에 저희가 5종 세트도 명명했지만 <원포인트 생활상식>,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재미있는 낱말풀이>, <오늘의 여행>, <오늘의 건강> 여기에 한 ○원이 들었습니다. ○원이 들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투입을 하면서 상당히 노조와도 마찰이 많았고 여러 직원들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저희가 작년에 ○년 연속 ○○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적자를 끊고 하는데 일부 반발하는 직원들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에 무엇 때문에 돈을 쓰느냐? 저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결국에 방송의 힘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우리가 시청자들에 대한 보답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송이 그저 그 딱딱한 뉴스로만 하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까지는 어려우면서 우선 적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지금은 저희가 실제로 시장 상황이나 돈 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 없이는 방송의 발전은 없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하여튼 역력이 되는 대로 어떻게 되든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퍼센티지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최근에 경주지진이 일어나면서 재난방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도 전문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방송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은 사례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주지진 이후에 다양한 재난방송을 실시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과연 경주지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재난방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 변화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최근 방통위가 점점해 보니까 이 자막은 자동생성이 되는데 시스템은 있지만 실제로 자막을 노출하는 데 있어 담당자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노출되는데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있거나 또 이런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하실 의향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위원님, 재난방송 말씀하셨지만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재난방송에서는 YTN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이다, 그런 면에서 방통위의 여러 가지 지침을 가지고 잘 따르고 있고, 재난방송 여러 가지 면에서 일부러 격려해 주시려고 방통위원장님도 몇 번이나 오셨습니다. 실제로 이 재난방송의 힘은 시청자들의 제보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작년 4월인가, 익산에 새벽 4시 10분에 지진이 났는데 4시 10분에서 4시 20분 사이에 저희 YTN에 영상과 제보가 들어온 것이 100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국 이야기 들어보면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저희가 재난을 비롯한 제보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막 이런 문제는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 문제보다는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외부에서 칭찬은 받고 있지만 자만하지 않고 더 완벽한 여러 가지 재난방송 시스템을 갖추도록 꾸준히 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다음에는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이어서 경영 그리고 투자 부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앞선 질의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주셨지만 201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손실규모는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본으로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는데 여러 가지 사업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치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년까지 영업이익을 약 ○원에서 ○원까지 내겠다고 계획서에 작성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근거나 혹은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료를 보시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매출을 ○원을 달성했는데 저희 5개년 계획을 보면 앞으로 올해부터 3개년은 ○원대이고 4개년, 5개년차에 ○원을 넘었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2015년 3월 말에 방송국에 오기 전에 은행에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라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채승인받을 때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가 저희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다,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송구스럽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숫자는 정확해야 하고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국민들한테 신뢰를 지키듯이 어떤 승인받을 때 대강 ‘매년 10% 성장’ 이런 것으로 엉터리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2017년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 지금 광고시장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원을 한 것은 저희 YTN으로 봐서는 2년 연속 적자를 하고 2017년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적자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저희가 4년 연속되면 관리종목으로 들어가고, 5년째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들어가면 70%가 상장폐지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정말 짭뽕 먹은 힘까지 다 쏟아 부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겨우 흑자로 돌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선 이번에 5개년 계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투자할 것도 많은데 이제 YTN이 여러 가지 보도도 보도지만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YTN이 23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누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누진제를 갖고 있는 방송이 MBC와 연합뉴스TV와 YTN인데 MBC는 아시다시피 자산이 많은 방송국입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나 연합뉴스TV는 정부에서 연간 ○원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YTN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언론사는 10년, 20년 전에 다 여러 가지 퇴직금누진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직금누진제에 쏟는 것이 올해 ○원 되고 매년 ○원씩 늘어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지금 노조와 우리 직원들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YTN 미래는 없다. 이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매출도 잡고 상당히 미미한 실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것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다시 적자의 길로는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매출도 올리고 그다음에 부대사업을 저희가 남산타워가 YTN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암동 본사 자체 사옥이 있는데 거기에 9개 층이 공

실이 있던 것이 작년 연말로 전부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곁들이면서 여러 가지 퇴직금누진제 이런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 YTN의 경영은 상당히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 숫자가 조금 미미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고, 저희들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가면서 탄탄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경영계획과 관련해서 매출에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 제출하신 신청서 향후 5년간 매출 추정계획을 살펴보면 방송매출 비중은 ○○년 ○%에서 ○년 기준 ○%로 감소하는 대신에 방송사업 이외 기타사업, 이것이 아마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각되는데 이 비중이 ○%에서 ○%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수익 다변화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모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과 같은 방송사업 본연의 전략적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을 개선해서 이러한 매출구조 개선이나 수익 다변화 과정 측면에 대응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익구조를 보면 광고협찬이 ○이면 임대가 ○, 기타 수익이 ○입니다. ○:○:○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채널을 3개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언스와 웨더&라이프 날씨방송인데 그것을 라이프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하는 YTN 플러스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라이프나 이런 데서 부대수익을 올리고 관련 업종에서 수익을 올릴 여력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타워가 ○원 들여서 완전히 정비해서 남산타워는 이제 천지개벽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암동 본사와 저희가 광고협찬 열심히 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웨더&라이프 방송을 라이프로 바꿔서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라이프 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대수익 사업모델을 살려가면서 저희가 계열회사에 조금 어렵지만 투자해서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겠습니다. 제가 제 추측에 한 3년 후면 나름대로 자급자족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계열사로 지상파지만 DMB와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DMB 라디오가 자본잠식률이 ○%,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다 해서 DMB 라디오도 작년 전체 흑자를 내서 2016년은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YTN이 본사와 계열사 3개가 전부 흑자를 시현한 의미 있는 해였다. 그래서 이제 흑자를 그 라디오나 DMB, 아까 사이언스나 웨더&라이프 이런 방송도 이제는 자급자족하는 흑자구조를 일단 미미하지만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바꿔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방송분야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방송시설 투자실적에 비해서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은 굉장

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UHD나 가상현실과 같은 신규 미디어 도입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YTN의 대응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결국은 UHD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튼튼한 지상파도 제가 5월 말 정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상파가 그쪽으로 가면 저희들도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도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그때 가서 서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 담당자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뒤쳐지지 않고 해 나갈까 하는 것이 또 다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방향은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열심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이게 계획대비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는 계획은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이러한 저조한 집행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와이티엔 대표자

-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여러 가지 숫자 조금 저희들이 진실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연구개발 투자나 이런 데에 실제로 적자를 면한다는데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내내 한 것이 '비정상적 정상화'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YTN은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 나가자' 그래서 연구개발투자 이런 것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갖고 실무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 또 저희가 지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뒤쳐지지 않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하나 투자할 것은 투자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또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간 YTN이 한국의 보도전문채널을 개척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 오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경영이 악화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연합뉴스TV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반대

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저간에 연합뉴스TV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YTN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기업 광고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데 최근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광고를 많이 끌어들이려면 혹시나 대기업의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 그런 것을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 꺼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에 대한 대표님의 자세나 또 YTN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한번 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서도 듣고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문제나 비리가 났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매체가 다 보도하고 저희가 거기에 소홀했다면 아까 공방위가 월 분기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 늘 언제든지 공방위가 요구하면 그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YTN은 한 10여년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당히 그런 것을 겪어 가면서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방송국이 YTN이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들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 적어도 YTN에서 어떤 광고와 연계해서 언론매체 보도에 소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잘 새겨들어서 제가 보도국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 생생하게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 **㈜와이티엔 대표자**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시청자위원회 명단을 보면 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이렇게 다 모셔 놓았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끔 내용 선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와이티엔 대표자**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청자위원회는 개략적인 것이라 직접 제가 참석하지 않고 오늘 여기 참석한 ○○○ 보도본부장이 직접 참여하니까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 본부장이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발언해 주십시오.

○ **㈜와이티엔 편성책임자**

- YTN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월 한 차례 열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 시청자위원회는 통상 거의 대부분 나오십니다. 거기에는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그다음에 그날 다룰 주제에 관련된 부서장, 그리고 기술국장, 그리고 시청자센터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달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부에 개진하고 후반부에는 그 외에도 평소에 YTN의 방송과 공정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상의 문제점, 또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자유 의견개진, 이렇게 2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모두 녹화 기록되어서 우리가 시청자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그리고 녹취록은 발언 전체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보도국과 관련된 전체 부서에 배포가 되고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문제가 된 내용이나 지적된 내용들은 수정 또는 조치를 취한 후에 아니면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까지 해서 모든 시청자위원한테 답변하고 다음 번 회의 때 조치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위원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올라오는 전문 모니터요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면 그 시청자위원회에 대표자님께서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 의견 개진’ 해서 시청자위원님들 간담회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치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했다라고 요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 운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청자위원회에 여러 가지 시청자 불만이라든가 또 정책부서의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심의를 올리셔서 논의해야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저는 시청자위원회에 참석은 하지 않지만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시청자위원회입니다.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고 굉장히 서로 무게를 갖고 사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부분을 한다면 자료를 주고 시청자위원님들이 제가 한 번씩 식사하면서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더 자주 참석하도록 하고, 그러나 제가 참석은 안 해도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고 그 시청자위원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면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각 부서의 회의 때나 소관부서장을 직접 불러서 “이것은 수정해라” 이래서 저희가 시청자위원님들에게 가장 칭찬을 받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적한 것이 어떤 것은 오전 회의했는데 오후에 바로 바꾸고 이런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제가 가능한 한 조정해서 좀 더 자주 참석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더 생생한 여러 가지 그것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시청자위원회에 대표님이 참여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여쭙 봐도 될까요?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제가 1년에 두 번 하고, 그런데 제가 끝까지 있지는 않고 오히려 시청자위원님들이 제가 있으면 사장은 가라고 자기들 편하게 일하신다고 해서 제가 모두발언하고 조금 있다가 나가는데 이제는 실제로 시청자위원님께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제가 가능한 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 사장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100%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관계자 되시는 분이 확인해 보셔서 참여하는 것이 방송법 규정에 나와 있다, 아니면 참여 안 해도 된다는 그 여부를 나중에 추가자료로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 아마 재무 쪽이나 금융권에서 계시다가 오셔서 YTN의 경영이나 재정상태를 잘 과거부터 검토하신 결과, 상당히 보수적으로 매출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발언을 계속 하셨는데 과거에 재승인 과정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5년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YTN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현 사장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재승인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또 방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내에서 공정방송협약 제5조제6항 해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예.

○ 심사위원

-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편집 위원회에 공추위 위원장을 참석시키는 것에 대한 의향은 없으신지, 편집위원회가 사내 기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또 사내 구성원이 투명한 감시체계를 위해서 참석을 한다는데 이것을 그분이 와서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한다는데 편집위원회를 참석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도한 또는 아직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거의 묵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공추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수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표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 ㈜와이티엔 대표자

- 첫 번째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이번에 재승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을 많이 나무란 것이 “어떤 경우도 거짓말시키지 마라. 방송이나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 방송하면서 정직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꾸짖으면서 우리가 이러면 되느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5년 지난번에 승인 받을 때 관행으로 매년 11% 성장, 10% 성장 그런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것 아니냐?”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 그 시대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 지금 종편이 생기고 여러 가지 방송 경쟁도 하고 방송에서 모바일로 가면서 경기가 어려우면 실제로 광고주들이,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광고에 제발 시청자를 만나면 그 광고 좀 그만 보게 해 달라 하는 기업이 작년 연말부터 매출이 ○~○% 떨어져서 안 나옵니다. 정말 그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더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진실되지 못한 보고서를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후자 문제는 제가 실제로 방송 관계는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거의 위임을 해 놓고 큰 흐름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정 방송 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방송이 신속·정확해야 하지만 저는 신속보다는 정확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도 중간중간 편집회의에 공방위 간사가 참여하느냐,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집회의 할 때는 자유분방한 토론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눈치를 본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조율해서 노사 공방위원과 그것은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지난주 2월 6일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사공정방송위원회 10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매주 금요일 날 그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은 제가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 심사위원

- ○○○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명색이 보도전문PP인데도 불구하고 JTBC나 TV조선이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특종 같은 것이라도 하나 하셨는지, 또 이런 농단 사태를 막는데 또는 제대로 파헤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주)와이티엔 편성책임자

- 저희가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와 관련해서 최초 보도와 처음에 이슈를 제기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2개 방송사에 비해서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초 인지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초기에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컨대 사내외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TF팀을 가동하면서 예컨대 장관 내정자였던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그다음에 해외 문제, 해외 특파원까지 파견해서 몇몇 가지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를 담아낼 수 있는 특종들은 올렸습니다, 최초 보도는 늦었지만. 다만, 저희가 이번 사건을 다룰 때도 역시 선정적인 보도 보다는 하여튼 팩트, 그리고 그 팩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 여기에 치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물론 이것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신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 외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법인은 질의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 그것을 오늘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 대표님 2분 정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와이티엔 대표자

- 존경하는 심사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충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들은 더 나은 YTN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고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YTN 위상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나은 뉴스전문채널,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YTN이 되기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실천에 옮기고 필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이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YTN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한국의 대표 뉴스채널이 될 수 있도록 재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와이티엔 관계자 퇴장)

【16시 28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마. (주)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주)연합뉴스티브이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연합뉴스티브이 관계자 분들이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 관계자 입장)

바쁘신 일정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접 영접하는 게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연합뉴스티브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이신 ○○○님 맞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께서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대표님 맞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사장 ○○○입니다. 의견청취 진행에 앞서 연합뉴스TV 대표로서 심사위원 분들께 간략히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는 방통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재승인 조건의 이행기준이 아닌 연합뉴스TV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연합뉴스TV는 2015년 8월부터 15개월 연속 보도채널 시청률 1위, 2016년 연간 시청률 보도채널 1위 그리고 12월에는 개국 이후 월간 최고 시청률 ○%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 개국 이후 최초로 흑자를 달성하며 안정적이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보도채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면에는 인력구조의 문제, 장애인방송 실적과 교육실적, 심의제재 등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사위원들께서 느끼시는 부족함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채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도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주)연합뉴스티브이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PP에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방송법 제5조의 민주적 여론 형성에의 기여 그리고 방송법 제6조에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균형성의 유지 등등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받는 그 자체를 시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여 그것 때문에 특히 정치적 보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노사 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여 최근에 그런 사태에서 연합뉴스가 명색이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편보다도 못한 보도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연합뉴스가 국가 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부의 구독료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1대 주주로서 운영하는 회사이지 연합뉴스로부터 직접적인 뉴스 편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가 저희들이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들을 타 신문 방송사들이 제공받듯이 똑같이 받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정 농단사태와 관련해서 이 보도의 출발이 일부 언론에서 제보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그 제보자를 찾고 추적해 나가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 잡을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초창기 보도를 쫓아나가는데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연합뉴스 측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담당 에디터들 이야기는 초창기 보도에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하는데 상당 부분이 확인 안 되거나 어떤 것은 오보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없었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의 시청률을 비교해서 취재성과라는 것을 따지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편 채널들은 보도채널보다는 다소 흥미적인 그런 요소의 대화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도채널은 특성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절제된 언어로 균형 잡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청률을 의식한 그런 선정적인 보도를 할 수 없었고, 특히 내부 구성원에서 공정보도위원회에서 저희 연합뉴스TV가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노조에서나 이런 데서 문제 삼거나 마찰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에서도 견고하게 저희들이 경쟁보도채널을 이기고 시청률 1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종이라는 것이 보도 기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느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이 어려웠으나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금방 따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계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보자들이 연합뉴스TV를 또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늘 제보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두 번째 시청자 권익보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시청자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청자 불만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고서 자체에 시청자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흐름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센터의 구성 및 업무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와의 업무연결, 그다음에 시청자센터 근무 직원 수, 역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편성책임을 맡고 있는 ○○○ 팀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발언해 주십시오.

○ **㉞연합뉴스티브이 보도국 편성팀장**

- 연합뉴스TV 편성팀장 ○○○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에서는 사실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청자들의 문의전화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방송사와 다르게 시청자센터가 보도국 건물 층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오는 전화를 바로바로 담당 기자나 담당 PD 쪽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든지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센터에서 다 기록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그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㉞연합뉴스티브이 보도국 편성팀장**

- 상시로 근무하는 직원은 ○명이고 팀장까지 하면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관련해서 심의실도 따로 있습니까?

○ **㉞연합뉴스티브이 보도국 편성팀장**

- 예, 심의실도 따로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직원을 따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 **㉞연합뉴스티브이 보도국 편성팀장**

- 팀장 역할하신 분이 겸임을 하고 계신 것이고, 시청자센터는 팀장은 다르고 그중 직원 10명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심사위원**

- 심의실과 시청자센터와 따로 되어 있지만 직원 하나는 양쪽에 다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㉞연합뉴스티브이 보도국 편성팀장**

- 예, 맞습니다. 기구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면 지난 기간 동안 기획·편성 실적이 어떠했고, 또 향후 5년간 기획·편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혹은 사업에 대한 계획표가 필요한데 지금 제출하신 신청서 147페이지를 보면 시사·교양, 정보성 프로그램, 심층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기해 놓고 153페이지를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다는 장르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5년 계획 156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심층대담·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도전문채널 편성 구현'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똑같이 보도·시사·교양을 장르로 나눠 놓고 시간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최대주주

- 구체적인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해하신다면 편성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발언해 주십시오.

○ ㈜연합뉴스티브이 보도국 편성팀장

- 콘텐츠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채널 특성상 뉴스 관련 보도 프로그램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시사·교양 정보프로그램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보면 뉴스와 콘텐츠 비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도채널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뉴스였고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를 생방송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스라는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적하신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프로그램 부분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30분 정도 편성분량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연중기획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클릭! 베스트컷>이라고 연합뉴스TV에서 발행된 사진을 가지고 만드는 교양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미니다큐 오늘>, 그다음에 <여행과 풍경>, <성공다큐-정상에 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보시기 좋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3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주시고 동시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평가내릴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평가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관되어서 지금 대략 프로그램이 10% 정도 차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외부 시민단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본 것인데 연합뉴스TV의 <뉴스 1번지>, <뉴스포커스> 이런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여러 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혹시 이 프로그램을 10% 하고 있는데 10%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㉞)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이런 TV프로그램에 나오시는 패널들이 대충 여야 또는 패널들의 성향을 저희들이 쪽 지속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으로 의견이 흐르지 않도록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들께서는 자기와 생각이 같거나 또는 '저분은 생각이 다른데 들을만한 내용이 있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보시는 시청자들의 생각을 넓혀 주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패널 편성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방금 배석자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네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제작 협력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여기에 쓰신 사업계획서 170페이지부터 보시면 외주제작비율이 2016년도까지는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대인데 낮은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5년 프로그램 수급 및 제작 부문 연간 금액, 즉 콘텐츠와 관련된 계획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2016년 실적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콘텐츠 투자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첨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㉞)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먼저 외주제작과 관련해서 외주제작 구매비율이 낮은 이유는 뉴스편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정치·경제·재난·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일단 언론의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채널로서 그런 것에 편성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주제작 구매비율이 계획대로 이행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외주제작 및 구매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콘텐츠 투자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 목표대로 이루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2014년은 약 ○원으로 계획 대비 초과달성했고 2015년 ○원, 2016년은 ○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직업방송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총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는 연합뉴스TV는 선거, 스포츠 행사 등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상저작권을 확보하는 등 콘텐츠 질 향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해외 재난이 있을 경우 지진이나 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 등에도 현장에 기자를 보내서 취재를 하는 등 그런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그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우수한 외주프로그램 제작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최근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재난방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도 재난방송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방통위 점검들을 보면 중편을 포함해서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로 지진 통보문을 자막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승인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지연이 되거나 또 자막 문안을 준비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개선 실적, 또 개선된 내용,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저희는 항상 뉴스 특보 비상 편성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 자막 송출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단 스크롤 자막을 통해 기상특보 등을 수시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poop, Tving, 에브리온TV, IPTV 등 N스크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인터넷포털, 그다음에 역사 및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도 연합뉴스TV가 상시 고정적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DID, 그리고 전광판 등 옥외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재난재해 뉴스특보 외에도 재난재해 예방프로그램도 수시로 방영해서 주의사항을 인지시키고 재난재해 발생 시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국민들이 기억에 남는 재난예방 및 재난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를 보였는데 향후에는 ○○○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사실상 그동안 적자를 많이 면치 못한 것은 업력이 짧고 사실 마케팅 능력 부족 그다음에

정부 광고협찬이나 이런 실적들이 미비한 것 등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처음에 콘텐츠를 높여서 시청률을 높이면 모든 것이 다 따라 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들어가도 심야에 유명 진행자를 모셔서 저희들이 투입해서 정치 관련 토크쇼를 하는 등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5년 8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보도채널 1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였는데 그것을 2015년에 ○○○로 줄이고, 2016년에는 ○○○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수신료도 올라가고 광고주들도 과거 경쟁보도채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광고를 덜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의 대등하게 주려고 하는 등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지방에 기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부처나 공기업의 협찬이나 홍보광고 같은 것은 잘 못 가져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한 홍보마케팅을 늘리기 위해서 인력을 더 채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경영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신청서에 보면 향후 5개년 사업추진 계획 기본전략 부분에서 기존 매출 경계를 벗어난 신사업 발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지 대표적인 부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신사업 발굴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비근하게 이미 우리가 신사업을 시작한 것이 직업방송TV의 편성권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아냈는데, 저희들이 받아낸 이후로 시청률이 ○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하는 윈윈효과 그다음에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서 연합뉴스TV에도 윈윈효과를 거두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연합미디어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력들을 활용한 것이 저희 연합뉴스TV가 흑자를 이루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TV가 당장 구체적인 신사업은 뚜렷하게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연합뉴스TV 말고 연합뉴스가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합뉴스TV의 콘텐츠 해외 판매망을 넓혀나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고 그 외에 다른 콘텐츠,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늘 그런 외주제작 같은 것을 자체 제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방송의 편성 경영과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의 질의인데 첫 번째 질의

는 편성책임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모회사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연합뉴스TV와는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승인조건에 의하면 연합뉴스TV뉴스는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뉴스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솔직히 말하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또 사내망 공동이용이라든가, 심지어는 연합뉴스 인력의 복귀 등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조치하고 운영하는지 편성책임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편성책임자

- 지금 연합뉴스TV는 일체 그런 외부에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합뉴스에도 연합뉴스TV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양사가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뿐만 아니라 많은 계약자들이 있고 그런 계약자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양사가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심의 방송과 텍스트 위주의 뉴스통신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같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도 그런 작은 규모로 할 수 있으려면 연합뉴스의 콘텐츠를 저희가 적극 방송의 언어로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뜻으로 저희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로부터 인력을 교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합뉴스도 상당히 큰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인력을 돌린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지난해부터는 저희 자체적인 연합뉴스TV의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습을 뽑았고 또 올해도 수습과 경력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독자적인 그런 뉴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를 같이 겸직하고 계시지요?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독자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방송은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뉴스의 대표 그리고 연합뉴스TV의 대표 이것을 같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표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지금 기존의 신문미디어들이 종편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 JTBC, MBN, 채널A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독립적인 다른 분들을 별도로 대표로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회장 직제를 통해서 그 미디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통일성은 기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연합뉴스는 아시다시피 공익적인 보도연론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것이 양사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다들 경우 연합뉴스 초창기니까 연합뉴스TV에는 사실 데스크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런 인력들을 어디에서 뽑아올 수도 없고, 그러면 연합뉴스에서 파견을 보내야 되는데 다들 방송이 어려우니까 파견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럴 경우에 인사를 통해서 파견을 보내려면 그런 겸직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연합뉴스TV가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지방네트워크나 연합뉴스 특파원들이 보도를 해 오는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 뉴스에서는 전 세계 연합뉴스 특파원들이 보도하는 것들을 일반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는 다 실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뉴스 유저들이 그것을 볼 수 있지만 그 가까운 자료들을 연합뉴스TV가 북한뉴스, 지방뉴스, 세계특파원 뉴스들을 골고루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공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TV 전문가 따로 있고, 또 TV에 업무 상무가 있습니다. 이쪽 두 분들은 TV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의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대행료를 하는데 대행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러면 타 일반적인 대행료 관례를 서로 제시하면서 타협을 하기도 하고, 전혀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사 임원 간의 갈등이 있을 정도로 저희들은 아주 독립적이고 서로 각사의 이익을 다 하는 것이 배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배경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니까 1년에 국가로부터 물론 법적인 근거 하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수백억원이라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 통과할 때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법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인식은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연합뉴스TV 대표로 계신다면 그렇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연합뉴스TV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영향권에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향후라도 연합뉴스TV

가 경영의 안정을 이룬다면 이러한 충정어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서 두 법인이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대표 하에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방송기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산 방송장비 도입비율을 10%로 유지하겠다는 이유와 함께 향후 UHD에 대한 투자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방송기술팀장께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발언해 주십시오.

○ ㈜연합뉴스티브이 방송기술팀장

- 방송기술팀장을 맡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국산장비 도입실적을 투자액의 ○%로 잡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액의 ○%를 잡아 보니까 투자는 하지만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업체를 통해 찾아도 장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15년과 '16년에 걸쳐 ○○○를 ○대 구매했는데 국산장비를 쓰기 위해 국산에서 개발된 기술을 데모도 하고 테스트해 봤지만 외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외산을 사게 됐습니다. 이런 계획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로 해서는 저희가 실적을 맞출 수가 없어서 올해 '17년 이후부터는 투자액에 ○%만 잡았습니다. ○% 정도 잡아도 외산을 대체해서 국산을 도입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지 약간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UHD 쪽은 공중파가 올해 말부터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공중파에 맞춰서 HD가 공중파가 시작하고 10년 뒤에 저희 케이블PP들이 HD를 시작했습니다. UHD도 올해 들어서 9월부터 공중파에서 자체 송출하게 되면 그 기술들과 콘텐츠들이 성립되는 것은 10년 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보시면 ○○년에 중계차를 신규 제작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중계차를 UHD로 제작을 해서 독립된 중계차에서 UHD 방송을 시작해서 송출실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제작실을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에는 열 번째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아까 나온 질문과 약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연합뉴스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뉴스통신진흥회지요?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뉴스통신진흥회는 법으로 설립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은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그렇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따로 임명합니까?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이사회가 국회에서 3명이고 정부 2명, 신문협회 1명, 방송협회 1명입니다.

○ 심사위원

- 법에 지정된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임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부나 이 관할에 있다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뉴스통신진흥회 자체가 정부에 관련된 대주주의 역할을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여기에서 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부나 공적기능을 하는 단체라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개인이 만든 재단도 아니고 상업적인 목적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지배하는 것이 연합뉴스이고, 그 연합뉴스가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것이 연합뉴스TV가 맞지요?

○ (주)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다면 저는 연합뉴스TV는 일반적인 상업적인 채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방송산업 전체의 상생발전이라든지 타 PP와의 시설 활용이라든지 영상자료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 유료방송 전체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일부 있습니다. 타 플랫폼에, 각종 KTX랑 이런 데에 자료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연합뉴스의 가치를 높이거나 뉴스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고 그런 것 말고 유료방송 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너무 미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깊이 천착을 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데스크팀을 꾸려서 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도채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도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높이는 것으로 자체적인 경쟁력만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회 공익을 위해서 그동안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 그리고 사회 통합적인 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도 장애인단체의 간부님을 시청자위원으로 모셔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그런 분들이 제보해 오는 내용들을 자주 틀어서 아마 다른 경쟁보도채널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뉴스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리우올림픽에도 저희는 장애인올림픽까지 기사가 남아서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PP들과 서로 윈윈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협회나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준비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마지막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편들 잘 아시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편들이 아니라 거의 보도전문채널화 해서 아까 저희들 의견청취 자리에서 계속 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반대로 연합뉴스TV나 YTN 같은 경우에는 보도전문채널이라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도전문채널이라도 20% 내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또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연합뉴스TV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에 부응해서 콘텐츠산업 진흥에도 기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교양,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꼭 보도 뉴스적 성격이 아니라도 그런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보도채널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한국 종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조금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인력과 그다음에 물적자원을 더 투자해서 진짜 공익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말씀하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대표자님께서 패널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노력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 불만 상위 5대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패널의 편향성 그것이 시청자 불만의 0%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북한 관련 이것도 한 0%가 항상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두 부분을 조금 비율이나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어떤 불만이 제기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출연자는 약간 지나친 말을 해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출연을 금지시키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저희들이 늘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겠고,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일부 너무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서 좋게 보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법인은 질의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일부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배석자께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000 대표님께서 2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오늘 심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연합뉴스가 보도채널사업권을 따낼 당시 저는 연합뉴스의 편집국장으로서 있으면서 방송팀을 총괄 지휘했었습니다. 사업자 선정부터 개국 방송 첫 개시 그리고 1등 보도채널 자리에 오르기까지 연합뉴스TV의 성장과정을 계속해서 지켜왔기에 지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 지난 계획들을 이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치열한 미디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보도채널로 성장하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보도전문채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신발 끈을 더욱 조여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의견청취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저녁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000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자/최대주주**

- 수고하셨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 관계자 퇴장)

3. 폐 회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연합뉴스티브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5분 폐회】

Ⅶ. TV조선 청문

1. TV조선 청문조서

청 문 조 서

| | | | | |
|----------------------------------|---|--------------------------------|----------|----------------|
| 제목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대한 의결 | | | |
| 청문주제자 | 소 속 | 수원대학교(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 | |
| | 성 명 | 김광옥 | | |
|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 성명(명칭) | 주소 | 출석 여부 |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
| | 변용식 (조선방송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길 40(태평로 1가) | 출석 | |
|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 직위 | 방송지원정책과장, 담당 | 출석 | |
| | 성명 | 신영규, 이은호, 윤영란 | 출석 | |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2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1시간 30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 | | |
| 청문공개 | 공개 여부 | 비공개 | | |
| | 이유 | 공개할 이유 없음(행정절차법 제30조) | | |
|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 요지 | "불임" | | |
| | 제출된 증거 | ○ (당사자) ㈜조선방송 '추가 개선계획' 등 | | |
| 증거조사 | 요지 | | | |
| | 증거 | | | |
| 기다 | | | | |
| 2017년 3월 22일 | | | | |
| 청문주제자 성명 : 김광옥 (서명 또는 인) | | | | |
| 열람·확인자 성명 : 변용식 (서명 또는 인) | | | |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문 요지

의견진술 개요

- (주)조선방송의 출범이 5년 지났으나 방송경험 부족으로 막말·편파 논란이 지속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러움. 향후 5년간 국내외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콘텐츠 투자도 부족한 계획을 제출하였음. 이에 관한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는데, 크게 3가지 개선계획을 실현하여 올해를 조선방송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음.
- 첫째, 올해를 계기로 막말과 편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음.
 -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사전-실시간-사후 단계로 나눠 철저히 관리하겠음.
 -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한 방송에 대해 선언하게 하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진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음.
 - 보도시사 생방송의 경우, 여야 출연자가 고르게 포함되게 하겠으며 현재 시행 중인 실시간 음부즈맨 제도를 지속 시행하겠음
 - 3번 법정제재를 받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막말로 한번 법정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함
- 둘째,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하여 보도,교양, 오락을 1:1:1로 편성하겠으며 3개 시사프로그램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겠음
- 셋째, 향후 5년간 연평균 콘텐츠 제작비를 [] 원 투자할 계획이며 적자가 나더라도 계획을 이행하겠으며, 재방송 비율은 []%이하로 하도록 하고 승인 초기 약속했던 총 [] 원 콘텐츠 투자 펀드 계획도 실현하겠음

방송품격제고 관련

-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임.
 - ▲오보·막말·편파 논란이 많은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각 정당으로부터 출연자를 추천받아 출연진의 여야 균형을 유지하도록 출연자 균형비율을 철저히 검증하겠음.
 - ▲진행자(막말)·출연자가 1회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 자체심의에서 누적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 등에 채널 내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으며, ▲동일 프로그램이 1년 이내 법정제재를 3회 이상 받으면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겠음.
 - ▲진행자는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한 협력을 서약하도록 하겠으며, ▲他 종편에서 방심위 법정제재 및 각 사의 출연제재를 받은 출연자를 배제할 뿐 아니라 ▲‘바로 음부즈맨’ 제도를 실시하여 자체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출연자에 대해 출연제재 하겠음.
 - ▲상대적으로 막말·편파 논란이 적은 전문가 및 현직 언론인 위주로 출연자를 대폭 교체할 예정임.
- 막말·편파방송과 관련하여 법정제재든 행정지도든 (주)조선방송의 불찰로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행정지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기존에 심의 관련 내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문 종사자가 방송을 하다 보니, 표현의 자유에 민감하고 방송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방송편성 관련

- 그간 보도나 시사가 강한 채널이 되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최초 자본금이 적어 방송시장에서 살아남기 차원의 편성전략을 구사하여 조화로운 편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향후 5년간 ▲보도·교양·오락 분야를 1:1:1의 비중으로 편성하고 ▲ 보도의 범위를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토론대담 4개 장르로 넓혀 보도 분야의 평균비율을 5개년 평균 %로 축소할 것임 ▲교육·문화·예술, 음악쇼, 게임쇼 등 신규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장르 다양성을 제고하겠음

콘텐츠투자 관련

- 재승인 사업계획서 제출 시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 향후 5년간 연평균 투자비용을 원으로 증대할 계획임
- ※ 향후 (주)조선방송의 재정상황을 전망했을 때 향후 년간 누적으로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현금흐름은 년까지는 적자이나 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현재로서는 부채비율이 10% 이하로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투지에 문제가 없음
- ▲ '18년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성상생투자조합' 펀드를 같은 규모로 재구성해 지속 투자하고, ▲ '17년부터 전체규모 억 이상의 1~2개 콘텐츠 펀드 조성을 준비하여 '18년부터 운영할 예정임
- 이에 대해서는 (주)조선방송이 투자 관련 자료 제출 전에 최대주주 등과도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최대주주도 관련 투자 등을 충실히 지원하겠음

재방비율 관련

-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프로그램 재방송 비율은 향후 5년 평균 % 이하로 축소하겠음

이행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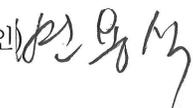
- 추가 개선계획과 관련하여서는 4월 내로 상당부분을 이행하겠으며 지난 20일(월)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개선약속을 국민들에게 공개했음.
- 그간 재정적자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번 약속 이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투자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의 점검을 받았으므로 그 결과를 제출했으며 향후 행정청의 이행점검을 충실히 받고 이행하겠음.

기타

- 정치이슈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정치보도가 많았는데, 뉴스의 소재가 다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향후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방송”을 만들자는 모토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음
 - 향후 재승인 조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개선사항을 담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 추가 개선계획’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음
- ※ 기타 개선 후 기본편성표, 심의관련 내부직원 제재현황 자료 제출

2017. 3. 22.

열람·확인자 성명 : 변용식

(서명 또는 인) 

2. TV조선 청문주재자 의견

청문주제자 의견서

| |
|---|
| 청문의 제목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대한 의결 |
| 처분의 내용 · 주요사실 또는 증거 |
| 가. 처분의 원인 |
| ○ 행정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17.2.20~24)하였음 |
| ○ (주)조선방송은 해당 심사위원회로부터 총 1000점 만점 중 625.13점을 획득하여 관련 재승인 세부계획에서 재승인 기준으로 제시한 650점에 미달하였음 |
| ※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제2016-45-162호)에 따라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승인',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 나. 당사자의 진술 |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에서는 (주)조선방송의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함 |
| -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도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심사를 위해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음 |
| - 이 계획에 따르면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후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하였음 |
| -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련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는데, 심사위원회는 (주)조선방송에 대하여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부여했으며 총점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 ·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시사 논평·대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방송의 품격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 · 둘째, 뉴스, 탐사보도, 시사 논평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 종합편성채널로서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노력이 매우 부족함 |
| · 셋째, 콘텐츠 투자 실적이 재승인 계획에 지속적으로 미달했고, 특히 콘텐츠 투자 계획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
| · 넷째,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 |

-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심사 총평을 통해 편성이 편중되고 오보·막말·편파 관련 문제가 많은 방송사의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으나,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라도 사업자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시청자의 볼 권리를 우선시 하여 재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조선방송이 총점 650점에 미치지 못하는 625.13점을 부여받았으므로, 당초 심사계획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주)조선방송의 관련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확인 후, 이를 고려하여 재승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행정청의 진술에 대하여 (주)조선방송은 다음과 같이 진술함

- (주)조선방송의 출범이 5년 지났으나 방송경험 부족으로 막말·편파 논란이 지속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러움. 향후 5년간 국내외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콘텐츠 투자도 부족한 계획을 제출하였음. 이에 관한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는데, 크게 3가지의 개선계획을 실현하여 올해를 조선방송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음

- 첫째,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사전-실시간-사후 단계로 나눠 철저히 관리하여 올해를 계기로 막말과 편파성 논란에 중지부를 찍겠음

·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한 방송에 대해 선언하게 하고 공정하고 품격있는 방송진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겠음 ▲진행자(막말)·출연자가 1회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 자체심의회에서 누적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 등에 채널 내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음 ▲동일 프로그램이 1년 이내 법정제재를 3회 이상 받으면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겠음. ▲他 종편에서 방심위 법정제재 및 각 사의 출연 제재를 받은 출연자를 배제할 뿐 아니라 ▲‘바로 움부즈맨’ 제도를 실시하여 자체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출연자에 대해 출연제재 하겠음. ▲상대적으로 막말·편파 논란이 적은 전문가 및 현직 언론인 위주로 출연자를 대폭 교체하고, ▲각 정당으로부터 출연자를 추천 받아 출연진의 여야 균형을 유지하도록 출연자 균형비율을 철저히 검증하겠음

※ 특히, 막말·편파방송과 관련하여 법정제재든 행정지도든 (주)조선방송의 불찰로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행정지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둘째, 기간 조화로운 편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겠음

· 향후 5년간 ▲3개 시사프로그램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여 보도·교양·오락 분야를 1:1:1의 비중으로 편성하고 ▲ 보도의 범위를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토론대담 4개 장르로 넓혀 보도 분야의 평균비율을 연평균 [] %로 축소할 것임 ▲교육·문화·예술, 음악쇼, 게임쇼 등 신규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장르 다양성을 제고하겠음

- 셋째, ▲향후 5년간 연평균 콘텐츠 제작비를 [] 억원 투자할 계획이며 적자가 나더라도 계획을 이행하겠으며 ▲승인 초기 약속했던 총 [] 억원 콘텐츠 투자 펀드 계획도 실현하겠음

※ ‘18년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성장생투자조합’ 펀드를 같은 규모로 재구성해 지속 투자하고, ‘17년부터 전체규모 [] 억 이상의 1~2개 콘텐츠 펀드 조성을 준비하여 ‘18년부터 운영할 예정임

- 이에 대해서는 ㈜조선방송이 투자 관련 자료 제출 전에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고 최대주주 등과도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최대주주도 관련 투자 등을 충실히 지원하겠음
-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프로그램 재방송 비율은 향후 5년 평균 % 이하로 축소하겠음
- 추가 개선계획과 관련하여서는 4월 내로 상당부분을 이행하겠으며 지난 20일(월)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개선약속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향후 행정청의 이행점검을 충실히 받고 이행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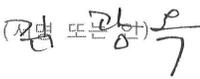
다. 증거조사 및 사실 확인

- ㈜조선방송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 추가 개선계획' 등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함

종합의견

1. 2017년도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TV조선은 1)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328.53/400 점을 받았으나 ... 5)발전 지원 계획의 이행,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서 33.62/100점을 받았습니다. 기타 공적책임, 공정성, 지역 사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수익성 확보 그리고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세부 운영의 미숙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선과 실행 사항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청문을 통하여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정성 분야에서 향후개선을 위한 사업자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방송출연자 관리제도 개편과 일진 아웃제 등의 조치 등으로 법정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근본 방지를 위한 대책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 및 종편, 지상파, 보도채널 등과 함께) 이는 시사, 말 중심의 프로그램 탈피와 종합편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3. 방송 콘텐츠 투자 규모는 기존계획 대비 연간 억 이상 투자 금액을 늘리는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승인과정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 펀드 원 조성도 기존 '경영이 안정화 되는 시점'을 년으로 구체화시킴으로서 개선계획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기간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2011년 사업자 선정이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 되었다는 평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 조건부 재승인 당시 부가한 조건도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행을 수행할 지는 불투명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효율성 있는 담보를 위해 이에 따른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의 관리 감독과 실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청문주재자 성명 : 김광욱 (서명 또는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TV조선 청문 속기록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관련 청문 속기록

- 일 시 : 2017. 3. 22.(수)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관련 청문
- 일 시 : 2017. 3. 22.(수)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광옥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4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관련 청문 속기록

【14시 00분 개회】

○ 청문위원장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관련 청문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문 진행을 맡게 된 ○○○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주)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본 청문심사의 전 과정은 녹음 및 속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청문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서 혹시 공개를 희망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청문절차의 공개를 희망하십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 주재자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방송정책국장

- 원래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청문위원장

- 그러면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및 확인하겠습니다. 청문심사 전 과정이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비공개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료는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장

- 먼저 청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 위원님, 그다음에 ○○○ 위원님, 오른쪽에는 ○○○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주)조선방송 측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조선방송 ○○○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장

- 최다액출자자인 (주)조선일보 ○○○ 대표이사 발행인 맞습니까?

○ (주)조선방송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청문위원장

- 그리고 방통위에서 참석하신 실무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문 관련 설명으로 본 청문과 관련된 처분과 원인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보내드린 청문통지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행정절차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처분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 재승인에 대한 의결”이고,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은 “2017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주)조선방송이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음”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이며, 그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17조입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2조, 방송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청문을 위해 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당사자인 (주)조선방송의 진술을 듣고 청문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인 방송지원정책과의 의견 진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과장,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 방송지원정책과장

- (주)조선방송은 (주)조선일보 등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2011년 3월 최초 승인된 이후 지난 2014년 3월 획득한 승인유효기간이 오는 2017년 3월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재승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재허가 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 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보호 및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 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결과와 의견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련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주)조선방송에 대해서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부여했으며, 중점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시사논평, 대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방송의 품격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둘째,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 종합편성채널로서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노력이 매우 부족함. 셋째, 콘텐츠 투자실적이 재승인 계획에 지속적으로 미달했고, 특히 콘텐츠 투자계획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넷째,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심사 총평을 통해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음. 다만,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다소 부

폐지하겠습니다. 출연자에 대해서는 이미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4월부터 보도·교양·예능 분야를 거의 1:1:1로 조화롭게 편성하여 종합편성채널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사·보도 분야를 대폭 줄인 편성안을 시행합니다. 이 방침에 따라 <고성국의 라이브쇼>, <최희준의 왜?>,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등 3개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4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보도·교양·예능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콘텐츠 투자비용을 대폭 늘려 집행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올해 0원 늘린 0원의 콘텐츠 제작비를 투입하고, 매년 콘텐츠 투자를 늘려서 5년간 연평균 0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 적자가 나더라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제작비 증액으로 교양·예능 분야의 신규 프로그램이 늘어남으로써 재방 비율이 0% 이하로 떨어지도록 재설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첫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저희 TV조선이 약속했다가 절반밖에 지키지 못한 0원 콘텐츠 투자펀드 조성도 이번 사업계획 기간 중에 완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계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TV조선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해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후 진행될 청문회에서 한국방송학회 대 원로이신 000 교수님과 각계 여러 전문가님들께 새로 만든 TV조선의 사업계획에 대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문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문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분씩 먼저 정해진 대로 하고 그다음 위원님들 원하시면 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간략하고 짧게 해서 또 답도 간략하게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선방송 쪽에서는 대표이사과 최다액출자자의 대표께서 답변하시되 배석자가 대신 답변하실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서 배석자도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는데 먼저 000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 청문위원

-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절차에 조선방송 대표이사께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출발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결과자료를 잘 살펴보니까 처음에도 열심히 잘하겠다고 발표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부적으로 제도도 고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갈수록 더 막말이나 편파 방송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또 방통위의 제재건수로 나오는데, 제재건수까지 나오려면 방통위도 내부 절차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데 혹시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지만 그동안에 계속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봤을 때 혹시 대표이사님의 약속을 저희가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하고 지금 그 사이에 더 많이 변화된 내용들이 좀 전에 설명하신 모두발언 이외에도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사후 조치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조치는 사전적인 출연자나 진행자가 불쑥불쑥하는 것을 100%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진행자가 발표를 합니다. “이 방송에는 막말·비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반드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이곳 저곳 다니는 시사평론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지적된 분들을 거의 배제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전문가집단, 막말과 편향성에 관계가 없는 대학교수님들과 현직 기자들이 비교적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막말·편향성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부터 <신통방송>이라는 데부터 지금 여러 군데 다니는 평론가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현역 기자와 또 대학교수님들,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낮에 하는 <시사Q> 프로그램에는 4월 1일부터 100% 현역 기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합니다. 그것은 서로 치고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정당에 적절한 출연자 풀(Pool)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미 공문을 띄웠습니다. 지금 출연자의 균형은 야당 비중이 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사후로도 주간·월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은 초반에 이해를 못하는 분 때문에 오발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3월 17일 날 공정보도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한 달씩 하는데 여기에는 대학교수님들, 또 변호사님들, 전직 언론인들 일곱 분이 참여하시는데 여기에서 옴부즈맨이 비교적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공정성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옴부즈맨은 지상파에서 20~30년간 경험 있는 방송인들 네 분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생방송 기간 중에 부조실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즉각즉각 진행자에게 연락을 해서 진행자가 멘트로 수정을 한다든가 또 자막으로 수정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간 대책이었고, 그동안에 없던 것이 한 프로그램이 1년 안에 3번 법정제재를 받으면 가차 없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또 진행자도 한 번만 막말로 법정제재를 받으면 진행자를 가차 없이 교체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새로운 조치로 막말 편파 시비가 없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

- 상세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방통위의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항들이 맞는지 점검하는 회의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방통위에 자료로 다 제출이 됐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수정계획으로 제출...

○ 청문위원

- 계획으로만 제출..., 말씀을 들어 보면 좀 전에 집행한 사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회사는 정관이 있고 내규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보도지침들을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반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출이 처분 전에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말씀드려서 기존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 바뀌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계획보다 집행된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대표이사께서 공적책임과 공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하나 내용으로 보면 TV조선에서 심사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회에 제시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법정제제도 받고 행정지도를 여러 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실제로 행정지도는 명확한 법률상의 처분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그렇습니다.

○ 청문위원

- 대응한 것을 보면 말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법률상의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의 절차가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듯한 취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 청문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모로 부족했고 법정제제도 행정지도든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지도도 없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청문위원

- 만약에 그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그것은 그 사안사안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나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가지신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

는 방안도 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으로 편파방송·막말방송 이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방송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 제작자들, 지금 방송 출연진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문제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연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이것을 넘기면 방송사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되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운영하는지 내부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박종진의 라이브쇼>라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자체가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이 주말에 있는데 이것을 4월 3일부로 폐지합니다. 진행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방송사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방송을 전체로 책임지는 방송사 내부 직원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받습니다.

○ 청문위원

- 그런데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계선에 있는, 방송의 대표이사님, 대주주님의 지침을 받아서 쪽 진행하는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기존에도 조치가 된 것이 있으면 방통위에 기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방송을 폐지하고 유사한 다른 방송을 만들면 계속해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시는 것으로 진행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부 윤리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내부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한 내부 인사 조치라든지 또 내부에서 처리한 결과 같은 자료들을 문건으로 제출해서 객관화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감봉도 하고 출연료 제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청문위원장

- 참고로 오늘 그동안에 개선했던 것,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갈 시스템들 구축 그런 자료 가져 온 것 있습니까? 제가 질문서를 보낸 것도 있었을 텐데...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장

- 참고로 무엇무엇을 해 오셨는지 목록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유추하기로 하고 제목만 불러 주십시오. 무슨 자료 가지고 오셨는지요?

○ ㈜조선방송 정책기획팀장

- 자료는 첫 번째 저희가 개선 후 달라질 기본 편성표와 그다음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공정성 부분, 콘텐츠 투자 부분, 장르 부분에 대해서 좌측에는 기존, 우측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각각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해서 출연진 배제한 사람들, 또 징계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료도 있지요?

○ ㈜조선방송 정책기획팀장

- 예.

○ 청문위원장

- 시간 관계상 ○○○ 위원님은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하시고, 다음은 ○○○ 위원님 질문에 주십시오.

○ 청문위원

- 저는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현황을 봤더니 지난번 재승인 받을 때 제출하셨던 콘텐츠 투자 계획 대비 실적이 '14년부터 '16년까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다른 종편 대비 비교해 보면 TV조선의 콘텐츠 투자계획이 모 종편의 ○%, 또 다른 종편의 ○% 수준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17년 투자계획이 ○원으로 제출하셨는데 이것을 ○원으로 ○원을 증액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향후 5년간 평균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떤 분야에 세부적으로 투자해서 기존에 내셨던 것 세부계획이 있으셨을 것이고 투자도 ○원에 약 ○원이 증액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투자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과 지금 돈이 ○원 정도 더 투자가 되면 '14도 TV조선의 영업이익이 ○원 정도 됐고 '15년의 영업이익이 ○원, ○○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셨는데 지금 콘텐츠 투자금액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원이 ○원이 증가하면 그대로 ○원으로 다시 떨어지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도 그랬지만 경제성장률을 ○%로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 가정해서 봤습니다. 지난번 계획은 경제성장률이 ○%면 광고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지속하기 위해서 적절한 적자가 얼마 정도 되게 하려면 콘텐츠 투자비가 얼마나 되어야 한다는 탐다운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계획에는 다시 바텀업(bottom-up)으로 했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경제성장률은 ○%로 가정했고, 콘텐츠 투자는 지금 저희들이 약속드린 것을 고정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 증가율 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계산했습니다. 지난 4년간은 콘텐츠 투자 증가율 대비 매출 증가율이 ○%였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기조인데다가 방송광고 매출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 또 종편의 매출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 가정을 했습니다.

○ 청문위원

- 매출 성장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아니지요. 콘텐츠 투자율 대비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대 증가율입니다.

○ ㈜조선방송 상무

- 퍼센트가 아니고 ○배입니다. ○로 계산한 것입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다음에 가정은 저희들이 새로운 인력 채용 플러스 연간 4% 인건비 증가율을 감안해서 2017년도의 인건비 증가율을 ○%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은 저희가 ○원 편드를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콘텐츠 투자를 ○원 정도 현금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볼 때 저희들이 ○년간 누적으로 ○원 정도의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누적손실은 영업외수지까지 포함한 것은 ○년간 ○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흐름으로 봤을 때는 2017년 기초현금이 ○원에서 ○○년 기말에는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년부터는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계속기업으로서의 문제가 없다는 공인회계사 기업 대표의 검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이유는 역시 콘텐츠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새로 광고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배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청문위원

- 지금 TV조선의 부채비율은 몇 퍼센트쯤 됩니까?

○ ㈜조선방송 상무

- 부채는 사실상 단기부채는 없습니다. 부채비율이 0%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3개월마다 결제해야 하는 각종 세금, 아니면 한 달 뒤에 결제를 하는 제작비 이런 것들이 항상 3개월 정도 순환이 되는데 그 비용밖에는 지금 부채가 없기 때문에 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청문위원

- 기존에 콘텐츠 투자해서 회사 운영해 왔던 것은 초기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셨던 것이고 별도의 부채 차입 없이...

○ ㈜조선방송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청문위원

- 계속 적자가 났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누적적자로 모여 있겠네요?

○ ㈜조선방송 대표자

- 한 0원 정도 누적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0년간 0원 정도는 충분히 저회 현금으로 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청문위원

- 추가로 더하실 수 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콘텐츠 투자를 더 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광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나 이것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조선방송 대표자

- 그렇습니다.

○ 청문위원

-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콘텐츠 펀드를 원래 조성하시겠다고 2011년도 처음 승인할 때는 0원 정도를 이야기하셨고 글로벌투자조합도 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실적은 펀드를 못 하셨고 2014년도 재승인 시도 보니까 대성상생투자조합에서 0원 하시겠다고 했고 이것은 기존에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투자가 진행되어서 ○○년에 끝납니다.

○ 청문위원

- 어쨌든 처음 승인할 때 했던 금액 대비해서는 투자금액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그때는 공모심사 탈락 및 투자금액 축소 등도 계획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추가투자는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 ㈜조선방송 대표자

-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원의 기존의 펀드가 종료되면 그것은 다시 재구성할 것입니다.

○ 청문위원

- 같은 규모로 말씀이십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같은 규모로, 그다음에 나머지 ○원을 하려면 ○원짜리를 해야 하는데 1개 내지 2개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조성 준비를 해서 ○○년부터 구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투자회사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

- 혹시 원래 사업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날짜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이것은 분명히 당초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년에 운영에 들어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

- 지금 대성상생투자조합은 리뉴얼해서 갈 것이고, ○○년은 새롭게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은 ○원입니다. 1개 내지 2개 합쳐서 총 규모가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

- 그러면 ○원, ○원, 결국 ○원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원입니다.

○ 청문위원

- 그리고 ○○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결국 처음에 사업보고서에서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이라고 의미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많이 돼서 ○○년 정도면 추가적인 ○원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청문위원

-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약속하시는 것은 공적인 약속이지 않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2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하냐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그것을 실제로 이행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 이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지난번에 재승인을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이 사실은 새로운 재승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2014년 재승인 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재승인 조건이 방통위에서 부가가 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2014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서 시정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금액을 내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2015년에 이행실적 점검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 4,500만원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재승인을 해 주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1:1:1로 조화로운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락이나 교양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콘텐츠 제작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에 약속한 것의 상당 부분 이행실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조선일보 2면에 우리 스스로 물러설 수 없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크게 저희들의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선 1:1:1로 하기 위해서는 시사 프로그램을 줄여야 하는데 4월 1일부터 <정치육타곤>은 없애고 날짜를 명기했습니다. 4월 3일부터 <최희준의 왜?>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없애고, 4월 10일 <라이브쇼>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많은 국민들에게 신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저희들이 7개의 새로운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론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청문위원장

- 여기 자료도 다 봤고 신문에서도 다 봤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이 일종의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담보가 아니겠느냐? 4월 중에는 이미 다..., 3월 20일에 하나를 벌써 내놓았습니다.

○ 청문위원

- 그것은 최근에 반영된 말씀이시고, 지금 2021년까지 콘텐츠 투자계획을 내셨는데 과거에 보면 콘텐츠 투자가 원래 계획과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송환경이라는 것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극단적으로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이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나 아니면 대표이사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약속한 금액을 확실하게 투자하겠다는 부분은 향후 만약에 재승인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규제기관에 이행실적 점검이라든지...

○ ㈜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은 받겠습니다.

○ 청문위원

- 이런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못 지킨 것은 부연설명드리자면 너무 저희들이 재정 악화가 심했고 계속 누적적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턴어라운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꼭 지키겠습니다.

○ 청문위원

- 그런데 아까 재정 적자 말씀하셨는데 적자가 나긴 했지만 아까 현금을 0원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그리고 부채를 거의 쓰지 않을 정도면 사실은 재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에 0원 정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는 0원으로 적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적었습니다.

○ 청문위원

- 부채를 쓰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차입 경영을 하시는데 적자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재정이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그것보다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물레이션을 다시 하셔서 콘텐츠 투자금액을 약 0원 증가시켰을 때도 2021년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계법인에 아마 질문을 구하셔서 혹시 별도의 시물레이션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셨습니까?

○ ㈜조선방송 상무

-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 청문위원

- 예.

○ ㈜조선방송 상무

- 내부적으로 시물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에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들을 검토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저희들 현금성자산, 그다음에 향후 누적적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기업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했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 청문위원

- 이미 제출하셨습니까?

○ ㈜조선방송 상무

- 지금 준비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문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 청문위원장

- 우리가 이 청문을 대략 2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

어서 일단 쉬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장

- 다음 ○○○위원님 질문에 주십시오.

○ 청문위원

-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향후 계획도 밝히신 것 잘 봤습니다. 저는 장르 편중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TV조선이 다른 데보다도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굉장히 많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 4월부터는 보도·교양·예능 이렇게 1:1:1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편에 비해서 여전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로 하더라도 우리가 산술적으로 얼핏 보면 33.3%가 되는 것이고, 다른 종편들은 앞으로 계획이 좀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JTBC의 경우에는 0%, 채널A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이 낸 계획서를 보더라도 0%, 지난번에 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로 하더라도 비중이 높지 않으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TV조선이 이렇게 그 사이에 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았던 이유가 무엇이나, 원인이 무엇이나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왜 TV조선이 그 사이에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또 그 전에 심사 때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도비율이 높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토론·대담 프로그램 중에서 현장중계를 한다든가 기자 리포트가 없는 것을 그동안에는 보도 쪽에서 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세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큰 덩어리의 3가지 시사 프로그램이 빠지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통방통>이라는 아침에 신문을 가지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수정계획에는 보도분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구분하고 있는 소분야 보도분야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은 <표>에 나타나 있듯이 4월부터 12월까지 0%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통방통>까지 토론하고 대담 일체 뉴스를 물리지 않는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보도분야는 0%로 출발해서 계속 줄어들게 해서 2021년에는 0%로 줄어들게 했습니다.

○ 청문위원

- 그 사이에 보도분야가 과중하게 편성된 것은….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나 시사에서는 강하게 해야겠다, 강한 중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본금이 제일 적게 출발했습니다. 다른데보다 〇원 정도 자본금이 적게 출발해서 계속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〇원짜리 드라마도 시도하다가 많이 실패하면서 누적적자가 쌓이면서 잘못하다가가는 자본 잠식이 너무 커져서 위태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보도비율을 높였습니다. 맨 처음에 승인 날 때 주주들이 2개 정도 예상했었습니다만 4개가 나오면서 증자에 참여는 거의 어느 종편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보도비율을 높였고, 그다음에 지금 지상파도 토론대담은 보도 쪽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자체도 시비가 없도록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청문위원**

-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보도분야에 포함되는 장르의 범주를 좀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신통방송>도 보도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눈에 보도·시사로 보이는 것은 모조리 보도분야에 집어넣어서 그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 평균 〇%로 모든 장르를 포함한 보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 **청문위원**

- 미디어법 새로 만들어질 당시에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그 법을 제정한 취지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도 높이고 또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이고, 그런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교육이나 문화, 예술, 영화, 코미디 이런 다양한 장르는 오히려 소홀해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동안 소홀히 해서 새로운 장르 교육, 문화, 예술도 새로 적극적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음악쇼도 지금 전부 K-POP들로 짜여져 있는데 저희들은 트로트가요를 한번 중년 이상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랭킹쇼, 퀴즈게임쇼, 영화도 연간 10편 내외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는 마라톤 중계라든가 저희도 4개국 대항 축구 중계도 했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장르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짰고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 **청문위원장**

- 저는 주제가 주 목적이요, 다만 부수적으로 막말방송이나 편파, 이것은 또 결국은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운영 문제, 콘텐츠 투자 다 프로그램에 귀속된다고 해서, 다만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 전체 수에서 볼 때 조금 다른 방송에 비해서, 이것은 정성적인 평가지만 모자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오늘 배석하신 분들 중에 방송프로그램 총 책임자 PD 출신 있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편성책임자가 나와 있습니다.

○ **청문위원장**

- 참고로 편성책임자의 방송 경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쪽에 일하셨는지….

○ **조선방송 편성실장**

- 제가 '86년에 ○○○에 입사해서 10여년간 PD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도 대부분 콘텐츠와 관련된 회사 또는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장**

- 그렇게 짧게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프로그램 만들 때 이번에 나온 것들 보면 외주사에서 의견을 받는 것입니까, 자사 내에서 먼저 개발하고 토의해서 개발사들과 계약을 한 것입니까?

○ **㈜조선방송 편성실장**

-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청문위원장**

- 예.

○ **㈜조선방송 편성실장**

- 저희 프로그램 기획개발은 크게 외주에서 기획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내부에 기획작가단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작가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사내 PD들이 직접 개발하거나 공모를 하는 그런 형식의 3가지 정도의 기획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외주제작사 기획의 경우에는 주로 제작본부에서 외주사들과 컨택을 많이 하면서 그런 기획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할 때도 있고 외주사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조정위원회라고 저희 내부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PT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내에서는 전문기획작가단을 작년부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룹팀으로 보면서 생명력이 긴 프로그램들….

○ **청문위원장**

- 짧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 짧게 짧게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맘대로 가자> 이것도 봤습니다만 포맷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아까도 오기 전에 저희 들끼리 이야기했지만 중년 부인들 연예인 가족이라고 해서 김포공항, 말레이시아 공항만 한 40분, 50분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솔직히 너무 특이해서 '야,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여기는 청문회 자리지, 자문의 자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만들 때의 의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TV 조선의 경우 <코리아헌터>, <모란봉 클럽> 등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보도를 그렇게 오래 많이 하시면서 왜 경제보도, 사회보도, 국제 문제 토론, 시사 이런 것은 왜 없었습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청문위원장

- 너무 정치 일변도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TV조선이 보도가 주 특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치이슈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항상 그것을 지적하고 반성합니다만 보도본부 사람들이 당장에 그것에 매달려서 거기에 몰입되는 바람에 항상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 자신만 해도 그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 잘 안 됐습니다.

○ 청문위원장

-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할 수 없이 타 방송 이야기를 합니다. 동아방송 채널A도 저녁 5시 40분부터 7시 몇 분까지 TOP10을 합니다. 그것이 정치보도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해외토크, 연예인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 안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의 경우 유독 시사·토론·정치 그 일변도입니다. 지금 더더욱 이것은 정말 인상적인 문제입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의 주 메인 시간에 거의 시사토론입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방송처럼 느낌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좋은 지적이십니다.

○ 청문위원장

- 물론 프로그램 팩트체크(Fact Checking)에 들어가서는 달라지겠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청문위원들이 평가할 때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청문위원장

- 그다음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팩트체크이라고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만 유럽에서 만일 앞으로 거짓말 뉴스, 페이크뉴스(Fake News)가 나오면 몇 천만원 수준이 아니라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 보도문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다 난 것이니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편과 보도채널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아까 움부즈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어디에서 가짜뉴스가 나오면 즉시 국가에서도 요새 선거철을 앞두고 가짜뉴스 통제는 정말 엄격해야 합니다.

중편과 보도 중심에서 공동으로 몇 명만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 나오면 그때 즉시 타 방송사에 이것이 전파되는가를 체크하고 정말 국가 조직과도 SNS 관련, 그것에 의해서 서로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위원회를 공동으로 한번 만드는 것은 어떠냐?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장

-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청문회 자리이지 자문 자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 확약을 한다, 의지 문제이고 결국 신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장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도를 잘하는 TV조선이 경제·사회·국제·의료·교육 토론은 하지 않고 정치뉴스만 했다, 앞으로 연예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만들겠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맘대로 가자> 여행을 보니 이것도 아니구나, 이런 절망감, 잘하는 보도도 버라이티가 없고 다른 프로그램은 경력이 약하니까 자리를 잡으려면 또 몇 년 걸리겠지요. 그것을 운영하면 앞으로 1, 2년 사이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결과를 심사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 나갈 때 그런 데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렇지 않아도 <맘대로 가자>는 오늘 아침 저희 내부에서도 신랄한 자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재자님 말씀 100%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가짜뉴스는 저희들이 저녁에 가짜뉴스란을 만들어서 할 때마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청문위원장

- <맘대로 가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까?

○ ㈜조선방송 편성실장

- 월요일 날 나갔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 청문위원장

- 그것 봤습니다만...

○ ㈜조선방송 대표자

- 이것이 파일럿입니다.

○ 청문위원장

- 파일럿으로 내보냈는데….

○ ㈜조선방송 대표자

-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공항에서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지적했습니다만 제작진들이 다른 종류의 비슷한 것들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실과 제작본부와 상의 끝에 냈는데 성과가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오늘 저도 지적을 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 청문위원장

- 간단히 위원님들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 청문위원

- 감사합니다. 아까 한 것 중에 대표이사님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특히 출연진을 중심으로 하고….

○ ㈜조선방송 대표자

- 진행자도….

○ 청문위원

- 프로그램의 경우는 3번 하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계획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한번 더 지적했지만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출연자나 진행자나 방송에서는 결과적으로 다 출연자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과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일단 출연진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 ㈜조선방송 대표자

- 진행자도….

○ 청문위원

- 예. 저는 둘 다 같다고 보고, 이분들 배제하고 교체해도 결국 TV조선 전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인지,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배제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은 저희들이 적기는 했습니다만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청문위원

-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제가 되면 생방송에서 다시 안 나오는데 이후 다른 프로그램에는 제재가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다른 프로그램도 녹화의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 청문위원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생방송에서는 못 하도록 하고 나머지 편집해서 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두췌다는 말씀이시지요?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강하게 문제가 되면 그분을 대부분의 시청자들이나 또는 그분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사실은 위협성이 있는 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의 문제만 제거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도는 한 번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강력하다는 뜻은 향후를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그 준수효과를 높이는, 이것을 위하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잘못되면 생방송에서는 하차하고, 녹화방송으로 돌리겠다는 취지가 되면 그때 막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이야기하는 취지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반감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좋은 지적이신데 현실적으로 시사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이 다른 예능프로그램에 나온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한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해당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청문위원

-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하여간 그 이야기는 생방송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는 것이다,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이 이야기가 생방송 부분은 자체 심사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쓰시는 것이지요? 법정 제재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가 법정제재를 받으면 당연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옴부즈맨이 법정제재보다 약간 기준이 더 높습니다. 거기에서 걸린 내용이 누적적으로 거듭됐거나 이것은 곤란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 판단으로 이 사람들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적어 냈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사실관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에 그 생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하차 하는 것이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 생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생방송에서...

○ 청문위원

- 모든 생방송에서 안 된다는 것으로 하겠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청문위원

- TV조선의 경우에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2014년부터 꾸준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조건부 재승인'할 때도 내부 사전·사후 심의를 강화하고 공적책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

-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고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심의제재 건수가 올라갔는지, 내부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왜 작동이 잘 안 됐는지 그것 하나 궁금합니다. 또 하나 사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우선 실시간 옴부즈맨 제도도 있고 공정보도특별위원회도 운영하신다고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있고 때로는 프로그램 자체도 폐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상파를 보면 지상파에는 이런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전히 지상파도 편파보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막말이나 오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TV조선은 이런 장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신문사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도본부도 그렇고, 그래서 신문사는 상당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의 자유가 많은데 거기에서 그 기준을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방송기준으로 와야 하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 적용이 조금 안 됐던 것 아닌가, 작동을 안 한 이유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적인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을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큰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 청문위원

- 신문과 방송의 차이는 충분히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방송 시작한지 지나면 오히려 방송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런 관행에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막말·편파·오보 등의 심의조치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 어쨌든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저희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 청문위원장

- ○○○ 위원님, ○○○ 대표이사님께 한번 질문 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의지를 한번 표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청문위원

- 콘텐츠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수정계획을 통해서 훨씬 개선된 안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 청문위원장

- 앞으로 투자 관계에 대해서 ○○○ 대표이사님 혹시 보텔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조선방송 최대주주

- 지금 ○○○ 대표께서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쪽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 최대주주인 조선일보 측과 큰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품격 있고 또 고품질의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해서 방송할 수 있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문위원

-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방송 출연에서만 앞으로 안 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이 약해진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 ㈜조선방송 대표자

- 모든 프로그램에서 배제...

○ **청문위원**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배제가 아니고 생방송으로 앞으로 나오는 데서는 못 나오게 하겠다. 그것에서 좀 더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한번 방송 출연정지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기간을 두고 안 한다든지 또는 영구 출연정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기한이 없다는 것은 영구정지인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얼마간 지나면 출연정지를 또 풀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까 확인한 것은 생방송, 나머지 녹화방송이나 다른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는데 생방송에는 못 나오게 하겠다, 그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는 영구정지 입장인지...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 **청문위원**

- 그러면 현재로서는 영구정지인 셈인데...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영구정지입니다.

○ **청문위원**

- 풀어준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고, 영구정지라는 뜻은 기한이 없으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그렇지요.

○ **청문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장**

- 다음에 프로그램 투자계획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프로그램 투자 대비 효율성이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그 효율성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예.

○ 청문위원장

- 드라마는 히트를 치면 소위 요새 말하는 가성비라는 것이 높아지지만 히트 치지 않으면 굉장히 적자가 나겠지요. 드라마 1시간당 3억원, 5억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가성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든 오락프로그램이든 드라마든 자신 있을 때 드라마에 투자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TV조선에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여쭙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손쉽게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

○ ㈜조선방송 대표자

- 그것도 일면이 있습니다.

○ 청문위원장

-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콘텐츠 투자할 때도 지난번 최초 0억원 드라마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던 사람이 하고 tvN이나 다른 데서 젊은 애들 데리고 드라마하고 다 그렇게 누적적으로 능력을 쌓아갈 때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의지나 그런 시스템 구축이나 이것은 팩트를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지를 저는 계속 여쭙 보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들이 맨 처음에 <○○○>라고 0원을 들여서 했다가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에게 채널도 알려지지도 않은 때이고, 그래서 드라마에는 상당히 포비아(phobia)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3개 정도의 드라마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사실 드라마는 JTBC 빼놓고는 나머지 3개사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기대만큼 성공을 못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5년, 2016년은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5년 지나다 보니까 종편에 대한 시청자들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드라마도 1편 정도씩은 한번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만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요일별로 드라마 띠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 다른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는 앞으로 당장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참 힘든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해 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장

- 드라마는 그냥 예를 든 것이고 드라마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은 아니고, TV조선이 잘할 수 있는 장르 개발,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8가지를 보면 어떤 포맷이나 장르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없지 않으나? 물론 여기에 VJ라고 나와 있습니다. VJ의 내용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담당자께서 그런 면에서 더 창의적인 것들, 독창적인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낼 수 있을까 한번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조선방송 편성실장

-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제작프로그램들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낼 예정인데 4월에 7개 프로그램과 8월까지 10개 넘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험이 쌓이면서 능력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아까 인건비를 올해 많이 증액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외부에서 콘텐츠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구해서 좀 더 내부 역량을 쌓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청문위원장**

- 추상적으로 크게 묻겠습니다. KBS라고 하면 국민 교양 중심이 되겠고, SBS는 젊은이들을 위한 오락 중심, TV조선은 어떤 방송입니까?

○ **(주)조선방송 대표자**

-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목표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방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도 쪽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중시하고 또 오락·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재미를 주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

-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 투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는 ○○년도에 ○원을 투자활동이라고 하신 것 보니까 펀드에 출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원 거기에 주주로 참여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 **(주)조선방송 상무**

-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 **청문위원**

- 예.

○ **(주)조선방송 상무**

- 대성상생투자조합에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출자한 것 제외하고 저희들이 ○원 이상을 마련하려면 조합 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대 ○원까지는 출자를 하면 ○원 규모 이상은 만들 수 있겠다고 저희들 상투사와 이런 쪽에 자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향후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LP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원 이상을 그쪽에 출자하겠다고 해서 지금 투자의향서를 낸 상태입니다. 최종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써야지 ○원 이상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원까지만 쓰면 최소한 ○원 이상 규모는 조성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청문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0%의 의미를 데이터를 보고 이해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제작비 증가율은 0%이고 평균 매출액 증가 예상치지요. ±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가지 성격이 살짝 다릅니다.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시장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이고, 물론 TV조선의 의지도 있지만. 평균 제작비 증가율은 사실 시장 상황과 의지의 영향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용을 쓰는 것이니까 의사결정사항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이 2가지 0%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 방송 시장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0%가 안 되는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제작비 증가율 0%에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행할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지….

○ ㈜조선방송 대표자

- 예,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청문위원

- 그것은 매출액이 설사 충분히 상승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투자하시겠습니까?

○ ㈜조선방송 대표자

- 매출액이 어떻게 되든 간에 콘텐츠 투자비는 이행하겠습니다.

○ ㈜조선방송 상무

-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회계법인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애초에 최초 사업계획서 낸 매출 상황에서 그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까지 가겠다고 한 것을 추정해 봤습니다. 그때는 현금이 00년에 0원 정도까지 현금보유고가 빠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00년까지 0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크게 자본잠식, 예를 들어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고, 매출이 아주 보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다, 그리고 3년 정도는 투자를 감내하고 그다음에 4년, 5년, 6년차에 채널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고 그런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부분은 사실상 고정적인 성격으로 해서 아예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매출액보다 줄어들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 청문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청문위원장

- 이 청문을 따지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즐기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해도 동어반복으로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심사결과 중 지난번 보시다시피 방송평가위원회 평가 400점 중에 다 아시겠지만 328

점, 일반 모든 케이블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런데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 210점 만점에 108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였지요. 기획·편성·제작 공익성 확보가 160점에 95점,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경영·재정·기술능력이 80점 중에 58점,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방송법령 등 준수가 100점 중에 33점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전체 틀에서는 괜찮은데 세부적 시행사항에서는 그것이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말하자면 청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개인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행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다, 결국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느냐? 수행할 때 기왕이면 효율성 있게 수행해야지, 거기에서 방송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질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차에 의해서 오늘 예상보다 조금 일찍 질의가 끝났는데 청문을 마치기에 앞서서 조선방송 측에서 보충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고, 아까 준비한 의견서를 내셨지요?

○ **㉠조선방송 정책기획팀장**

- 예.

○ **청문위원장**

- 보충발언 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방송 대표자**

- 오늘 지적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것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이번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저희들의 계획을 낸 것도 저희들을 스스로 묶는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결과는 “청문조서”로도 작성되며, 행정절차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는 이를 열람·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선방송 청문이 끝난 후 본 청문장에서 오늘 17시부터 18시까지 “청문조서”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정정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오늘 저녁 7시까지 최종 청문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청문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3분 폐회】

VIII. 재승인 의결

1. 보도PP 재승인 의결(안건, '17.3.9)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의안번호 | 제2017 - 11 - 047호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결일자 | 2017. 3. 9. | |
| 공개여부 | 공 개 | |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

| | |
|-------|------------|
| 제 출 자 | 위원장 |
| 제출일자 | 2017. 3. . |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

< 2017. 3. 9. (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12일 만료되는 (주)와이티엔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3월 1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31일 만료되는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12일 만료되는 (주)와이티엔과 '17년 3월 31일 만료되는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2. 2. 15 (주)와이티엔 재승인 의결 (승인유효기간 : '17.3.12까지)
- '14. 3. 19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의결 (승인유효기간 : '17.3.31까지)
- '16. 8. 11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9. 9 (주)와이티엔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6. 9. 30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6. 12. 5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17. 2.20~24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총 5일간)
※ 심사기간 중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17.2.22)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

○ 「'17년도 중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2명(방송·미디어 3명, 법률 2명, 경제·경영·회계 3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3명) 등 총 13명

※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나. 운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17. 2. 20. ~ 2. 24. (총 5일)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 >

| 구 분 | 주요 내용 |
|----------|---|
| 2. 20(월) |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
| 2. 21(화) |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사업자 의견청취 준비 등 |
| 2. 22(수) | 사업자 의견청취,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
| 2. 23(목) | 계량평가결과 및 추가 심사자료 의결,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작성 등 |
| 2. 24(금) | 심사의견서 의결 |

5. 심사평가 결과

○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주)와이티엔은 693.84점, (주)연합뉴스티브이는 688.24점을 획득하였고 과락 항목이 없으므로 2개 재승인 대상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음

※ 재승인기준 :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50%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개별 심사 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도 조건부 재승인 가능)

<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 >

| 심사사항 (배점) | (주)와이티엔 | (주)연합뉴스티브이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 326.65 (82%) | 326.94 (82%)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60점) | 165.35 (64%) | 157.28 (60%)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60점) | 99.59 (62%) | 99.37 (62%)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80점) | 50.24 (63%) | 44.44 (56%)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 | 52.01 (52%) | 60.21 (60%) |
| 합 계 (1,000점) | 693.84 | 688.24 |

○ 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조건(안)

- **(공통사항)**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안)

- **(주)와이티엔)**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주)연합뉴스티브이)**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6. 검토 의견

-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재승인 대상 2개 사업자 모두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
 - 승인유효기간은 (주)와이티엔에 대해서는 '17년 3월 1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함
-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승인유효기간인 3년을 부여하되, 승인유효기간 만료시점을 일치시켜 향후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재승인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동일하게 부가
 - **(공통사항)**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권고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
 - **(공통사항)**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 **(주)와이티엔)**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주)연합뉴스티브이)**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

7. 향후 계획

- '17. 3월 중 승인장 교부
- '17. 3월 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 '17. 5월 중 재승인 백서 발간

- 붙임 1. (주)와이티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3.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4.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끝.

(붙임1)

[주]와이티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 구 분 | | 내 용 |
|---------|--------|--|
| [주]와이티엔 | 재승인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 | 권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

(붙임2)

[㈜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 구 분 | | 내 용 |
|--------------|-----------|---|
| ㈜연합뉴스 티브이 | 재승인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 | 권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 |

(붙임3)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 중점 심사사항 별 소견

- (시청자 권익 보호) 보도PP 2사가 시청자 센터 등을 통해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된 시청자 불만을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 별 심사 의견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
| (주)와이티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방송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최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과거 YTN 사장 임명 반대 투쟁 중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을 대승적 차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 조치 계획과 실행보완이 필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요구됨 ○ 전문PP라 하더라도 20% 이내에서 전문분야 외 편성이 가능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음 ○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제재 발생이 없도록 내부 점검시스템 보완이 요구됨 |
| (주)연합뉴스 티브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연합뉴스 대표의 연합뉴스TV 대표 겸임은 방송과 경영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될 필요가 있음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지닌 단체의 중복 추천이 불가하더라도 동일 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 있음 ○ 시청자 불만 사유 1위인 패널(출연진) 관련 사항, 2위인 북한 관련 뉴스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패널 섭외 시 공정성과 자질, 전문성 확보에 주의하고 특정 분야의 뉴스보도 내용이 과다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실적 상 구매비율이 외주 비율보다 높으며, 향후 계획도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유료방송산업의 상생발전과 방송 제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 재승인 조건(안)

| 구분 | 내용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 권고사항(안)

| 구분 | 내용 |
|------------|---|
| (주)와이티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 (주)연합뉴스티브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중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내용 발췌

(붙임4)

보도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26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75) |
| |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75) |
|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5) |
| | |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5) |
|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12) |
| |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8)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6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6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20) |
| |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40) |
|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35) |
| |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35) |
| |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30) |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12) |
| | |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18)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80) |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40) |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15) |
| | |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25) |
|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 부채비율(12) |
| | | 자기자본순이익률(9) |
| | | 총자산증가율(9) |
|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0)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4) |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6) | |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2) |
| |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18) |
|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
| |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
| |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70) |

2. 보도PP 재승인 의결(속기록, '17.3.9)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3. 9.(목) 10: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17-11-04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12일 만료되는 (주)와이티엔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3월 1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31일 만료되는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12일 만료되는 (주)와이티엔과 '17년 3월 31일 만료되는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개 사업자에 대한 지난 재승인은 (주)와이티엔의 경우는 '12년 2월 15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14년 3월 19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서 '16년 8월 11일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고, '16년 9월 9일 (주)와이티엔에서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주)연합뉴스티브이에서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이 기간 중에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먼저 구성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는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체적인 운영 일정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주)와이티엔은 693.84점, (주)연합뉴스티브이는 688.24점을 획득하였고, 과락 항목이 없으므로 2개 재승인 대상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표에서 총점과 심사사항별 점수 그리고 심사사항별 배점에서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재승인 조건(안)은 “2개 사업자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안)은 (주)와이티엔에 대해서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승인 대상 2개 사업자 모두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주)와이티엔에 대해서는 '17년 3월 1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인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동일하게 부가하고, 권고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그리고 (주)와이티엔에 대해서는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승인장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고, 5월까지 재승인 백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1> (주)와이티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3> 심사위원회 의견서, <4>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일주일 동안이나 심사위원들과 함께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신영규 과장이 특별히 또 아주 꼼꼼하게 심사해 줬고, 그래서 오늘 1차로 심사가 끝난, 검토가 끝난 보도 PP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붙임 3>을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중점 심사사항으로 보면 시청자 권익보호와 소견을 심사위원들이 올렸습니다. 읽어보면 “보도PP 2사가 시청자센터 등을 통해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된 시청자 불만을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가 조금 있다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자별 심사 의견’이라고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올린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 외 추가로 우리가 권고사항들 조건을 부가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사업자별 심사의견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재승인 조건 부가나 권고사항 부가하는 것만 지적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자별 심사 의견 부분을 나눠서 읽어 주시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주)와이티엔의 경우 공정방송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척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과거 YTN 사장 임명 반대 투쟁 중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을 대승적 차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 조치 계획과 실행보완이 필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요구됨. 전문PP라 하더라도 20% 이내에서 전문분야 외 편성이 가능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임할 필

요가 있음.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제재 발생이 없도록 내부 점검시스템 보완이 요구됨. (주)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최대 주주인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만큼 방송의 공적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연합뉴스 대표의 연합뉴스TV 대표 겸임은 방송과 경영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될 필요가 있음.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지닌 단체의 중복 추천이 불가하더라도 동일 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 있음. 시청자 불만 사유 1위인 패널 관련사항, 2위인 북한관련 뉴스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패널 섭외 시 공정성과 자질, 전문성 확보에 주의하고 특정 분야의 뉴스보도 내용이 과다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실적상 구매비율이 외주 비율보다 높으며, 향후 계획도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유료방송산업의 상생발전과 방송제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반영은 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지적해서 심사의 견으로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에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심사사항에 올라와 있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시청자 불만 제도나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는 절차, 이것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중점 심사사항으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통 권고사항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이것이 일부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중점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권고사항에 일부 반영되었고, 지금 와이티엔이나 연합뉴스티브이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해서 매년마다 불만접수 건수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불만처리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별 심사 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연합뉴스티브이는 물론 시청자 불만 그리고 그에 대한 민원처리를 성실히 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심사 지적된 내용을 보면 연합뉴스의 패널 선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지난 3년간 민원이 총 1,1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54.67%인 615건이 패널 섭외 관련 민원입니다. 종편이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주도하고 패널 선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엔 재승인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개선방안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뉴스티브이 같은 경우는 공영뉴스통신사가 1대 주주인 공영언론사입니다. 그런데 패널 선정의 공정성 발언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편의 문제도 심각해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

제제기를 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는데 공영언론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권고사항으로 부가했습니다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연합뉴스티브이 쪽에서 여기에 제출한 것 말고 추가로 심사과정에서 밝힌 의견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밝힌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권고사항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중점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끝까지 고집은 않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추후 재승인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안건 5페이지 검토의견 한번 봐주십시오.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은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우리 방통위에서 위원님들이 오래 논의를 해서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조건이고 어떤 것이 권고사항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동일하게 부가하고' 이렇게만 표시했는데 바뀐 내용이 없어서, 앞부분에 보시면 4페이지에 공통사항으로 심사위원회 재승인 조건(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바뀐 내용이 없어 따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저는 내용에 변동은 없지만 재승인 조건은 사업자 공통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권고사항은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각각 한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승인유효기간 관련인데 지금 여기에 승인유효기간은 무엇무엇을 위해서 와이티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연합뉴스티브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승인유효기간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검토의견에 정리상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간을 얼마로 한다, 이것이 우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기간을 두 사업자 공히 왜 3년으로 한다, 그런데 시기와 종기가 3년으로 한다 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한다, 이것이 저는 이 안건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와이티엔은 그 전에 유효기간이 5년이었고, 연합뉴스티브이는 3년인데 이번에 날짜 수로 따

지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두 사업자 공히 공통적으로 3년으로 한다는 뜻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왜 3년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승인 기간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논의를 할 때 저는 이 표현이 '승인유효기간은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이 말이 저는 아주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3년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사업자 공히 재승인 유효기간의 종기를 일치시킨다. 왜 일치시키느냐? 그러면 실효성 담보를 위해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 그렇다고 명시가 됩니까? 제 의견은 결론적으로 사무처의 검토의견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잠깐 정리하면 지금 재승인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기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쓰기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종기를 일치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조건과 그다음에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여기 '재승인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동일하게 부가하고' 이렇게 한 줄이 되어 있지만 아마 시각적인 효과 면에서 그런 면이 잘 안 보인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것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종기를 일치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면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겠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20일도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일치시키는 편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기본적으로 3년을 준다는 개념 자체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종기를 일치시키는 그 표현을 적절하게 해서 한 구절이라도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문구를 넣을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 **최성준 위원장**

- 그 문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사무처와 상의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그러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승인유효기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방송법상 5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5년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5년 이내에서 하는데….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만족스럽다면 5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심사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지적사항은 많고 조건부나 권고사항은 많아서 대체로 2년 정도를 단축해서 3년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조건부나 권고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했다면 5년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라도 점수를 잘 받았고 지적사항이 적고 잘해 왔으면 꼭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정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일치시키는 것보다는 방송정책상 잘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는 사전에 많이 분석했고 논의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차별성이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놓고 잘한 데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

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방송 정책방향으로서 잘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격려하고 성원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에 주는 것이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려들을 놓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보도PP 2개는 그렇게 큰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인유효기간을 3년으로 맞춘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5개 종편과 보도PP 대상으로 심사를 했고 그것을 의결해야 하는데 우선 보도PP 2개만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 2개를 놓고 차등화시킬 필요성을 꼭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김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와이티엔의 경우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 읽었는데 사장 임명 반대 투쟁 중에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 나왔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6명의 해직기자 중에서 3명은 해직이 부당하다고 복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3명은 그대로 인정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법적인 판결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임명 반대 투쟁은 왜 일어났는가? 원인 제공은 저는 정치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통령 정부쪽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자들, 직업 언론인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언론자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다가 방법이 잘못됐거나 해서 강제해고 당했고 법정에서도 그런 연유로 해서인지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러나 언론계에서, 와이티엔 그 회사에서, 여기 심사위원들 의견에 '대승적 차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원인과 투쟁이라고 할까 싸움,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궁극적인 국민통합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이때 해직된 기자들에 대한 복직을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결정권을 가진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와이티엔의 문제는 보도전문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종편

과 다르게 보도전문편성을 80% 이상 하게 되어 있고 90% 안팎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방송언론입니다. 종합편성이 아닙니다. 방송언론인데 그러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객관성·공정성을 위반하면 안 된다, 특별히 심의제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지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 더 각별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100% 이상 동의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역시 아까 읽은 것처럼 최대주주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매체이지요? 그런데 연합뉴스티브이는 최대주주가 연합뉴스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공적책임 크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티브이 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단계도 아직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자체 계획서 안에 포함된 것인데 시청자 불만 여러 사유 중에서 1위가 출연진 패널에 대한 불만입니다. 몇 퍼센트 나왔지요? 그 연합뉴스티브이 자체 시청자 불만접수 건 중에 56%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56% 이상이 출연진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다 공영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이 잘못되면 관영방송, 공영·관영이 잘못되면 어용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승인·재허가를 안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KTV도 있고 아리랑TV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방송매체로서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또 정부로부터 그렇게 재정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이면 특별히 독립성과 공정성을 조심해야 하는데 시청자 불만사유의 1위로 56% 이상으로 패널 구성이 편향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흔히 이야기하는 여야와 또는 진보·보수와 다양한 패널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사토론이나 대담프로그램에서 찬성과 반대가 최소한 균형 있게 구성되는 패널이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재정지원한 정부, 정권의 입장을 홍보하고 주장하는 그런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차후로도 앞으로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승인유효기간은 역시 3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내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와이티엔의 경우 점수도 상대적으로 연합뉴스티브이는 잘 나왔고, 지적사항도 적은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유효기간 같은 데서 차별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지적 내용을 향후 3년 동안 승인유효기간 동안 제대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도전문채널 두 군데에 대한 오늘 의결사항입니다. 중편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5개 매체가 모두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가 시청자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역시 과도한 보도프로그램에 따른 출연진들의 공정하지 못한 발언들, 아니면 말고식의 터트리기식의 그런 출연진들의 언사로 인해서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32,000건~33,000건에 달하는 그런 민원들이 폭주하는 것도 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전문채널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또 보도의 비중이 더 많은 그야말로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의 공정성은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합뉴스가 시청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패널 출연진 선정이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와이티엔도 그런 통계를 스스로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와이티엔도 이런 시청자들이 패널 출연진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선정되고 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된 실적 같은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와이티엔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방송내용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외부 출연자, 그다음에 앵커의 문제, 편성의 문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비율도 다 나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데 외부 출연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건수 233건 중에 방송내용에 관한 부분이 188건, 외부 출연자에 대한 부분이 16건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느 한 언론매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런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별 심사 의견을 보면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 제재 발생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심의제재건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갖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가 이런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서 심의제재를 받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연도별로 보통 3건에서 4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위반에 관한 건은 상당히 적습니다. 1건 내외로 아주 적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종편에 비해서는 비교적 건수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기관으로 보도전문채널을 허가해 줬고 또 언론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출연진의 또 패널의 선정 문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 또 한 쪽으로 편중·편향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런 점을 양쪽 모두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공통으로 권고사항에 넣은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어서 방송의 공적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권고사항으로 연합뉴스티브이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도 역시 적절하게 그런 공적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권고사항에 넣었는데 재승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권고사항으로 넣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조건으로 붙는 것과는 다른데 실무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권고사항으로 반영하게 되면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저희가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70점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권고사항에 들어가도 분명히 평가를 받고 또 점점을 받아서 다음 심사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제재 건수가 종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또 가장 균형된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방송을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위반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한 부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와이티엔이나 연합뉴스티브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객관성 등을 이유로 해서 법정제재를 받은 것은 아까 1년에 1건 내외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1건 내외'라는 것은 없기도 하고 1건 있기도 하고 2건….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없기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 최성준 위원장

- 2건까지도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 기억으로는 연합뉴스티브이를 예를 들면 지난 2년간 심의와 관련해서 법정제재를 받은 목록을 봤을 때 2년 동안 객관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경우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연 1건 있거나 없거나 그 정도로 보면 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시청자 민원 관련해서 연합뉴스티브이와 와이티엔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시청자 민원이 더 많이 몰려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연합뉴스티브이가 다소 많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몇 건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소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14년, '15년, '16년치를 보니까 와이티엔은 '14년 291건, '15년 233건, '16년 214건이었고, 연합은 '14년 372건, '15년 392건, '16년 361건이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약 100건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100건 정도 더 많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디에 접수된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각 방송사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시청률은 어떻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시청률은 연합뉴스티브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민원 중에서 패널 섭외 관련한 민원만 분리·비교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분리·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건씩 되는지 연도별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티엔 같은 경우에는 패널에 대한 부분이 건수가 아주 작고, 연합뉴스티브이가 패널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비중 자체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와이티엔의 경우에 스스로 분류해 온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아까 233건 중 188건이 방송내용에 관한 민원이라고 했고 16건은 패널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것이 방송내용과 패널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연합뉴스티브이는 방송내용에 관한 민원이라는 것이 따로 항목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분류기준이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자체적인 분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 **고삼석 상임위원**

-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재 선정이 있습니다. 내용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패널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내용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패널 출연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그것이 출연자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소재 선정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라도 각 방송사에 접수되는 시청자 민원의 성격을 파악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려면 이런 분류기준도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조금 행정지도를 해서 비슷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각 방송사의 상황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 형식으로 해서 분류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청자 민원 들어온 것들 중에 어쨌든 패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방송사에서 출연자 선정을 할 때 전문성·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품격을 높여 달라는 것을 넣게 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청자 불만처리 문제, 제가 두 사업자 자료를 보면 경향은 제너럴하게 연합뉴스티브이가 많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비교 준거 틀이나 객관적인 분류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가 어디보다 훨씬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서 제가 심사항목을 보니까 시청자 권익 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있는데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민들, 시청자들 권익 증진 보호 차원에서 시청자 불만 처리 그 문제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상파, 종편·보도PP 이렇게 따로 할 것인지, 저는 차제에, 오늘 안건 중에 「시청자평가원 선임 운영 가이드라인」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시청자 불만처리 문제, 이것야말로 정말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제안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잠깐만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서 각각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건수가 다릅니다. 시청자 민원이 어느 쪽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출연자 패널 선정 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 너무 편향된 패널이 많다 이런 통계를 스스로 분류할 때 그 방송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항목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이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도 긴급제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기준을 통일되게 만들어서 다음 심사할 때 그것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분류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짚막하게 제가 같이 없어서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승인 유효기간이나 출연자 선정과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심사위원들의 직접적인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붙임>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보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편PP뿐만 아니라 보도PP들도 방송광고 영업, 협찬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잡음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방송광고의 필요나 효과와 무관하게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찬효과와 무관하게 혹은 전혀 방송에 노출되지 않는데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협찬을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합니다. 종편PP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해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PP는 미디어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강압적인 방송광고영업이나 협찬유치는 작은 언론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승인해 준 사업자가 민간기업의 활동에 부담을 주면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시장질서 훼손뿐만 아니라 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경영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공영 언론사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랩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보도PP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지요. “보도와 방송광고영업·협찬유치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제고를 할 것, 이 부분을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부가하자”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위원님들의 이견으로 제가 관철을 못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부가는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제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제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사업권을 줬는데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방송을 영위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존재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한번 더 검토해 주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가 사전적으로 논의도 많이 했지만 고 위원님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보도PP에 대한 심사항목, 심사사항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광고영업, 협찬유치 등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라든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관해서 조건이나 권고 형태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심사 제도상 저는 근거가 적절치가 않다, 그런데 저희가 종편 같은 경우도 미디어랩이 있고 지상파 같은 경우에 또 별도로 코바코가 있는데 저는 차제에 광고유치라든가 영업에 있어서 공정성 질서 확립 차원에서 방통위가 전반적인 방송광고시장과 관련된 그런 실태 파악이라든가 필요하면 우리가 미디어랩법상 금지행위도 있고 방송법상 금지행위도 있지만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보도PP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차제에 한번 사무처에서 전반적으로 방송광고 유치영업 내지는 이와 관련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처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에 보태서 물론 미디어랩을 갖고 있지 않은 보도PP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랩이 있더라도 지금 경로만 약간 다를 뿐이지, 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또 이기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주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마 방송정책국도 일부는 관련이 되지만 방송기반국의 방송광고정책과가 또 많은 업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처장님에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도PP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상파방송이라든지 종편·보도PP 다 총괄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사무처장

- 지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일단 실태점검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실태점검하고 그 결과 현행법상 위반으로 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조치하되, 대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개선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도개선을 검토하실 때 제 생각에는 법률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 외에 보도PP의 경우에 이런 것이 마땅치가 않다면 방송정책국에서는 시장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심사항목에 그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무처장님이 방송기반국과 같이 실태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 하는데 다른 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정종기 사무처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문제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서 보도 언론 기능과 광고 수주에 대해서 기획조사라고 할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미디어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 광고수주 영업을 하는 보도PP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슈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것이 언론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광고를 맞바꾸느냐, 아닌 말로 바꿔 먹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사를 취재해 놓고 '이것 널 것인데' 그러면 기업주들은 그것을 달래느라고 '광고 줄게' 비판보도를 빼 달라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 윤리 문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또 어떻게 금지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자유 발전사는 처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이지만 그다음에는 사내 사주로부터, 경영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광고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금력으로부터 자유인데 바로 광고주 금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언론인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가 지금 이야기 나온 보도와 광고를 맞바꿔 먹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 조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기획점검, 기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방송광고 제도를 개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종편은 처음부터 1사 1미디어랩을 허가해 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PP는 미디어랩도 없이 직접 광고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시비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 번

째 개선방안으로 중편미디어렙 1사 1광고대행사로 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하고 보도PP 2개도 역시 미디어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6개의 PP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렙을 설립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개혁 개선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관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 국 소관은 아니라서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사무처장께서...

○ 정종기 사무처장

- 렙 제도 전반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방송계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역학적인 관계를 다 봐가면서 법률로 정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고 그런 문제점은 다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미디어렙법 법률개정안을 낸다면 소관부처는 방통위 아니겠습니까?

○ 정종기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정부안으로 만든다면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이것이 법 개정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여러 단계, 저희들의 사전적인 연구 또 그다음에 사전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PP뿐만 아니고 지상파나 또는 중편 다 포함해서 방송사들과 광고주 사이에서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상 지금 방송법이나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그런 불공정한 또는 일종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금지행위나 또는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특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개정안을 만들려면 그런 실태가 먼저 파악되고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도 또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방송사

들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것을 사무처장님께서 챙기셔서, 주로 기반국과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사무처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제안한 사안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문제제기는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그것을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꼭 반영하자는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또 재승인 조건이나 또는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로서도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많은 유익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기를 일치시키는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문구를 나중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보도PP의 재승인 조건, 그다음에 권고사항, 그다음에 승인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그 중간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3. 종편PP 재승인 의결(안건, '17.3.24)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의안번호 | 제2017 - 16 - 103호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결일자 | 2017. 3. 24. | |
| 공개여부 | 공 개 | |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

| | |
|-------|------------|
| 제 출 자 | 위원장 |
| 제출일자 | 2017. 3. . |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

< 2017. 3. 24.(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
-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제이티비씨에 대해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20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22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와 20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4. 3. 19.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재승인 의결
- '15. 9. 2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16. 8. 11.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9. 30.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6. 10. 21. (주)채널에이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7. 2.20~2.24.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총 5일간)
※ 심사기간 중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17.2.22)
- '17. 3. 6. (주)조선방송 사업자 의견청취 실시
- '17. 3. 10.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사업자 의견청취 실시
- '17. 3. 22. (주)조선방송 청문 실시
- '17. 2.26.~3.23. 상임위원 간담회 8회 개최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 성

-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2명(방송·미디어 3명, 법률 2명, 경제·경영·회계 3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3명) 등 총 13명
 - ※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 분 야 | 성 명 | 현 직 |
|-------------|-----|-----------------------------------|
| 심사위원장 | 이광재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
| 방송(3인) | 이효성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
| | 김경환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 | 이상원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 법률(2인) | 안수화 | 안수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차명심 | 차명심 법률사무소 변호사 |
| 경영·회계(3인) | 김진기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 이태민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 곽지영 | 세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기술(1인) | 허남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방송·미디어연구소 Project Leader |
| 시청자·소비자(3인) | 장해랑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 |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 | 최경진 |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나. 운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17. 2. 20(월) ~ 2. 24(금) (총 5일간)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 >

| 구 분 | 주요 내용 |
|----------|---|
| 2. 20(월) |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
| 2. 21(화) |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사업자 의견청취 준비 등 |
| 2. 22(수) | 사업자 의견청취,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
| 2. 23(목) | 계량평가결과 및 추가 심사자료 의결,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작성 등 |
| 2. 24(금) | 심사의견서 의결 |

5. 심사평가 결과

○ 심사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주)제이티비씨는 731.39점, (주)채널에이는 661.91점을 획득하고 과락 항목이 없었음

- 한편, (주)조선방송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하여 650점에 미달하였음

※ 재승인 기준 :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 가능)

<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 >

| 심사사항 (배점) | (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 328.53 (82%) | 335.77 (84%) | 322.36 (81%)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 108.40 (52%) | 148.15 (71%) | 124.85 (59%) |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 95.67 (50%) | 140.40 (74%) | 109.70 (58%) |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 58.91 (59%) | 61.69 (62%) | 63.94 (64%) |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 33.62 (34%) | 45.38 (45%) | 41.06 (41%) |
| 합 계 | 625.13 | 731.39 | 661.91 |

6.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가. 종합소견

- 종편PP는 '11년 최초 승인 이후 도입 5년이 지나면서 3개 채널이 공히 시청률 향상 및 매출액 증가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내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품질과 편성, 제작 투자 등에서 신청법인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별로 상이한 평가를 받았음
-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투자한 채널은 시청자에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음
- 다만,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시청자의 불권리를 우선시 하여 재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향후 종편PP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자별 주요 심사의견

- **(주)조선방송**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부족함
 - 보도 편중이 심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보도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됨
- **(주)제이티비씨**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타사에 비해 균형이 있다고 판단됨
 - 콘텐츠 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볼 때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주)채널에이)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비교적 많고 관련 이행 실적도 저조하나, 향후의 실행계획은 평가할 만함
 - 보도 기능을 갖는 시사논평 프로그램 등의 편성 편중이 심하므로 관련 장르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 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지난 3년간 콘텐츠 투자 실적이 '14년 재승인 계획의 80% 가량에 불과하고 절대금액도 많지 않았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여 실천이 담보된다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 기타 중점 심사사항별 소견, 정책건의사항 등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세부 내용은 <붙임5> 참조

7. (주)조선방송 청문 결과

가. 청문 개요

- 일시/장소 : '17.3.22(수) 14:00~15:30 / 방통위 4층 전체회의실
- 청문주재자 및 청문위원

| 구 분 | 성 명 | 직 책 | 비 고 |
|-------|-----|-----------------|--------|
| 청문주재자 | 김광옥 |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 - |
| 청문위원 | 정연우 |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방송·미디어 |
| | 권헌영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법률 |
| | 김범준 | 카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 회계 |

- 참석자 : 변용식 (주)조선방송 대표이사, 홍준호 (주)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등

나. (주)조선방송 및 최대액출자자 의견 진술 주요 내용

- 시사 프로그램 축소와 조화로운 편성, 진행자·출연자 관리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콘텐츠 투자 확대 등 개선사항을 담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올해를 (주)조선방송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음

다. 청문주제자 의견

-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주)조선방송은 방송평가에서 328.53점/400점을 받았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 기타 심사사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세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과 실행 사항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청문을 통하여 공적 책임과 공공성·공정성 분야에서 향후개선을 위한 사업자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방송출연자 관리제도 개편과 일진아웃제 등의 조치 등으로 법정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근본방지를 위한 대책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임
- 콘텐츠 투자 규모는 기존계획 대비 연간 200억원 이상 투자 금액을 늘리는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며, 기존 승인 과정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 펀드 1,000억원 조성도 기존 '경영이 안정화 되는 시점'을 '18년으로 구체화 시킴으로서 개선계획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러한 계획이 기간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음
- '11년 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이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14년 재승인 당시 부가한 조건도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행을 수행할지는 불투명함. 보다 구체적인 효율성 있는 담보를 위해 이에 따른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의 관리감독과 실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청문 당사자의 의견진술 세부 내용과 청문주제자 의견서는 <붙임7>, <붙임8> 참조

8. 검토 의견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제이티비씨와 (주)채널에이는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함
-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함

< (주)제이티비씨 주요 재승인 조건 >

-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지난 3년('14년 6건, '15년 4건, '16년 5건) 중 최소 법정제재 건수(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주)채널에이 주요 재승인 조건 >

-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7건, '15년 11건, '16년 7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 ('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전체 방송시간의 34%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제이티비씨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주)채널에이는 '17년 4월 22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함

-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함

< (주)조선방송 주요 재승인 조건 >

-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13건, '15년 11건, '16년 8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 위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하여 이뤄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 ('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함

-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함

- 승인유효기간은 향후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채널에이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시점을 일치시켜 '17년 4월 1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함

※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세부내용은 <붙임1>, <붙임2>, <붙임3> 참조

-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

9. 향후 계획

- '17. 3월 말 승인장 교부
- '17. 3월 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 '17. 5월 중 재승인 백서 발간

- 붙임 1. (주)조선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주)제이티비씨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3. (주)채널에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4.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5.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서
 6. 종편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7. (주)조선방송 청문조서
 8. (주)조선방송 청문주재자 의견서. 끝.

[취]조선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 구 분 | 내 용 |
|--------|---|
| 재승인 조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13건, '15년 11건, '16년 8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4. 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5. 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하여 이뤄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 정지 조치를 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6.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

| 구 분 | 내 용 |
|---------------------|---|
| | <p>7.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 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8. 이행실적 점검 결과 2, 4, 5, 6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p> |
| <p>권고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 시청자 불만 사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주]제이티비씨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 구 분 | 내 용 |
|-------------------|--|
| 재승인 조건 | <p>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p> <p>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p> <p>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지난 3년('14년 6건, '15년 4건, '16년 5건) 중 최소 법정제재 건수(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p> <p>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p> <p>5.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
| 권고 사항 | <p>○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p> <p>○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p> |

[취]채널에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 구 분 | 내 용 |
|----------------------|--|
| <p>재승인 조건</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7건, '15년 11건, '16년 7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4. 위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5.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전체 방송 시간의 34%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p>※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p> 6.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p>권고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

| 장르 | 정의 |
|--------|--|
| 뉴스 | ○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등과 관련해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정규 뉴스 및 특별 편성 뉴스포함) |
| 탐사보도 | ○ 국내외 특정 시사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탐사 취재 사실 및 관련 분석 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
| 시사논평 | ○ 국내외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자사 및 타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
| 다큐멘터리 | ○ 사실에 입각한 촬영과 합리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
| 생활정보 |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
| 토론·대담 | ○ 특정 주제에 관해 진행자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전문가가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프로그램 |
| 교육문화예술 | ○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
| 드라마 | ○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
| 버라이어티쇼 | ○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 모음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
| 음악쇼 | ○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
| 퀴즈·게임쇼 | ○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
| 코미디 | ○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
| 영화 |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
| 스포츠 | ○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교육·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
| 애니메이션 | ○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

※ 토론·대담 프로그램이란 특정주제에 관해 찬성·반대를 토론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7.3.12.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와이티엔과 2017.3.31.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연합뉴스티브이 및 2017.4.21.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2. 24.(금)

1. 종합 의견

- 종편PP는 '11년 최초 승인 이후 도입 5년이 지나면서 3개 채널이 공히 출범 초기의 부진을 딛고 시청률 향상 및 매출액 증가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내었음
-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의 품질과 편성, 제작 투자 등에서 신청법인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종편PP 도입 시의 정책 목표인 '방송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의 달성여부에 대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평가를 받았음
- 종편PP의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투자한 채널은 시청자에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방송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음
- 다만,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시청자의 불권리를 우선시 하여 재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향후 종편 PP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2. 중점 심사사항 별 소견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제고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유효기간 중 관련 심의제재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특히, 시사 논평·대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막말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 출연자 자질 검증, 사후제재 강화 등 출연자로 인한 방송의 품격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시청자 권익 보호)** 종편·보도PP 5사가 시청자 센터 등을 통해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된 시청자 불만을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경우 뉴스, 탐사보도, 시사 논평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 종합편성채널로서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노력이 매우 부족함
-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종편PP 3사 모두 콘텐츠 투자 실적이 재승인 계획에 지속적으로 미달하였으며, 특히 (주)조선방송은 콘텐츠 투자 계획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종편PP 3사 모두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

3. 사업자 별 심사 의견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
| (주)조선방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경영진 등이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를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출연자의 중복 출연 등에 대해 규제하여야 할 것임 ○ 보도 편중이 심하고 교양과 오락 편성이 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보도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등이 '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이에 |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
| | <p>따른 콘텐츠 투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 종편PP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연평균 △억원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되어 콘텐츠 투자 의지에 의구심이 있음 ○ 시청자 불만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제도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재방송이 어려운 보도를 제외하면 전체 방송시간의 약 절반이 재방송되고 있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 (주)제이티비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타 종편PP에 비해 균형이 있다고 판단됨 ○ 콘텐츠 투자금액이 지난 3년간(‘14~’16) 연평균 △억원 수준이며 향후에도 5년간 연평균 △억원의 콘텐츠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재무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으나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증거이며 회사 대표와 최대주주의 자금조달계획과 추가출자에 대한 의지와 계획 감안 시 우려할 수준은 아님 ○ ‘21년까지 △원 이상의 콘텐츠 투자와 신사옥 건설계획이 상정되어 있어 증자 및 자금조달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등에 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 (주)채널에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비교적 많고(3년간 심의조치 195건, 법정제재 31건) 관련 이행실적도 저조하나, 향후의 실행계획은 평가할 만함 ○ 보도 기능을 갖는 시사논평 프로그램 등의 편성 편중이 심하므로 관련 장르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 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막말방송, 사실왜곡을 방지하도록 학계·시민단체 등의 공개 추천으로 출연자 이력 검증자문단을 위촉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미래 재정현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미래 투자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난 3년간 콘텐츠 투자 실적이 2014년 재승인 계획의 △% 가량에 불과하고 절대금액도 많지 않았으나, 향후 지속적 증가계획을 제시하여 실천이 담보된다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 (주)와이티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방송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최횟수를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과거 YTN 사장 임명 반대 투쟁 중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을 대승적 차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 조치 계획과 실행보완이 필요하며, 시청자 |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
| | <p>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PP라 하더라도 20%이내에서 전문분야 외 편성이 가능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음 ○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제재 발생이 없도록 내부 점검시스템 보완이 요구됨 |
| <p>(주)연합뉴스 티브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연합뉴스 대표의 연합뉴스TV 대표 겸임은 방송과 경영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될 필요가 있음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지닌 단체의 중복 추천이 불가하더라도 동일 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 있음 ○ 시청자 불만 사유 1위인 패널(출연진) 관련 사항, 2위인 북한 관련 뉴스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패널 섭외 시 공정성과 자질, 전문성 확보에 주의하고 특정 분야의 뉴스보도 내용이 과다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실적 상 구매비율이 외주 비율보다 높으며, 향후 계획도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유료방송산업의 상생발전과 방송제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4. 재승인 조건(안)

| 구분 | 내용 |
|-----------------------------------|---|
| <p>공통사항</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 <p>(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프로그램의 조화로운 편성을 위해 편성의 편중이 심한 보도(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장르) 프로그램을 반기별로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편성할 것 2. 보도(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장르) 등 프로그램 분야·장르 기준과 정의는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당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3. 위 1호 및 2호의 조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준수하고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익년 3월 말과 9월 말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관련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4.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방송 심의제재 중 오보·막말·편파 방송 법정제재 건수를 지난 3년('14년, '15년, '16년)간 종편PP 4사의 오보·막말·편파 연평균 법정제재 건수(9건) 이하로 감소시키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 |
|----------|---|
| | 5. 오보·막말·편파방송을 방지하고 평가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만들고 그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반기별로 제출할 것 |
| (주)조선방송 | 1. '17년도부터 향후 3년간 해당연도의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실적은 익년 3월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주)제이티비씨 |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방송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2.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실적은 익년 3월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주)채널에이 |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2.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 실적은 익년 3월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5. 권고사항(안)

| 구분 | 내용 |
|----------------|--|
| 공통사항 | 1. 시청자의 불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
| (주)제이티비씨 |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주)채널에이 | 1. 편성위원회에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고,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 (주)와이티엔 | 1.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 (주)연합뉴스 티브이 | 1.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 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6. 정책 건의사항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관련 제도개선 검토

- 종합편성채널은 조화로운 편성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 및 시청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편성규제 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관련 검증 절차 마련 등 검토

-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콘텐츠 투자금액의 세부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재승인 조건 미이행시 조치 강화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외에 기존 방송법령에 규정된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취소 등을 포함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
 - 재승인 심사 점수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 차등방안 검토
 - 방송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추가로 단축할 것을 건의

종편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21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
| |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
|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0) |
| | |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0) |
|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8) |
| |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2)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9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45) |
| |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45) |
|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40) |
| |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40) |
| |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8) |
| | |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12) |

| 심사사항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20) |
| | |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30) |
|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 부채비율(12) |
| | | 자기자본순이익률(9) |
| | | 총자산증가율(9) |
|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8) |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12) | |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2) |
| | |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18) |
|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
| |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
| |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70) |

4.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17.3.24)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3. 24.(금) 10: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17-16-10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제이티비씨에 대해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0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 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22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와 20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 3월 19일 3개사가 지난번 재승인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9월 24일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하였고, '16년 8월 11일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9월 30일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10월 21일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5일간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그 심사기간 중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6일 (주)조선방송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3월 10일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22일 (주)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심사위원회 이후 '17년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상임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먼저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2명 등 총 13명입니다. 자세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17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5일간이었고, 상세한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주)제이티비씨는 731.39점, (주)채널에이는 661.91점을 획득하고 과락 항목이 없었습니다. 한편, (주)조선방송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하여 650점에 미달하였습니다. 방송사업자별 상세한 심사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소견입니다. 종편PP는 '11년 최초 승인 이후 도입 5년이 지나면서 3개 채널이 공히 시청률 향상 및 매출액 증가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내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품질과 편성, 제작 투자 등에서 신청법인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별로 상이한 평가를 받았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투자한 채널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널은 방송사업 영위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음. 다만,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라도 사업자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시청자의 불편리를 우선시하여 재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향후 종편PP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입니다. 다음 사업자별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보도 편중이 심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보도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주)제이티비씨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타사에 비해 균형이 있다고 판단되며, 콘텐츠 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볼 때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비교적 많고 관련 이행실적도 저조하지만 향후의 실행계획은 평가할만하다, 그리고 보도 기능을 갖는 시사논평 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중이 심하므로 관련 장르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3년간 콘텐츠 투자 실적이 '14년 재승인 계획의 80% 가량에 불과하고 절대금액도 많지 않았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여 실천이 담보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조선방송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은 '17년 3월 22일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주)조선방송 및 최대액출자자의 청문 시 의견 진술 주요 내용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축소와 조화로운 편성, 진행자·출연자 관리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콘텐츠 투자 확대 등 개선사항을 담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올해를 (주)조선방송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주)조선방송은 방송평가에서 328.53점을 받았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 기타 심사사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세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과 실행 사항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문을 통하여 공적 책임과 공공성·공정성 분야에서 향후 개선을 위한 사업자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방송출연자 관리제도 개편과 일진아웃제 등의 조치 등으로 법정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근본 방지를 위한 대책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임. 세 번째, 콘텐츠 투자 규모는 기존 계획 대비 연간 200억원 이상 투자 금액을 늘리는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며, 기존 승인 과정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 펀드 1,000억원 조성도 기존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18년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개선계획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러한 계획이 기간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네 번째, '11년 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이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14년 재승인 당시 부가한 조건도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행을 수행할지는 불투명함. 보다 구체적인 효율성 있는 담보를 위해 이에 따른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의 관리감독과 실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과, (주)제이티비씨와 (주)채널에이는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도 부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이티비씨 주요 재승인 조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1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지난 3년 중 최소 법정제재 건수(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단, '17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둘째,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셋째,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주)채널에이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은 첫 번째 법정제재 건수는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34% 이내로 편성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계획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제이티비씨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주)채널에이는 4월 22일에서 '20년 4월 2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입니다. 먼저 법정제재 건수는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을 출연정지 조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이 함께 부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계획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승인유효기간은 향후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채널에이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시점을 일치시켜 '17년 4월 1일부터 '20년 4월 2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재

승인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3월 말에 승인장을 교부하고,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까지 재승인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요한 것 같은데 <붙임>에 들어가 있는 재승인 조건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약에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읽어 주시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자별로 재승인 조건의 문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선방송에 대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선방송이 두 번째 추가계획에 낸 것이니까 그것을 읽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즉 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1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추가개선계획을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을 많이 담아서 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점검해야 할 내용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3페이지를 보면 개선계획에 향후 5년간 보도분야 평균 비율을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32.7%에서 28%로 줄이고,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 4개 장르 평균비율을 39.7%에서 32.6%로 축소한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기준대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하나 조금 이견인지, 아니면 정리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9페이지에 조선방송 주요 재승인 조건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쪽 있지 않습니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것이 이 본문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사업자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장에 넣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안건에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승인장에는 포함해서 사업자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붙임>에 있는 조선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그 뒤에 그 내용 그대로 첨부한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첨부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을 하는데 조건을 부가시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650점을 넘었을 때는 재승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사업계획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심사계획에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조건부 재승인과 650점을 넘어서 재승인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과는 케이스가 다른 것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법적인 의미가….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다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데 이 안전에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TV조선과 채널A가 그냥 똑같이 재승인인데 조건부를 붙이는 것처럼 조건부 재승인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결주문 2페이지에 보면 기간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명시되어 있는데 JTBC의 경우는 올해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다른 2개 종편사는 통상 3년인데 JTBC는 3년 8개월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8개월을 더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인센티브, 말하자면 상여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의결안건 8페이지에 마지막 동그라미 위에 문단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른 차별을 두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점을 우리가 명확히 한다고 할까, 알아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내용을 보면 JTBC,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에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이 타사에 비해 균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콘텐츠 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볼 때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종편에 비해서 심사위원회 의견이 월등하고, 총점이 731점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최저점을 받은 다른 종편에 비해 몇 점을 더 받은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70점 정도 높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10점입니다. 110점 가까이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 그리고 650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정책상 또 종편에 대해서 국민 여론층에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시민사회에서 학계에서 지금까지 우리도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계획할 것이냐?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이지요? 방송평가와 재승인 심사, 재허가 심사입니다. 그러면 재승인 심사할 때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 목표, 우리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모범적으로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으면 인센티브 상을 주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역행하면 그것은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책수단이 분명해야 방송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JTBC에 대해서 총점 731점 이상 받은 종편에 대해서 인센티브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3년 8개월, 8개월 더 주는 것은 인센티브 포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회의 의견서에 바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TV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650점 넘어서 재승인해 주는데 조건을 부가하는 것과 조건부 재승인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까지 한 것은 불허를 염두에 두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여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어간에 TV조선 쪽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노력을 한 것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가개선계획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개선의지를 아주 강하게 밝혔고, 그것을 한번 기회를 주어서 이행하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부가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키지 않을 경우에 취할 법적 절차가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속력 있게 재승인 조건부 안에 집어넣든지 의결주문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만 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구속력이 조금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승인 조건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승인 조건으로 이런 내용을 넣을 방법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별첨으로 가는데 그 밑에 그런 내용을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승인장에 명기되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양해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종편 심사 결과 최종 의결하면서 저는 방통위원 전원 합의안으로 만드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매우 드물게 전원 합의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어간에 정말 외부에서 여러 연락을 받았고, 또 토의도 했는데 이것이 저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공통분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편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문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보낸 것이 아니고 종편 3사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종편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 평가했고, 그리고 3사 종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조건부와 권고사항을 넣어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편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 여론층과 시청자들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정말 우려해 왔고 걱정을 많이 했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면서도 그 어간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들, 우려들을 염두에 두고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종편 4사가 진입규제를 별로 받지 않고 도입·허가된 데 대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송광고시장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고려했는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퇴출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전제해서 “4개 너무 많지 않다. 그냥 허가해 주면 나중에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연도태, 퇴출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 정책당국 지금 와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 방송의 공정성과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지적해 온 것은 “똑같은 경향을 가진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도편성이 너무 과다하다, 보도분야 편성이 50% 넘는 데도 있었고 “그것을 줄여라, 줄여라” 계속 지적하니까 교양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40% 안팎으로 줄이고, 그런 많은 문제점을 시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문회까지 간다는 것이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지만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종편을 줄여 달라, 말하자면 한두 개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심사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재승인 심사, 재승인장을 줄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의견제시 연락으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안건은 정말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지고 전원 임기만료로 떠나갑시다만 추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편이 정말 명실상부한 종합편성방송으로서 우리의 방송문화와 방송의 공정성·다양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마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항상 이렇게 조건을 부가하게 되면 나중에 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선방송의 재승인장 하단으로 옮기는 것은 옮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조선방송의 재승인 조건 여덟 번째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실적 점검입니다. 즉,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를 지키라는 것과 그리고 보도 프로그램 비율 준수, 투자계획 이행, 이것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외에는 6개월 단위로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이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지요? 8번에….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 <4>, <5>, <6>번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2>, <4>, <5>, <6>에 붙어 있는 것이고, <2>, <4>, <5>, <6>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바로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정명령이 나가고, 시정명령이 한 차례 나가면 그 이후, 내년부터가 되겠지요. 내년부터 유

효기간이 만료되는 향후 2년 동안은 무조건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번 시정명령 받게 되면 나머지 승인유효기간 동안은 매 6개월 단위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혼선 없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위반된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이행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나간 다음에 또 동일한 사안으로 위반했을 경우, 즉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 시정명령 나가는 것은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영업정지 그다음에 승인 취소로 가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길고 긴 재승인 심사가 끝나고 의결의 순간이 왔는데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품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종편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너무 방송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특히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시청자 의견이 32,000여건 접수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어떤 방송사가 더 우수하고 또 열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종편방송은 초창기 신생 방송사를 벗어나서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의결에 이르기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안정기, 도약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아무나 출연시켜서 그야말로 싸구려방송, 막말방송, 오보방송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서로 자극적인 언사를 써 가며 시청률과 수익성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말 교만한 방송은 그만하시고 그야말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겸손한 방송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몫으로 남겨주고 방송은 팩트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마치 편드는 그런 편향하는 인상을 주는 방송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송이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 3사에 모두 공통적으로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강력하게 붙였습니다. 그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품격 있는 방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그야말로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 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편들이 거의 뉴스 편중이 너무 심해서, 보도부문 편중이 심해서 보도전문채널과 뭐가 다를 것인가 하는 시청자들의 질타를 어느 방송사든 마찬가지 다 받았습니다. 특히 어떤 방송은 시사논평, 대담·토론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메인 뉴스에서 너무 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뉴스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국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재승인해 주면서 각 종편사업자들이 그런 점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 재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이행점검을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특히 TV조선이 점수를 낮게 받아서 퇴출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만 추가개선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만 방송해 준다면 어떤 종편방송보다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구노력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편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격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어떤 편향성을 갖지 않는, 그래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팩트만 충실히 전하는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가장 충실한 방송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심사했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JTBC 재승인 유효기간이 '20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MBN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시점과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실상 맞춘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그 앞에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렇게 해 놓고 유효기간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채널A와 조선방송은 만료시점을 같이 하고, JTBC와 MBN의 만료시점을 같이 하기 위해서 JTBC의 재승인 유효기만 종기를 '20년 11월 30일로 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심사를 할 때 1개 사업자보다는 복수사업자를 함께 심사하는 것이...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거기다가 참고표시를 하든지 해서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언제다라고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시든지 말든지. 저도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편 3사 지난 6년간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했지만 저는 일반 국민들의 불평·불만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에 맞춰서 이번에 재승인 심사를 방통위가 해야 한다고 일찍이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보·막말·편파 방송이라든가 보도 프로그램에 편중된 것이라든가 콘텐츠 투자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완전히 바로 잡기 위해서 심사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우리 방통위의 그러한 의지가 담기도록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 심사위원들도 그랬지만 저희 방통위 사무처 그리고 방통위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저희가 다뤘던 안건 중에서 가장 진중하고 신중하고 장기간 심층적으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듀프로세스(Due Process)를 의견청취나 청문 절차까지 다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편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앞으로는 과거 6년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각 사별로 부여한 재승인 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편 3사와 방통위의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종편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특혜 의혹과 사회적 논란 끝에 탄생한 종편이 방송을 시작한지 횡수로 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재승인 심사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처럼 종편 출범 초기 우려와 달리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JTBC의 경우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종합소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편PP의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투자한 채널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한다' 즉, JTBC가 타 사업자에 비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PP 정책과 심사 기준에 가장 부합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특정 사업자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심사위원회 종합소건 TV조선에 대해서는 시사토크 등 저렴하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해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잘하는 사업자와 못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4일 심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딱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특히 TV조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TV조선은 재승인 점수인 65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25점을 얻었습니다. 지난 연말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불허 청문회 이후 1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OBS의 632점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조건을 불여 재승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6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서 의견을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해 주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재승인 심사제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 OBS와 마찬가지로 재승인 불허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정도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PP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한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승인 심사처럼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꾸리고 엄격하게 심사했다면 그때 당시에 재승인받았을 종편이 몇 개나 있을까, 저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건이라도 제대로 부가했다면 과도한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에 저는 동의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 했고 지난 3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TV조선의 개선계획과 의지 또한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 앞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총 32,000여건의 시청자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의견 중 95%가 종편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맞지요? 이렇게 봐도 되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95% 이상이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편 재승인 취소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와 방통위원들의 의견, 판단 이전에 시청자들의 일 치된 요구입니다. 보수와 진보,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라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절대 다수의 시청자들이 중편 재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방통위원회는 여기에 답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선출 직에만 해당되는 책무가 아닙니다. 행정부의 정무직 또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라면 권한 행사의 기준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승인 불허에 해당하는 625점을 획득한 TV조선 과 661점을 획득한 채널A, 그리고 TV조선에 비해 106점 높은 731점을 획득한 JTBC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재승인을 해 준다면 재승인 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재승인 제 도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방통위원회가 법의 취지 를 스스로 경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TV조선을 재승인했을 경우와 재승인을 불허했을 때의 사회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존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TV조선 재승인 불허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 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TV조선에 대한 마지막 청문 때까지 유지했던 입 장입니다. 최종 의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밝힌 대로 변 함은 없습니다. 소신 또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이 함께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하여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특정 위원 의 소신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의견일치가 안 되면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편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저희 5명의 위원 들이 치열한 논쟁과 숙고를 거쳐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TV조 선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를 확인했 습니다.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청문을 통해서 재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 청취를 거쳤습 니다. 그리고 월요일자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TV조선은 의견청취와 청문회에서 밝힌 그 러한 개선계획 그리고 개선의지를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공표했습니다. TV조선 경영진과 최 다주주의 개선계획 그리고 그 의지, 외부전문가 최종 청문에서 정리된 입장, “한번 더 기회 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일단 저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TV조선에 대해 재승인 불허라는 개인 입장이 끝내 반영 안 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입니다. 그러 나 결과에 대한 이견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논의과정을 존중하여 저는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적극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합의된 내용의 의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 는다는 그런 소극적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편 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TV조선의 추가개선계획은 정부와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법이 정 한 사업승인의 의무 조건입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재승인을 받는 중편사업 자들은 방송사업자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공적 사업자로서 사업계획 서나 재승인 조건, 이러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서 방 송통신위원회는 중편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책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또 승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편PP 및 보도도PP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던 방송정책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TFT 직원 모두 고생하셨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재승인이 아니고 종편이 원래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종편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많은 시청자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방안, 개선방안으로 그것들을 조건에 담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따라서 과거에 어떤 재허가·재승인에도 없었던 이런 조건들이 이번에 부과됐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하로 하라는 조건은 최초의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종편 3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4건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어느 종편의 경우에는 이미 그 엇비슷하게 쪽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만 법정제재가 많았던 종편으로서는 그것을 4건으로 줄이는 것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로이 출발하지 않으면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했던 계획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 종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의 그 모든 근원은 종편이 보도 위주로 방송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승인 계획에서 제출한 보도비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는 것을 따질 때 보니 어떤 프로그램을 보도로 분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기고 그와 같이 보도와 교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송사들이 분류해 온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교양이 아니라 보도로 느끼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도 교양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실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합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신 대로 방송프로그램 장르를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대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등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중에서 방송법상 보도로 분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보도와 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여지가 있는 것들을 모두 묶어서 그것을 보도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 전체를 묶은 것의 비율을 줄여야지만 실질적으로 종합편성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에서 뉴스와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을 다 묶어서 소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 34% 이내로 하라는 조건이 부가가 됐고, 또 다른 2개 종편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그 비율을 33%라든지 또는 32.58% 등으로 실제 34%보다 낮게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되어 있는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독특해 보이고 좀 과도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종편이 제대로 된 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콘텐츠 투자에 있어서도 파격적으로 높아진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지난 2014년에 재승인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면서 시정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재승인 기간 3년이 다 지나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절차는 밝아가되, 즉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3개월, 그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동안 또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을 때는 승인 취소, 이

절차를 밟아 가는데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TV조선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또 1년 단위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 또 재승인 기간이 다 만료되어서 사실상 이 조건이행을 못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재승인 심사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특이하게 재승인 조건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2>, <4>, <5>, <6>번의 조건이 준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조건을 준수한다는, 이것도 역시 한 번도 이런 조건이 부가된 적이 없는 새로운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그 이행이 철저히 점검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정지와 승인 취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절차적인 내용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종편이 다시 새로이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왔던 것들이 개선되면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Ⅸ.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청취 반영여부 공표**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 구분 | 법인명 | 심사결과 | 승인 유효기간 |
|------|------------|---------|---------------|
| 종합편성 | (주)조선방송 | 조건부 재승인 | 2020년 4월 21일 |
| | (주)제이티비씨 | 재승인 | 2020년 11월 30일 |
| | (주)채널에이 | 재승인 | 2020년 4월 21일 |
| 보도전문 | (주)와이티엔 | 재승인 | 2020년 3월 31일 |
| | (주)연합뉴스티브이 | 재승인 | 2020년 3월 31일 |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 (접수기간) 2016. 12. 5. ~ 2017. 1. 4.
-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
- (접수결과) 총 32,696건
-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심사 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사에 반영됨